

KOFIC 연구 2023-0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 방안 연구

20
23

영화진흥위원회 KOFIC 연구 2023-0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 방안 연구

연구수행기관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
책임연구	황승흠 국민대학교 교수
공동연구	노철환 인하대학교 교수
	이성민 방송통신대학교 교수
	표시영 강원대학교 교수
	황성기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구보조	이수현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연구주관기관	영화진흥위원회

발행인 박기용
발행일 2023년 5월 31일

영화진흥위원회
부산시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 130
전화 (051)720-4700 / 홈페이지 www.kofic.kr

경성문화사 / 제작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66길 11
전화 (02)786-2999

ISBN 978-89-8021-236-1 (93680)
©영화진흥위원회, 2023

제출문

영화진흥위원회 귀하

본 보고서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 방안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3년 5월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

목차

요약	10
제1장 서론	13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5
1. 연구의 필요성	15
2. 연구의 목적	16
II. 연구의 내용	16
III. 연구의 방법	17
제2장 영상산업법제의 연혁과 체계 분석	19
I. 영비법의 연혁과 체계	21
1. 영비법의 출발: 영화법제 + 비디오물법제	21
2. 영비법의 개정연혁	21
3. 영비법 개정법률안의 연혁과 시사점	29
II. 영상법제의 연혁과 체계	37
1. 영상진흥기본법	37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37
3. 콘텐츠산업 진흥법	40
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42
5. 방송법제	43
6.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46
7. 전기통신사업법	47
8. 정보통신망법	49
9. 조세특례제한법	52
10. 게임산업진흥법	53
III. 영상산업법제 분석의 시사점	56
1. 정의	56
2. 산업 진흥	56
3. 이용자 보호	57
4. 시사점	57

제3장 미디어법제 개편 논의와 영비법과의 관계	59
I. 미디어 법제 개편 논의의 지형	61
1. 법제 및 거버넌스 개편 논의의 지형과 맥락	61
2. 주요 법제 및 거버넌스 개편 논의 내용 검토	66
3. 구체화된 개편 방향으로서 영상미디어콘텐츠산업법안 검토 및 한계	68
II. 미디어 법제 개편 논의가 영비법 체제에 미치는 영향	75
1. 미디어 법제 개편 결과	75
2. 영비법 체제에 미치는 영향	75
III. OTT 자체등급분류제도가 영상산업 법제에 미치는 영향	78
1. OTT 자율등급분류제 도입 경과 및 내용	78
2. OTT 자율등급분류제가 영상산업 및 영상산업법제에 미치는 영향	80
제4장 영화 및 비디오물의 정의의 재구성 방안	83
I. 영화/비디오물/디지털시네마 정의의 변천과 문제점	85
II. 영상물 관련 정의의 변천과 시사점	87
1. 영상산업기본법의 ‘영상물’	87
2. 문산기본법의 ‘방송영상물’	87
3. 방송법의 ‘방송’	88
4. IPTV법의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88
5. 게임산업진흥법의 ‘게임물’	88
6. 음악산업법의 ‘음악영상물/음악영상화일’	89
7. 전기통신사업법의 ‘온라인동영상’	89
8. 소결론	90
III. 영화·비디오물 통합정의의 재구성 방안	91
1. 영화+비디오물의 이원체계 통합의 필요성	91
2. 유통방식 중심의 정의에서 콘텐츠 중심의 정의로 전환 과제	91
3. 영화·비디오물의 통합 정의로서 영화 정의의 재구성 [1안]	93
4. 보완 방안으로 영화와 영상물의 이원구조 제시 [2안]	107

제5장 해외법제의 영화 정의 검토	115
I. 프랑스 법제상 영화 정의	117
1. 프랑스 영화법제와 주무기관	117
2. 영화동영상법전 상 영화 정의	118
3. TV 서비스 측면에서 영화 정의	119
4. 영화 작품과 시청각작품 비교	120
5. 저작권 측면에서 영화(저작자) 정의	121
II. 영국과 호주 영화법제상 영화 정의	122
1. 영국 영화법제상 영화 정의	122
2. 호주 영화법제상 영화 정의	123
III. 캐나다와 독일 영화법제상 영화 정의	124
1. 캐나다 영화법제상 영화 정의	124
2. 독일 영화법제상 영화 정의	125
IV. 싱가포르와 베트남 영화법제상 영화 정의	127
1. 싱가포르 영화법제상 영화 정의	127
2. 베트남 영화법제상 영화 정의	128
V. 해외법제 영화 정의 검토 시사점	130
1. 영화 용어 일반에 관한 영화사적 의의	130
2. 과거와 현재 프랑스 영화 법적 정의 변화 해석	131
3. 해외 영화법제상 정의에 관한 해석	132
4. 해외 영화 영상 법제 성격 비교	134
5. 해외 법제 영화 정의 비교 시사점	136
제6장 등급분류 체계의 개정방안	137
1. 등급분류	140
2.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	146
3.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147
4.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준수사항	149
5. 자체등급분류의 효력	150
6.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등	151

7. 저작권등급재분류 등	152
8.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지원업무	153
9. 등급의 재분류	154
10. 등급분류 등의 취소	155
11. 등급분류 결정 등의 공고	156
12. 표시의무	157
제7장 영상산업 진흥체계 재편 방안	159
I. 영화산업 진흥 및 소비자 보호 체계 방안	161
1. 사업자 정의의 개편	161
2. 영화산업 진흥 방안	166
3. 소비자 보호체계 방안	171
II. 산업진흥 거버넌스 및 자원 구성 방안	174
1. 영화진흥위원회 거버넌스 개편방안	174
2. 산업진흥 자원 체계 개편방안	177
제8장 결론	179
I. 통합 영화 정의의 제안 <1안>	181
II. 보완방안으로서 영화+영상물 이원구조 제시 <2안>	183
III. 통합 영화 정의<1안> 도입에 따른 영비법 전면개정안 제안	185
IV. 영화+영상물 정의<2안> 도입에 따른 영비법 전면개정안 제안	220
참고문헌	255

표 목차

〈표 1〉 통합 영화 정의에 따른 영비법 조문 개편 방안	102
〈표 2〉 영화 + 영상물 이원구조에 따른 영비법 조문 개편 방안	109

그림 목차

[그림 1]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청각미디어서비스' 개념 제안	63
[그림 2] OTT 및 영상콘텐츠 인접 법제 및 규율 현황	65
[그림 3] 영상미디어콘텐츠의 정의와 유사 개념의 비교	70
[그림 4] 영상미디어콘텐츠산업법의 위치(기존 법제와의 비교)	70
[그림 5] 영상미디어콘텐츠 사업자 구분	71
[그림 6] 영상미디어콘텐츠산업법 상의 자체등급분류 방식	72
[그림 7] OTT 유관 법제 및 내용 규제 지형	76
[그림 8] 영화, 비디오물 등급분류 추이(2016~2020년)	80
[그림 9] 한국 비디오물 장르별 등급분류 현황(2016~2020년)	81

요약문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OTT(Over The Top)의 등장으로 영상산업 환경의 급변하였고, 포스트 코로나 이후 극장관객 수요 감소 등 구조적 변화 문제 제기
- 현재의 영상산업의 법적 규율체계가 이에 따라가지 못하여 영상산업 및 영화산업의 발전에 심각한 장애요인으로 제기됨
- 2022. 9. 영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새로운 영상산업 및 법체계의 변화에 부합하는 영화 및 비디오 관련 정의의 재편 필요. 이를 위해 영비법 개정안의 타 부처 관할의 법체계 및 입법 개정안에 미치는 파급력 검토

II. 영상 관련 법제 및 해외 법제의 시사점

- 제21대 국회에 발의되고 의결된 영비법 개정법률안들의 시사점은 크게 다음 두 가지임
 - 첫째, 코로나19로 인한 영화산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 조치들, 예컨대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면제, 영화발전기금의 주요 재원인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징수기한의 연장(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음
 - 둘째, OTT 서비스의 법제화 및 자체등급분류제도의 도입임. 온라인비디오물의 개념 도입을 통해서 OTT 서비스를 영비법의 규율체계로 편입시킴과 동시에, 등급분류의 효율성을 위해서 자체등급분류 제도를 도입하였음
- 영상 관련 법제의 개정 연혁을 살펴본 결과, 먼저 정의 조항들은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는데, 새로운 서비스를 포섭할 수 있는 새로운 정의 조항을 만들거나, 기존 서비스에 통합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것으로 확인됨
- 나아가 진흥 조항의 경우 관련 규정의 유연한 적용을 위한 기관들의 일원화와 더불어 개정된 법들을 반영하여 진흥 정책이 다양한 대상들에게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되었음
- 소비자 보호 조항의 경우, 관련 서비스의 특성을 반영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개정되었으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조항들이 두드러졌음
- 해외 법제의 시사점
 - 해외 주요 각국 법적 정의를 바탕으로 볼 때, 전송, 배포 및 저장 매체의 한계를 넘어서 폭넓은 영상물 통합 개념으로서 '영화' 정의 근거는 충분하다고 판단됨
 - 영화는 대중에게 이야기가 있는 동영상을 선보인 최초 장르로서 필름, 시네마토그래프, 시네마, 무빙픽처스, 모션픽처, 무빙 이미지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음

- 프랑스, 호주, 베트남 등에서 영화 정의 및 범주를 등급분류와 연결시킨 사례 발견
- 지원과 규제가 긴밀히 연결된 프랑스 영화법상 영화 정의의 변화 및 글로벌 OTT 대응 등 사례를 참고할 때, 디지털 영화 환경 변화에 따른 영화 재정의 필요성 대두
- 콘텐츠 중심의 영화-영상물 통합 진흥 법제를 통해 영상 매체 융합 환경 대응 및 산업 활성화 방향성 수립 필요성
- FTA 유보사항인 영화 중심으로 통합 정의 시 규제자율권 확보에 유리할 것으로 사료됨(cf. 방송의 경우 FTA에 포함되어 규제자율권 행사 난망)

Ⅲ. 영비법 개정안의 기본구도

- 현행 영비법의 영화 + 비디오물의 이원구조를 통합 영화 정의 구조로 전환
 - <1안> 영화 일원론 : 영화 + 비디오물을 통합 영화 정의로 전환하되, 온라인비디오물과 디지털시네마 정의는 폐지
 - <2안> 영화 + 영상물의 이원론 : 통합 영화 정의로 전환하되, 온라인비디오물을 영상물로 수정하고 디지털시네마 정의는 폐지
- 개정 법률의 명칭은 <1안> 영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2안> 영화 및 영상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사업자 규정은 <1안> 영화업자로 일원화(비디오물업자는 영화업자로 흡수)하고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는 영화시청제공업자로 전환 <2안> 영화업자 + 영화시청제공업자 + 영상물제작업자 및 영상물배급업자로 규정
- 영화 등급분류 절차 + 비디오물 등급분류 절차 → 영화 등급분류 통합 절차로 규정하며 온라인 영화 또는 영상물 자체등급분류 절차는 현행 유지
- 영화진흥위원회 거버넌스 확대 : 통합 영화 정의 도입에 따라 위원 수를 15인 이내로 확대하며 비디오물사업자 배제 조항 삭제
- 영화상영관 경영자에게 부과되는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징수 의무/통합전상망 가입의무/한국영화관 상영의무는 현행유지
- 재원 다각화 방안으로 국고 재원 마련을 위한 산업진흥 조항 도입은 신중 검토 → 통합 영화 정의 도입 이외에 불필요한 전선 확대 우려
- 관객 또는 소비자 보호 조항도 검토는 하되 개정안의 문제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두는 방안은 추후 논의

제1장 서론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 OTT의 등장으로 영상산업의 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며 포스트 코로나 이후 극장관객의 수요 감소 등의 구조적 변화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나 현재의 영상산업의 법적 규율체계가 이에 따라가지 못하여 영상산업 및 영화산업의 발전에 심각한 장애요인으로 제기되고 있음
- 현행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이라 약칭)은 2006년에 제정된 것으로 당시의 영상산업의 환경에 맞추어 새로운 영상산업의 규율체제로 제정되었으나 현재의 급변하는 영상산업의 환경에 맞추지 못하여 전면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OTT 중심의 영상산업 재편으로 인해 2022년 6월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온라인동영상서비스 규정이 도입되었고, 온라인비디오물의 자체등급분류에 관한 영비법 개정안이 2022년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 이와 같은 법률개정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이원적 관리를 기반으로 하는 현행 영비법의 체계에 근본적인 재편 필요성을 제기함
 - 방송법의 경우, 시청각미디어법안 제안 및 통합 방송법으로의 재편을 예고하고 있음

2. 연구의 목적

- 2022년 9월에 영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따라 새로운 영상산업 및 법체계의 변화에 부합하는 영화 및 비디오 관련 정의 규정의 재편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영비법 개정안의 타 부처 관할의 법체계 및 입법 개정안에 미치는 파급력을 검토하고자 함
- 영화산업의 자원체계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함에 따라 자원 확충을 위해 필요한 방안과 영상산업 재편에 맞추어 영상산업 총괄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에 따른 법 규정의 검토 및 법 개정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영화발전기금 중심의 영화산업 관리체계인 현행 영비법을 영상산업 발전과 영화문화 창달을 위한 영상산업 기본법제의 체계로 개편이 요구되며 이를 위한 전면개정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영상산업 진흥체계와 함께 소비자 보호 체계의 도입으로 보다 체계화된 산업진흥의 관리체계를 도입

II. 연구의 내용

- 영비법 및 영상법제의 연혁과 체계 분석에 따른 현행 영상산업법제의 연혁과 체계 도출
- 미디어법제 개편 논의와 영비법과의 관계 분석을 통해 영비법의 특성과 한계 도출
- 영화 및 비디오물 통합정의의 재구성 방안과 관련하여 (1안) 영상물 통합정의를 통한 영화일원화 방안, (2안) 매체별 영상물 정의를 통한 영화+영상물로의 이원화 방안 제시
- 프랑스, 영국, 호주, 독일, 캐나다 등 해외 주요 국가법제의 영화 정의 검토를 통해 영비법 전면개정의 필요성 도출
- 영화 및 비디오물 통합정의의 재구성 방안(1안, 2안)에 따른 영비법 개정요강과 등급분류/영상산업 진흥체계와 관련된 법조문 도출
- 결론 및 법 개정 전략 제언

Ⅲ. 연구의 방법

○ 문헌연구

- 산업환경 변화 및 관련 법률개정, 선행연구에 대한 문헌 검토
- 입법안, 연구보고서, 토론회 자료 검토

○ 비교법제도 연구

- 프랑스, 독일, 영국 등 해외 법제 및 관련 문화산업, 인터넷 및 방송·미디어 법제에 대한 비교법 연구

○ 입법학 연구

- 법개정안 도출을 위한 입법학적 연구를 수행하여 사전입법평가 설계
- 입법학적 관점에서 적절한 법제도 설계
- 법체계에 정합적인 법제도 설계

제2장

영상산업법제의 연혁과 체계 분석

20
23

제2장

영상산업법제의 연혁과 체계 분석

I. 영비법의 연혁과 체계

1. 영비법의 출발: 영화법제 + 비디오물법제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2006. 4. 28. 「영화진흥법」과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중 비디오물에 관한 부분을 통합하여 제정된 것임
- 이 법 제정 당시 영화 부분과 비디오물 부분의 통합은, 이미 다른 법률에서 서로 다른 체계로 발전해 온 두 법이 하나로 체계화되지 못하고 ‘이어붙이기’ 식으로 두 법을 붙여 하나의 법으로 만들었다는 한계를 갖고 있었음
 - 진흥 중심의 영화법과 규제 중심의 비디오물법을 법률 제정 시한에 맞추어 하나의 체계로 융합시킨다는 것은 사실상 체계정합성 관점에서 문제점을 갖고 있는 작업이었음

2. 영비법의 개정연혁

- 영비법이 법률 제7943호로 2006. 4. 28. 제정되고, 2006. 10. 29.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타법개정으로 인한 개정을 포함하여 약 31회 정도 개정되어 온 것으로 파악됨
- 이하에서는 영비법 개정연혁 중 주요한 개정예 해당하는 내용만 발췌해서 도표로 정리하였음

연번	법률번호	개정일	시행일	주요 내용
1	제8280호	2007.1.26.	2007.4.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화예술의 질적 향상과 한국영화 및 영화·비디오물산업의 진흥·발전을 위하여 정부의 출연금,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 영화상영관 입장권에 대한 부과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영화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영화상영관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금을 징수하도록 함(제23조 - 제25조의3) •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화재 대처계획을 영화상영관 시설 설치 등록기관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제37조 제1항)
2	제9004호	2008.3.28.	2008.6.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디오물 영업자 등에 대한 영업소 폐쇄 등의 조치를 함에 있어서 미리 서면으로 통지를 하되,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급박한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제70조 제2항)
3	제9096호	2008.6.5.	2008.1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필름 기반의 영화산업이 디지털화일 형태로 영상저작물을 가공·처리하고, 디지털영상기 및 전기통신기자재로 공중에게 상영하거나 제공하는 디지털시네마 체제로 전환되고 있음에 따라, 디지털시네마 산업의 기반조성, 자원 확보, 디지털시네마 품질인증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 • ‘디지털시네마’ 용어 정의의 신설(제2조 제19호) • 영화진흥기본계획에 디지털시네마 관련 사항 추가(제3조 제2항 제9호 - 제11호) • 영화업자 등 관련 사업자에 대해 영상기술 개발·표준, 디지털시네마 품질인증 및 영화상영관 등의 시설기준과 관련된 기술표준, 품질인증, 시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의 권고(제3조 제3항) • 영화진흥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디지털시네마와 관련된 영상기술의 개발과 표준 제정·보급, 품질인증 및 영화상영관 등의 시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 추가(제14조 제1항 제7의2호) • 영화발전기금의 용도 중의 하나로 영상기술의 개발과 관련된 사업 지원 추가(제25조 제1항 제8호의2)
4	제9657호	2009.5.8.	2009.1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주무부처와의 정책적 연계성이 미흡한 실정으므로 위원 위촉방식을 변경하여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 영화 및 비디오물 내용의 선정성·폭력성 등의 정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영상물 등급분류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함. 한편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해당 규정을 정비하고, 선정성 또는 폭력성 등의 묘사가 과도한 비디오물에 별도의 등급을 부여하여 공중시청과 광고·선전을 제한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영화 및 비디오물의 내용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제2조 제20호, 제29조 제8항 등)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신고·등록 기관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통일하여 영업자의 불편·부담을 경감하도록 함(제26조 제1항, 제36조 제1항 등)

연번	법률번호	개정일	시행일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한상영가 영화' 등급의 내용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영화 상영등급 분류기준의 대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그 구체적인 분류기준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제29조 제2항 제5호 및 제7항) • 청소년 유해성 확인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광고·선전물에 대해서도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확인받도록 함(제32조 제1항 및 제66조 제1항) • 비디오물의 등급분류 보류제를 폐지하고 '제한관람가 비디오물' 등급을 신설하되,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시청제공, 광고·선전 등에 관하여 일정한 제한을 하도록 함(제50조 제3항 제5호, 제53조의2, 제62조 제4호 등) •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대한민국예술원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구성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제73조 제2항 및 제3항)
5	제9676호	2009.5.21.	2009.5.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의 현실 여건과 사회적 성숙도, 사회방어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보면, '제한상영가' 영화의 광고·선전, 상영·유통의 제한 등과 관련된 규정을 계속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부칙의 '제한상영가' 영화에 관한 유효기간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6	제10109호	2010.3.17.	2010.9.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화상영관의 발권 데이터를 정확히 집계함으로써 영화산업의 건전한 투자 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2004년 5월부터 전국 영화상영관의 입장권 발권정보를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집계하고 처리하는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을 운영 중에 있으나, 현행법에는 통합전산망 운영의 근거규정만 있을 뿐 영화상영관 경영자의 가입의무 등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통합전산망에 가입하지 않는 등 그 한계가 있었음 • 영화상영관 경영자에게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영하는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가입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통합전산망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영화제목, 상영기간 등 영화상영의 신고를 면제하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함(제39조, 제41조 제2항) • 영화산업 진흥 및 저작권 보호를 위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노력의무를 명시함(제28조 제3항)
7	제11314호	2012.2.17.	2012.8.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화진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규정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내용과 일치시켜 법체계의 통일성을 기하고, 선정적·폭력적인 내용과 장면을 담고 있는 예고편 영화, 영화 광고·선전물, 음악영상파일 등이 청소년들에게 여과 없이 노출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예고편 영화의 경우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을 추가하며, 청소년 유해성 확인을 받아야 하는 영화 광고·선전물에 영상물 형태의 광고·선전물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음악영상파일의 경우 대가없이 유통되더라도 등급분류를 받도록 함. 한편 최근 청소년들의 일탈장소로 악용되고 있는 멀티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복합영상물 제공업을 신설하고,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하는 업종에 복합영상물 제공업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연번	법률번호	개정일	시행일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디오물감상실업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게임물을 이용하거나 노래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공중에 제공하는 영업을 복합영상물제공업으로 정의하여 멀티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제2조 제16호 라목) •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위원장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제1항 및 제2항) • 영화진흥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변경함(제15조) • 영화진흥위원회의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함(제19조 제2항 및 제3항) • 예고편 영화의 경우 전체관람가 등급에 더하여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을 추가함(안 제29조 제2항 단서) • 청소년 유해성 확인을 받아야 하는 영화 광고·선전물에 영상물 형태의 광고·선전물이 포함됨을 명확히 함(제32조 제1항) •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비디오물이라도 음악영상파일인 경우에는 등급분류를 받도록 함(안 제50조 제1항 제2호 단서) • 영화의 상영등급분류 또는 비디오물 등급분류를 신청하는 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함(제90조 제2항 단서)
8	제11902호	2013.7.16.	2013.8.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다 다양한 영화계 현장의 목소리를 영화진흥정책에 반영하고 현장성이 강화된 지원기구로서 영화진흥위원회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영화업자가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제8조 제2항 단서, 제17조 제2항)
9	제12353호	2014.1.28.	2014.7.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장애인의 문화향유권 보장을 위하여 수화·자막·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영화를 연간 상영일수의 100분의 30 이상 상영하는 전용상영관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38조 제2항)
10	제12857호	2014.12.23.	2015.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화발전기금의 재원이 되는 부과금의 징수는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12년말까지 총 2,981억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으나 2019년경에는 기금의 고갈이 예상됨에 따라 대책이 필요하며, 영세한 영화상영관 경영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또한, 일부 지역에 영화관련 사업이 집중되어 있어 낙후된 지역 주민의 영화 향유권 향상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영화상영관 입장권 가격의 일부만큼 징수하는 부과금제도를 2021년까지 연장하는 한편, 부과금 수납에 대한 위탁 수수료를 영세한 영화관 사업자에 지원하여 영화발전기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영화산업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역 영화 향유권 개선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제25조의2 제5항, 제38조의2 등)
11	제13306호	2015.5.18.	2015.11.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이 어려운 영화상영관의 폐업을 방지하여 지역주민들의 영화향유권을 보호하기 위해 영세한 영화상영관에 영화관입장권 부과금을 면제하도록 하고, 영화상영관에 입장하는 관람객으로부터 부과금을 징

연번	법률번호	개정일	시행일	주요 내용
				<p>수하여 납부하는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관람객으로부터 징수한 부과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영화진흥위원회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부과금의 징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줄이도록 하며, 영화상영관 등에 대한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폐업한 영화상영관 경영자 등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임. 또한 영화노사정협의회 구성, 표준보수지침 마련·보급, 근로계약시 근로조건 명시 의무 부과, 표준계약서 사용 권장 및 사용시 재정지원 확대, 영화근로자의 안전사고로부터 보호 등을 통하여 영화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열악한 고용여건을 개선하고, 영화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한편 영상을 매개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영상물 촬영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 중인 영상위원회의 기능 및 예산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화근로자조합과 영화업자 또는 영화업자단체 및 정부를 대표하는 자는 영화산업의 진흥과 영화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영화노사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제3조의2)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화노사정협의회와 협의하여 영화근로자의 표준보수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보급·권장하도록 함(제3조의3 제1항) • 영화업자는 영화근로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영화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및 그 밖의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함(제3조의4)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화업자 또는 영화업자단체에 표준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할 수 있고,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영화업자 또는 영화업자단체에 대하여 재정지원에 있어 우대할 수 있도록 함(제3조의5) • 영화업자는 영화 촬영 중에 발생하는 안전사고로부터 영화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3조의6)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영화근로자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고, 직업교육훈련기관에 직업훈련 실시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3조의7) • 영화업자가 영화 제작기간 동안 영화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거나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영화발전기금 지원 등 재정지원 사업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함(제3조의8) • 영세한 영화상영관에 입장하는 관람객의 부과금 납부 의무를 면제함(제25조의2 제1항 제2호) • 부과금 미납 시 가산금 및 강제징수 제도를 도입함(제25조의2 제4항 및 제5항) • 영화업 또는 영화상영관 폐업 시 폐업신고 의무 및 직권말소의 근거를 마련함(제28조의2 및 제46조의2)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영상물 촬영에 필요한 지원 및 영상위원회의 설치·지원 근거를 마련함(제28조의3 및 제28조의4) •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규정함(제39조 제3항 및 제98조 제2항) • 비디오물감상실에 청소년 출입을 허용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둠(제94조 제7호)

연번	법률번호	개정일	시행일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계약 명시 사항을 위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둠(제96조의2)
12	제13969호	2016.2.3.	2016.8.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화는 산업적 측면과 함께 국민들의 창의적 생각을 북돋우고, 공감을 통해 건강한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영상문화적 측면도 매우 중요하므로, 그동안 영상산업 지원에 집중되었던 정부의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지역 영상문화 전반으로 확대하여 한국 영상문화 발전의 완성도를 높여나가는 것이 필요함. 한편 법 제38조의2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지역 영화상영관 지원, 원활한 영화 배급, 공공 상영 및 영상문화교육시설 구축 등 지역 영화 향유권 향상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수립·시행하는 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영화발전기금의 용도에는 지역 영상문화 진흥을 위한 지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역 영상문화 진흥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위하여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지역 영상문화 진흥을 영화진흥기본계획에 포함하고 영화발전기금의 용도에 지역 영상문화 진흥과 관련된 사업 지원을 추가하는 한편, 지역 주민·단체의 영상문화 진흥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둌으로써 한국 영상문화 전반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제3조 제2항 제11호의2, 제14조 제1항 제14호의2, 제25조 제1항 제8호의3, 제38조의2 제2항)
13	제14430호	2016.12.20.	2017.6.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에 대한 사회적·국민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영화상영관과 유사한 공연장에 대해서는 재해대처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계획에 따른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계획을 보완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마련하고 있으나, 영화상영관에 대해서는 계획 수립, 재해예방조치 미이행 등에 대한 제재조치 규정이 미흡하여 그 실효성이 낮은 실정임. 이에 영화상영관 경영자로 하여금 매년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필요한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해대처계획의 이행력을 높여 영화상영관 재해대처관리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제37조, 제45조 제1항 제4호의2, 제98조 제2항 제4호 및 제4호의2)
14	제15439호	2018.3.13.	2018.9.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영화발전기금의 용도에 예술·독립영화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예술영화만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들을 예술영화·독립영화로 함께 규정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영화향유권 향상을 위해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 영화상영관을 설치 또는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제3조 제2항 제6호의2, 제14조 제1항 제9호, 제25조 제1항 제4호의2 및 제7호,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8조의3)
15	제15820호	2018.10.16.	2018.1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식 표현을 우리식 한자어로 적절하게 바꾸기 위하여 '계리' 및 '당해'를 각각 '처리' 및 '해당'으로, '등급분류필증' 및 '확인필증'을 각각 '등급분류증명서'와 '확인증명서'로 개정하려는 것임
16	제16061호	2018.12.24.	2018.12.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화업자의 신고, 비디오물제작업 등의 신고·변경신고 및 영화상영관 경영자·비디오물제작업자 등의 지위 승계 신고 등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제26조 제2항, 제37조 제2항 및 제3항, 제46조, 제57조 제2항, 제61조 제2항, 제63조 등)

연번	법률번호	개정일	시행일	주요 내용
17	제16691호	2019.12.3.	2019.12.3.	• 어려운 한자식 용어인 '잔임기간'을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는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순화하려는 것임
18	제17413호	2020.6.9.	2020.9.10.	• 영화진흥위원회가 민주성과 자율성을 중시하는 합의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는 한편, 위원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제8조 제3항, 제10조 제1항·제2항·제3항, 제19조 제2항·제3항)
19	제18161호	2021.5.18.	2021.8.19.	• 영화계 내에서 현장의 관행 또는 우월적 지위나 권한을 이유로 영화 근로자에게 계약상 합의되지 않은 연출이나 근로를 강요하거나 노동 착취 또는 성적인 연출을 강요하는 성희롱·성폭력을 가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개인 프리랜서나 비정규직이 많은 이들의 특성상 피해를 입어도 사건이 쉽게 은폐될 수 있어 더욱 문제가 될 수 있고, 특히 최근에는 '미투 운동'으로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성폭력 사건들이 드러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반면,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근로자들의 근로환경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 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영화산업 내 근로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현실임.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영화산업진흥 또는 영화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영화업자의 영화 촬영 전 성폭력 예방교육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영화진흥기본계획, 영화진흥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영화진흥기금의 사용용도에 영화산업에서의 인권존중 의식 및 양성평등 문화의 확산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킴으로써 예술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제3조 제2항 제6호의2, 제3조의7, 제3조의10, 제14조 제1항 제11호 및 제16호, 제25조 제1항 제5호의3)
20	제18305호	2021.7.20.	2021.10.21.	• 법은 영화진흥위원회가 영화상영관에 입장하는 관람객에게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3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영화상영관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 함)의 확산에 따른 관람객수의 급감 등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이러한 영화상영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감염병 발생으로 인해 입장권의 율판매액이 감염병 발생연도 직전 3개년 평균 입장권 판매액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감소한 영화상영관에 대하여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람객 급감으로 인한 영화상영관의 부담을 완화하고 관람객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제25조의2 제1항 제3호)
21	제18659호	2021.12.28.	2022.6.29.	• 영화상영관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위생·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영화진흥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유행성 감염병에 대비하고 국민의 건강한 영상문화 향유를 장려함(제3조 제2항 제12호) • 영화업자들이 폐업을 하는 경우 폐업신고 기간을 폐업일로부터 7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연장함으로써 폐업신고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함(제28조의2 제1항, 제46조의2 제1항)

연번	법률번호	개정일	시행일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영화제가 영상문화·산업 활성화와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국제영화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및 조례 제정의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함(제28조의5) • 영화업자와 비디오물영업자는 장애인의 영화 또는 비디오물 향유권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영화 또는 비디오물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 해설 등을 제공하도록 함(제38조의4, 제49조의2) • 영업정지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 완화 및 이용자의 편의 증대를 위하여 비디오물제작업자 또는 비디오물배급업자가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68조 제1항) • 영화발전기금이 한국영화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금의 주요 재원인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징수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22	제18985호	2022.9.27.	2023.3.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에 따라 국내에서 비디오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는 해당 비디오물을 공급하기 전에 그 내용에 관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함. 그러나 최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Over The Top) 등 새로운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는 영상물의 급격한 증가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비디오물 등급분류 처리 기간이 지연됨에 따라, 적시성이 필요한 콘텐츠의 출시 지연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편과 사업자의 행정적 부담이 커지는 등 영상물의 등급분류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축시킬 필요성이 대두됨. 이에 온라인비디오물의 원활한 유통 기반 구축과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사업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등급을 분류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청소년 보호라는 등급분류의 취지를 고려하여 자체등급분류사업자와 자체등급분류된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 자체등급분류 제도의 대상이 되는 온라인비디오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시청에 제공할 수 있도록 제작된 비디오물로 정의함(제2조 제12호의2)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받은 사업자는 제한관람가 등급을 제외하고는 자체적으로 온라인비디오물의 등급을 분류하여 유통할 수 있도록 함(제50조의2)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자체등급분류 업무운영 계획의 적정성 및 청소년 및 이용자 보호 계획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50조의3) •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하여금 자체등급분류한 온라인비디오물의 등급과 내용정보 등을 표시하고, 이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는 등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준수사항을 마련함(제50조의4)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조정 요구, 직권 등급분류 결정 또는 등급분류 결정 취소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제50조의6)

연번	법률번호	개정일	시행일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자체등급분류된 온라인비디오물이 제한관람가 또는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권으로 등급분류 결정을 하거나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할 수 있고, 등급분류 결과가 등급분류 기준에 현저히 위배되는 경우 등에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등급조정을 요구할 수 있음(제50조의7)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자체등급분류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온라인 사후관리시스템의 구축, 자체등급분류 정보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제50조의8)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자체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 등 불법 온라인비디오물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으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는 등의 시정을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제70조제7항)

3. 영비법 개정법률안의 연혁과 시사점

- 이하에서는 2006년 제정 이후 각 국회 입법기별 영비법 개정법률안들의 경과를 정리하고, 특히 제21대 국회에 발의되고 의결된 영비법개정법률안들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1) 제17대 국회(2004년-2008년)

입법기	처리 / 폐기 분류	내용
제17대 (2004~2008)	2006.4.28. 제정 2006.10.29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영화진흥법」과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통합 비디오물 개념 확대 (→“기계·전기·전자 또는 통신장치에 의하여 재생”)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제도 개선
	원안/수정안 가결 · 대안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화진흥금고 ⇒ 영화발전기금 전환 기금 조성 = 정부 출연 + 개인/법인 기부 + 기금 운용 수익금 + 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기금 용도에 영상전문투자조합 출자, 영상문화 공공성 증진, 장애인 문화향유권 포함 디지털시네마 개념 정의 및 영발기금의 사용처에 디지털시네마 사업 포함 영화상영관 재해대책계획을 기존 소방서장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 신고로 변경
	임기만료 폐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용상영관을 지자체에서 운영 및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복합상영관 경영자는 상영관들 중 1개관 이상을 대안상영관으로 설치·운영 기금 용도에 남북간 영화교류 활성화 사업 지원 포함 (⇒ 18대 통과) 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 자막해설, 또는 폐쇄자막 제공 (⇒ 21대 통과) 영등위 위원 구성을 기존 대한민국예술원장에서 문광부 장관 위촉토록 변경 (⇒ 18대 통과) 비디오물 제작업자의 비디오물 영상자료원 제출 의무 부과

(2) 제18대 국회(2008년-2012년)

입법기	처리 / 폐기 분류	내용
제18대 (2008 ~ 2012)	원안/수정안 가결 · 대안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한상영가 영화의 유효기간 삭제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 가입 의무화, 미가입 시 과태료 부과 영등위 위원 구성을 기존 대한민국예술원장에서 문광부 장관 위촉토록 변경 비디오물감상실업 운영자의 성매매·알선행위 처벌 시, 「영비법」 아닌 「성매매처벌법」을 따르도록 변경 비디오물 등급 표시 외에 선정성, 폭력성 등의 정도를 표시하도록 함 영등위 위원 중 여성위원 비율과 40세 이하 위원 비율을 정함 영화의 상영등급 중 제한상영가 영화를 구체적으로 규정 영화업, 비디오물제작업, 비디오물배급업의 신고를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신고토록 함 독립영화에 대한 정의 및 등급분류 제외, 기금을 통한 지원 등을 규정 영화진흥위원회 위원, 위원추천위원회 설치 및 선임 기준 신설 한국영화아카데미의 설립근거를 법률에 규정 비영리 목적 영화의 상영등급분류 신청에 따른 비용 면제 기금 용도에 남북간 영화교류 활성화 사업 지원 포함 등급분류 제외 대상인 비디오물이 상품이나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등급분류 의무 부과(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영상물 또는 영화 등에 대한 현재 이슈의 초기 형태) 기금의 용도에 영화노동자 지원을 추가 새로운 업종인 복합영상물제공업(이른바 멀티방)의 정의와 행위 제한
	입기만료 폐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진위 위원이 될 수 없는 자에 대한 세부조항 규정 영진위 및 영등위 위원의 해촉 사유 중 일부(심신상 장애로 직의 수행이 어려울 때) 삭제 정확한 영화상영시간 표기(영화광고를 보지 않을 관람객의 권리) 의무

(3) 제19대 국회(2012년-2016년)

입법기	처리 / 폐기 분류	내용
제19대 (2012 ~ 2016)	원안/수정안 가결 · 대안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화업자도 영진위 위원으로 선임이 가능토록 함 기금의 용도에 지역 영상 문화 진흥에 관련된 사업 포함(영화산업 뿐 아니라 관객의 권익 포함) 장애인 문화향유권 강화를 위해 자막·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전용상영관 지원 근거 마련 영화발전기금 부담금 모금 기간을 2021년으로 연장 영화상영관 폐업 신고에 관한 규정 보완 영세한 영화상영관에 입장하는 관람객의 부과금 납부 의무 면제 영화노사정협의회 구성 근거 마련, 표준임금지침, 근로계약의 명시, 표준계약서 사용 등 관련 규정 지역 영상위원회의 영합체인 '한국영상위원회'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입법기	처리 / 폐기 분류	내용
	임기만으로 폐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화상영의 신고 항목에 영화상영시간 표시 의무화 •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음악영상물에 대한 선택적 등급 심사제 도입 • 영화관람요금의 세부내역 등을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의무화(3D안경 비용 등) • 영화관람 청소년의 연령을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변경 •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 • 음악영상파일에 대한 심의를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함 •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임의로 상영을 중단하는 경우 영화제작업자 등과 사전 협의토록 함 • 장애인을 위한 자막, 수화, 화면 해설 제공 • 청소년에게 그릇된 가치관을 심어줄 우려가 있는 광고에 대한 등급심의 • 영화상영관의 경영자가 예매시간 등의 방법을 통해 영화 상영을 통제할 수 없도록 함 • 기금의 용도를 영화산업 종사자들의 협동조합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복합상영관 중 한 개 이상의 상영관에서 예술·독립영화 연간 일정일 이상 상영 • 영진위 업무에 영화산업의 공정한 경쟁환경 및 종사자의 합리적 업무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추가 • 영사관련 국가기술자격자에게만 영사업무를 허락한 자격 기준을 완화함 • 영상물등급위원회 상영등급 면제 대상에 비영리법인에서 주관하는 영화제로 확대함 • 영진위 위원 신분보장 예외사유 중 심신상의 '장애'를 '질병 또는 부상'으로 변경

(4) 제20대 국회(2016년-2020년)

입법기	처리 / 폐기 분류	내용
제20대 (2016 ~ 2020)	원안/수정안 가결 · 대안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화상영관 경영자의 재해대처계획 수립 의무 •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을 위원들 가운데 호선하여 정함 • 영화업, 비디오물제작업 등의 신고·변경신고 및 지위 승계신고의 수리행위 명시 • 영화진흥기본계획에 독립·예술영화 육성 및 지원을 포함시킴 • 국가나 지자체의 영화상영관 설치 운영 및 지원 근거 마련 • 법용어 '계리', '당해' => '처리' '해당' 으로 변경 • 서류명 '등급분류필증', '확인필증' => '등급분류증명서', '확인증명서'로 변경
	임기만으로 폐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페이지나 영화관람권 등에 표시된 영화의 상영시간에 광고영하나 예고편영화 상영 금지 • 영화의 정의, 복합상영관 정의, 영화관객의 불만 및 진정사항 처리안 • 대기업의 배급업-상영업 겸영 금지, 복합상영관 중 한 개 이상의 전용상영관 지정 및 60% 이상 상영 • 장애인의 영화 또는 비디오물 관람환경 개선을 위한 폐쇄자막, 수어 동역, 화면 해설 등 제공 의무 • 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점검·평가 및 환류 절차 규정 • 성폭력 예방교육 등 조치 규정 및 지원근거, 영화근로자 근로환경 개선 실태조사 및 시정조치 근거

입법기	처리 / 폐기 분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가판권 시장에서 영상저작자의 공정한 수입 보장에 관한 내용 • 예고편 및 광고시간을 제외한 실제 영화상영시간 공지 의무 • 광고영화 등급에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을 신설 • 영화진흥위원회 및 영상자료원 정관에 유리천장위원회를 두는 안 • 음악영상파일 등급분류 규정 정비에 관한 개정안 • 정보통신만을 기반으로 제공되는 비디오물 등급분류 도입에 관한 개정안 • 재생영하는 수입영화에 대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재확인 규정에 관한 개정안 • 스크린 상한제: 6편이상 동시 상영 가능한 복합상영관의 주관람시간대 영화 한 편 40-50% 독점 불가 • 고령자 전용 상영관 지원 및 노약자 대피 유도에 관한 재해대처계획 수립 및 장애인 관람 지원 규정 • 상품 판매를 목적으로 광고를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비디오물의 등급 분류 • 예고편영화의 등급을 본영화와 같이 다섯 등급으로 분류함 • 법률용어 '항유', '속행' => '누림', '계속 진행'으로 변경 • 코로나19로 인한 부과금 일시 면제

(5) 제21대 국회(2020년-2024년) : 2023년 2월 25일 기준

의안번호	제안 일자	대표 발의의원	의결일	의결 결과	주요내용
2100423	2020.6.12.	이상헌	2021.6.29.	수정 가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영화상영관의 피해 대책으로 영화진흥위원회가 징수하는 부과금을 면제함(案 제25조의2 제1항제3호 신설)
2104419	2020.10.06.	진선미	2021.4.29.	수정 가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가 영화산업진흥을 위한 정책수립과 영화근로자들의 근로환경 개선·불공정행위 조사 등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영화업자의 영화 촬영 전 성폭력 예방교육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영화진흥기본계획, 영화진흥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영화진흥기금의 사용용도에 표준계약서 권장과 인권존중 의식 및 양성평등 문화의 확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으로써 예술인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기여(案 제3조, 제3조의7, 제3조의10, 제14조 및 제25조)
2113629	2021.12.1.	위원장(대안)	2021.12.2.	원안 가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화상영관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위생·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영화진흥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유행성 감염병에 대비하고 국민의 건강을 영상문화 향유를 장려함(안 제3조제2항제12호 신설) • 영화업자등이 폐업을 하는 경우 폐업신고 기간을 폐업일로부터 7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연장함으로써 폐업신

의안번호	제안 일자	대표 발의의원	의결일	의결 결과	주요내용
					<p>고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28조의2제1항, 제46조의2제1항 및 제64조제1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영화제가 영상문화·산업 활성화와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국제영화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및 조례 제정의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28조의5 신설) • 영화업자와 비디오물영업자는 장애인의 영화 또는 비디오물 향유권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영화 또는 비디오물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을 제공하도록 함(안 제38조의4 및 제49조의2 신설) • 영업정지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 완화 및 이용자의 편의 증대를 위하여 비디오물제작업자 또는 비디오물배급업자가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68조제1항 신설) • 영화발전기금이 한국영화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금의 주요 재원인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징수기한을 2028년 12월 31일 까지로 연장함(안 법률 제2820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2117270	2022.9.6.	위원장(대안)	2022.9.7.	원안 가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한 자체등급분류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온라인비디오물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12호의2 신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받은 사업자는 제한관람가 등급을 제외하고 자체적으로 온라인비디오물의 등급을 분류하여 유통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의2 신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자체등급분류 업무운영 계획의 적정성, 청소년 및 이용자 보호 계획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음(안 제50조의3 신설) •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자체등급분류한 비디오물의 등급과 내용정보 등을 표시하고, 이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하는 등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함(안 제50조의4 신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등급조정요구·직권등급재분류·등급분류 취소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안 제50조의6 신설) •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자체등급분류된 비디오물이 제한관람가 또는 청소년관람불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권으로 등급분류 결정을 하거나 자체등급분류사업

의안번호	제안 일자	대표 발의의원	의결일	의결 결과	주요내용
					<p>자의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할 수 있고, 등급분류 결과가 등급분류 기준에 현저히 위배되는 경우 등에는 자체 등급분류사업자에게 등급조정을 요구할 수 있음(안 제50조의7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자체등급분류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온라인사후관리시스템 구축, 자체 등급분류 정보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및 협력체계 구축 등 사업을 수행함(안 제50조의8 신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불법 온라인비디오물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으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는 등의 시정을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안 제70조제7항 및 제8항 신설)
2102218	2020.7.21.	이종성		소관위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화상영관을 설치·경영하고자 등록을 한 자가 영화상영관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관람객을 위한 피난방법이 포함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노약자는 물론 장애인의 문화향유권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
2103121	2020.8.20.	박정		소관위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담보력이 없는 영세업체를 대상으로 영화기금 출연을 통한 신용보증제도를 도입하고 저리 융자사업을 신설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5조)
2103287	2020.8.26.	정진석		소관위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인하여 영업상 피해가 발생한 영화상영관에 입장하는 관람객에 대하여 부과금 징수 면제 근거를 마련하여 영화산업의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제25조의2제1항제3호 신설)
2103580	2020.9.7.	유정주		소관위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화상영시간 전후에 관람객에게 예고편 및 광고영화가 상영된다는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등 영화상영시간의 공지 및 표시에 대해서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2 신설 등)
2106918	2020.12.24.	김영주		소관위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나라에서도 특수 유형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해 제공된 동영상 콘텐츠의 이용자에게도 대통령령에 따른 부과금을 징수하고, 사업자에게 부과금을 수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5조의2제8항부터 제14항까지 신설)
2109268	2021.4.1.	최형두		소관위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영화발전기금의 신규재원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안 제24조제6호 신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69호)의 의결을 전제
2113400	2021.11.18.	이병훈		소관위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화관람이 제한되는 청소년의 기준(고교 재학)을 「청소년 보호법」 상 기준(연나이 19세)과 일치시킴(안 제2조)

의안번호	제안 일자	대표 발의의원	의결일	의결 결과	주요내용
2114254	2022.1.3.	김승수		소관위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받아야 하는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에 대한 등급분류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안 제50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256호)의 의결을 전제
2114956	2022.3.24.	정청래		소관위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로 OTT 기반의 콘텐츠 산업 또는 집에서 즐길 수 있는 IPTV 등의 사업이 급속도로 발전되면서 ‘영화관에서의 상영을 목적으로 제작된’ 영화가 OTT나 IPTV를 통해 공개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영화업과 비디오물업을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있음. 이에 현재 영화의 정의가 영화상영관 등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 상영하는 것으로 한정된 것을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것까지로 그 범위를 넓히고자 함(안 제2조제1호)
2115081	2022.4.5.	김승수		소관위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화상영관 시설의 보수·유지 및 개선에 필요한 비용과 영화산업 종사자의 복지향상 및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금의 융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5조)
2115445	2022.4.28.	김의겸		소관위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화진흥위원회의 기능에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영화 환경 개선과 어린이·청소년영화의 진흥 및 국제교류 사항을 추가하고, 이를 위한 사업 지원을 위해 영화발전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
2115718	2022.5.26.	이채익		소관위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염병 사태의 재출현을 대비하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침체된 영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영화발전기금의 용도에 재난으로 인한 영화산업의 피해 구제 사업을 포함하도록 하여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등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도 영화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영화산업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5조제1항제10호의3 신설)
2116077	2022.6.21.	유정주		소관위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영화서비스제공자를 1.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비디오물을 시청에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의 신고를 한 법인, 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 정의함(안 제39조의2의 1항 신설) • 온라인영화상영 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알 수 있도록 온라인영화서비스제공자는 온라인영화상영 통합전산망에 영화의 관람자 수, 관람료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전송하여야 함(안 제39조의2의 3항 신설)

의안번호	제안 일자	대표 발의의원	의결일	의결 결과	주요내용
2118008	2022.11.1.	이상헌		소관위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한 광고·선전물의 유해성 여부 확인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영상물등급위원회는 그 절차와 기준에 대하여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자체등급분류제도의 도입 취지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6조의2·제66조의3 신설 등)
2119971	2023.2.13.	이개호		소관위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화업자와 비디오물영업자는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등 소외계층의 영화 및 비디오물 향유권 향상을 위하여 요금 할인, 외국어 자막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사회적 약자가 문화생활을 누림에 있어 소외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4 및 제49조의2)

○ 제21대 국회에 발의되고 의결된 영비법개정법률안들의 시사점은 크게 다음 두 가지임

- 첫째, 코로나19로 인한 영화산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 조치들, 예컨대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면제, 영화발전기금의 주요 재원인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징수기한의 연장(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음
- 둘째, OTT 서비스의 법제화 및 자체등급분류제도의 도입임. 온라인비디오물의 개념 도입을 통해서 OTT 서비스를 영비법의 규율체계로 편입시킴과 동시에, 등급분류의 효율성을 위해서 자체등급분류 제도를 도입하였음

II. 영상법제의 연혁과 체계

1. 영상진흥기본법

- 영상문화(映像文化)의 창달과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을 향상시키고 영상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영상진흥 기본법은 21세기 뉴미디어 영상시대의 본격적인 도래와 국내외 경제적·문화적 여건의 급속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문화적·산업적 가치가 큰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을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진흥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해 법률 4882호로 1995. 1. 5. 제정되고, 1995. 7. 6. 시행되었음
- 영상진흥기본법은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 창작의 자유 보장 등, 제5조 정부의 시책, 제6조 법제상의 조치 등, 제7조 영상물 창작 및 제작의 진흥, 제8조 조사·연구·개발 및 보급, 제9조 영상물 제작기술의 개발, 제10조 영상물의 유통 및 배급 촉진, 제11조 영상 전문인력의 양성, 제12조 영상 관련 진흥재원의 운용, 제13조 영상 제작기반의 확충, 제14조 국제 교류 및 협력, 제15조 영상자료의 보존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영상진흥기본법은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 맞춰 개정에 대한 요구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있었으나, 2007. 12. 21 법 문장을 정비하기 위한 한 차례 정비 이후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 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은 문화산업이 국가의 주요 전략산업으로 부각됨에 따라 문화산업의 지원 및 진흥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문화산업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법률 5926호로 1999. 2. 8. 제정 및 1999. 5. 9. 시행되었음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은 총 7장으로 이뤄져 있으며 이 중 제4장과 제5장은 삭제되었음. 제1장은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4조 문화산업의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 연차 보고,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로 제2장인 창업·제작·유통은 제7조 창업의 지원, 제8조 투자회사에 대한 지원, 제9조 투자조합, 제10조 제작자의 제작지원, 제10조의2 완성보증계정의 설치 등, 제10조의3 독립제작사의 신고 등, 제10조의4 독립제작사의 준수사항, 제11조 독립제작사의 제작 지원, 제11조의2 독립제작사의 폐업 및 직권말소, 제11조의3 영입의 승계, 제12조 유통활성화, 제12조의2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 제14조 유통전문회사의 설립·지원, 제15조 우수문화상품의 지정·표시, 제15조의2 우수문화프로젝트의 지정 등, 제15조의3 우수문화프로젝트 등의 지정취소로

제3장은 문화산업 기반조성, 제16조 전문인력의 양성, 제16조의2 가치평가기관의 지정 등, 제16조의3 평가기관 및 평가 수수료 지원, 제16조의4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제17조 기술 및 문화콘텐츠 개발의 촉진, 제17조의2 기술료의 징수, 제17조의3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 제17조의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준용, 제17조의5 문화기술 연구 주관기관의 지정 등, 제19조 협동개발·연구의 촉진 등, 제20조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제21조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제22조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 해제, 제23조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집적화 등, 제24조 문화산업단지의 조성, 제25조 문화산업단지조성계획의 수립, 제26조 문화산업단지의 조성 지원, 제27조 각종 부담금 등의 면제, 제28조 인·허가 등의 의제, 제28조의2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등, 제28조의3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조성 지원, 제29조 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 등, 제30조 세제지원 등, 제30조의2 문화산업진흥시설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제30조의3 문화산업통계의 조사, 제30조의4 소비자 보호, 제31조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설립으로 구성됨. 제6장인 문화산업전문회사는 제43조 문화산업전문회사, 제44조 회사의 형태, 제45조 사원의 수, 제46조 사원총회, 제47조 겸업 등의 제한, 제48조 유사명칭 사용 금지, 제49조 업무, 제50조 회계처리, 제51조 업무의 위탁 등, 제52조 등록 등, 제53조 해산, 제54조 합병 등의 금지, 제55조 감독·검사 등, 제56조 등록취소, 제56조의2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에 관한 특례로 제7장 보칙은 제57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58조 권한의 위임·위탁, 제58조의2 영업정지 등, 제58조의3 행정제재처분 등의 효과승계, 제59조 과태료로 구성됨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은 시행 이후 타법개정으로 인한 개정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총 48차례 개정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며, 이중 영비법 정의 및 진흥 조항과 관련된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음

연번	법률번호	개정일	시행일	주요 내용
1	제7940호	2006.4.28.	2006.10.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산업 환경의 새로운 변화와 정책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문화산업 정책 범위를 확대하여 지적재산권 보호 및 문화산업 통계, 문화산업 소비자 보호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함 (제2조의1, 2, 5, 8, 15, 제12조, 제17조, 제30조의 3, 4 신설) • 문화산업분야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산업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함 (제43조 - 56조 신설)
2	제9424호	2009.2.6.	2009.5.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의 조항 일부를 개선함. 문화 콘텐츠, 에듀테인먼트, 문화산업안성보증 등 추가 및 일부 문장 수정함(제2조) • 문화상품 제작의 완성은 불확실성이 높아 제작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투자 또는 융자를 받는 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 문화상품 제작 완성에 대한 위험도를 낮추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상품 제작자가 문화상품을 유통하는 자에게 계약의 내용대로 완성하여 인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아 부담하게 된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완성보증계정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문화상품 투자위험도의 감소에 따라 투자환경 조성 및 문화상품 제작 회계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제10조의2 신설) • 문화산업 발전에 있어 창조성이 중요하나, 기업의 창작개발력을 촉진시킬 수 있는 제도가 부족한 실정임. 문화산업에 대한 창작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력 및 시설 등의 기준을 갖춘 기업의 연구기관

연번	법률번호	개정일	시행일	주요 내용
				<p>이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기업의 창작전담부서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제17조의3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수의 콘텐츠 진흥 관련기관을 하나로 통합하여 문화산업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음.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한국게임산업진흥원,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을 통합하여 한국콘텐츠진흥원을 신규 설립함 (제31조)
3	제9677호	2009.5.21.	2009.8.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한국문화산업진흥위원회를 폐지함 (제32조 - 38조 삭제)
4	제10369호	2010.6.10.	2010.12.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디지털콘텐츠를 포괄하는 콘텐츠의 개념과 융합콘텐츠 등 새롭게 등장한 분야를 포함하는 콘텐츠산업의 개념을 재정립함 (제2조의3, 5, 7)
5	제10724호	2011.5.25.	2011.8.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설립자본금 기준을 완화하여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설립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설립자본금 기준을 현행 “1억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함 (제52조제2항제4호)
6	제15815호	2018.10.16.	2018.11.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통전문회사의 설립·지원과 관련한 신고의 수리를 보다 간편하게 하기 위해 간주 제도를 도입 (제14조제3항, 4항 신설)
7	제16594호	2019.11.26.	2019.11.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콘텐츠진흥원의 해외사무소 및 주재원의 인력 수급과 예산 확보가 보다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사무소·지사 또는 주재원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제31조5항 신설)
8	제17584호	2020.12.8.	2021.6.9.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송영상독립제작사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건강한 방송영상독립제작사를 육성하고, 제작인력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공정한 방송영상 제작 환경을 조성하고자 관련 조항을 신설함 (제10조의3, 4, 제11조제1항 후단, 제12조의2제2항, 제58조의2, 제59조제2항 신설) 등에 대한 자료 제출 및 보고 요구의 요건을 구체화하고, 검사업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함 (제55조)
9	제17709호	2020.12.22.	2021.1.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수행하던 연구개발 사업을 한국콘텐츠진흥원 내에 설립하는 부설기관을 통해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세 기관의 전문기관 기능을 통합함 (제31조6항 신설)
10	제18153호	2021.5.18.	2021.5.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기업에 대한 대응도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 등에 의존적이며, 문화산업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 및 은행 프로그램의 후순위 대상으로 수혜가 어려운 상황에 있음. 이에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사업에 문화산업의 투자·융자 활성화 지원을 신설함 (제31조제7항, 8항)
11	제18858호	2022..5.3.	2022.1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를 통한 영상물의 유통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러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방송영상독립제작사가 제작한 방송영상물을 제공받는 사업자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 법에 따른 규제 및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역무로 정보통신망 이용자에게 대가를 받고 비디오품이나 실시간동영상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방송영상독립제작사가 제작한 방송영상물을 제공받는 사업자의 범위에 포함하여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함 (제2조의20)

3. 콘텐츠산업 진흥법

-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은 전기통신관련 각종 규제를 정비함으로써 전기통신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통신위원회의 심의 및 재정기능을 확대하여 전기통신사업의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법률 6603호로 2002. 1. 14. 제정되고, 2002. 7. 15. 시행되었음
- 콘텐츠산업 진흥법은 총 8개의 장으로 이뤄져 있으며 제1장은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기본이념, 제3조의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기본계획, 제6조 시행계획, 제7조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제8조 재원의 확보로 제2장 콘텐츠제작의 활성화는 제9조 콘텐츠제작의 활성화, 제10조 지식재산권의 보호, 제11조 공공정보의 이용 활성화, 제12조 융합콘텐츠의 활성화로 제3장 콘텐츠산업의 기반 조성은 제13조 창업의 활성화, 제14조 전문인력의 양성, 제15조 기술개발의 촉진, 제16조 표준화의 추진, 제17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제18조 세제 지원 등, 제19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제20조 협회의 설립으로 제3장의2 콘텐츠공제조합은 제20조의2 콘텐츠공제조합의 설립, 제20조의3 공제조합의 사업, 제20조의4 기본재산의 조성, 제20조의5 공제규정, 제20조의6 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등, 제20조의7 공제조합의 책임, 제20조의8 지분의 양도 등, 제20조의9 공제조합의 지분취득 등, 제20조의10 대리인의 선임, 제20조의11 배상책임 등, 제20조의12 이익금의 처리로 제4장 콘텐츠의 유통 합리화는 제21조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사업의 추진, 제22조 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 제23조 콘텐츠 식별체계, 제24조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등, 제25조 표준계약서로 제5장 이용자의 권익 보호는 제26조 이용자 보호시책 등, 제26조의2 장애인의 콘텐츠접근권 보장을 위한 특별지원, 제27조 청약철회 등, 제28조 이용자보호지침의 제정 등으로 제6장 분쟁조정은 제29조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제30조 분쟁의 조정, 제31조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제32조 자료 요청 등, 제33조 조정의 효력, 제34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제35조 조정 비용 등, 제36조 비밀 유지로 제7장 보칙은 제37조 금지행위 등, 제38조 손해배상 청구 등, 제39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로 제8장 벌칙은 제40조 벌칙, 제41조 벌칙, 제42조 양벌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음
- 콘텐츠산업 진흥법은 2002년 시행된 이후 타법개정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총 24번의 개정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며, 이중 영비법 정의 및 진흥 조항과 관련된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음

연번	법률번호	개정일	시행일	주요 내용
1	제7818호	2005.12.30.	2006.7.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콘텐츠처럼 복제가 가능한 재화의 경우 온라인디지털콘텐츠 제작자는 사전에 청약철회 등이 제한되는 사실을 명시하거나 사용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디지털콘텐츠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한편, 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콘텐츠의 건전한 거래질서의 확립 및 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사업자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는 지침을 관련 분야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정할 수 있도록 함 (제16조의2 청약철회 등, 제16조의3 이용자보호지침의 제정 등, 제16조의4 준용 신설)

연번	법률번호	개정일	시행일	주요 내용
2	제10369호	2010.6.10.	2010.12.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화된 콘텐츠산업 환경에 따라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의 명칭을 「콘텐츠산업 진흥법」으로 변경하는 한편, 디지털콘텐츠를 포괄하는 콘텐츠의 개념과 융합콘텐츠 등 새롭게 등장한 분야를 포함하는 콘텐츠산업의 개념을 재정립함 (제2조제1항제1호 '콘텐츠' 정의) • 각 행정기관 간 상호 협력을 통한 법정부적인 콘텐츠산업 진흥 정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하기 위하여 기존의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위원회를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로 확대·개편함. 콘텐츠 관련 각 부처의 장 및 민간 콘텐츠산업 전문가 등을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하여 콘텐츠 산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추진, 콘텐츠산업 진흥 정책의 총괄·조정, 콘텐츠산업 관련 중복규제의 조정 등에 관한 내용을 심의하도록 함 (제7조) • 정부는 다양한 분야와 형태의 콘텐츠가 창작·유통·이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콘텐츠제작자의 창의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콘텐츠제작자가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제9조) • 콘텐츠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조치를 실시하는 등 이용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가 필요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콘텐츠 이용자 권의 보호를 위하여 콘텐츠 정보 제공 및 교육 등의 사업 등을 추진하고, 이용자보호지침을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콘텐츠사업자는 사용하는 약관이 이용자보호지침보다 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 그 내용을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거나 고지하도록 함 (제26조 - 제28조)
3	제11318호	2012.2.17.	2012.8.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콘텐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안정적인 자원마련의 기반을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콘텐츠공제조합을 설립하고, 콘텐츠 상품 유통과정의 공정한 질서 확립을 위하여 부가통신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며, 표준계약서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표준계약서의 사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제20조의2 - 제20조의12 신설)
4	제15380호	2018.2.21.	2018.8.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년 7월 우리정부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이하 '사드'로 약칭)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은 이에 대한 보복적 조치로 자국에서 우리나라 콘텐츠 또는 한국연예인이 출연하는 광고·방송의 송출을 금지하는 등의 '한한령'(限韓令)을 실시하고 중국정부는 2009년 국무원이 「문화산업 진흥계획」을 발표, 자국 문화산업의 진흥과 육성을 국가 발전전략으로 설정하고 있어 한류콘텐츠 확산을 지속적으로 억제할 가능성이 높고, 한류콘텐츠의 중국편중에 따른 리스크는 지속될 전망이다. 이와 같은 피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외교부를 비롯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조를 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함 (제10조 신설)
5	제18782호	2022.1.18.	2022.4.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각 지역특색에 맞는 콘텐츠산업을 적극 개발·육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데, 현행법은 주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과 역할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콘텐츠산업 진흥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추진 상황에 비해 법적 기반이 구축되지 못한 상황임. 이에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규정을 신설하여, 지역차원에서의 문화분권을 확보하고

연번	법률번호	개정일	시행일	주요 내용
				지역 콘텐츠산업 진흥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제3조의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신설) • 문화적 권리를 누리는 것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장애인 역시 문화 콘텐츠에 대한 향유와 참여 욕구가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콘텐츠 접근에 어려움이 많아 사회적으로 동등한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기본계획에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권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도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도모함 (제5조제3항의6의2 장애인 콘텐츠 접근권 관련 사항 신설, 제26조의2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권 보장을 위한 특별지원 신설)

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음악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음악산업진흥법’)은 음악산업 진흥을 위한 기반조성, 기술개발, 인력양성, 표준화, 유통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신규매체의 발달로 기존 음반중심의 산업에서 인터넷·모바일 등을 통한 음악파일 중심의 음악서비스산업으로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음악산업 환경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기존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을 분법하여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하고자 법률 7942호로 2006. 4. 28. 제정되고 2006. 10. 29. 시행되었음.
- 음악산업진흥법은 총 다섯 장으로 구성되며 제1장은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음악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으로 제2장 음악산업의 진흥의 경우 제4조 창업 및 제작 등의 지원, 제5조 음악산업자료의 관리 등, 제6조 전문인력의 양성, 제7조 기술개발의 추진, 제8조 협동개발 및 연구, 제9조 표준화 추진, 제10조 유통활성화, 제11조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제12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제13조 음악공연의 활성화, 제14조 지식재산권의 보호, 제15조 이용자의 권익보호 등으로 제3장 영입의 신고·등록 및 음반등의 유통 등은 총 세 절로 이뤄졌는데 제1절 영입의 신고·등록·운영 등은 제16조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 제17조 음악영상물 등의 등급분류 등, 제18조 노래연습장업의 등록, 제19조 영입의 제한, 제20조 신고증·등록증의 교부, 제21조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 제22조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제23조 영입의 승계 등, 제24조 폐업 및 직권말소로 제2절 음반등의 유통 및 표시는 제25조 표시의무, 제26조 음반등의 유통질서 확립 및 지원으로 제3절 등록취소 등 행정조치는 제27조 등록취소 등, 제28조 과징금 부과, 제29조 영업소폐쇄 및 음반등의 수거·폐기, 제30조 청문으로 제4장 보칙은 제31조 수수료, 제32조 권한의 위임·위탁, 제33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로 마지막 제5장은 벌칙으로 구성됨
- 음악산업진흥법은 지금까지 타법개정을 포함하여 총 18번의 개정이 이뤄졌으며 이중 영비법 정의 및 진흥 조항과 관련된 주요 개정사항은 아래와 같음

연번	법률번호	개정일	시행일	주요 내용
1	제15379호	2018.2.21.	2018.8.22.	• 음반등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제14조제4항 신설)
2	제17717호	2020.12.22	2021.3.23.	• 정부가 음악공연의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과의 공동제작, 해외마케팅·홍보활동 지원, 외국인의 투자유치, 국제음반전시회 등 수출 관련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함 (제12조제2항)

5. 방송법제

-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법은 민영방송을 보호·육성함과 아울러 그 방송으로 하여금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률 1535호로 1963. 12. 16 제정되어 1964. 1. 1.에 시행되었음
- 방송법제는 총 아홉 장으로 이뤄져 있음 제1장의 경우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시청자의 권익보호, 제4조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제5조 방송의 공적 책임, 제6조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제7조 적용범위로 제2장 방송사업자등은 제8조 소유제한 등, 제9조 허가·승인·등록 등, 제9조의2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요건, 제9조의3 기술결합서비스의 신고 등, 제9조의4 기술중립 서비스 제공을 위한 특례, 제10조 심사기준·절차, 제11조 방송분야등의 고시, 제12조 지역사업권, 제13조 결격사유, 제14조 외국자본의 출자 및 출연, 제15조 변경허가등, 제15조의2 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승인 등, 제16조 허가 및 승인 유효기간, 제17조 재허가 등, 제18조 허가·승인·등록의 취소 등, 제19조 과징금 처분으로 제3장 소속위원회 등은 제31조 방송평가위원회, 제32조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심의, 제33조 심의규정, 제35조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제35조의3 방송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35조의4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제35조의5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제42조의2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설치로 제4장 한국방송공사는 제43조 설치등, 제44조 공사의 공적 책임, 제45조 정관의 기재사항, 제46조 이사회설치 및 운영 등, 제47조 이사의 임기, 제48조 이사의 결격사유, 제49조 이사회의 기능, 제50조 집행기관, 제51조 집행기관의 직무등, 제52조 직원의 임면, 제53조 이사·집행기관과 직원의 직무상 의무, 제54조 업무, 제55조 회계처리, 제55조의2 이사·집행기관의 보수 등의 공개, 제56조 재원, 제57조 예산의 편성, 제58조 운영계획의 수립, 제59조 결산서의 제출, 제60조 부동산의 취득 등의 보고, 제61조 보조금등, 제62조 물품구매 및 공사계약의 위탁, 제63조 감사, 제64조 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 제65조 수신료의 결정, 제66조 수신료등의 징수, 제67조 수상기 등록 및 징수의 위탁, 제68조 수신료의 사용으로 제5장 방송사업의 운영 등은 제69조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등, 제69조의2 시청점유율 제한, 제70조 채널의 구성과 운용, 제70조의2 디지털 방송프로그램의 음량기준 등, 제71조 국내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제72조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제73조 방송광고등, 제73조의2 방송광고 매출현황

자료 제출, 제74조 협찬고지, 제76조 방송프로그램의 공급 및 보편적 시청권 등, 제76조의2 보편적 시청권보장위원회, 제76조의3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조치 등, 제76조의4 중계방송권의 공동계약 권고, 제76조의5 중계방송의 순차편성 권고 등, 제77조 유료방송의 이용약관 신고 등, 제78조 재송신, 제78조의2 외국방송사업자의 국내 재송신 승인 등, 제79조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등, 제80조 전송·선로설비 설치의 확인, 제83조 방송내용의 기록·보존, 제84조 폐업 및 휴업의 신고 등, 제85조 방송프로그램별 유료방송등의 적용배제, 제85조의2 금지행위로 제6장 시청자의 권익보호는 제86조 자체심의, 제87조 시청자위원회, 제88조 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 제89조 시청자 평가 프로그램, 제90조 방송사업자의 의무, 제90조의2 시청자미디어재단, 제90조의3 유료방송 서비스의 품질 평가로 구성됨. 두 절로 이뤄진 제6장의2 방송분쟁의 해결의 경우 제1절 조정(調停)은 제91조 조정의 개시, 제91조의2 합의 권고, 제91조의3 조정의 거부 및 중지, 제91조의4 조정절차, 제91조의5 조정의 효력 등, 제91조의6 조정의 종결로 제2절 그 밖의 조치는 제91조의7 방송의 유지·재개 명령으로 제7장 방송발전의 지원은 제92조 방송발전의 지원, 제92조의2 애니메이션 제작 세제지원, 제92조의3 중소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원, 제93조 방송프로그램의 보관 및 활용, 제94조 방송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95조 방송제작단지 조성·지원, 제96조 방송프로그램 유통등 지원, 제97조 방송의 국제협력으로 제8장 보칙은 제98조 자료제출, 제98조의2 재산상황의 공표, 제99조 시정명령등, 제100조 제재조치등, 제101조 청문, 제102조 수수료, 제103조 권한의 위임·위탁, 제103조의2 규제의 재검토, 제10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로 제9장 벌칙은 제105조 벌칙, 제106조 벌칙, 제107조 양벌규정, 제108조 과태료, 제109조 과징금 부과 및 징수로 구성됨

- 방송법은 시행 이후 타법개정 포함 지금까지 총 77번의 개정을 거쳤으며 이중 영비법의 정의 및 진흥 조항과 연관된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음

연번	법률번호	개정일	시행일	주요 내용
1	제8060호	2006.10.27.	2006.10.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발전기금의 용도에 해외한국어방송에 대한 지원을 추가하고, 방송발전기금의 일부를 방송위원회의 위원장이 방송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방송의 공공성·공익성 제고와 방송진흥 및 시청자복지를 위한 투·융자재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제38조제1항제11호의2, 제38조제2항 신설) • 방송사업자는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방송광고시간 및 전후 토막광고시간에 반드시 광고임을 밝히는 자막을 표기하여 어린이가 방송프로그램과 방송광고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함 (제73조제1항) • 방송심의규정의 위반으로 제재조치를 받은 방송사업자는 해당방송출연자에 대하여 경고·출연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음란·퇴폐 및 폭력 등에 관한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하는 등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방송프로그램의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제100조제2항, 제3항 신설)
2	제9786호	2009.7.31.	2009.1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통신위원회는 여론 다양성 보장을 위해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조사 및 산정과 매체 간 합산 영향력지수 개발 등을 수행하는 미디어

연번	법률번호	개정일	시행일	주요 내용
				<p>다양성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매체합산 영향력지수의 개발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하도록 함(법 제35조의4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사업자는 허위·과장 등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는 방송광고를 방송하지 않도록 하며, 방송광고가 방송되기 전에 자체적으로 심의하거나 방송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함(법 제8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3	제10856호	2011.7.14.	2011.1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청자의 불만처리와 함께 의견수렴과 청원사항을 심의하는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의 명칭을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로 변경하고, 심의대상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추가함 (제35조제1항) •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장애인방송을 하도록 하며, 장애인방송을 하여야 하는 방송사업자의 범위 등 이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제69조제8항, 제9항) • 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 또는 시청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특정 유형의 행위를 금지함(제85조의2제1항 신설).
4	제11199호	2012.1.17.	2012.7.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자의 방송참여와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미디어에 관한 교육·체험 및 홍보, 시청자 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지원, 각종 방송제작 설비의 이용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시청자미디어센터를 두도록 함(제90조의2 신설)
5	제12677호	2014.5.28.	2014.8.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심의 규정에 인종, 민족, 지역, 종교 등을 이유로 모욕적이거나 지나치게 차별하는 내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추가함(제33조제2항제8호 신설) • 장애인방송용 방송수신기 보급에 필요한 경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제69조제8항) • 유료방송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이용약관을 변경할 경우 이용자에게 약관 변경에 관한 통지를 하도록 함 (제77조제2항) • 현재 법인격이 없는 시청자미디어센터를 법정 법인으로 전환하여 시청자 지원 전문기관으로서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함 (제90조의2)
	제13580호	2015.12.22	2016.6.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방송통신기술의 발전으로 방송사업 간 다양한 기술결합을 통한 새로운 방송서비스가 도입됨에 따라 기술결합서비스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상파방송사업·종합유선방송사업 및 위성방송사업 상호간 또는 이들 방송사업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간의 전송방식을 혼합사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기술결합서비스로 정의함(제2조제26호 신설). • 방송사업자 등이 기술결합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심사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제90조의3 신설) •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시청자미디어재단으로 변경하고,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시청자미디어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함(제90조의2) • 방송사업자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등 상호 간에 발생한 분쟁 등으로 인하여 국민관심행사에 관한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이나 일부 지상파방송 채널의 공급 또는 송출이 중단된 경우 등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일정한 기간 동안 해당 사업자에게 방송의 유지·재개를 명할 수 있도록 함(제91조의7 신설)

연번	법률번호	개정일	시행일	주요 내용
	제14598호	2017.3.14	2017.9.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도 시청자위원회를 설치하고, 시청자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그 처리에 관한 사항을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부터 보고받은 사항을 미래창조과학부에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홈쇼핑 시청·구매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제87조제1항, 제90조제1항)
	제18648호	2021.12.28	2022.6.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디어 산업환경 변화에 따라 방송시장도 전환적 변화가 요구되는 상황이지만, 대기업 중심의 방송시장 재편은 독과점 폐해를 초래할 우려가 높으므로, 지역방송의 가치와 역할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중소 SO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부가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중소 SO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함 (제92조의3 신설)

6.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어 가는 환경에서 인터넷 멀티미디어 등을 이용한 방송사업의 운영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보호, 관련 기술과 산업의 발전, 방송의 공익성 보호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가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이하 'IPTV법')은 세계적으로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추세이고, 우리나라에서도 방송과 통신의 융합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을 이미 확보하고 있음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에 관한 근거 법률을 마련함으로써 방송통신융합서비스의 도입기반을 마련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관련 기술 및 서비스 개발에 있어서 세계적인 선도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률 8849호로, 2008. 1. 17. 제정되고 2008. 4. 18. 시행되었음
- 총 여섯 개의 장으로 구성된 IPTV법은 제1장이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로 제2장 사업의 허가는 제4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허가 등, 제5조 허가의 유효기간, 제5조의2 재허가, 제6조 사업권역, 제7조 결격사유, 제8조 겸영금지 등, 제9조 외국인의 주식소유 제한 등, 제10조 초과소유 주주 등에 관한 제한 등, 제11조 변경허가로 제3장 공정경쟁의 보장 및 촉진은 제12조 공정경쟁의 촉진, 제13조 시장점유율 제한 등, 제14조 전기통신설비의 동등제공, 제14조의2 기술기준의 고시, 제15조 이용약관의 신고 등, 제16조 이용자 보호, 제16조의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의 품질 평가, 제17조 금지행위로 제4장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는 제18조 콘텐츠의 공급 등, 제18조의2 등록요건, 제19조 콘텐츠사업 발전시책 등, 제20조 콘텐츠 동등접근, 제21조 방송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용으로 제5장 보칙의 경우 제22조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제24조 허가취소 및 사업정지, 제24조의2 청문, 제25조 과징금, 제26조 시정명령 등, 제26조의2 권한의 위임, 제26조의3 규제의 재검토로 제6장 벌칙이 제27조 벌칙과 제28조 과태료로 구성되었음

- IPTV법은 2008. 4. 18. 시행된 이후 타법개정 포함 지금까지 총 21번 개정되었으며 영비법의 정의 및 신흥 조항과 관련된 개정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7. 전기통신사업법

- 전기통신사업의 적절한 운영과 전기통신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법의 개편에 따라 현행 전기통신법중 공중전기통신사업의 경영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흡수규정하고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여 공중전기통신사업의 원활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법률 3686호로 1983. 12. 30. 제정되어 1984. 9. 1.에 시행되었음
- 전기통신사업법은 총 7개의 장으로 이뤄져 있으며, 제1장 총칙은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2조의2 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제3조 역무의 제공 의무 등, 제4조 보편적 역무의 제공 등, 제4조의2 장애인 통신 중계서비스로 제2장 전기통신사업에서 제1절 총칙은, 제5조 전기통신사업의 구분 등, 제2절 기간통신사업, 제6조 기간통신사업의 등록 등, 제7조 등록의 결격사유, 제8조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의 주식소유 제한, 제9조 임원의 결격사유, 제10조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 취득 등에 관한 공익성심사,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2조 초과소유 주주에 대한 제한 등, 제13조 이행강제금, 제14조 주식의 발행, 제15조 사업의 시작 의무, 제16조 등록 사항의 변경, 제17조 사업의 겸업, 제18조 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제19조 사업의 휴업·폐업, 제20조 등록의 취소 등으로 제3절 부가통신사업은 제22조 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등, 제22조의2 등록 결격사유, 제22조의3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등, 제22조의4 요금신고가 필요한 부가통신서비스, 제22조의5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제22조의6 유통방지 조치 등 미이행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제22조의7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 제22조의8 국내대리인의 지정, 제22조의9 앱 마켓사업자의 의무 및 실태조사, 제23조 등록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 제24조 사업의 양도·양수 등, 제25조 사업의 승계, 제26조 사업의 휴업·폐업 등, 제27조 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업명령 등으로 이뤄짐. 제3장 전기통신업무는 제28조 이용약관의 신고 등, 제29조 요금의 감면, 제30조 타인 사용의 제한, 제31조 전송·선로설비 등의 사용, 제32조 이용자 보호, 제32조의2 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 제32조의3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제한, 제32조의4 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 방지 등, 제32조의5 부정가입방지시스템 구축, 제32조의6 명의도용방지 서비스의 제공 등, 제32조의7 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차단, 제32조의8 착신전환서비스, 제32조의9 경제상의 이익 제공, 제33조 손해배상으로 제4장 전기통신사업의 경쟁 촉진 등은 제34조 경쟁의 촉진, 제34조의2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제35조 설비등의 제공, 제35조의2 공중케이블 정비의무, 제36조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 제37조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 제38조 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 제39조 상호접속, 제40조 상호접속의 대가, 제41조 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 등, 제42조 정보의 제공, 제43조 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제44조 상호접속 등 협정의 신고 등, 제45조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정, 제45조의2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45조의3 위원의 신분보장, 제45조의4 위원의 제척·

기피·회피, 제45조의5 분쟁조정 절차, 제45조의6 분쟁조정의 거부 및 중지, 제45조의7 분쟁조정 효력 등, 제45조의8 조정의 종결, 제46조 분쟁의 알선, 제47조 출석 요구 및 의견 청취 등, 제48조 전기통신번호자원 관리계획, 제48조의2 전기통신번호 매매 금지, 제49조 회계 정리, 제50조 금지행위, 제51조 사실조사 등, 제51조의2 사실조사 자료제출명령 위반에 대한 재제출명령 및 이행강제금, 제52조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제52조의2 금지행위 관련 조치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53조 금지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제5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5조 손해배상, 제56조 전기통신역무의 품질 개선 등, 제56조의2 전기통신역무의 정보 제공, 제57조 사전선택제, 제58조 전기통신번호이동성, 제59조 주식의 상호소유의 제한 등, 제60조 번호안내서비스의 제공, 제60조의2 분실 등으로 신고된 통신단말장치의 사용 차단, 제60조의3 고유식별번호 훼손 등의 금지로 이뤄짐. 제5장인 전기통신설비에서 제1절 사업용 전기통신설비는 제61조 전기통신설비의 유지·보수, 제62조 전기통신설비 설치의 신고 및 승인, 제63조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으로 제2절 자가전기통신설비는 제64조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 제65조 목적 외 사용의 제한, 제66조 비상 시의 통신의 확보, 제67조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으로 제3절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 등은 제68조 공동구 또는 관로 등의 설치 등, 제69조 구내용 전기통신선로설비 등의 설치, 제69조의2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로 제4절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및 보전의 경우 제72조 토지등의 사용, 제73조 토지등의 일시 사용, 제74조 토지등에의 출입, 제75조 장애물등의 제거 요구, 제76조 원상회복의 의무, 제77조 손실보상, 제78조 토지등의 손실보상의 절차, 제79조 전기통신설비의 보호, 제80조 설비의 이전 등, 제81조 다른 기관의 협조 등, 제82조 검사·보고 등으로 이뤄졌으며 제6장 보칙은 제83조 통신비밀의 보호, 제84조 송신인의 전화번호의 고지 등, 제84조의2 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 제85조 업무의 제한 및 정지, 제86조 국제전기통신업무에 관한 승인, 제87조 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 제87조의2 경고문구의 표기 등, 제88조 통계의 보고 등, 제89조 청문, 제90조 과징금의 부과 등, 제91조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제92조 시정명령 등, 제93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93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로 마지막 제7장 벌칙은 제94~제101조 벌칙 조항과 제102조 미수범, 제103조 양벌규정, 제104조 과태료로 구성됨

- 전기통신사업법은 1984. 9. 1. 시행된 이후 타법개정 포함 총 68차례 개정이 이뤄졌으며 영비법과 관련된 개정은 아래와 같음

연번	법률번호	개정일	시행일	주요 내용
4	제7916호	2006.3.24.	2006.3.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기간통신역무의 이용에 필요한 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 지원 금지규정의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되, 그 구입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예외를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의 지원일을 기준으로 같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기간통신역무의 이용기간이 연속하여 18개월 이상인 이용자 등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통신단말장치의 구입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이용자의 이익을 증진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려는 것임(법 제36조의4제1항 단서 신설).

연번	법률번호	개정일	시행일	주요 내용
5	제10656호	2011.5.19.	2011.11.20.	•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부가통신역무 또는 타인 상호 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정보를 저장·전송하거나 전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부가통신역무를 이 법의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이를 경영하려는 자는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진입규제를 강화하고,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며, 등록 취소를 받은 사업자의 재등록을 제한하려는 것임(제2조제13호, 제22조제2항, 제22조의2, 제95조제3호의2 신설).
6	제11201호	2012.1.17	2012.7.18	•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자가 처음 약정한 요금한도를 초과한 경우나 국제전화요금 부과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하여 이용자의 통신 과소비를 예방하고 요금 발생의 원인을 파악하게 하여 통신요금 과다청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제32조의2 신설).
7	제18869호	2022.6.10	2022.12.11	• 국내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별도로 정의하여 해당 서비스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함(제2조제12호의2 신설).

8. 정보통신망법

-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통신망법은 전기통신과 전자계산조직의 균형적인 발전 및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정보화사회의 기반조성과 고도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경쟁력우위확보는 물론 다가온 정보화사회의 물결을 능동적으로 수용함으로써 국가선진화의 목표를 달성하고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법률 3848호로 1986. 5. 12. 제정되어 1987. 1. 1. 시행되었음.
- 정보통신망법은 총 10개의 장으로 이뤄져 있었으나 제3장이 2015. 6. 22. 삭제되어 현재 총 9장으로 구성되어 있음. 제1장 총칙은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의 책무, 제4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시책의 마련,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의2 국외행위에 대한 적용으로 제2장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은 제6조 기술개발의 추진 등, 제7조 기술관련 정보의 관리 및 보급, 제8조 정보통신망의 표준화 및 인증, 제9조 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10조 정보내용물의 개발 지원, 제11조 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의 개발 촉진 등, 제12조 정보의 공동활용체제 구축, 제13조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 제14조 인터넷 이용의 확산, 제15조 인터넷 서비스의 품질 개선으로 제4장 정보통신서비스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은 제22조의2 접근권한에 대한 동의, 제23조의2 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 제23조의3 본인확인기관의 지정 등, 제23조의4 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제32조의5 국내대리인의 지정으로 제5장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 보호 등은 제41조 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책의 마련 등, 제42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제42조의2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금지, 제42조의3 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지정 등, 제43조 영상 또는 음향정보 제공사업자의

보관의무, 제44조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제44조의2 정보의 삭제요청 등, 제44조의3 임의의 임시조치, 제44조의4 자율규제, 제44조의5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 제44조의6 이용자 정보의 제공 청구, 제44조의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제44조의8 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에서의 아동 보호, 제44조의9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제44조의10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로 제6장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은 제45조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제45조의2 정보보호 사전점검, 제45조의3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등, 제46조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보호, 제46조의2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의 긴급대응, 제47조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제47조의2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47조의4 이용자의 정보보호, 제47조의5 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 제47조의6 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자에 대한 포상, 제48조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제48조의2 침해사고의 대응 등, 제48조의3 침해사고의 신고 등, 제48조의4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등, 제48조의5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관련 침해사고의 대응 등, 제48조의6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에 관한 인증, 제49조 비밀 등의 보호, 제49조의2 속이는 행위에 의한 정보의 수집금지 등, 제49조의3 속이는 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전기통신업무 제공의 중지 등, 제50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50조의3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의 위탁 등, 제50조의4 정보 전송 의무 제공 등의 제한, 제50조의5 영리 목적의 광고성 프로그램 등의 설치, 제50조의6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차단 소프트웨어의 보급 등, 제50조의7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 제50조의8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 제51조 중요 정보의 국외유출 제한 등, 제52조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이월됨. 제7장 통신과금서비스의 경우 제53조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 등, 제54조 등록의 결격사유, 제55조 등록의 취소명령, 제56조 약관의 신고 등, 제57조 통신과금서비스의 안전성 확보 등, 제58조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권리 등, 제58조의2 구매자정보 제공 요청 등, 제59조 분쟁 조정 및 해결 등, 제60조 손해배상 등, 제61조 통신과금서비스의 이용제한으로 제8장 국제협력은 제62조 국제협력으로 제9장 보칙은 제64조 자료의 제출 등, 제64조의2 자료 등의 보호 및 폐기, 제64조의3, 제64조의4 청문, 제64조의5 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 등, 제65조 권한의 위임·위탁, 제65조의2, 제66조 비밀유지 등, 제69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69조의2로 구성되었고 제10장 벌칙은 제70조~ 제74조 벌칙과 제75조 양벌규정, 제75조의2 몰수·추징, 제76조 과태료로 구성됨

- 정보통신망법은 1987. 1. 1. 시행된 이후 타법개정 포함 약 70번의 개정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되며 진흥 및 이용자 보호 관련 개정사항은 아래와 같음

연번	법률번호	개정일	시행일	주요 내용
5	제7919호	2006.3.24.	2006.6.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유해매체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등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삭제하게 하고, 안전진단 수행기관을 15인 이상의 정보보호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최근 3년 이내에 정보보호컨설팅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법인으로 확대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 안전진단 수행기관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연번	법률번호	개정일	시행일	주요 내용
6	제8289호	2007.1.26.	2007.7.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리의 침해를 받은 자가 유통되는 정보의 삭제요청을 한 경우로서 그 침해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임시조치제도를 도입하고, 이해당사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임의로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법 제44조의2 및 제44조의3 신설) •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 상임위원 5인을 포함하여 11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불법정보에 관한 심의 등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인 이상의 상임위원이 포함된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며, 명예훼손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명예훼손분쟁조정부를 둠. (법 제44조의8 내지 제44조의10 신설)
7	제9637호	2009.4.22	2009.7.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통신망 이용 및 보호와 방송통신 관련 국제협력 등에 관한 업무를 체계적·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을 통합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설립하는 한편, 유사 공공기관의 통합을 통해 공통 업무 부문을 축소하고 사업분야의 지원을 증가시켜 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8	제13520호	2015.12.1.	2016.6.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미사용 이용자의 개인정보 파기 의무 발생기간을 1년으로 명시하되, 다른 법령이나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함(제29조).
9	제14080호	2016.3.22.	2016.9.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폰 응용프로그램 개발자나 개발회사가 이용자 스마트폰에 대한 접근권한이 필요한 경우, 프로그램 본래 기능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권한과 그렇지 않은 선택적 권한을 구분해 각각 세부 항목과 이유를 이용자가 명확히 인지하도록 알리고 이용자로부터 동의를 받도록 함(제22조의2제1항 신설). • 스마트폰 응용프로그램 개발자나 개발회사가 프로그램 본래 기능 수행에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선택적 접근권한에 이용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용자가 프로그램 자체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금지함(제22조의2제2항 신설).
10	제16021호	2018.12.24	2019.6.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인지능력 등이 부족할 수 있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동의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동의를 받지 않는 사례가 다수 있어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를 보다 강화하고 법정대리인 동의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시책에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를 추가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사항을 알리거나 고지 등을 하는 때에는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

연번	법률번호	개정일	시행일	주요 내용
				논지를 확인하도록 함 (제4조제2항제6호의2, 제22조제3항 신설; 제31조제1항). •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의 자율적인 개인 정보보호 활동을 촉진·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제29조의2 신설).

9. 조세특례제한법

- 조세(租稅)의 감면 또는 중과(重課)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課稅)의 공평을 도모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은 조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제함으로써 과세의 공평과 세수의 확보를 기하고자 법률 1723호로 1965. 12. 20 제정되어 1966. 1. 1. 시행되었음.
- 조세특례제한법은 총 0장으로 이뤄졌으며 여기서는 각 장의 절까지만 소개하고자 함. 제1장 총칙, 제2장 직접국세는 제1절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제2절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제3절 국제자본거래에 대한 조세특례, 제4절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제4절의2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5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6절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7절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제8절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9절 저축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10절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10절의2 근로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제10절의3 동업 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제10절의4 자녀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제10절의5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제11절 그 밖의 직접국세 특례로 구성되어 있음. 다음으로 제3장 제3장 간접국세, 제5장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 제5장의2 제주국제자유도시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 제5장의3 기업도시 개발과 지역개발사업구역 등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5장의4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5장의5 금융중심지의 조성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제5장의6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 클러스터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5장의7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구조개편을 위한 조세특례, 제5장의8 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조세특례, 제5장의9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구조개편을 위한 조세특례, 제5장의10 사업재편계획을 위한 조세특례이고, 제6장 그 밖의 조세특례에는 제1절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와 제2절 조세특례제한 등으로 구성됨. 마지막은 제7장 보칙임
- 조세특례제한법은 지금까지 타법개정 포함 총 336번의 제·개정이 있었으며, 이중 영비법과 관련된 주요 개정사항은 아래와 같음

연번	법률번호	개정일	시행일	주요 내용
1	제12853호	2014.12.23.	2015.1.1.	• 중소기업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감면되는 대상 업종에 영화관 운영업, 주택임대관리업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가함. (제7조제1항)

연번	법률번호	개정일	시행일	주요 내용
2	제14390호	2016.12.20.	2017.1.1.	• 영상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9년 12월 31일까지 방송프로그램 등의 제작비용의 3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 등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
3	제19199호	2022.12.31	2023.1.1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적용 대상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제공된 비디오물을 추가함. (제25조의6)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100분의 30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대상에 영화관람료를 포함함. (제126조의2)

10. 게임산업진흥법

- 게임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게임물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게임산업의 진흥 및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게임산업진흥법은, 게임산업이 차세대 핵심문화산업으로서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므로 변화하고 있는 게임산업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한 다양하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게임물이 음반, 비디오물과 함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 게임물만의 고유한 특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게임이용문화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게임물에 관한 법체계를 대폭적으로 개편하여 게임이용자의 권익향상과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하고자 법 7941호로 2006. 4. 28. 제정되어 2006. 10. 29. 시행되었음
- 게임산업진흥법은 크게 진흥, 등급분류, 영업 질서로 나뉘지며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음. 제1장 총칙은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게임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시행으로 제2장 게임산업의 진흥은 제4조 창업 등의 활성화, 제5조 전문인력의 양성, 제6조 기술개발의 추진, 제7조 협동개발 및 연구, 제8조 표준화 추진, 제9조 유통질서의 확립, 제10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제11조 실태조사로 제3장 게임문화의 진흥은 제12조 게임문화의 기반조성, 제12조의2 게임과몰입의 예방 등, 제12조의3 게임과몰입·중독 예방조치 등, 제12조의4 게임물 이용 교육 지원 등, 제13조 지식재산권의 보호, 제14조 이용자의 권익 보호로 제4장 등급분류는 제16조 게임물관리위원회, 제16조의2 위원회의 법인격 등, 제17조 감사, 제17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제17조의3 회의록, 제18조 사무국, 제19조 위원회규정의 제정과 개정 등, 제20조 지원, 제21조 등급분류, 제21조의2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제21조의3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21조의4 자체등급분류의 효력, 제21조의5 해외 게임물의 이용제공, 제21조의6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재지정, 제21조의7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취소 등, 제21조의8 직권등급재분류 등, 제21조의9 등급조정조치 등, 제21조의10 등급분류 절차의 간소화, 제21조의11 시스템등급분류신청자의 준수사항, 제22조 등급분류 거부 및 통지 등, 제23조 등급의 재분류 등, 제24조 등급분류의 통지 등, 제24조의2 등급분류 업무의 위탁 등, 제24조의3 등급분류기관의 준수사항, 제24조의4 등급분류기관의 지정취소로 제5장 영업질서 확립은 제1절 영업의 신고·등록·운영이 제25조

게임제작업 등의 등록, 제26조 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 제27조 영업의 제한, 제28조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제29조 영업의 승계, 제30조 폐업 및 직권말소, 제31조 사후관리로 구성되고 제2절 게임물의 유통 및 표시가 제32조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제33조 표시의무, 제34조 광고·선전의 제한, 제3절 등록취소 등 행정조치, 제35조 허가취소 등, 제36조 과징금 부과, 제37조 행정제재처분의 효과승계, 제38조 폐쇄 및 수거 등으로 제6장 보칙은 제39조 협회등의 설립, 제39조의2 포상금, 제40조 청문, 제41조 수수료, 제42조 권한의 위임·위탁, 제43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로 마지막 제7장 벌칙은 제44조 벌칙, 제45조 벌칙, 제46조 벌칙, 제47조 양벌규정, 제48조 과태료로 구성되어 있음

- 게임산업진흥법은 지금까지 타법개정 포함 총 34번의 개정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되며, 그중 영비법과 관련된 개정의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음

연번	법률번호	개정일	시행일	주요 내용
1	제10554호	2011.4.5.	2011.7.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작주체·유통과정 특성 등으로 인하여 등급위원회를 통한 사전 등급 분류가 적절하지 않은 게임물 중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외한 게임물에 대해서는 게임물을 유통하는 자 등이 등급위원회와 협의한 별도의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제1항제4호 및 제9항 신설)
2	제10879호	2011.7.21.	2012.1.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온라인게임을 비롯한 게임물 이용자 수가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청소년의 게임과몰입과 중독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 따라 게임과몰입과 중독예방을 위한 게임물관련 사업자와 정부의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게임물의 올바른 이용에 관한 교육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하고자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청소년이 회원으로 가입할 때 친권자의 동의 확보, 청소년 게임이용시간 제한 등 과도한 게임이용 방지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예방조치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고하도록 하여 그 내용을 평가한 결과, 예방조치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3 신설). • 정부는 게임물의 올바른 이용에 관한 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올바른 게임물 이용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4 신설).
3	제11139호	2011.12.31.	2012.7.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게임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비영리 목적의 아마추어게임물 제작자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게임산업에 대한 민간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게임물 등급분류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청소년게임제공업 등에 제공되는 게임물을 제외한 게임물의 등급분류 업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등급분류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등급분류기관이 준수해야하는 사항, 등급분류기관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지속적인 공적업무 수행을 위하여 2011년 12월 31일까지인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대한 국고 지원 시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연번	법률번호	개정일	시행일	주요 내용
5	제14199호	2016.5.29.	2017.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화하는 환경에 맞추어 기존의 플랫폼 중심의 등급분류 체계를 통합하여 내용물 중심의 등급분류 체계로 변경하는 한편 그 방식은 민간사업자들의 자율심의를 확대하여 민간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며,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올바른 등급분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간 자율심의 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하여 건전한 게임 환경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다만, 청소년 보호를 위해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및 사행성의 우려가 큰 아케이드 게임물은 민간 자율심의 대상에서 제외함. 이와 더불어, 등급분류 받지 않은 해외 게임물의 국내 유통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온바, 민간 사업자가 자율심의를 통해 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함.
6	제14424호	2016.12.20	2017.6.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많은 해외, 특히 중국·인도 게임사들이 국산게임을 무분별하게 모방하고 복제하는 등, 우리나라 콘텐츠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함으로써 국내 게임사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피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게임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운영합리화 등에 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제13조제4항 신설).
7	제15637호	2018.6.12.	2018.12.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게임물”의 정의에 게임물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는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를 포함하고,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를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를 게임제공업에서 제외하여 게임제공업에 설치 가능한 혼합기기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제17578호	2020.12.8.	2021.1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게임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게임물 이용자 권익 보호 정책에 대한 게임물 사업자의 협조 의무를 규정하고, 게임 개발자의 창작 의무를 고취하기 위하여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한 게임물을 제외한 비영리목적의 게임물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게임물 등급분류 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게임물 등급분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Ⅲ. 영상산업법제 분석의 시사점

1. 정의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의 경우 콘텐츠 범주가 점차 다양한 디지털 영상물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뤄짐.
- 콘텐츠산업진흥법도 마찬가지로 디지털 콘텐츠와 새롭게 나타난 융합콘텐츠를 모두 포괄할 수 있는 범주로 콘텐츠산업 개념을 재정립함.
- 방송법의 경우 다양한 기술결합으로 인한 새로운 방송서비스가 도입됨에 따라 전송방식을 혼합사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기술결합서비스로 정의하여 근거를 마련함.
- 정보통신망법은 2011년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부가통신역무 또는 타인 상호 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정보를 저장·전송하거나 전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부가통신역무를 이 법의 적용대상에 포함시켰으며 2022년 국내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별도로 정의하였음

2. 산업 진흥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의 경우 진흥 정책을 유연하게 적용하기 위해 기구를 일원화 하였으며, 영상 제작자의 범위도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춰 변화하였음. 2006년 문화산업전문회사 조항이 신설되었으며,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경우 투자를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 방향이 확대되는 쪽으로 개정이 이뤄졌음.
- 콘텐츠산업진흥법은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를 확대 개편하여 진흥 정책을 총괄하도록 함. 나아가 안정적인 재원 마련에 대한 조항이 신설되었음.
- 음악산업진흥법은 주로 지식재산권 보호 규정을 개선하고, 음악공연의 국제협력 및 해외 진출을 활성화 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개정하였음.
- 정보통신망법의 경우 이용자 보호와 국제협력 업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을 통합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설립하였음.
- 조세특례제한법은 중소기업의 조세부담 완화를 위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에 영화관 운영업을 포함시키고 영상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17년부터 3년간 방송프로그램 등의 제작비용의 3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했다가 해당 기간을 2025년 말까지 연장한 후 여기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제공된 비디오물을 추가하였음.

- 게임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게임산업진흥법은 아마추어게임물 제작자의 활동을 지원하고, 지식재산권 보호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등급분류와 관련하여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뤄짐

3. 이용자 보호

- 콘텐츠산업진흥법의 경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 등이 지속적으로 보완되었으며 대표적으로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권 보장이 있음.
- 방송이 미치는 파급력이 큰 만큼 방송법 내 시청자 보호 조항 역시 다수 추가되었음. 가령 방송발전기금 용도를 시청자 복지 등을 위해 사용하는 조항의 신설, 시청자 권익침해를 금지하는 규정과 장애인 관련 조항의 신설, 보편적 시청권 보장, 그리고 시청자미디어센터에 법인격을 부여하여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한 것을 예로 들 수 있음.
- 전기통신사업법은 통신요금 과다청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정보를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됨.
- 정보통신망법은 주로 청소년과 만 14세 미만 아동을 보호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음.
- 게임산업진흥법 역시 청소년 게임과몰입과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보호 조항 및 교육 조항 등이 신설되었음. 나아가 게임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정책에 대한 사업자의 협조 의무를 따로 규정함

4. 시사점

- 영상 관련 법들의 개정 연혁을 살펴본 결과, 먼저 정의 조항들은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는데, 새로운 서비스를 포섭할 수 있는 새로운 정의 조항을 만들거나, 기존 서비스에 통합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것으로 확인됨
- 나아가 진흥 조항의 경우 관련 규정의 유연한 적용을 위한 기관들의 일원화와 더불어 개정된 법들을 반영하여 진흥 정책이 다양한 대상들에게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되었음
- 소비자 보호 조항의 경우, 관련 서비스의 특성을 반영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개정되었으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조항들이 두드러졌음

제3장

**미디어법제
개편 논의와
영비법과의 관계**

20
23

제3장

미디어법제 개편 논의와 영비법과의 관계

I. 미디어 법제 개편 논의의 지형

1. 법제 및 거버넌스 개편 논의의 지형과 맥락

○ 미디어 법제 개편 논의의 배경: OTT 시장 확대에 따른 정책 대응 필요성 증가

- OTT 서비스의 성장에 따른 제도 정비 필요성 증가

• 글로벌 OTT 서비스 넷플릭스의 한국 진출(2016년) 이후 지속적인 한국 콘텐츠 투자 확대를 통한 국내 시장 확대가 이어져 왔으며, LG U+ 셋탑 탑재(2018.11)와 오리지널 콘텐츠 ‘킹덤’(2019)의 성공을 계기로 본격적인 영향력을 확대하며 OTT 관련 정책 대응 논의를 촉발했음

• 넷플릭스의 영향력 확대 과정에서 국내 사업자들의 OTT 서비스 개편이 이루어지면서 본격적인 OTT 시장 활성화 및 정책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함

* 국내 사업자의 합종 연횡 및 시장 재편 (2019): 폭(pooq)과 옥수수 합평(현재 웨이브), 티빙의 스마트TV 서비스 재개

• 특히 코로나19의 확산 과정에서 넷플릭스의 국내 이용자수(MAU)는 2020년 전년 대비 2배 이상 급증하였으나, 웨이브는 감소, 기타 국내 OTT도 넷플릭스 수준에는 못미치는 등, 국내 OTT 사업자의 위기와 해외 플랫폼 지배력 강화에 대한 우려 확대

•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의 콘텐츠 투자 확대에 따른 ‘하청기지화’ 우려 증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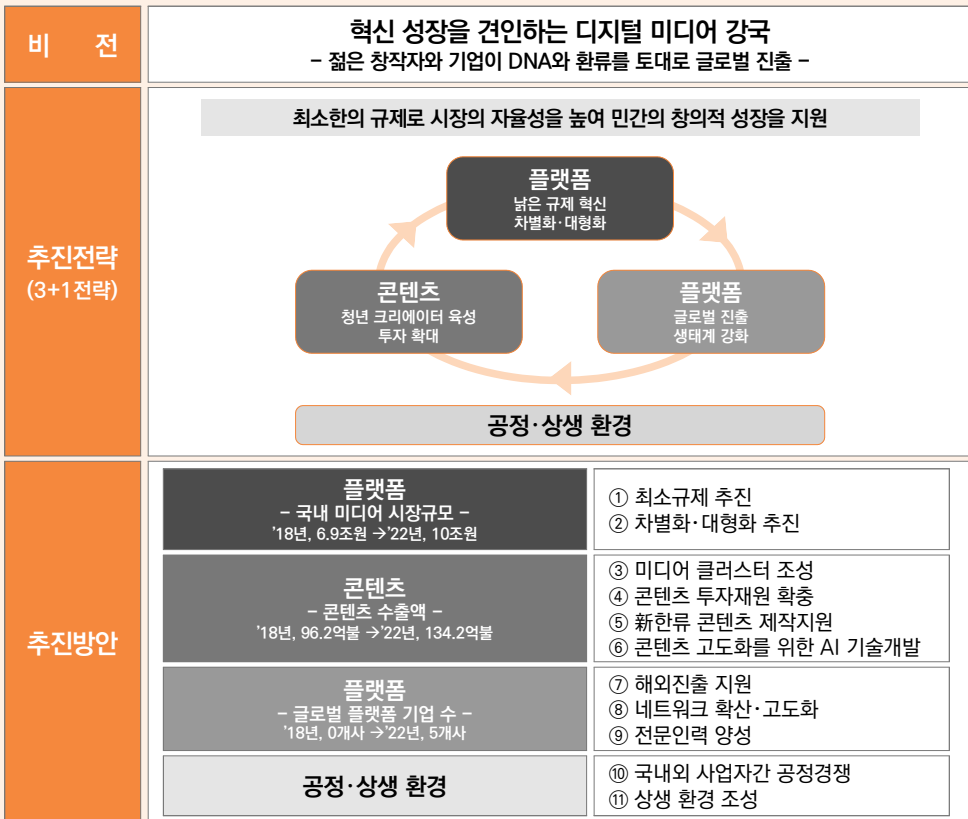
: 막대한 자금력에 기초한 글로벌 OTT의 제작 투자 확대에 따른 해외 플랫폼 의존도 심화와 국내 기업 협상력 약화에 대한 우려 지속

○ OTT 관련 정책 대응의 시작

- OTT 규제 적용을 위한 법제 개편 논의의 시작
 - 온라인 기반의 동영상 서비스인 OTT의 빠른 성장에 따라 기존 유관 법제의 개편을 통한 규제 공백 해결 시도가 촉발됨
 - 2019년 시점에서 '방송'개념의 확장을 통한 OTT 사업자 법적 지위 부여 시도가 이루어졌으나 (김성수 의원,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 유관 사업자의 반발과 관련 부처의 반대 등으로 통과되지 못하고, 20대 국회가 마무리 되면서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었음
- 정부의 OTT 대응 전략의 본격화: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 전략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처 합동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 전략'수립을 계기로 OTT 관련 정책 본격화(2020.6.22.)
 - 최소규제 원칙, 자율등급제 도입, 세액공제 도입 추진 등 내용 반영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 방안 주요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6.22.)

- (플랫폼) 온라인 비디오물 자율등급제 도입 (영비법 개정 추진)
- (콘텐츠) 온라인 비디오물 제작비 세액 공제 (영비법 및 전기통신산업법 개정 추진)



○ OTT 진흥을 둘러싼 부처 경쟁과 거버넌스 논쟁의 심화

- OTT와 관련된 진흥 및 규제 권한을 둘러싸고 유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 대응이 본격화되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전략 중심의 정책 대응 주장
 - 방송통신위원회: ‘중장기 방송제도 개선 추진반’의 정책 제안서 발표(2020.3.11.) 및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개념 제안

[그림 1]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청각미디어서비스’ 개념 제안

※ 동영상 여부를 기준으로 시청각미디어서비스와 정보사회 서비스를 구분

		시청각미디어 서비스		정보사회서비스	
		실시간 서비스	주문형 서비스		
		동영상 여부			
		동영상 중심	非동영상 중심		
편성	콘텐츠	방송채널 서비스 (지상파채널, 유료채널)	시청각미디어채널 서비스 (실시간OTT채널)	VOD 서비스	인터넷신문, 팟캐스트, 정보CP
	플랫폼	방송플랫폼 서비스 (지상파방송, 유료방송)	시청각미디어플랫폼 서비스 (실시간 및 주문형 OTT플랫폼)		포털, 카톡, SMS, 콘텐츠플랫폼
네트워크	방송망(지상파, 유료방송) & 통신망(범용인터넷망)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중장기 방송제도 개선 추진반 정책 제안서

-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진흥기본법 전부 개정안’ (가칭 영상미디어콘텐츠산업진흥법) 발의 2020.9.8., 의안번호 제2103617, 이광재 의원 대표발의)
- 2020~2021년의 기간 중 코로나19의 확산으로 OTT 서비스의 중요성이 크게 확대되었으나, OTT 관련 이해관계자 분쟁 발생이 확대되고 다수의 관련 규제 개선 및 진흥 전략들이 부처 간 이견으로 추진이 지연되면서 부처 갈등의 해소를 위한 거버넌스 개편 논의가 촉발되었음
 - (분쟁 조정 필요성 증가) OTT와 음악저작권협회 간의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2020.12)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OTT 업체들은 저작권 요율 인상의 부당함을 강조하며 문체부에 대한 행정 소송을 제기함(2022.12.23. 1심 원고 패소)

- (거버넌스 개편 논의) 대선을 앞둔 국면에서 정부조직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미디어 거버넌스 개선에 대한 다수의 주장이 제기됨

*** 국민의 힘 미디어특별위원회 - ‘디지털미디어혁신부’ 설치 주장**

디지털 미디어 혁신부 설치(안)

< 현재 미디어 관련 부처 주요 업무 >

부처	미디어 관련 주요 업무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유료방송/홈쇼핑 인-허가, 통신 인-허가, 전파 관리, 디지털 미디어 진흥, 인공지능/데이터 정책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중편 인-허가, 방송편성/다양성, 방송/통신 사후규제, 인터넷/플랫폼 정책, 이용자보호/단말기유통조사
문화체육관광부	광고 진흥, 영상물 심의, 한류 지원, 저작권 관리, 독립제작사 지원
공정거래위원회	유료방송 인-허가, 방송/통신 사후규제, 플랫폼 정책 OTT 기업결합

➔

< ‘디지털 미디어 혁신부’ 중심의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 >

출처: 성동규 교수 발제 자료

*** 민주당 이재명 후보 - 통합 미디어 법제 및 미디어정책 전담부처 신설 추진(대선 공약)**

미디어정책 전담부처 추진(안)

방송영상미디어 생태계 변화에 부응하는
법제와 기구를 개선하겠습니다.

- 복수의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방송영상미디어 관련 법제의 통합 개선
- 분산되어 있는 방송영상미디어 정책을 통합하는 전담 부처 신설 추진

출처: 이재명 후보 미디어 정책 공약집

- (현 정부 국정 과제 선정과 미디어 거버넌스) 2022년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27.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의 일부로 미디어 전략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전담기구 설치 추진 방향 제시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 과제 중 미디어 거버넌스 관련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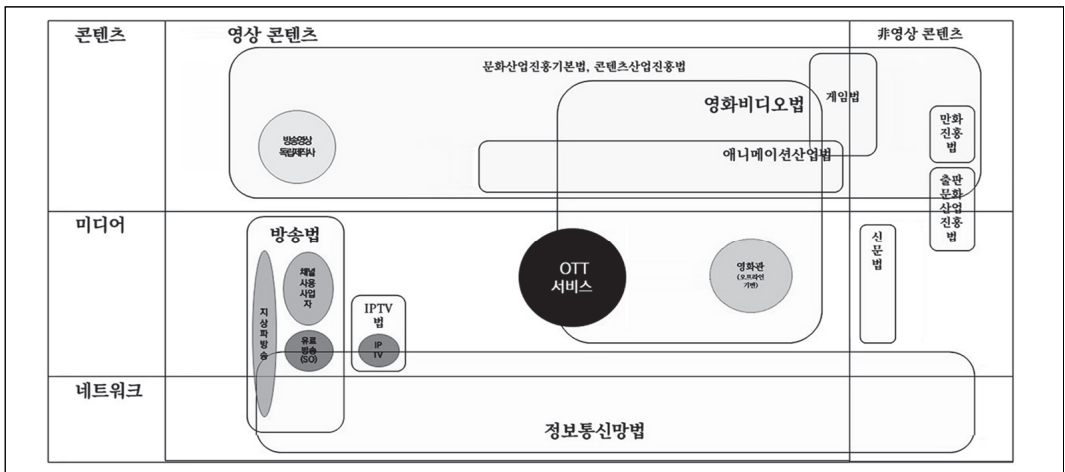
27.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 (방통위·과기정통부)

- (미디어 미래전략 및 추진체계) 관계부처*와 함께 미디어 전략 컨트롤타워역할을 하는 전담기구 설치 추진, 新·舊 미디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미디어 미래전략 및 법제 마련
* 방통위, 과기정통부, 문체부 등
- (미디어 산업 규제혁신) 방송사업 허가·승인·등록제도, 소유·겸영 및 광고·편성 규제 등 미디어 산업 전반에 대한 넓은 규제개선
- (OTT 글로벌 경쟁력 강화) OTT 제도적 기반 마련(세액공제·자체등급제등) 및 글로벌 전진기지 구축, 특화 콘텐츠 제작 등 국내 OTT·제작사의동반 해외진출 종합 지원
- OTT 등 미디어와 콘텐츠 산업의 선순환 발전을 위한 혁신전략마련

○ 주요 쟁점 및 논의의 특징

- OTT 성격 규정에 대한 이견: 방송 사업자 vs 부가통신사업자 vs 비디오 사업자
 - 기존 OTT 관련 규제 체제 현황 (영비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이전)¹⁾
 - * 방송: 방통위 (방송법) → 지상파 방송, 유료방송, IPTV [방송 심의 → 방심위]
 - * 통신: 과기부 (정보통신법) → 부가통신사업자 (OTT 포함) [심의 및 규제 X]
 - * 영상(비디오): 문체부 (영비법) → 콘텐츠 내용규제 [영상물 심의 → 영등위]
 - OTT 성격 규정을 둘러싼 OTT 사업자의 반발과 ‘최소규제론’의 강조
 - * 범부처 계획의 성격을 갖는 ‘디지털미디어생태계발전전략’에서 합의된 ‘최소규제’ 론에 대한 OTT 사업자의 적극적인 지지와, 글로벌 OTT 사업자 성장에 따른 국내 시장 보호 필요성에 대한 주장에 따라 규제 중심의 부처별 논의의 추진에 제약이 따름
 - * 방송 개념 도입시 방송사업자 수준의 규제 적용에 대한 우려, 별도 사업자 지위 신설에 대해서도 이에 대한 규제 도입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
- 부처 관할권을 둘러싼 갈등: 수평규제 vs 수직규제²⁾
 - 부처별 관할 영역은 수평적인 형태를 갖고 있으나, 미디어 관련 규제의 실질적 구성은 개별 미디어나 서비스 단위의 수직적 규제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함
 - * 부처 구도: [콘텐츠](문체부)-[채널+플랫폼](방통위)-[네트워크](과기부)
 - * 실질 규제: 영화, 비디오, 방송독립제작 → 문체부 (영상물 내용 규제 포함)
 지상파, 종편, 유료방송 (콘텐츠, 채널, 네트워크, 플랫폼) → 방통위 (방송 내용규제)
 IPTV, 디지털콘텐츠 (콘텐츠, 네트워크, 플랫폼) → 과기부 (내용 규제 권한 없음)

[그림 2] OTT 및 영상콘텐츠 인접 법제 및 규율 현황



출처: 이성민(2020.8)

1) 이성민(2020.8.) 영상 미디어 콘텐츠 법제 기반 정비를 위한 추진 방향 탐색, KCTI 정책리포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4쪽

2) 위의 글, 5쪽

○ 현 시점에서의 법제 및 거버넌스 개편 논의 현황

- 부처 합의의 준거점으로 '디지털미디어생태계전략'의 위상 유지
 - 개별 부처 중심의 거버넌스 개편 논의 무력화 → 현 정부 조직 체계 유지
 - * 방송법 전부개정안(20대) 임기 만료 폐기, 영상진흥기본법 전부개정안(21대) 논의 중단
 - 핵심 합의의 사안으로서 **1) 최소규제, 2) 자체등급분류 도입, 3) OTT 콘텐츠 세액 공제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법제 개편 추진
 - * 최소규제 원칙에 따라 규제 수준을 높이는 법제 도입 논의 중단(영상진흥기본법)
 - * 자체등급분류 도입을 위한 영비법 개정 완료(2022.9)
 - * OTT 콘텐츠 세액공제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완료(2022.5)

2. 주요 법제 및 거버넌스 개편 논의 내용 검토

○ 법제 개편 논의

- 방송법 전부개정안(김성수 의원 대표발의)

방송법 전부개정 법률안 주요 내용 (제2021707, 2019.7.29., 김성수 의원 대표발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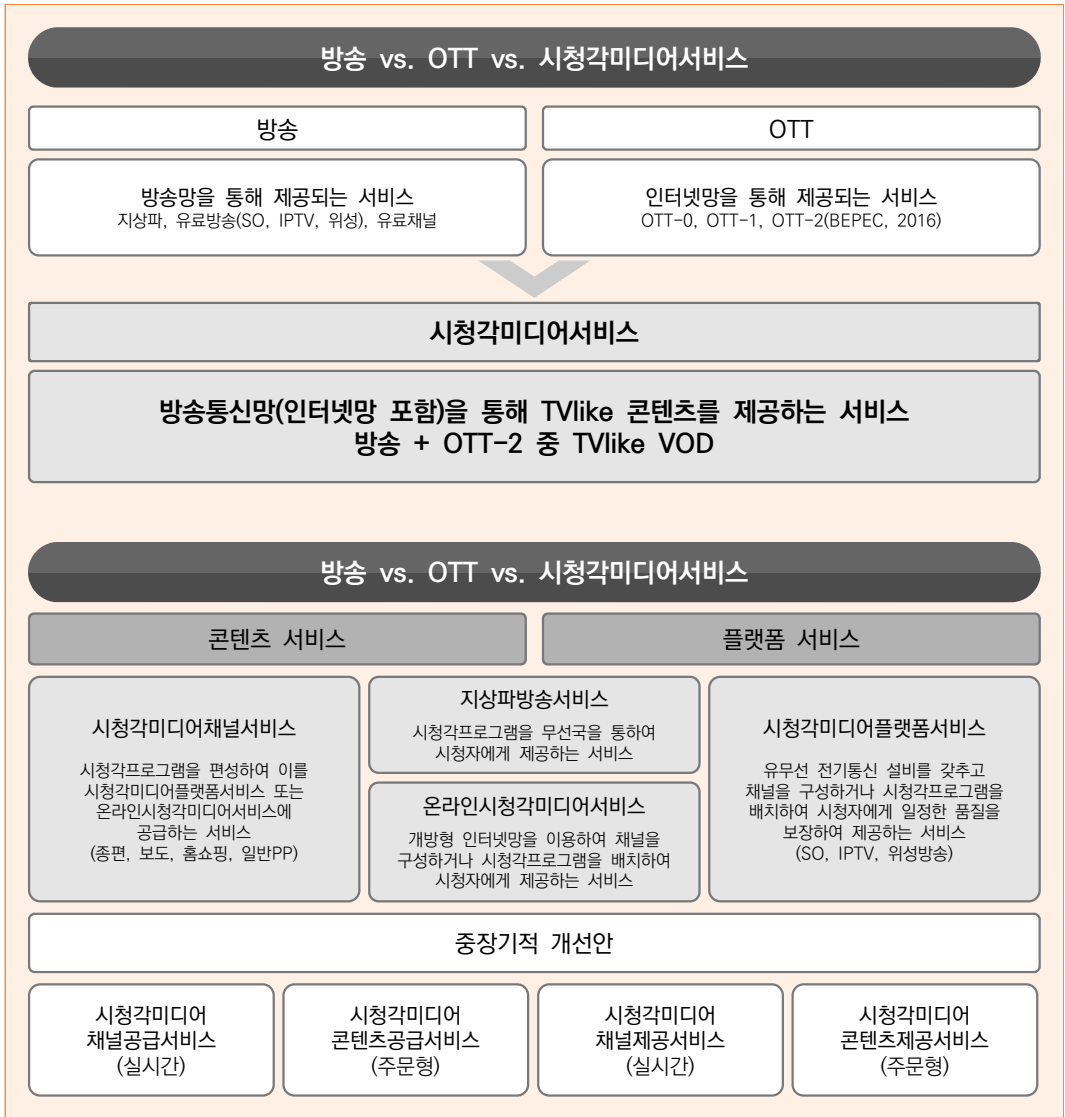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및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을 현행법에 통합하여 주요 내용을 반영함.
- 「한국방송공사법」의 제정을 통하여 한국방송공사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현행법에서 분리하여 규정함.
- 기존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를 유료방송사업자로 통합하고,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방송콘텐츠제공사업자로 분류명칭을 변경하며, **OTT서비스를 플랫폼 계층에 해당하는 온라인동영상제공사업자로 신설·분류함(안 제2조).**
- **OTT의 건전한 발전과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온라인동영상제공사업자에 대한 별도의 심의체계를 수립토록 함(안 제8조)**

-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안 : 발의 전 연구 진행 단계 (방송통신위원회)

시청각미디어서비스 규제체계 관련 주요 내용

출처: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22), 지디넷코리아

- 방송과 OTT로 구분된 현행 서비스 구분을 '시청각미디어서비스'로 일원화 (규율 대상 OTT 서비스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중 TV유사성을 기준으로 구분)
- 콘텐츠 서비스와 플랫폼 서비스로 구분하고, OTT를 '온라인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로서 콘텐츠-플랫폼을 동시에 제공하는 서비스로 규정
- 중장기적으로는 시청각미디어 채널 공급 및 제공으로 구분, 실시간(linear programming)과 주문형(On Demand)으로 구분하는 방향 제안



- 영상진흥기본법 전부개정안(가칭 '영상미디어콘텐츠산업 진흥법', 이광재 의원 대표발의)
 - 해당 법안은 OTT 서비스를 둘러싼 핵심 규율인 '등급분류'제도의 개편은 물론, 영화(영비법)와 방송(방송법), 온라인영상콘텐츠(영상미디어콘텐츠산업진흥법)으로의 영상 콘텐츠의 3분할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음
 - 해당 법안이 OTT 중심의 영상콘텐츠 산업 변화를 반영한 보다 체계화된 방향성을 담고 있으면서, 구체적인 조문의 구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논의를 위해 별도로 구체적인 검토를 진행하고자 함

3. 구체화된 개편 방향으로서 영상미디어콘텐츠산업법안 검토 및 한계

○ 법안 개요

- 제안 이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장에 따른 영상물의 기획·제작·유통·소비 방식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적 추진체계 및 각종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자체등급분류제도 도입 등을 위한 법안임
- 해당 법안은 ‘영상미디어콘텐츠’의 용어의 제안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작·유통되는 영상콘텐츠를 포괄하는 개념을 신설하고, 범정부적인 영상미디어콘텐츠산업의 진흥 추진체계를 구성하는 방향성을 담고 있음³⁾

○ 주요 내용

영상진흥기본법 전부 개정안 주요내용 (의안번호 제2103617호, 이광재의원 대표 발의)

가. 법률의 제명 변경 및 ‘영상미디어콘텐츠’의 개념 등 재정립(안 제2조)

- 1) 변화된 산업 환경에 따라 현행 「영상진흥기본법」의 제명을 「영상미디어콘텐츠산업 진흥법」으로 변경하는 한편, 기존 방송채널을 중심으로 제작·유통되는 ‘방송영상콘텐츠’와 최근 정보통신 망을 중심으로 활발히 제작·유통되는 ‘온라인영상콘텐츠’를 포괄하는 ‘영상미디어콘텐츠’의 개념을 재정립하여, 새롭게 등장한 분야를 포함하는 영상미디어콘텐츠산업 진흥의 법적 기반을 마련.
- 2) ‘방송영상콘텐츠’ 및 ‘온라인영상콘텐츠’ 관련 사업자를 각각 ‘기획업자’, ‘제작업자’, ‘배급업자’, ‘제공업자’로 구체화.

나. 각 행정기관 간 상호 협력을 통한 범정부적인 영상미디어콘텐츠산업 진흥 정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소속 영상미디어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를 설치하고 영상미디어콘텐츠산업 종합계획 등을 심의하도록 함(안 제7조).

다. 영상미디어콘텐츠산업의 기반조성(안 제8조부터 제23조까지)

- 1) 다양한 영상미디어콘텐츠가 활발히 기획·제작·배급·유통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영상미디어콘텐츠산업 발전의 핵심임.
-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상미디어콘텐츠 및 이로부터 파생된 콘텐츠 등의 기획·제작을 지원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인력양성, 연구개발, 해외진출 지원 등과 관련한 시책을 마련하며, 자금을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추진함.
- 3) 영상미디어콘텐츠 해외이용자 언어장벽 해소를 위한 다중언어 번역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함.
- 4) 영상미디어콘텐츠를 매개로 한 남북 교류, 공적개발 원조 사업에 대한 추진 근거를 마련함.
- 5)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상미디어콘텐츠산업진흥시설을 지정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3) 영상진흥기본법 전부개정 법률안 검토보고서(2020.11), 제382회 국회 제9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라. 영상미디어콘텐츠산업 내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조항을 신설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영상미디어 콘텐츠산업 유통환경에 대한 분석,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이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부터 제26조까지).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상미디어콘텐츠 이용자를 보호하며, 모든 국민이 영상미디어콘텐츠를 차별 없이 향유 할 수 있도록 하는 격차 해소 및 취약계층의 접근권을 강화하는 시책을 추진하고, 국민의 영상미디어 콘텐츠 수용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부터 제32조까지).

바. 영상미디어콘텐츠 자체등급분류제도 등(안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 1) 유상으로 온라인영상콘텐츠를 제공하려는 자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상물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거나 자체등급분류를 할 수 있도록 함.
- 2)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정하고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지원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사. 영상미디어콘텐츠 사업자 신고제도 및 신고의 의제(안 제40조 및 제41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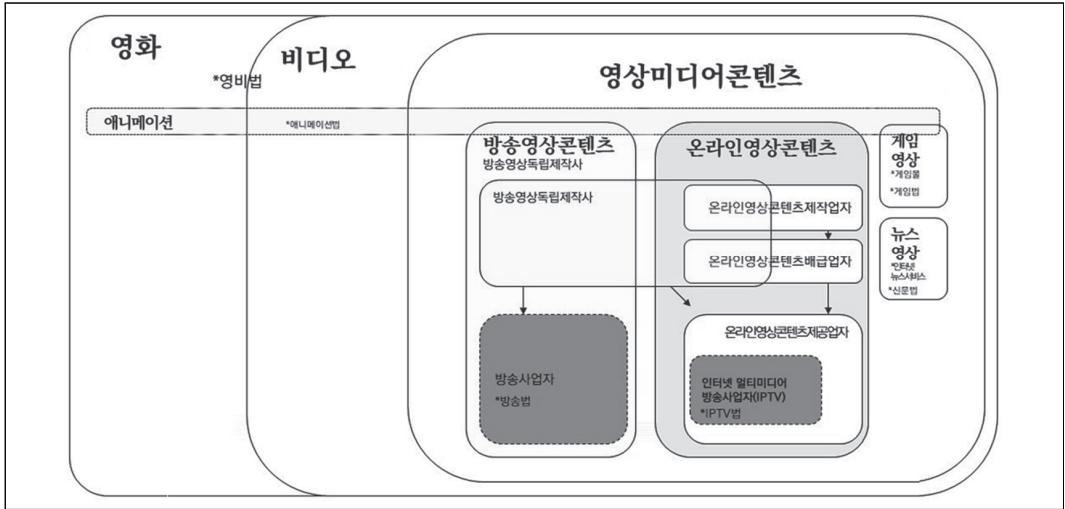
- 1) 영상미디어콘텐츠 사업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를 통해 영상미디어콘텐츠 사업자가 될 수 있게 하며, 신고 후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함.
- 2) 기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영화제작업자나 비디오물제작업자는 이 법에 따른 온라인영상콘텐츠제작업자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보며,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라 방송 영상독립제작사의 신고를 한 자는 이 법에 따른 방송영상콘텐츠제작업자 및 방송영상콘텐츠배급업자의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보는 등 신고의 의제조항을 마련함.

○ 해당 법안의 특징

- 영상미디어콘텐츠 개념을 통한 영상 정의의 3분할 구분 도입

- ‘방송영상콘텐츠’와 ‘온라인영상콘텐츠’를 포괄하는 ‘영상미디어콘텐츠’의 개념을 정립, 영화 및 비디오 법의 ‘영화 및 비디오’ 개념과 함께 현재 영상 콘텐츠 생태계를 포괄하는 법 정의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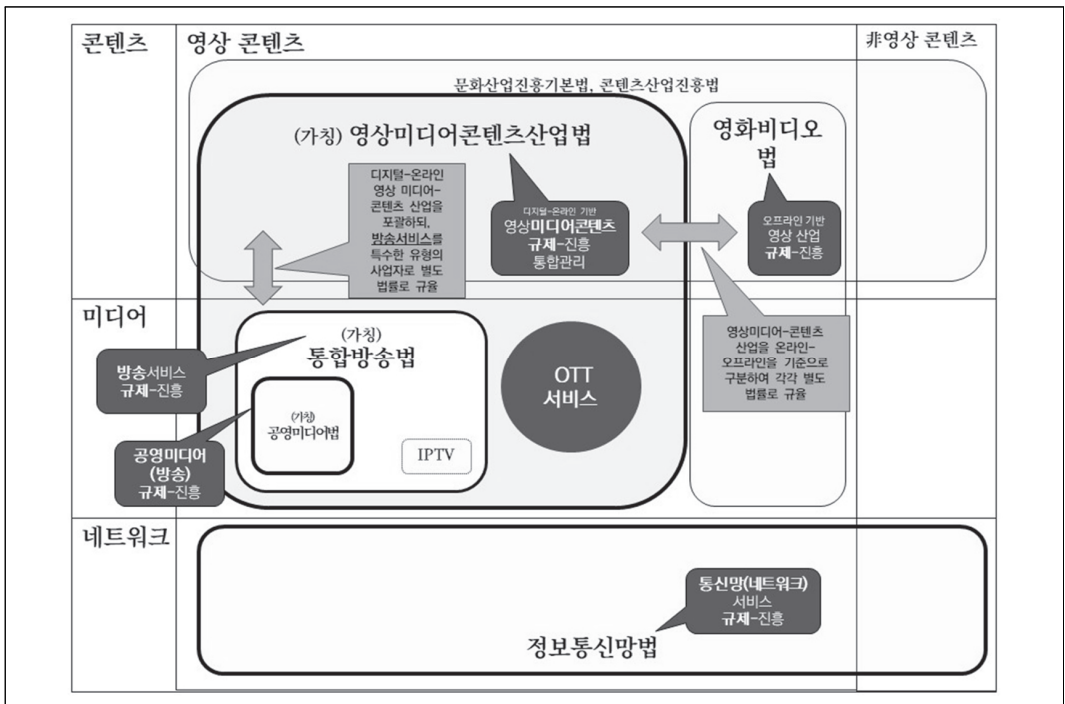
[그림 3] 영상미디어콘텐츠의 정의와 유사 개념의 비교



출처: 이성민(2020.8)

- 기존 법제와의 관계: 디지털-온라인 기반 영상미디어 콘텐츠를 포괄하는 법으로서의 위상을 확보, 문체부의 영상미디어콘텐츠 분야 진흥-규제 거버넌스를 체계화

[그림 4] 영상미디어콘텐츠산업법의 위치(기존 법제와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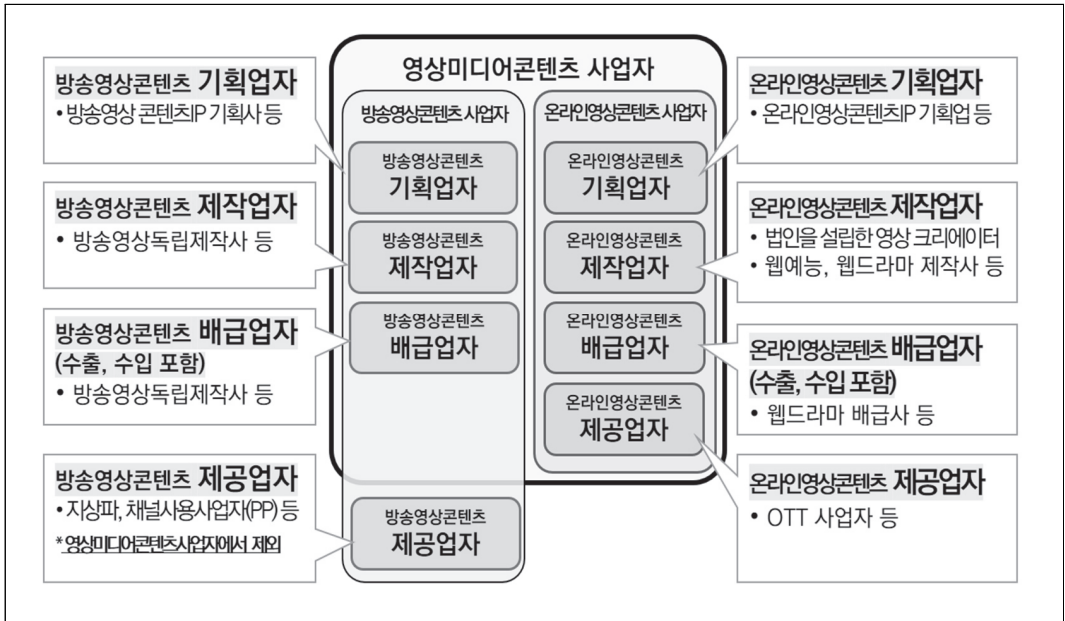


출처: 이성민(2020.8)

- 확대된 영상 콘텐츠 가치사슬을 고려한 사업자 유형의 규정 및 규제체계 반영

- 기획업: '기획'업의 규정을 통해 콘텐츠IP 기반의 산업 재편에 선제적 대응
 - * 방송영상콘텐츠기획업자·온라인영상콘텐츠기획업자, 주로 방송·시나리오 작가, IP 사업자 등
- 제작 및 배급업: 영상미디어콘텐츠 제공업자에게 영상미디어콘텐츠를 공급하는 사업 (제작, 배급)
 - * 영상미디어콘텐츠 제작업: 외주제작 등 실제 콘텐츠 제작 실무를 주로 담당하는 사업자
(* 단,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포털), 인터넷신문사업자(신문사)는 제외)
 - * 영상미디어콘텐츠 배급업: 서비스사업자에게 콘텐츠를 배포 및 공급을 담당하는 사업자
(* MCN 등 1인미디어의 콘텐츠 관련 서비스(매니지먼트) 포함)
- **제공업 (유통, 플랫폼) → OTT 서비스**: 영상 콘텐츠를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대가를 받고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그림 5] 영상미디어콘텐츠 사업자 구분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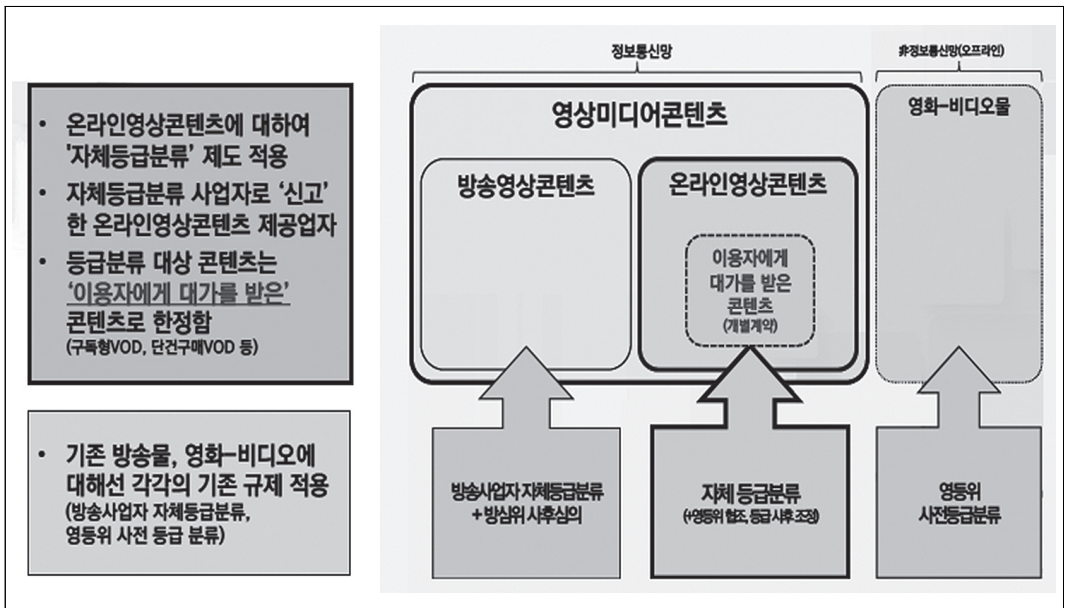
- 영상미디어 콘텐츠 정책 구체화

- 진흥 방향: 기획·제작지원, 파생콘텐츠 재가공 활성화, 인력양성·재교육, 다중언어 재제작·국제 공동제작, 남북교류·ODA, 인프라 구축 등
- 공정한 유통 환경: 망중립성, 불공정 거래 금지
- 이용자 보호: 취약계층 접근권 강화, 이용자 수용능력 증진

- 자체등급분류 제도의 도입

- OTT 사업자는 영상물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나(영등위), 이를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제도 도입*
 - * 단, 자체분류 결과가 영등위가 제시한 기준에 현저히 위배되는 경우 영등위의 직권 재분류 가능
- 영등위는 자체등급분류 제도 운영을 위해, 등급정보 데이터베이스, 등급분류 책임자 교육, 사후 관리 시스템 등 구축
- 자체등급분류 사업자가 준수사항* 위반시 시정방안 제시, 미조치시 행정처분(영업정지·폐쇄), 등급 분류 받지 않은 콘텐츠 게시 중단 명령 등

[그림 6] 영상미디어콘텐츠산업법 상의 자체등급분류 방식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20)

○ 해당 법안의 체계도⁴⁾

		영상미디어콘텐츠							
제1장 총칙	포괄범위 (제2조 정의)	방송영상콘텐츠				온라인영상콘텐츠 (게임물, 뉴스·보도 성격 인터넷동영상 등 제외)			
		기획업자	제작업자	배급업자	제공업자	기획업자	제작업자	배급업자	제공업자
	정책추진체계 (제6조, 제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계획) 문체부장관, 영상미디어콘텐츠산업 진흥 종합계획 수립 • (위 원 회) 문체부장관 소속 위원회 설치, 종합계획 심의, 정책 자문 등 							
제2장 산업 진흥	제1절 산업의 기반조성 (제8조~제2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제작지원) 영상미디어콘텐츠 및 파생콘텐츠 기획·제작 지원, • (경쟁력 강화) 인력양성, 연구개발, 금융기반,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 등 • (해외진출·교류) 다중언어재제작, 공동제작 지원, 남북 교류, 공적개발원조 등 • (인프라) 진흥 시설 지정·지원, 실태조사, 종합정보시스템, 전담기관 							
	제2절 공정한 유통환경 (제24조~제2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유통정책) 유통환경 분석, 협의체 구성·운영 등 • (불공정거래 금지) ① 기간통신사업자의 합리적 이유 없는 정보통신 망 등 제공 거부 금지 ② 기획·제작 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 금지 *부당한 기획·제작방향 변경, 인력교체, 계약체결 후 감액, 저작권 양도 강제 등 • (표준계약서) 문체부장관, 표준계약서 마련, 사업자에 권고 가능 							
	이용자보호 (제27조~제32조)	이용자 보호지침, 분쟁조정 *콘텐츠산업 진흥법 준용	격차해소		취약계층 접근권 강화				수용능력 증진(리터러시)
제3장 등급 분류 (온라인 영상 콘텐츠 제공업자)	기본원칙 (제33조, 제3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급분류 의무) 대가를 받고 온라인영상콘텐츠를 제공하려는 자는 자체등급분류 또는 영등위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을 의무 •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영등위에 신고 후 제한관람가 제외 자체등급분류 가능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의무등 (제35조, 제3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수사항) 영등위가 정하는 등급분류 기준에 따른 자체분류 후 제공 등 • (등급표시) 등급분류한 온라인영상콘텐츠의 등급 및 내용정보 표시 							
	영등위 감독 등 (제37조~제3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권등급분류 등) 자체등급분류 결과가 등급분류 기준에 현저히 어긋날 경우 직권으로 등급 취소 (제한관람가), 등급조정 요청 등 • (지원업무) 등급정보 데이터베이스·사후관리시스템 등 구축 운영, 관련 교육 등 							
제4장 신고	신고 등 (제4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상미디어콘텐츠 사업자 되려면 문체부 장관 및 지자체장에 신고 *신고예외 : 국가·지자체·공공기관 제작·제공, 교육콘텐츠 제작·제공, 개인사업자, 광고 등 							
	행정처분 (제4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짓·부정신고 등 영업정지·영업폐쇄 명령 •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준수사항 위반시 자체등급분류 업무정지 등 							
제5장 보칙	취급거부 (제4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체부장관, 미등급분류, 자체등급분류 취소 등의 경우에 계시판 관리·운영자에게 온라인영상콘텐츠 취급 거부·저징 명령 가능 							
	수수료 (제4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변경신고 수수료, 등급분류 수수료 							
제6장 벌칙	과태료 (제5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급분류의무 위반·청소년유해 광고·선전물 제공, 취급거부명령 위반 등(1,000만원 이하), 미신고 사업자, 등급표시 위반 등(500만원 이하) 							

4) 영상진흥기본법 전부개정 법률안 검토보고서(2020.11), 제382회 국회 제9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8쪽.

○ 진행 과정 및 결과

- 진행 경과

- 법안 발의(2020.9.8., 이광재 의원 등 33인, 제382회 정기국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2020.9.9.) 및 상정(2020.11.13.)

소관위 검토 보고서 주요 내용(2020.11.)

- 해당 내용이 입법화되면, 체계적인 진흥 정책 추진을 통해 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을 포함한 국내 영상미디어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 세계에 한류 영상미디어콘텐츠를 확산시키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됨.
- 다만, **전부개정안과 관련하여 관계 부처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부처 소관에 대한 이견과 법률 간 중복 규제 등을 주요 이유로 개정에 반대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관 법률인 「전기통신사업법」 등에서 온라인동영상서비스에 대한 진입 규제 및 진흥 시책 등을 규율하고 있으므로, 동 전부개정안의 입법 필요성이 낮고 부처 간의 업무 혼선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의 법적 지위를 「영상진흥기본법」에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유사 법률과 중복되는 내용도 많아 법체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음. → 관계 부처의 의견을 감안한 합의점을 도출 필요

- 추진 결과 및 시사점

- 소관위 회의 이후 부처간 이견과 사업자 반발 등을 이유로 논의가 중단되었으며, 자체등급분류 등 주요 정책은 디지털미디어생태계발전전략 합의 사항 이행을 목표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대체되어 추진되었음
- 해당 법안은 영화-방송-온라인영상콘텐츠라는 3분할 체제에 기초한 통합적 규제 및 진흥 체계 추진을 목표로 관련 사업자 규정 등을 포괄하는 세부 조문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향후 유관 법제 개편에서 참고할 필요가 있음

II. 미디어 법제 개편 논의가 영비법 체제에 미치는 영향

1. 미디어 법제 개편 결과

○ 정부 미디어 법제 개편 방향

- OTT 진흥을 위한 최소 규제 및 진흥 중심의 제도 개선 추진
 - 정부조직개편 등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과 관련된 정책은 추진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기존 '디지털 미디어생태계발전전략'의 합의에 기초한 OTT 정책이 우선하여 추진됨
 - * (가칭) 미디어혁신위원회 논의는 국정과제 반영이후 미추진되고 있음

○ 관련 법제 개편 현황

- OTT 사업자 지위 규정
 -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2022.5)
 - : OTT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 등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역무'라고 정의
- 자체등급분류 도입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2022.9)
 - : '온라인비디오물' 정의 신설 및 자체 등급분류 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제'를 도입
- OTT 콘텐츠 세액 공제 도입
 -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통과(2022.12.24.)
 - : OTT 콘텐츠 제작을 위해 지출한 제작 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7%, 대기업은 3%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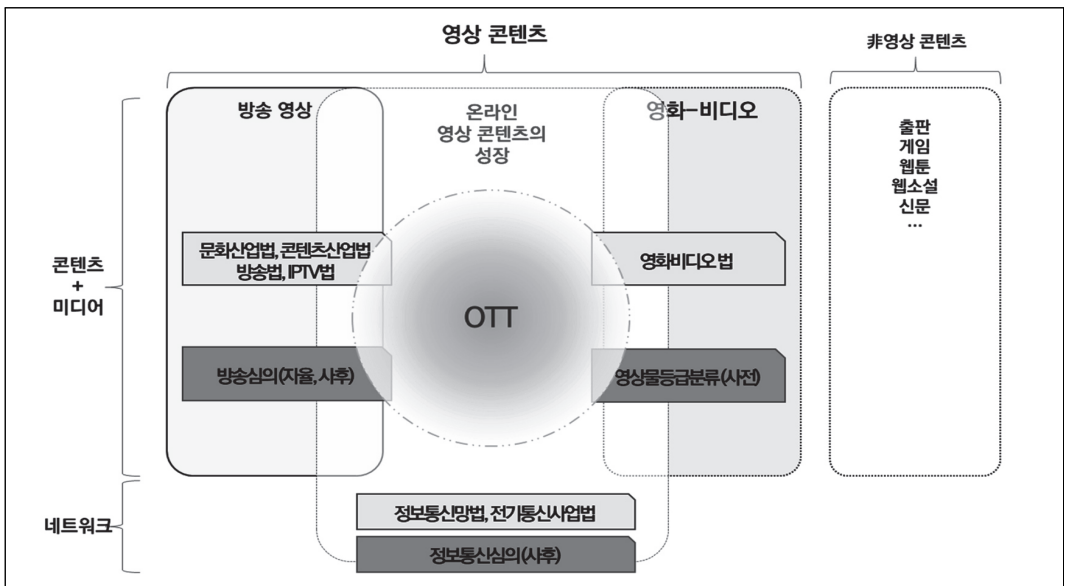
2. 영비법 체제에 미치는 영향

○ OTT 규제 논의에서 영비법의 위상 강화

- OTT 사업자 최소 규제 원칙 하에서, 자체등급분류의 정책적 우선순위 증가
 - OTT에 적용되는 실질적 현행 규제가 '비디오물'에 대한 사전등급분류 제도였다는 점에서, 해당 규제의 완화 방향이 정책적 우선순위로 부상하게 됨
 - (참고) 영비법 개정 이전 기존 내용 규제 현황
 - * 방송 사업자에 대한 자체등급분류 기준 적용(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후 규제)
 - * 영화 및 비디오 사업자에 대한 사전 등급 분류 제도 운영(영상물등급위원회)
 - * OTT 서비스의 사전등급분류 적용: 사전 등급분류 대상인 '비디오물' 법적 정의 요소인 '유상서비스' 개념에 기초하여 구독 및 판매 기반 OTT 콘텐츠 사전등급분류 적용

- 자체등급분류 도입을 위한 ‘영비법’중심의 제도화 진행
 - OTT 자체등급분류 도입은 크게 1)영상진흥기본법 전부개정안(가칭 영상미디어콘텐츠산업 진흥법), 2)영비법 일부 개정안의 2가지 방향성을 통해 논의되었음
 - * 영상진흥기본법 전부개정안 - ‘온라인영상콘텐츠’ 정의 도입을 통한 자체등급분류 도입
 - * 영비법 일부개정안 - ‘온라인비디오물’ 정의 도입을 통한 자체등급분류 도입
 - 영상진흥기본법 전부개정안이 부처 이견과 사업자 반발로 무산됨에 따라, 대안으로 **영비법 개정을 통한 자체등급분류 도입이 추진되어 법 개정이 완료됨**
 - OTT 사업자 규정에서 ‘비디오’개념의 적용과 영비법의 참조
 - 자체등급분류 및 OTT 콘텐츠 세액공제 도입을 위해 최소한의 사업자 규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기존의 OTT 사업자 지위가 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의 부가통신사업자 관련 조항을 수정하는 법 개정안이 통과됨(전기통신사업법, 2022.5)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법률안에서 OTT 사업자를 영비법 상의 ‘비디오물’을 제공하는 부가통신역무로 규정하면서, **‘비디오’개념을 중심으로 OTT 법제가 재편되는 결과가 나타남**
- 온라인 동영상의 법제 편입을 위한 비디오 개념의 부상
- ‘비디오’ 개념의 중요성 부상
 - 기존의 영비법에서 비디오 개념은 과거 물리적 저장매체 중심의 사업자 정의와 관련 진흥체계의 운영으로 인해 현실적 영향력이 약화되는 상황이었음

[그림 7] OTT 유관 법제 및 내용 규제 지형



출처: 이성민(2020.8)

- OTT 서비스의 성장에 따라 방송과 영화 등 기존 내용 규제의 틀이 반영되기 어려운 온라인 영상 콘텐츠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OTT 서비스에만 콘텐츠를 공급하는 ‘오리지널 콘텐츠’가 영상물등급 위원회를 통한 사전 등급분류를 받게 되면서, 이의 근거로서 ‘비디오’개념이 다시 부각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음
- 이후 OTT 산업 활성화를 위해 ‘최소규제’ 및 ‘규제 완화’ 중심의 정책이 부처 합의를 통해 추진되면서, OTT에 사실상 유일하게 적용되던 규제 완화를 위해 ‘비디오’개념에 기초한 자체등급분류가 도입되었음

○ 영비법 중심의 OTT 법제 개편의 한계

- 비디오 개념의 한계

- 현재의 OTT 자체등급분류 도입은 기존의 유상서비스 개념에 기초한 비디오물 정의를 준용하고 있음
- 단, 유상 서비스 개념 중심의 등급분류의 본질적 규제 정당성에 대한 도전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디오 개념에 취약성이 존재함
 - * 영화-비디오물의 규정이 ‘유상성’에 기초하고 있다는 특성으로 인해, 실제 사회적 영향력에 더 높다고 인식되는 유튜브 등을 통한 온라인 무료 영상은 등급분류 없이 창작-유통이 활성화되어 있음
- 또한 물리적 매체 중심의 비디오 산업이 실질적으로 붕괴된 상황에서 관련 진흥 체계 등이 존속되는 상황에서 ‘온라인 비디오’개념을 통한 별도의 진흥 체계 구축에 한계가 있음

- 사업자 규율 체계의 미확립

- OTT 산업의 사회적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고, OTT 서비스의 분화가 확대되고 있으나, 이를 중심으로 구성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진흥하고 규율할 수 있는 사업자 규정은 미비한 상황임
 - 기존의 ‘최소규제’원칙에 따라 유통 부문 중심의 부분적 사업자 정의만 마련됨에 따라, OTT 중심의 확장된 온라인 영상 콘텐츠 산업 생태계 전반을 진흥할 수 있는 법제도적 근거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임
- 따라서 향후 영화-방송-온라인영상 콘텐츠 등 영상 산업의 융합적 발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온라인 기반의 영상 생태계를 포괄하고 포섭할 수 있는 법체계의 발전을 위해선 제한적 개념인 비디오 개념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정의 규정의 발굴과 관련 사업자 규정을 통한 진흥 체계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III. OTT 자체등급분류제도가 영상산업 법제에 미치는 영향

1. OTT 자율등급분류제 도입 경과 및 내용

○ OTT 자율등급분류제도 관련 정부 정책

- OTT 산업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해외 및 국외 사업자간의 경쟁이 격화되어 있어 OTT 산업 관련 법률안의 조속한 입법이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 OTT 사업자의 자체등급분류제도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급한 도입이 요구됨
- 이에 2022년 6월 OTT에서 유통되는 온라인비디오물은 영상물등급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우선 자율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도록 제도 도입 발표
-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 언급
- 2022년 6월 문화체육관광부 규제혁신 5대 핵심과제 중 "OTT 자체등급분류 도입" 선정 및 시행 발표
- 2022년 9월 영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 영비법 개정 내용

-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한 자체등급분류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온라인비디오물의 정의를 신설함(제2조제12호의2 신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받은 사업자는 제한관람가 등급을 제외하고 자체적으로 온라인비디오물의 등급을 분류하여 유통할 수 있도록 함(제50조의2 신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자체등급분류 업무운영 계획의 적정성, 청소년 및 이용자 보호 계획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음(제50조의3 신설).
-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자체등급분류한 비디오물의 등급과 내용정보 등을 표시하고, 이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하는 등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함(제50조의4 신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등급조정요구·직권등급재분류·등급분류 취소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제50조의6 신설).
-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자체등급분류된 비디오물이 제한관람가 또는 청소년관람불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권으로 등급분류 결정을 하거나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할 수 있고, 등급분류 결과가 등급분류 기준에 현저히 위배되는 경우 등에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등급조정을 요구할 수 있음(제50조의7 신설).
-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자체등급분류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온라인사후관리시스템

구축, 자체등급분류 정보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및 협력체계 구축 등 사업을 수행함(제50조의8 신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불법 온라인비디오물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으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는 등의 시정을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제70조제7항 및 제8항 신설).

○ 영비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 정당한 권리의 전자적 표시방법을 구체화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를 고시하도록 함(제23조의3)
-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영등위에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신청에 따른 영등위의 조치 사항과 절차, 지정기간 만료에 따른 재지정 절차 등을 구체화 함(제23조의4)
-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의 기준에 대하여 별표2의4를 신설하여 위반 행위의 유형과 횟수에 따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시 지체 없이 관보에 공고하도록 함(제23조의5)
- OTT 특성을 고려하여 상호나 그 밖의 사항, 등급표시 및 내용정보의 표시 방법을 일반 비디오물과 달리 별표3에 따라 표시하도록 하고, 「콘텐츠산업진흥법」 제37조에 따른 표시사항은 선택적 사항이므로 의무적 표시를 전제로 하는 온라인비디오물의 표시와 충돌하므로 이를 삭제함(제27조)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및 재지정업무,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업무를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 영등위에 위탁하도록 함(제33조의4)
-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업무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가중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제34조의2항 관련 별표 4)

○ 영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안

- 등급분류책임자의 자격을 해당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임원 또는 자체등급분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 규정하고, 등급분류책임자의 업무 내용과 필요한 교육과 그 내용에 대해 구체화 함(제15조의2)
-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신청서(별지 제19호의4서식),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재지정신청서(별지 제19호의5서식),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서(별지 제19호의6서식),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사항 변경신고서(별지 제19호의7서식)을 마련함(제15조의3)
- 영등위의 자체등급분류업무수행 적정성 평가시기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하도록 하고 평가결과와 이에 따른 업무개선 권고를 평가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하도록 하였으며, 기타 적정성 평가에 관한 세부 사항을 영등위 규정으로 정하도록 함(제15조의4)

-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비디오물을 등급구분에 맞게 제공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한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시청지도수단에 대하여 구체화함(제15조의5)
-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자체등급분류한 온라인비디오물의 경우, 영등위 규정으로 정한 바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부여한 온라인비디오물 자체등급분류번호를 표시사항으로 추가함(제25조제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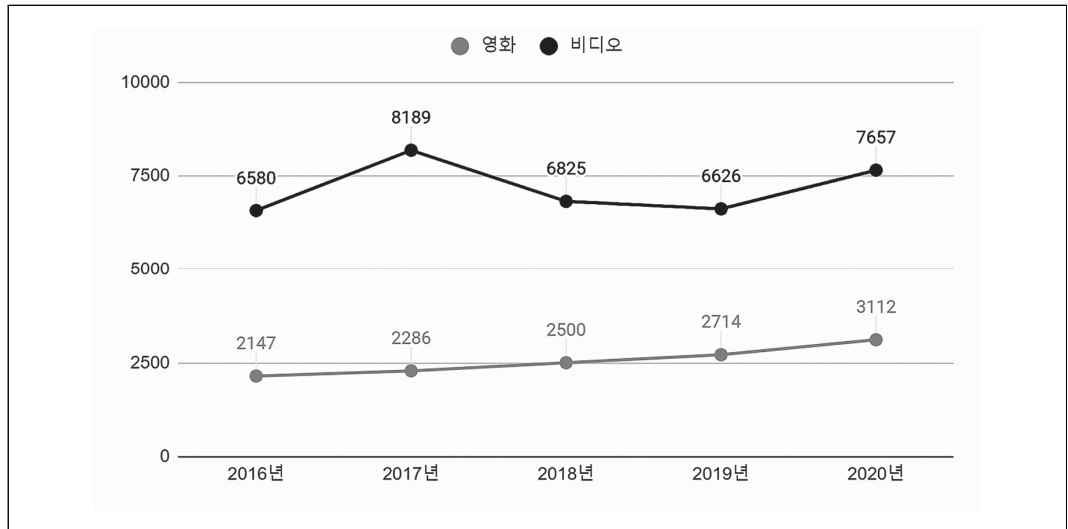
2. OTT 자율등급분류제가 영상산업 및 영상산업법제에 미치는 영향

○ OTT 자율 등급분류 제도 도입의 필요성

-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성장에 따른 비디오물 등급 분류 수요의 폭증
 -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추이 기록에서 비디오물의 등급 심의가 전체 분량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해왔으며, 특히 부가영상에 대한 심의가 2020년에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그림 8] 영화, 비디오물 등급분류 추이(2016~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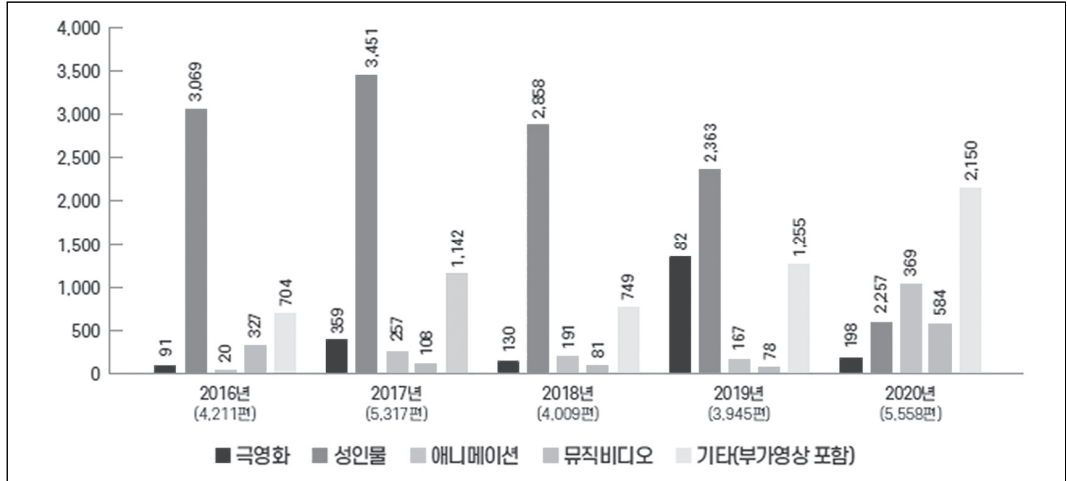
(단위: 편)



출처: 2021 영상물 등급분류 연감

[그림 9] 한국 비디오물 장르별 등급분류 현황(2016~2020년)

(단위: 편)



출처: 2021 영상물 등급분류 연감

- OTT의 성장에 따른 영상 수량의 폭증으로 사전 등급 분류의 물리적 한계 도달
 - 비디오물등급분류소위원회 위원들이 1인당 연간 약 600편의 비디오물 등급분류를 소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물리적으로 한계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음(영상물등급위원회, 2020)
- 자율등급분류제도 도입에 따른 OTT 시장의 영향
 - 영상 유통 전략 자율성 확대를 통한 OTT 사업자 경쟁력 강화
 - 파생 부가 영상 등을 통한 IP 확장 및 연계 소비의 활성화
 - * 본편 콘텐츠 이외의 부가 영상(메이킹 필름 등) 및 홍보 콘텐츠의 적기 유통에 있어서 사업자의 자율성이 높아지게 되어 OTT 서비스의 콘텐츠 라이브러리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음
 - 영상 출시 시기 조절 등을 통한 마케팅 전략의 고도화 가능
 - * 영상 콘텐츠의 시의성을 고려한 공개 전략 및 마케팅 전개가 가능해지면서 일괄 공개 뿐 아니라 순차 공개 등 다양한 콘텐츠 공개 및 마케팅 전략의 수립 및 시행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음
 - 사업자 규모에 따른 OTT 분화의 가능성
 - 자체등급분류 시행을 위해선 관련된 숙련 인력과 전담부서 등을 갖추는 자원 투입이 필요한만큼, 일정 규모 이상의 OTT 사업자 중심으로 제도의 수혜를 받게 됨
 - 산업의 발전 과정에서 온라인 동영상 콘텐츠를 서비스 하는 사업자가 다양하게 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대형 OTT 사업자(자체등급분류사업자)와 기타 중소 규모 OTT 사업자로의 분화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 * 이는 향후 현재의 '지정제'에서 '신고제' 등으로의 규제 완화 등의 정책 논의시, 자체등급분류를 적용할 수 있는 사업자의 적절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영상산업 법제에 미치는 영향

- OTT 관련 실질적 정의 규정을 담은 법안으로서의 영비법의 위상 제고
 - OTT 관련 핵심 제도인 등급분류와 세액 공제를 위한 법제에서 영비법이 중심적 역할을 하게 됨에 따라, 향후 영상 관련 법제 및 거버넌스 개편 논의에서 영비법 체계의 정비와 확장의 중요성이 높아지게 되었음
- 영상 콘텐츠 산업 생태계 규정 방식에 대한 제도 환경 조성
 - 등급분류 중심의 분할 효과: 방송-영화-온라인비디오의 3분할 개념이 성립하게 됨
- 온라인 동영상 콘텐츠를 둘러싼 다부처 협력 구조의 성립
 - 자체등급분류(영비법, 문체부), 세액공제를 위한 사업자 지위(전기통신사업법, 과기부), 콘텐츠 제작사 관련 진흥(문화산업진흥기본법, 문체부) 등의 분할과 상호 참조 구조의 성립에 따라 향후 영상콘텐츠산업 거버넌스에서 부처간 조율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과 이를 위한 법제도의 조정의 필요성이 높아지게 되었음
- 영상 콘텐츠 산업 전반의 재조정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
 - OTT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에 비해 영화 및 방송 산업의 성장세가 둔화하고 위축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OTT 산업 정책 고도화의 필요성은 더 높아질 수 있음
 - 현재의 수직적 규제 체계가 갖는 경직성의 문제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수평 규제 등의 제도 변화의 방향에 대한 요구도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에서, 영상 산업 전반의 법제 및 거버넌스의 혼란을 조율하기 위한 노력의 필요성은 여전히 높다고 할 수 있음

○ 시사점

- OTT 산업의 성장이 촉발한 영상 콘텐츠 관련 법제 및 거버넌스 개편 논의는 2023년 현재 시점에서 자율등급분류 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한 제도 변화와, 이를 위한 영비법의 위상 제고의 결과로 이어졌음
- 이러한 법제 개편 과정에서 영비법 체계의 중요성이 높아졌으나, 해당 법안은 현재 비디오 개념이 가진 취약성 및 확정성의 문제와 사업자 규정의 부재 등 종합적 진흥체계 및 미래 전략의 부재라는 한계를 내재하고 있음
- 특히 현재 다수의 부처가 영비법을 중심으로 복잡한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정책 조정과 협력을 위한 법 체계의 구축을 준비할 필요가 있음
 - 즉, 영상 콘텐츠 산업 환경 변화를 고려한 영화 및 비디오 개념의 재검토와 거버넌스 방향성 모색을 담은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을 위한 법률의 재구성이 필요함

제4장

영화 및 비디오물의
정의의 재구성 방안

20
23

제4장

영화 및 비디오물의 정의의 재구성 방안

I. 영화/비디오물/디지털시네마 정의의 변천과 문제점

- 2006년 영비법 제정시에 영화와 비디오물의 정의가 규정되었고 2008년 영비법 개정으로 디지털 시네마에 대한 정의가 도입된 바 있음
- 영비법은 진흥 중심의 영화법과 규제 중심의 비디오물법이라는 이원적 구조의 법을 이어붙인 형태로 하나의 법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근본적으로 체계정합성 관점에서 문제를 가지고 있음
- OTT의 성장으로 영화의 온라인 유통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영비법 내 영화 정의는 이해관계자들의 인식 속에서 '상영관이라는 오프라인 유통에 한정'되어 있으며, 비디오물 정의는 '통신 장치에 의하여 재생'되는 것으로 불충분하여 온라인 유통을 제대로 포섭하지 못하고 있음
- 법해석적 관점에서 봤을 때, 영화 정의가 '영화상영관 등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 공중에게 관람하게 할 목적으로'라는 주관적 요소가 담겨 있어 이러한 목적만 있으면 상영관에서 상영되지 않아도 영화로 통용될 수 있으므로,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영화로서 등급분류만 받으면 OTT 내 영화 카테고리에서 유통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현행 영화 정의 속 '영화상영관 등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가 현실적으로 작동하지 않음을 의미하므로 개선이 필요함
- 한편 영비법 제정 당시에는 비디오산업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나, 최근 비디오산업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고,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법 적용상의 괴리가 발생할 수 있음
- 즉 현행 영비법은 영화와 비디오물이라는 이원 체계로,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비디오물 진흥체계로 변화하는 미디어 산업에 대응하고 있으므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음

- 디지털시네마에 대한 정의도 마찬가지로 원개념 자체가 온라인 유통 영화를 염두한 것이 아니며, 영비법 내 디지털시네마는 주로 진흥 조항에서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온라인 유통을 포괄하지 못함
- 이에 따라 2022년에 영비법의 개정으로 ‘온라인비디오물’ 개념을 추가하였으나, OTT와 IPTV 등에서 영화, 드라마, 오리지널 콘텐츠 등의 유형으로만 카테고리를 분류할 뿐 비디오물이라는 분류체계는 가지고 있지 않은바, 보다 명확하게 온라인 유통을 포괄하는 개념적 정의가 필요함
- 또한 앞서 살펴봤듯이 현행 영비법 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정의는 유통을 기준으로 분류되어 이미 유통방식이 정의에 반영되어 있음. 그런데 이러한 유통방식은 유통업자에게 부과되는 규제조항에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실상 중복된다고 할 수 있음. 정의 조항에서 유통방식을 규정할 경우 향후 유통방식이 변경될 때마다 정의의 포섭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이를 제외하거나 ‘가능한 포괄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더욱이 이용자들의 영화 이용행태가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이동하면서 향후 온라인 유통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고, 급변하는 미디어 시장에서 새로운 유형의 온라인 영상물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도 제기될 수 있는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영화 및 비디오물에 대한 정의는 변화하는 미디어 산업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없음

II. 영상물 관련 정의의 변천과 시사점

1. 영상산업기본법의 ‘영상물’

- 영상산업기본법 제2조의 1에 ““영상물”이란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테이프·디스크, 그 밖의 유형물(有形物)에 고정되어 그 영상을 기계나 전자장치로 재생하여 보고 들을 수 있거나 송수신할 수 있는 물체(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 맞춰 정의 조항에 대한 개정 요구는 지속적으로 있었으나, 2007년 12월 법문장을 정비한 개정 이후 이뤄지지 않았음

2. 문산기본법의 ‘방송영상물’

- 문산기본법에서는 제2조(정의)의 1에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문화산업”으로 정의하며 이중 영화·비디오물과 관련된 산업, 방송영상물과 관련된 산업, 그리고 디지털문화콘텐츠, 사용자제작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의 수집·가공·개발·제작·생산·저장·검색·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포함시키고 있음
- 동조항 2는 ““문화상품”이란 예술성·창의성·오락성·여가성·대중성(이하 “문화적 요소”라 한다)이 체화(體化)되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형·무형의 재화(문화콘텐츠, 디지털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를 포함한다)와 그 서비스 및 이들의 복합체를 말한다.”고 규정함
- 나아가 다양한 콘텐츠(콘텐츠, 문화콘텐츠, 디지털콘텐츠, 디지털문화콘텐츠, 멀티미디어콘텐츠)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는데, 동조항 3에 ““콘텐츠”란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4에 ““문화콘텐츠”란 문화적 요소가 체화된 콘텐츠를 말한다.”, 5에 ““디지털콘텐츠”란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로서 그 보존 및 이용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디지털 형태로 제작하거나 처리한 것을 말한다.”, 6에 ““디지털문화콘텐츠”란 문화적 요소가 체화된 디지털콘텐츠를 말한다.”, 7에 ““멀티미디어콘텐츠”란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과 관련된 미디어를 유기적으로 복합시켜 새로운 표현기능 및 저장기능을 갖게 한 콘텐츠를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개별 콘텐츠에 대한 정의 조항을 마련함
- 2010년 디지털콘텐츠를 포괄하는 콘텐츠의 개념과 융합콘텐츠 등 새롭게 등장한 분야를 포함하는 콘텐츠산업의 개념을 재정립하고자 제2조의 3, 5, 7 규정을 구체화하려는 방향으로 개정함

3. 방송법의 '방송'

- 방송이라 함은 방송법 제2조(정의)의 1에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공중(개별 계약에 의한 수신자를 포함하며, 이하 “시청자”라 한다)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과 이에 따르는 음성·음향 등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텔레비전방송”, 음성·음향 등으로 이루어진 방송 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라디오방송”, 방송사업자의 채널을 이용하여 데이터(문자·숫자·도형·도표·이미지 그 밖의 정보체계를 말한다)를 위주로 하여 이에 따르는 영상·음성·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데이터방송”(인터넷 등 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경우는 제외), 그리고 이동중 수신을 주목적으로 다채널을 이용하여 텔레비전방송·라디오방송 및 데이터방송을 복합적으로 송신하는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음
- 방송법 역시 기술 발전에 따른 다양한 사업자간 기술결합을 통한 새로운 방송서비스를 법에 포섭하고자 전송방식을 혼합사용하는 서비스를 ‘기술결합서비스로 정의하는 개정 사항을 제외하고는 ‘방송’ 자체에 대한 주요 개정 사항은 없었음

4. IPTV법의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 IPTV법 제2조(정의)의 1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란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등(자가 소유 또는 임차 여부를 불문하고, 「전파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할당받은 주파수를 이용하는 서비스에 사용되는 전기통신회선설비는 제외한다)을 이용하여 양방향성을 가진 인터넷 프로토콜 방식으로 일정한 서비스 품질이 보장되는 가운데 텔레비전 수상기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데이터·영상·음성·음향 및 전자상거래 등의 콘텐츠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방송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나아가 실시간 방송 프로그램이란 동조항 3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 또는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편성하여 송신 또는 제공하는 방송프로그램으로서 그 내용과 편성에 변경을 가하지 아니하고 동시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규정함
- 제정된 이후 정의 조항과 관련된 개정사항 없음

5. 게임산업진흥법의 '게임물'

- ‘게임물’은 게임산업진흥법 제2조(정의)의 1에 ““게임물”이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외되는 것으로서 사형성게임물과 「관광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의 규율대상이 되는 것

(다만, 게임물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는 유기사설(遊技施設) 또는 유기기구(遊技機具)는 제외한다) 그리고 게임물과 게임물이 아닌 것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들고 있다.

- 위에서 제외되는 내용 중 “다만, 게임물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는 유기사설(遊技施設) 또는 유기기구(遊技機具)는 제외한다.”는 규정은 2018년 법률 15637호로 개정된 사항이며, 게임제공업에 설치 가능한 혼합기구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게임물”의 정의에 게임물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는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를 포함하고,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를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를 게임제공업에서 제외하였다

6. 음악산업법의 ‘음악영상물/음악영상화일’

- 음악산업법 제2조(정의)의 6에 ““음악영상물”이라 함은 음원의 내용을 표현하기 위하여 해당 음원에 영상이 포함되어 제작된 것을 말하며 음악의 실연(實演)에 대한 영상물을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동조항 7에 ““음악영상파일”이라 함은 음악영상물이 복제·전송·송신·수신될 수 있도록 전자적 형태로 제작되거나 전자적 기기에 수록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됨
- 2019년 일본식 용어를 우리말로 순화하는 개정을 제외하고는 주요 개정사항 없음

7. 전기통신사업법의 ‘온라인동영상’

-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정의)의 12의2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비디오물 등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부가통신 업무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동조항 14에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업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고 하며 여기에 「저작권법」 제104조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부가통신업무와 문자 메시지 발송시스템을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결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부가통신업무를 규정하고 있음
-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업무 규정은 2011년 법 10656호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부가통신업무 또는 타인 상호 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정보를 저장·전송하거나 전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부가통신업무를 이 법의 적용대상에 포함시켰음
-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는 국내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증가하면서 해당 서비스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2022년 법 18869호로 신설되었음. 그 전까지는 제2조의 12 기간통신업무 외의 전기통신업무를 맡는 “부가통신업무” 조항만 있었음

8. 소결론

- 영상산업기본법의 경우 개정 요구가 있었으나 되지 않았고, 방송법의 경우 통합방송법 등 여러 차례 개정 시도가 있었으나 각 부처간 합의가 되지 않아 개정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임
- IPTV법은 새롭게 나타난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을 정의하고자 2008년에 제정된 법으로 이후 정의 조항과 관련된 주요 개정사항은 없음. 게임산업진흥법과 음악산업법은 분리된 이후 게임물과 음악 영상물에 대한 정의 조항에 유의미한 변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됨
- 다만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은 디지털콘텐츠와 융합콘텐츠 등 새롭게 등장한 분야를 정의 조항에 반영하였으며,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와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새롭게 규정함으로써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함

Ⅲ. 영화·비디오물 통합정의 재구성 방안

1. 영화+비디오물의 이원체계 통합의 필요성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률명에서 볼 수 있듯이 제정 연혁과 체계에서 영화 + 비디오물이라는 이원체제로 구성되어 있어 급변하는 미디어환경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여 영비법과 미디어산업과의 괴리를 노정시키는 문제가 제기되었음
- 영화 + 비디오물 이원체계는 영화와 비디오물이 대등한 산업 구조라는 전제가 있어야 하나 산업 현장에서는 비디오산업이 붕괴한 상태이며 OTT 산업의 경우 법적으로는 온라인비디오물로서 비디오산업에 한 부분으로 볼 수 있으나 산업 현장에서는 비디오산업이 아닌 별개의 영상산업으로 인식되고 있어 영화 + 비디오물 이원체계는 현실적으로 작동하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영화 + 비디오물의 이원체제로 인하여 미디어산업의 환경변화에 대하여 사실상 작동되지 않는 비디오물 진흥체제로 대응하고 있어 영비법-영화진흥위원회 체제에 의한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 노정
- 2006년에 영비법 제정의 연혁을 분석해 볼 때 영화진흥법과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의 관한 법률」로 이원화되어 있는 영상산업 체계를 하나의 법률로 정비하여 일원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정책방향이 제시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입법 작업을 위한 시간적 제약 등으로 하나의 법률에 이원체계를 유지하는 잠정적인 결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후에 디지털시네마의 정의 도입 이외에는 잠정적인 조치라 할 수 있는 영화 + 비디오물의 이원체계의 문제 해결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관점에서 2006년 영비법 체제의 완결을 해야 할 과제가 있음
- 비디오산업은 독자적인 영상산업이라기 보다는 영화산업의 가치사슬의 한 부분으로서 한 부분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영화의 유통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의 산업구조를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어 영화 + 비디오물의 이원체계는 이원 개념의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새롭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

2. 유통방식 중심의 정의에서 콘텐츠 중심의 정의로 전환 과제

- 2006년 영비법에서 도입된 영화와 비디오물 정의는 동일한 영상물에 대해서 유통방식의 차이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정의하였다고 볼 수 있음.
 - 영화의 경우는 '영화상영관 등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 공중에게 관람하게 할 목적으로'
 - 비디오물의 경우는 '기계·전기·전자 또는 통신장치에 의하여 재생되어'
- 영화의 경우 사회적·산업적으로 영화로 인식되는 영상물이 영화상영관에서의 상영을 벗어나는 경우에 영화일 수 있는가에 관한 인식의 혼선이 제기될 수 있음

- 법해석의 관점에서는 영비법 제2조의 영화 정의가 ‘영화상영관 등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 공중에게 관람하게 할 목적으로’라 하여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소를 정의에 추가함으로써 제작자의 목적만 있으면 정의 요건을 충족하고 현실적인 상영을 요건으로 하지 않게 되어 있어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되지 아니한 영상물도 영화로 통용되고 있는 현실
- ‘영화상영관 상영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소는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현실적으로는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영화 등급분류를 받았는가를 기준으로 영화 여부를 판단함. 따라서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되지 않았다 해도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영화 등급분류를 받았으면 IPTV나 OTT에서 영화 카테고리에서 유통됨.
- 따라서 산업 현장에서는 영화 정의 조항의 모호함에도 불구하고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라는 객관적 표지가 기능하여 영화 해당 여부에 대한 (학술적인 측면에서 논란은 별론으로 하고) 실질적인 혼선이 문제되지는 않음
- 이는 ‘영화상영관 등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가 뜻하는 유통방식이라는 영화의 법적 표지가 현실적으로 작동하지 않음을 의미
- 비디오물은 ‘기계·전기·전자 또는 통신장치에 의하여 재생’이라는 표지를 통해 디스크 등의 저장매체로 담겨 재생기기를 통해 시청되거나 통신장치라는 표지를 통해 정보통신망을 통해 시청에 제공되는 유통방식을 포괄하나 IPTV나 OTT와 같은 현실 유통채널에서는 영화/방송드라마/오리지널콘텐츠와 같은 형태로 카테고리를 설정하고 비디오물이라는 카테고리를 적용하지 않고 있음
 - 비디오물은 법적 용어로만 존재할 뿐 산업현실에서는 작동하지 않은 사실상 사문화된 법률용어라 할 수 있음
 - 2022년 영비법 개정으로 ‘온라인비디오물’이라는 용어가 도입되어 비디오물이 용어 자체는 유지되었으나 기능적으로는 비디오물이라는 포괄적인 범주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음
 - 사회적·산업적 인식으로 볼 때 온라인 영상물을 포괄하는 또는 현행 법률의 규정에 부합하는 광의의 의미로 비디오물이라는 용어가 받아들여지기 보다는 디스크 등의 저장매체에 담긴 영상물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이와 같은 한정된 의미의 저장매체 영상물은 유통규모로 볼 때, 비록 과거에는 그러하지 않았다 해도, 독립된 법적 표지를 부여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음
- 현행 영비법의 규제체계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는 영화 또는 비디오물이라는 콘텐츠에 부과되는 등급분류 의무, 둘째로는 영상물 유통업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영화상영관 경영자에게 부과되는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수납의무, 영화상영관입장권통합전산망 가입의무, 한국영화 상영의무와 비디오물 시청제공업자에게 부과되는 준수사항이 규정되어 있음
 - 영화 및 비디오물이라는 콘텐츠 형태는 등급분류 의무에만 영향을 미치는데, 영화 및 비디오물 등급 분류가 현행 영비법에서 별도의 조문체계로 영화 등급분류(제29조~제33조)와 비디오물 등급분류

(제50조~제56조)로 구분되어 있으나 조문의 내용은 동일하며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두 제도를 함께 운영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별개의 제도라고 보기 어려움.

※ 2022년 영비법 개정으로 도입된 온라인비디오물 자체등급분류제도가 등급분류 주체가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아니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인 만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의한 등급분류와 서로 다른 성격의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현행 영비법은 영화 등급분류, 비디오물 등급분류, 온라인비디오물 자체등급분류라는 세 종류의 등급분류 체계를 하나의 법률에 규정하는 법체계의 문제가 있음.

- 영상물 유통업자에게 부과되는 영비법상의 규제체계를 보면, 유통업자의 개념에 유통방식이 이미 반영되어 있어 영화 및 비디오물 정의 조항에서 유통방식을 중복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은 없다고 할 수 있음. 즉 영화·비디오물 정의(→ 유통방식) + 유통업자 정의(→ 유통방식)의 입법체계에서 영화·비디오물 정의 + 유통업자 정의(→ 유통방식)으로 전환해도 규제체계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볼 수 있음. 즉 현행 규제체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유통방식을 없애거나 확장하는 형태의 통합정의를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음
- 유통방식을 콘텐츠 정의에 포함시키는 현행 입법형식을 유지하면 유통방식이 변경될 때마다 정의의 포섭 범위가 문제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유통방식을 포함시키지 않거나 특정 유통방식이 아니라 포괄적인 범위의 유통방식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유통방식을 콘텐츠 정의에 포함하지 않는 방식은 다른 콘텐츠와 구별하는 표지를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따라서 유통방식을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인 방식으로 규정하여 유통방식의 변화가 미치는 영향이 사실상 없도록 하여 법적 효과에 있어 유통방식이 규정되지 아니한 것도 같은 결과가 나오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3. 영화·비디오물의 통합 정의로서 영화 정의의 재구성 [1안]

- 비디오물을 영화산업의 가치사슬의 하나라는 관점에서 볼 때 영화에 대한 포괄적 정의로 비디오물을 흡수시켜야 하는데, 유통방식을 제외하면 영화와 비디오물을 나누는 객관적 표지가 없다고 볼 수 있어 영화 중심으로 두 정의를 기계적으로 통합하는 접근을 할 수 있음
- 영화와 비디오물 정의의 차이점은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저장매체의 차이인데 ‘필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에 담긴’과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나 장치에 담긴’으로 구분되며 둘째는 유통과 재생방식의 차이로 ‘영화상영관 등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와 ‘기계·전기·전자 또는 통신장치에 의하여 재생되어’로 구분되고 셋째는 커뮤니케이션 유형으로 영화는 ‘공중에게 관람하게 할 목적으로’라 하여 주관적 요소가 포함되어 규정되어 있고, 비디오물은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이라 하여 객관적 요소로 규정되어 있으며 넷째로 제외사항이 영화에는 없으나 비디오물은 게임물과 영화가 수록되어 있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한 것이 제외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음

개념요소	영화정의	비디오물 정의	통합정의 방안
영상	연속적인 영상이	연속적인 영상이	연속적인 영상이
저장매체	필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에 담긴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나 장치에 담긴	필름 또는 디지털매체에 담긴
저작물	저작물로서	저작물로서	저작물로서
유통방식	영화상영관 등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	없음	영화상영관 등에서
재생수단	없음	기계·전기·전자 또는 통신장치에 의하여 재생되어	판매나 대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커뮤니케이션 유형	공중에게 관람하게 할 목적으로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상영하거나 [...] 시청에 제공할 수 있도록
제작	제작한 것	제작된 것	제작된 것
제외사항	없음	게임물	게임물
		영화가 수록되어 있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한 것	영화가 수록되어 있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한 것

- 첫째 차이는 저장매체인데 ‘디스크 등의 디지털매체’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고 영화는 ‘필름’과 비디오물에는 ‘테이프’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비디오물에는 ‘디지털 매체나 장치’라 하여 장치가 부가되어 있음. 원칙적인 측면에서 보면 유통방식과 마찬가지로 법적 정의로 저장매체라는 기술적 요소를 추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할 수 있음. 기술적 요소가 변경될 경우 다시 입법을 해야 하거나 이전 기술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적 정의가 기능을 하지 않는 문제가 있기 때문.
 - 콘텐츠 정의에 있어 저장매체를 규정하는 것은 입법적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그것이 콘텐츠의 특유성을 구분하는 사회적 지표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법적 정의에 포함될 수 있음. 다만 저장매체가 (방송의 법적 정의와 같이) 특정 기술방식으로 한정되는 경우에는 저장매체의 특유성을 통한 콘텐츠의 인식표지로는 명확해 질 수 있으나 기술변화를 반영하지 못하여 법적 정의의 현실 작동이 어렵게 하는 작용을 할 수도 있음. 따라서 저장매체라는 기술적 방식에 대한 입법방식은 이를 포함하지 않는 원칙적 방안과 기술적 방식의 변화의 영향이 거의 없을 정도로 포괄적인 방식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영화 저장매체의 특유한 규정은 ‘필름’이고 비디오물은 ‘테이프’인데 양자는 디지털 매체와 ‘또는’이라는 선택부사로 연결된 것으로 볼 때 (디지털 매체가 아닌) 아날로그 매체로서의 필름과 테이프가 규정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현재의 저장 매체의 전부를 의미하며 대부분이 디지털 매체라는 점을 고려하면 아날로그 요소는 현실적 의미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으나 영화 또는 비디오물을 사회적으로 인식하는 표지로 사용될 수 있음. 테이프는 비디오물을 인식하는 표지로 사용되었으나 현실적으로 디지털과 구분되는 아날로그 매체인지가 명확하지 않고 비디오물이 문화적 매체로 인식되지 않는 만큼 테이프가 문화적인 인식 기능을 하는 것도 아니므로 통합 정의에서 이를 유지할 필요성은 적다고 할 것임. 필름의 경우 아날로그 매체임이 명확하고 비록 현재는 필름을 이용하여 영화를 촬영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해도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영화를 사회적 인식하는 표지로 통합정의에서 디지털 매체와 ‘또는’으로 연결된다는 전제에서 이를 규정할 수 있음

- 공통요소인 ‘디스크 등의 디지털매체’를 볼 때 ‘디스크 등’의 예시 부분이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이 가능한데, 현재는 디지털매체가 일반화되어 있는 만큼 예시를 할 필요성이 없으며 ‘디스크 등’도 이미 확립된 방식이고 지금은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저장매체가 나오는 만큼 별도의 예시는 불필요하며 오히려 해석의 폭을 한정하는 기능을 할 우려가 있음.
- 비디오물 정의에서 매체 이외에 ‘장치’를 규정하는데, 저장매체와 재생장치를 구분하는 전제에서 출발했다고 볼 수 있는데, 영화 정의에서 영상장치를 규정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재생장치가 정의 요소로 규정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음. 자기테이프-기계식 재생장치라는 관점에서 매체와 구분되는 ‘장치’를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방식은 현재 사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고 자기테이프의 기록방식도 넓은 의미의 디지털매체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볼 때, 통합 정의에서 장치가 별도로 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할 수 있음
- 정리하면 통합정의에서 저장매체에 대해서는 포괄적 방식으로 규정하는 방안으로 하여 ‘필름 또는 디지털매체에 담긴’으로 규정하는 방안으로 함
- 둘째 차이는 유통방식과 재생방식을 다르게 규정한 것인데 영화는 ‘영화상영관 등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라 하여 유통방식이 규정되어 있고 비디오물은 ‘기계·전기·전자 또는 통신장치에 의하여 재생되어’라 하여 재생방식이 규정되어 있음. 영화는 영화상영관 등이라는 유통방식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비디오물은 재생방식을 규정하여 유통방식에 대해서는 직접 언급하지 않고 있어 재생방식에 따라 유통방식이 달라질 수 있음
 - 콘텐츠 정의에 있어 유통방식 또는 재생방식을 규정하는 것은 입법적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그것이 콘텐츠의 특유성을 구분하는 사회적 지표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법적 정의에 포함될 수 있음. 다만 유통방식 또는 재생방식이 특정 방식으로 한정되는 경우에는 유통방식 또는 재생방식의 특유성을 통한 콘텐츠의 인식표지로는 명확해 질 수 있으나 유통방식 또는 재생방식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여 법적 정의의 현실 작동이 어렵게 하는 작용을 할 수도 있음. 따라서 유통방식 또는 재생방식에 대한 입법방식은 이를 포함하지 않는 원칙적 방안과 유통방식 또는 재생방식 변화의 영향이 거의 없을 정도로 포괄적인 방식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영화는 ‘영화상영관 등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이라 하여 특정한 유통방식을 규정하고 있는데 영화의 사회적 인식 표지로 영화상영관에서의 상영이 작동하고 있는 만큼 영화의 구별표지이기도 하지만 영화 관념이 영화상영관 상영으로 한정되어 영화상영관 상영 이외의 방식으로 유통되는 영화를 포섭하지 못한다는 문제로 인해 영화산업 발전의 장애 요소로 인식되는 만큼 유통방식을 영화상영관 상영 외로 확장하는 것을 통합정의의 핵심 과제라 할 수 있음. 다른 유통방식도 규정한다는 전제에서 영화상영관 상영을 규정한다고 하면 현행 규정보다 정리한 요건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영화상영관은 현행 영비법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영화를 상영하는 장소 또는 시설”이라 정의되어 있으므로 ‘장소 또는 시설’을 별도로 규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다만 영화를 상영하는 장소 또는 시설은 영화상영관 이외에도 비상설상영관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비상설상영관을 포섭하기 위해서 현행

규정과 같이 ‘영화상영관 등에서’이라 규정하는 것이 타당.

- 비디오물은 유통방식을 규정하지 않고 ‘기계·전기·전자 또는 통신장치에 의하여 재생되어’라 하여 재생방식을 규정하고 있음. 재생은 유통과 구분되는 관념인데, 영화에서 영사방식을 규정하지 않는 것처럼 콘텐츠가 재생되는 방식을 제한하는 것은 적절한 입법방식이라 보기는 어려움. 그 보다는 재생방식이 유통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이를 유통방식으로 전환하여 규정하는 것이 적절함. 재생방식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기계식 재생 장치를 기준으로 하여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되지 않은 오프라인 방식의 매장 유통과 통신 재생 장치를 기준으로 하여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된 온라인 유통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오프라인 방식의 유통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저장매체에 담긴 영상물을 영업장에서 판매하거나 대여하는 방법으로 유통하는 것을 의미함. 판매 및 대여 매장은 영화상영관과 같이 특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언급할 필요는 없으므로 ‘판매나 대여’라는 행태만을 규정하는 족함. 온라인 유통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로 규정할 수 있음
- 정리하면 유통방식에 대해서 포괄적인 규정 방안을 선택하면 통합정의에서 ‘영화상영관 등에서 [...] 판매나 대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로 규정할 수 있음
- 셋째 차이는 커뮤니케이션 유형으로 영화는 ‘공중에게 관람하게 할 목적으로’로 규정되어 있고, 비디오물은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으로 되어 있음. 영화 정의는 상영이라는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소가 있어 콘텐츠 정의로서 적정한 것인가에 대한 비판이 있어 왔고, 비디오물은 주관적 요소 없이 시청이라는 객관적 요소만을 규정하고 있음
 - 커뮤니케이션 유형으로 볼 때 상영은 현행 영비법 제2조에서 ‘영화를 공중에게 관람하게 하는 행위’로 정의되어 있는데, 공중은 불특정 다수를 의미하고 관람하게 한다는 것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일대다(一對多)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비디오물의 유통방식인 판매나 대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은 특정 시청자를 기준으로 일대일(一對一) 커뮤니케이션을 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통합 정의에서는 양자가 모두 가능한 것으로 커뮤니케이션 유형 또는 방식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법률용어로 볼 때 ‘시청’은 개인 또는 가족 단위의 미디어인 방송에 사용하며, 인터넷 또는 정보통신망 매체는 ‘이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인터넷 또는 정보통신망 매체도 일대일 커뮤니케이션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시청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음. 예를 들어 2022년 영비법 개정에서 온라인비디오물 정의가 새로 도입되었는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시청에 제공될 수 있도록”이라 하여 시청에 제공이라는 점을 규정한 바가 있어 이를 기반으로 일대다 커뮤니케이션에는 ‘상영’을, 일대일 커뮤니케이션에는 ‘시청’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음. 현행 비디오물 정의에는 ‘보고 들을 수 있도록’이라 하여 시청이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규정한 것은 방송과의 구별 때문이었다고 추론할 수 있으나 이미 온라인비디오물 정의에서 ‘시청에 제공’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만큼 통합정의에서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음. ‘시청’과 ‘시청에 제공’의 차이는 행위주체의 관점에서 비롯된 것인데, 시청은 시청자가 하는 것이고

시청에 제공하는 것은 시청하게 하는 자가 주체임. 영화나 비디오물은 제작한 것 또는 제작된 것으로 주체가 제작자인데 제작자의 관점에서는 시청자가 아니므로 시청하는 것이 아니라 시청자가 시청할 수 있도록 영화나 비디오물을 제공하는 것임. 따라서 통합정의에서는 ‘시청에 제공’으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함

- 현행 영비법의 영화 정의에는 ‘공중에게 관람하게 할 목적으로’라 하여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소가 규정된 점이 다른 콘텐츠의 정의와 다른 특이점이라 할 수 있음. 일반적으로 목적과 같은 주관적 요소가 법적 정의에 있는 경우 주관적 요소만으로 요건이 충족되므로 현실과 법적 정의와의 괴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공중에게 관람하게 할 목적으로’를 해석할 때 ‘제작한 것’이라는 규정에서 미루어 볼 때 영상물 제작자의 주관적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주관적 목적에 따라 영화에 해당 여부가 결정되어 불안정한 상태일 수밖에 없어 법적 정의로는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움. 2006년 제정 영비법에서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소를 규정한 것은 영화상영관 상영이라는 유통방식으로 표지를 삼았으나 현실적으로 영화로 인식되는 영상물 모두가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될 수 없기 때문에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되지 아니한 영화도 법적 정의로 포섭하기 위한 것이라 추론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제작자의 영화상영관 목적이 있으면 영화로 포섭되고 주관적 목적은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영화로 등급분류 신청을 하고 비록 영화상영관에서의 상영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영화 등급분류 번호를 부여받았다는 점에서 산업현장에서 영화의 객관적 표지를 삼는 관행이 형성되어 왔음. 통합정의에서는 영화상영관 상영 이외의 유통방식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소를 규정하여 법적 정의를 불안정하게 할 필요가 없으므로 통합정의에서는 목적으로 규정하지 않음. 비디오물 정의에서는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이라 하여 주관적 요소를 규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통합 정의는 비디오물 정의의 태도를 기준으로 한다고 볼 수 있음
- 영화의 ‘제작한 것’과 비디오물의 ‘제작된 것’이라는 표현의 차이는 주체의 시각에서 연유된 것임. 즉 ‘목적으로’라는 주관적 요소가 요건에 포함된 영화는 제작자의 주체적 관점이 능동태로 표현되었고, 주관적 요소가 요건에 없는 비디오물 정의에서는 제작자의 주체적 관점이 숨은 전제로서 명시적으로 표출되지 않았으므로 수동태로 표현된 것으로 볼 수 있음. 문법적으로 본다면 주어가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수동태의 표현이 적절해 보임. 통합 정의에서는 주관적 요소를 포함하지 않고 주어가 명시적으로 표현되지 아니하므로 비디오물의 정의와 같이 ‘제작된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 타당.
- 정리하면 커뮤니케이션 유형에 관하여는 ‘상영하거나 시청에 제공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것’으로 규정할 수 있음
- 넷째 차이는 제외사항에 대한 것인데 영화는 제외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비디오물은 게임산업법에 따른 게임물과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한 것이 제외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음
 - 게임산업법에 따른 게임물이 비디오물의 제외사항으로 규정된 것은 같은 법 제2조에서 정한 게임물의 정의가 “오락할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로 되어 있기 때문인데, 영상물이라는 점에서 비디오물로 혼용될 가능성이 있어서

비디오물 정의에서 제외된 것임. 비디오물은 단순히 시청을 위해서만 제공되는 것임에 비해 게임물은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시청에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즉 게임물에도 시청이라는 행위가 필수적으로 수반되지만 — 그래서 비디오물로 혼동될 가능성이 있지만 — 단순히 시청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물을 이용하게 오락을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게임물의 이용자는 플레이를 위해서 게임물을 ‘도구’로 사용함. 플레이어의 행위가 개입한다는 점에서 게임물과 단순한 시청행위만이 있는 비디오물과 구별될 수 있음. 게임물도 사전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는 만큼 게임 등급분류인가 아니면 비디오물 등급분류인가의 차이가 있을 뿐 동일한 규제체계에 있다고 할 수 있음. 통합 정의로 간다고 해도 게임물을 제외하는 것은 그대로 유지될 필요가 있음.

- 두 번째 제외사항은 사전 등급분류 체계와는 관련이 없는 부처 간의 관할 쟁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데 컴퓨터 프로그램을 관할하는 부처에서 영상물이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한 것일 때는 비디오물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할 것을 요구한 것이 반영된 것으로 추론할 수 있음. 이는 비디오물의 재생이 자기테이프-기계식 재생장치로 한정되어 있는 시절을 반영한 것인데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매우 협소하게 인식한 것이라 볼 수 있음. 현재에는 컴퓨터 프로그램 없이 순전히 기계식 장치라는 것을 상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데, 컴퓨터 프로그램을 넓은 의미로 접근하는 관점에서 보면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한 것을 제외한다면 사실상 비디오물의 전부가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거의 대부분의 비디오물이 비디오물에서 제외되면 불합리한 결론에 이르게 됨. 현행 영비법의 비디오물의 정의에서는 제외사항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한 것이라 하고 이를 다시 ‘영화가 수록되어 있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라고 한정하고 있음. 현행법에서 영화는 ‘영화상영관 등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 공중에게 관람하게 할 목적으로 제작한 것’이라 정의되는데,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될 것과 상영되지 않더라도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소로 인해 상영할 목적만 있으면 요건을 충족하므로 사실상 비디오물을 포함하기 때문에 영화가 사실상의 영화 + 비디오물을 의미하기 때문에 [영화 + 비디오물]이 수록되어 있지 아니한 것의 범위는 영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고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한 것(영화가 수록되어 있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를 비디오물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영상물이 수록되지 아니한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한 것을 제외한다는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제외의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음. 영상물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는 것이므로 제외의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는데 통합 정의로 한다고 해도 동일하게 볼 수 있음. 현실적으로 제외의 의미가 없으므로 통합정의로 규정하지 않는 방안이 있을 수 있으나 통합 정의에서 기존의 제외사항을 빼고 하면 그것이 갖는 실질적인 의미에도 불구하고, 제외사항을 빼서 통합정의를 범위를 현행법보다 확장하려 한다는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동일한 문구로 해서 통합 정의에도 제외사항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영화와 비디오물의 통합 정의로서 영화를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음

“영화”란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 또는 디지털매체에 담긴 저작물로서 영화상영관 등에서 상영하거나 판매나 대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시청에 제공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을 말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의한 게임물
- 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한 것(영화가 수록되어 있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통합 영화 정의를 도입하면 현행 영화와 비디오물 정의 조항은 삭제하며 통합 영화정의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시청제공’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온라인비디오물 정의도 삭제할 필요가 있음. 다만 온라인비디오물 정의가 타법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비디오물이라는 명칭을 유지할 수는 없겠으나 보완 개념으로 온라인영상물 또는 온라인영화와 같은 새로운 개념을 유지할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현행 디지털시네마 개념은 디지털영사방식으로서의 전환이 완료되었다는 점에서 정의도입의 효용이 다하였고 통합 영화정의와 온라인영상물 등의 정의와 혼선을 빚을 우려가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

○ 통합 영화 정의의 도입과 관련할 때 개념구성 차원에서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은 방송과의 구별의 문제임. 방송 쪽에서 시청각미디어서비스라는 접근을 하고 있고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라는 개념이 있는 만큼 이와의를 관계를 조정하고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콘텐츠라는 측면에서 볼 때 영화·비디오물과 방송은 구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동영상 형식이라 할 수 있음. 따라서 그 구별은 미디어 방식으로 구별되는데, 상영과 방송이 공중에게 관람하게/시청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영화상영관과 텔레비전 수상기라는 점에서 명확한 구별표지가 있음. 현행 영비법의 영화는 ‘영화상영관 등에서’라는 유통방식을 구별표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방송에서도 방송내용물인 방송프로그램을 방송편성의 단위가 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방송과 영화 양자는 콘텐츠+미디어방식이 결합된 개념이나 그 결합은 약해지고 있으며, 영화도 온라인상영과 같은 유통방식이 도입되고 있고 방송도 지상파·케이블·위성을 넘어서는 인터넷을 방송으로 확장되고 있어 통합 영화 정의를 논의할 때 방송 쪽에서의 반대 의견을 예상할 수 있음.
-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영화 정의에서 방송을 제외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는데 방송과 영화의 차이가 미디어 방식의 차이라고 하고 방송 프로그램의 정의도 방송 편성이 핵심징표라고 한다면 콘텐츠 중심의 통합 영화 정의에 미디어 편성을 기반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을 제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할 수 있음. 게임물은 플레이어의 행위로 인하여 다른 내용의 콘텐츠가 개별 플레이어 별로 새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시청자 또는 관객에서 동일한 내용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영화·비디오물과 콘텐츠 차원에서 구별될 수 있으나 시청자에게 동일한 내용의 콘텐츠는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방송과 영화·비디오물과 동일하므로 콘텐츠 기반의 통합 영화 정의에서 방송을 제외하면

편성이라는 방송사의 자의적 행위 또는 편성의 기술적 방식의 변화에 따라 방송프로그램의 지나치게 확장될 우려가 있으며 통합 영화 정의의 범위가 의도하지 않게 축소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방송과 영화의 차이가 미디어 기술의 차이라는 점에서 접근하는 방안을 검토하면,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의 법적 정의가 ‘공중에게 송신하는 것’이라 되어 있고 이는 영비법의 상영 정의인 ‘공중에게 관함하게 하는 행위’에 맞닿아 있다고 점에서 착안할 수 있음. 즉 방송프로그램과 영화가 콘텐츠 측면에서는 구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지만 미디어 방식인 일대다 커뮤니케이션 유형으로서 중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음. 커뮤니케이션의 유형으로서의 중복만을 고려한다면 현행 영비법 제2조에서 상영을 ‘영화를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방송이 ‘방송프로그램을 공중에게 송신하는 것’이라 정의된다는 점에서 중복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상영’의 정의에서 단서로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은 제외한다.’를 추가하여 통합 영화 정의의 도입으로 인한 방송과의 영역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음. 방송은 ‘송신하는 것’이므로 그 자체가 행위이므로 방송하는 행위가 아니라 방송이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 입법형식임. 영화 정의가 아니라 영화의 ‘상영’에서 방송을 제외하는 것은 영국 영화법의 태도이기도 함. 통합 영화 정의가 아니라 상영에서 방송을 제외하면 콘텐츠 자체의 범주는 그대로 놓고 없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방식에서만 제한을 하는 것이므로 통합 정의에서 규정된 영화상영관 등 상영/판매대여를 통한 시청제공/정보통신망을 통한 시청제공의 골격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며 영화상영관 ‘등’에서 이를 방송이 포함된다고 보고 상영이 공중에게 송신을 의미한다고 하여 통합 영화 정의가 방송을 포함한다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음
- 하지만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을 송신하기 위해서는 지상무선국, 종합유선방송국, 인공위성 무선국을 기반으로 하는 방송사업을 해야 하므로 비록 일대다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있어서 통합 영화 정의와 중복될 수 있다고 해도 영화상영관 등 상영/판매대여를 통한 시청제공/정보통신망을 통한 시청제공이라는 유통방식에서 명확하게 구별될 수 있기 때문에 방송과 통합 영화 정의간의 실질적 중복의 문제가 발생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음
- 전기통신사업법의 온라인동영상서비스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비디오물 등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역무’로 정의되는데, 통합 영화 정의가 도입되는 경우 온라인동영상서비스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영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영화 등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역무’로 수정될 수 있음. 통합 정의에 따르면 영화가 정보통신망으로 시청에 제공될 수 있는 만큼 온라인동영상서비스의 동영상 콘텐츠의 예시로 영화가 언급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비디오물 보다 영화가 예시되는 것이 보다 산업현실에 부합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현행 영비법에는 영화 또는 비디오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시청에 제공하는 영업에 대한 별도의 법제도가 없음. 영화상영업은 영화상영관에 영화를 상영하는 영업이고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은 영업장을 통한 시청제공 영업만이 규정되어 있어서 정보통신망을 통한 시청 제공업은 자유업으로 영비법의 규율의 대상이 아님. 그런데 통합 영화 정의에 따른 영화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시청에 제공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부가통신사업의 신고를 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 신고를 접수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고를 접수받은 후 3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함. 따라서 통합 영화 정의로 간다고 해도 영화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시청에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문체부장관에게 통보하면 문체부장관은 통보받은 부가통신사업자를 기반으로 영화 시청 제공업자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영비법 개정방안에서 영화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시청에 제공하는 영업에 대한 신고제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이중신고 문제가 발생하여 부처 갈등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음.

○ 통합 영화 정의에 대한 장·단점 분석

- <통합 정의의 장점> 첫째, 현행법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정의를 분석하여 동일한 범주로 구성하였기 때문에 영화 + 비디오물의 통합 정의일 뿐 영비법에서 규정한 범위 이상으로 확장한 것이 없으므로 다른 법률 또는 부처와 제도적인 차원에서의 갈등이 최소화할 수 있음
- 둘째, 산업으로서 붕괴되었다고 할 수 있는 비디오산업을 영화산업으로 통합시켜 일원화한 정의를 사용함으로써 법제도와 산업과의 괴리를 해소할 수 있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음
- 셋째, 성장하는 OTT 산업의 오리지널 콘텐츠를 영화로 포섭하여 영화의 외연 확장 및 영화산업의 발전에 기여 및 영화와 영화 아닌 것의 경계를 뛰어 넘어 미디어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새로운 영화 개념 제시
- 넷째, 영화 및 비디오물의 통합정의를 제시와 이를 통한 영비법의 재구성으로 법체계에 노정된 이중구조의 해소를 통한 법제도 발전에 기여
- <통합 정의의 단점> 첫째, 영화에 대하여 보수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영화의 범위가 확장되어 영화 아닌 것을 영화에 넣는다는 비판이 나올 가능성이 있음. 둘째, 비디오물사업자가 거의 붕괴했다고 해도 성인 비디오물업자 등이 소수로 남아 있는데, 이들이 영화사업자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경우 영화사업자들이 반대할 우려가 있음. 셋째, 상영에서 방송을 제외하는 등의 보완이 있다 해도 비디오물을 영화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 영화가 문화체육관광부의 고유 업무라는 사회적 인식으로 인해 부처 영역 확장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음.

○ 통합 영화 정의 도입에 따른 영비법 조문 개편방안

- 통합 영화 정의를 도입하면 법률명에서 비디오물을 삭제해야 하므로 법률 명칭이 '영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수정. 이전 법률명에 영화진흥법이 있었으므로 이와 같이 표현하는 것이 적절
- 통합 영화 정의 도입은 비디오물 제도의 폐지를 의미하므로 이에 관한 조문의 변경요강은 아래의 표와 같음

- 현행 영비법의 규제체계는 콘텐츠에 대해서는 등급분류의무를 부과하고 유통업자인 영화상영관 경영자에 대해서는 상영관입장권부과금 징수의무, 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가입의무, 영화상영 신고의무, 한국영화 상영의무를 부과하고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에게는 준수사항을 부과하므로 통합 영화 정의를 도입한다고 해도 등급분류의 조항의 통합을 제외하고는 규제체계의 변화가 없음. 다만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는 영화시청제공업자로 명칭 변경.

〈표 1〉 통합 영화 정의에 따른 영비법 조문 개편 방안

법률명		영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조문	내용	조문수정	개편방안
1	목적	조문수정	비디오물 삭제
2	정의		
	1. 영화	조문수정	통합 영화 정의
	2. 영화산업	현행유지	
	3. 한국영화	현행유지	
	4. 공동제작 영화	현행유지	
	5. 애니메이션 영화	현행유지	
	6. 소형영화	현행유지	
	7. 단편영화	현행유지	
	8. 상영	현행유지	
	9. 영화업자	조문수정	비디오물업자 조항과 통합
	10. 영화상영관	현행유지	
	11. 제한상영관	현행유지	
	12. 비디오물	삭제	통합 영화 정의에 흡수
	12-2. 온라인비디오물	삭제	통합 영화 정의에 흡수
	13. 비디오산업	삭제	영화산업에 흡수
	14. 비디오물제작업	삭제	영화업자에 흡수
	15. 비디오물배급업	삭제	영화업자에 흡수
	16. 비디오물시청제공업	조문수정	영화시청제공업으로 수정
	가. 비디오물감상실업	조문수정	영화감상실업
	나. 비디오물소극장업	조문수정	영화소극장업
	다.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업	조문수정	제한관람가영화소극장업
	라. 복합영상물제공업	조문수정	명칭유지
	마. 그밖의 비디오물시청제공업	조문수정	그밖의 영화시청제공업
	17. 비디오물영업자	삭제	영화업자에 흡수
	18. 청소년	현행유지	
	19. 디지털시네마	삭제	

법률명		영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조문	내용		개편방안
	20. 내용정보	조문수정	비디오물 삭제
	21. 영화근로자	현행유지	
	22. 영화업자단체	현행유지	
	23. 영화근로자조합	현행유지	
3	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현행유지	
3-2	영화노사정협의회	현행유지	
3-3	표준보수에 대한 지침	현행유지	
3-4	근로조건의 명시	현행유지	
3-5	표준계약서의 사용 및 확산	현행유지	
3-6	안전사고로부터의 보호	현행유지	
3-7	성폭력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현행유지	
3-8	직업훈련의 실시	현행유지	
3-9	임금체불 등의 제재	현행유지	
3-10	실태조사	현행유지	
4	설치	현행유지	
5	법인격	현행유지	
6	정관	현행유지	
7	등기	현행유지	
8	영화진흥위원회의 구성	현행유지	
9	위원장의 직무 등	현행유지	
10	위원의 임기	현행유지	
11	삭제		
12	위원의 결격사유	현행유지	
12의2	관여 금지	현행유지	
13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현행유지	
14	영화진흥위원회의 기능	조문수정	비디오산업진흥정책의 추진 삭제
15	의결정족수	현행유지	
16	회의공개 등	현행유지	
17	소위원회 등	현행유지	
18	예산편성 등	현행유지	
19	감사	현행유지	
20	사무국	현행유지	
21	영화진흥위원회규정의 제정과 개정 등	현행유지	
22	국고지원	현행유지	

법률명		영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조문	내용		개편방안
23	기금의 설치 등	현행유지	
24	기금의 조성	현행유지	
25	기금의 용도	조문수정	비디오산업 삭제
25의2	부과금의 징수	조문수정	비디오산업 삭제
25의3	성과의 평가	현행유지	
26	영화업자의 신고 등	현행유지	
27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	현행유지	
28	영화의 공급 및 유통	현행유지	
28-2	영화업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현행유지	
28-3	영상물 촬영을 위한 지원	현행유지	
28-4	영상위원회	현행유지	
28-5	국제영화제	현행유지	
29	상영등급분류	현행유지	비디오물 등급분류 흡수
30	삭제		
31	상영등급의 재분류	현행유지	비디오물 등급분류 흡수
32	광고·선전물의 배포·게시 등의 제한	현행유지	비디오물 등급분류 흡수
33	제한상영가 영화의 광고·선전 제한	현행유지	비디오물 등급분류 흡수
34	한국영상자료원의 설치 등	조문수정	비디오물 삭제
35	영화필름등의 제출	현행유지	
36	영화상영관의 등록	현행유지	
37	재해예방조치	현행유지	
38	전용상영관에 대한 지원	현행유지	
38-2	지역영화 향유환경 개선등	현행유지	
38-3	공공상영관	현행유지	
38-4	장애인의 영화향유권	현행유지	
39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의 운영 및 가입의무	현행유지	
40	한국영화의 상영의무	현행유지	
41	영화상영의 신고	현행유지	
42	영화상영의 제한	현행유지	
43	제한상영가 영화의 상영 및 유통 제한	현행유지	
44	영사 자격자	현행유지	
45	영화상영관의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현행유지	
46	영업등의 승계	현행유지	
46-2	영화상영관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현행유지	

법률명		영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조문	내용		개편방안
47	시민감시 활동 지원	현행유지	
48	비디오산업 진흥시책의 수립·시행	삭제	
49	비디오산업 진흥위원회의 설치·운영	삭제	
49-2	장애인의 비디오물 향유권	삭제	영화 향유권과 통합
50	등급분류	삭제	영화 등급분류와 통합
50-2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	조문수정	온라인비디오물 삭제 → 축약인용어로 온라인영화 규정
50-3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조문수정	온라인비디오물 → 온라인영화
50-4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준수사항	조문수정	온라인비디오물 → 온라인영화
50-5	자체등급분류의 효력	조문수정	온라인비디오물 → 온라인영화
50-6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등	조문수정	온라인비디오물 → 온라인영화
50-7	직권등급재분류등	조문수정	온라인비디오물 → 온라인영화
50-8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지원업무	조문수정	온라인비디오물 → 온라인영화
51	복제 등의 확인	조문수정	비디오물 → 영화
52	등급분류 등의 취소	조문수정	비디오물 → 영화
53	불법비디오물의 판매 등의 금지	조문수정	비디오물 → 영화
53의2	제한관람가 비디오물의 시청제공 및 유통제한	조문수정	비디오물 → 영화/제한관람가 영화 유통제한과 통합
54	등급의 재분류 등	삭제	영화 등급분류와 통합
55	등급분류 등의 통지	조문수정	비디오물 → 영화
56	자료제출의 요청	조문수정	비디오물 → 영화
57	비디오물제작업 등의 신고	삭제	영화업자와 통합
58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등록	조문수정	영화시청제공업의 등록
59	영업의 제한	조문수정	영화업자와 통합
60	신고증·등록증의 교부	조문수정	영화업자와 통합
61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	조문수정	영화업자와 통합
62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의 준수사항	조문수정	영화시청제공업자의 준수사항
63	영업의 승계	삭제	영화업자와 통합
64	폐업 및 직권말소	삭제	영화업자와 통합
65	표시의무	조문수정	비디오물 → 영화
66	광고·선전의 제한 등	조문수정	비디오물 → 영화
67	행정처분 등	조문수정	비디오물 → 영화
68	과징금 부과	조문수정	비디오물 → 영화
69	행정제재처분의 효과승계	조문수정	비디오물 → 영화
70	폐쇄 및 수거	조문수정	비디오물 → 영화
71	영상물등급위원회	조문수정	비디오물 삭제

법률명		영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조문	내용		개편방안
72	직무	조문수정	온라인비디오물 → 온라인영화
73	구성	현행유지	
74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조문수정	비디오물 삭제
75	위원장 등	현행유지	
76	위원의 임기	현행유지	
77	의결정족수	현행유지	
78	회의공개	현행유지	
79	소위원회 등	현행유지	
80	위원의 대우 및 겸직금지	현행유지	
81	위원의 결격사유	현행유지	
82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등	현행유지	
83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관련 업무 등	조문수정	비디오물영업자 삭제
84	사무국	현행유지	
85	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의 제정·개정·폐지	현행유지	
86	국고지원	현행유지	
87	비디오물단체의 설립	조문수정	비디오물 → 영화
88	비디오물 유통질서에 관한 교육	조문수정	비디오물 → 영화
89	모범적인 비디오물영업자에 대한 지원	조문수정	비디오물 → 영화
90	수수료	조문수정	비디오물 삭제 또는 비디오물 → 영화
91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현행유지	
92	권한의 위임 및 위탁	현행유지	
93	벌칙	조문수정	비디오물 삭제
94	벌칙	조문수정	비디오물 삭제
95	벌칙	조문수정	비디오물 삭제 또는 비디오물 → 영화
96	벌칙	현행유지	
96-2	벌칙	현행유지	
97	양벌규정	현행유지	
98	과태료	조문수정	비디오물 삭제 또는 비디오물 → 영화
99	과태료의 부과	현행유지	

4. 보완 방안으로 영화와 영상물의 이원구조 제시 [2안]

- 통합 정의 방안 또는 영화 일원구조의 한계로 인한 보완 방안 마련의 논의의 필요성도 제기될 수 있음
 - 법체계로 볼 때 영비법 전면개정 방안으로 영화와 비디오물의 통합으로 영화라는 하나의 규율체계로 정비하여 영비법의 이원구조를 극복하는 것이 가장 체계정합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으나, 통합 영화 정의가 비록 현행법이 규정한 비디오물 범위까지라 하더라도 영화 개념 확장으로 인한 반발이 있을 수 있고 타 부처 소관의 법률과 주로 온라인영역에서 중복소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통합 영화 정의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한 시청에 제공되는 영화를 별도로 개념으로 정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즉 영화 + 비디오물의 통합으로 인한 비디오물 제도의 폐지는 유지하되 현행법의 온라인비디오물을 영상물로 재규정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음. 이는 영화 + 비디오물 + 온라인비디오물 + 디지털 시네마에서 영화 + 영상물의 이원구조로 변경을 의미. 비디오물 제도의 폐지를 전제로 하므로 영화 정의는 통합 영화 정의를 기반으로 하되, 정보통신망을 통한 시청제공을 제외하고 구성. 가능하면 영화로 인식되고자 하는 영화업자의 니즈를 반영하여 목적 요소를 규정하되, 정보통신망을 통한 시청 제공을 제외하고 구성

“영화”란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 또는 디지털매체에 담긴 저작물로서 영화상영관 등에서 상영하거나 판매나 대여를 통하여 시청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한 것을 말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의한 게임물
 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한 것(영화가 수록되어 있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영상물 정의는 현행 온라인비디오물 정의를 기반으로 재구성. 영화 정의와 중복되지 않게 독립적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으므로 ‘연속적인 영상 디지털매체에 담긴 저작물’은 영화와 동일하게 하되, 유통방식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시청제공을 규정하고 영화 정의와 달리 목적 조항을 규정하지 않고 규정. 명칭은 영화로 구별하기 위해 영상물로 함.

“영상물”이란 연속적인 영상이 디지털매체에 담긴 저작물로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시청에 제공될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을 말한다.

- 전기통신사업법의 온라인동영상서비스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비디오물 등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역무’로 정의되는데, 영화 + 영상물 이원구조가 도입되는 경우 온라인동영상서비스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영화 및 영상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영상물 등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역무’로 수정될 수 있음. 이에 대한 효과 분석은 통합 영화 정의 논의와 동일

○ 온라인비디오물의 대체 개념으로 영상물을 도입하는 방안의 문제점에 대한 검토

- ‘영상물’이라는 용어는 산업에서 통용되고 있고 산업 현장에서의 영상물이란 사실상 온라인으로 서비스되는 영상물에 국한된다는 점에서 볼 때 직관적으로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그럼에도 전통적인 관점에서 영상물이란 ‘콘텐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온라인 서비스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유통도 포함된다는 점에서 법률에서 조작적으로 정의하는 영상물의 범위가 온라인에 국한된다는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으며, 사실상 사문화된 법률이라 하나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상물’ 정의가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 테이프, 디스크 그 밖의 유형물에 고정되어 그 영상을 기계나 전자장치로 재생하여 보고 들을 수 있거나 송수신할 수 있는 물체’를 말한다고 하고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고 하여 물성을 기반으로 정의되어 있어 영상 + 영상물 이원구조 방안에서 제안하는 영상물 개념과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상물’ 정의는 법적으로는 유효한 법률이라고 하나 그것이 사실상 사문화되었다고 할 수 있고, 그 내용 또한 현재 산업에서 유통되는 영상물 관념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영상물이 온라인으로 서비스되고 있고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되는 영화 역시도 디지털시네마로 서비스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유형물 고정 및 물체라는 물성을 기반으로 영상물을 정의하는 방식으로 현실에서 통용할 수 있는 법개념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는 불일치의 문제가 영화 + 영상물 이원구조 도입에 따른 영상물 정의의 문제라고 하기는 어려움. 그럼에도 「영상진흥기본법」이 법적으로는 유효하다는 점에서 이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영비법에 영상물 정의를 별도로 도입하는 경우에는 추후 법률 개정을 통해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제1호의 영상물 정의를 개정하여 영비법의 영상물 정의와 일치시킬 필요가 있음
- 현행법에서는 유형물 고정 및 물체라는 물성에 기반하여 영업장에서 판매 또는 대여되는 경우 전통적으로 이를 비디오물로 보았으나 영화 및 비디오물이 통합된다는 접근에서는 영화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이 부분이 전통적인 영상물 관념과 일부 불일치가 있다 해도 그 유통량이 크지 않으며 법제도를 통해 적극적으로 사회적 관념을 수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영상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실질적인 의미의 혼란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 영상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시청에 제공되는 것으로 제한하는 경우 ‘한국영상위원회’와 ‘영상물 등급위원회’의 명칭에서 사용되는 ‘영상’과 ‘영상물’의 사용되는 의미와의 불일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한국영상위원회와 영상물등급위원회는 기존의 기관명칭을 유지시킨다고 할 때 법적 의미와의 불일치는 불가피한 것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있음

○ 영화 + 영상물 이원구조에 대한 장·단점 분석

- 〈이원구조의 장점〉 첫째, 영화 + 영상물의 구성변화는 현행법의 영화 + 비디오물 + 온라인비디오물과 포섭범위에서 차이가 없기 때문에 다른 법률 또는 부처와 제도적인 차원에서의 갈등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둘째, 성장하는 OTT 산업의 오리지널 콘텐츠를 영상물로 포섭하여 산업발전에 기여

- 〈이원구조의 단점〉 첫째, 영화에 대한 보수적 관점에서는 영화의 범위가 확장되어 비디오물을 영화에 넣는다는 비판이 나올 가능성이 있음. 둘째, OTT를 영화가 아닌 영상물로 포섭함으로써 영화의 미래가 여전히 어둡다는 측면에서 비판이 제기될 수 있음. 셋째 이원구조의 경우 현행 영비법에 비해서 변화의 폭이 크지 않아 전면개정이라는 말에 걸맞는 변화가 없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음. 법률 내용의 개정 폭은 크나 온라인비디오물의 명칭이 영상물로 변경된 것 이외에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는 점이 문제되어 왜 개정을 하는가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음

○ 영화 + 영상물 이원구조 도입에 따른 영비법 조문 개편방안

- 영화 + 영상물 이원구조를 도입하면 법률명에서 비디오물을 삭제하고 이를 영상물로 대체하므로 법률 명칭이 ‘영화 및 영상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수정.
- 영화 + 영상물 이원구조 도입은 비디오물 제도의 폐지를 의미하므로 이에 관한 조문의 변경요강은 아래의 표와 같음. 영상물은 비디오물의 대체개념이 아니라 온라인비디오물의 대체개념으로 그 변화의 폭은 크지 않음
- 현행 영비법의 규제체계는 콘텐츠에 대해서는 등급분류의무를 부과하고 유통업자인 영화상영관 경영자에 대해서는 상영관입장권부과금 징수의무, 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 가입의무, 영화상영 신고의무, 한국영화 상영의무를 부과하고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에게는 준수사항을 부과하므로 영화 + 영상물 이원구조를 도입한다고 해도 등급분류의 조항의 통합을 제외하고는 규제체계의 변화가 없음. 다만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는 영화시청제공업자로 명칭 변경.

〈표 2〉 영화 + 영상물 이원구조에 따른 영비법 조문 개편 방안

법률명		영화 및 영상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조문	내용	개편방안	
1	목적	조문수정	비디오물 → 영상물
2	정의		
	1. 영화	조문수정	수정 영화 정의
	2. 영화산업	현행유지	
	3. 한국영화	현행유지	
	4. 공동제작 영화	현행유지	
	5. 애니메이션 영화	현행유지	
	6. 소형영화	현행유지	
	7. 단편영화	현행유지	
	8. 상영	현행유지	
	9. 영화업자	현행유지	
	10. 영화상영관	현행유지	
	11. 제한상영관	현행유지	

영화 및 영상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명	영화 및 영상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조문	내용	개편방안	
	12. 비디오물	삭제	수정 영화 정의에 흡수
	12-2. 온라인비디오물	조문수정	영상물로 변경
	13. 비디오산업	조문수정	영상물산업으로 수정
	14. 비디오물제작업	조문수정	영상물제작업으로 수정
	15. 비디오물배급업	조문수정	영상물배급업으로 수정
	16. 비디오물시청제공업	조문수정	영화시청제공업
	가. 비디오물감상실업	조문수정	영화감상실업
	나. 비디오물소극장업	조문수정	영화소극장업
	다.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업	조문수정	제한관람가영화소극장업
	라. 복합영상물제공업	조문수정	명칭유지
	마. 그밖의 비디오물시청제공업	조문수정	그밖의 영화시청제공업
	17. 비디오물영업자	조문수정	영상물영업자로 수정
	18. 청소년	현행유지	
	19. 디지털시네마	삭제	
	20. 내용정보	조문수정	비디오물 → 영상물
	21. 영화근로자	현행유지	
	22. 영화업자단체	현행유지	
	23. 영화근로자조합	현행유지	
3	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현행유지	
3-2	영화노사정협의회	현행유지	
3-3	표준보수에 대한 지침	현행유지	
3-4	근로조건명 명시	현행유지	
3-5	표준계약서의 사용 및 확산	현행유지	
3-6	안전사고로부터의 보호	현행유지	
3-7	성폭력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현행유지	
3-8	직업훈련의 실시	현행유지	
3-9	임금체불 등의 제재	현행유지	
3-10	실태조사	현행유지	
4	설치	현행유지	
5	법인격	현행유지	
6	정관	현행유지	
7	등기	현행유지	
8	영화진흥위원회의 구성	현행유지	
9	위원장의 직무 등	현행유지	
10	위원의 임기	현행유지	
11	삭제		
12	위원의 결격사유	현행유지	

영화 및 영상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명	영화 및 영상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조문	내용		개편방안
12의2	관여 금지	현행유지	
13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현행유지	
14	영화진흥위원회의 기능	조문수정	비디오산업→ 영상물산업
15	의결정족수	현행유지	
16	회의공개 등	현행유지	
17	소위원회 등	현행유지	
18	예산편성 등	현행유지	
19	감사	현행유지	
20	사무국	현행유지	
21	영화진흥위원회규정의 제정과 개정 등	현행유지	
22	국고지원	현행유지	
23	기금의 설치 등	현행유지	
24	기금의 조성	현행유지	
25	기금의 용도	조문수정	비디오산업→ 영상물산업
25의2	부과금의 징수	조문수정	비디오산업→ 영상물산업
25의3	성과의 평가	현행유지	
26	영화업자의 신고 등	현행유지	
27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	현행유지	
28	영화의 공급 및 유통	현행유지	
28-2	영화업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현행유지	
28-3	영상물 촬영을 위한 지원	현행유지	
28-4	영상위원회	현행유지	
28-5	국제영화제	현행유지	
29	상영등급분류	현행유지	비디오물 등급분류 흡수
30	삭제		
31	상영등급의 재분류	현행유지	비디오물 등급분류 흡수
32	광고·선전물의 배포·게시 등의 제한	현행유지	비디오물 등급분류 흡수
33	제한상영가 영화의 광고·선전 제한	현행유지	비디오물 등급분류 흡수
34	한국영상자료원의 설치 등	조문수정	비디오물 → 영상물
35	영화필름등의 제출	현행유지	
36	영화상영관의 등록	현행유지	
37	재해예방조치	현행유지	
38	전용상영관에 대한 지원	현행유지	
38-2	지역영화 향유환경 개선등	현행유지	
38-3	공공상영관	현행유지	
38-4	장애인의 영화향유권	현행유지	
39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의 운영 및 가입의무	현행유지	

영화 및 영상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명	영화 및 영상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조문	내용		개편방안
40	한국영화의 상영의무	현행유지	
41	영화상영의 신고	현행유지	
42	영화상영의 제한	현행유지	
43	제한상영가 영화의 상영 및 유통 제한	현행유지	
44	영사 자격자	현행유지	
45	영화상영관의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현행유지	
46	영업등의 승계	현행유지	
46-2	영화상영관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현행유지	
47	시민감시 활동 지원	현행유지	
48	비디오산업 진흥시책의 수립·시행	삭제	
49	비디오산업 진흥위원회의 설치·운영	삭제	
49-2	장애인의 비디오물 향유권	삭제	영화 향유권과 통합
50	등급분류	삭제	영화 등급분류와 통합
50-2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	조문수정	온라인비디오물→영상물
50-3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조문수정	온라인비디오물→영상물
50-4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준수사항	조문수정	온라인비디오물→영상물
50-5	자체등급분류의 효력	조문수정	온라인비디오물→영상물
50-6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등	조문수정	온라인비디오물→영상물
50-7	직권등급재분류등	조문수정	온라인비디오물→영상물
50-8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지원업무	조문수정	온라인비디오물→영상물
51	복제 등의 확인	조문수정	비디오물 → 영화
52	등급분류 등의 취소	조문수정	비디오물 → 영화
53	불법비디오물의 판매 등의 금지	조문수정	비디오물 → 영화
53의2	제한관람가 비디오물의 시청제공 및 유통제한	조문수정	비디오물 → 영화/제한관람가 영화 유통제한과 통합
54	등급의 재분류 등	삭제	영화 등급분류와 통합
55	등급분류 등의 통지	조문수정	비디오물 → 영화
56	자료제출의 요청	조문수정	비디오물 → 영화
57	비디오물제작업 등의 신고	조문수정	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
58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등록	조문수정	영화시청제공업의 등록
59	영업의 제한	조문수정	영상물사업자로 수정
60	신고증·등록증의 교부	조문수정	영상물사업자로 수정
61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	조문수정	영상물사업자로 수정
62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의 준수사항	조문수정	영화시청제공업자의 준수사항
63	영업의 승계	조문수정	영상물사업자로 수정
64	폐업 및 직권말소	조문수정	영상물사업자로 수정
65	표시의무	조문수정	비디오물 → 영화
66	광고·선전의 제한 등	조문수정	비디오물 → 영화

법률명		영화 및 영상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조문	내용		개편방안
67	행정처분 등	조문수정	비디오물 → 영화
68	과징금 부과	조문수정	비디오물 → 영화
69	행정제재처분의 효과승계	조문수정	비디오물 → 영화
70	폐쇄 및 수거	조문수정	비디오물 → 영화
71	영상물등급위원회	조문수정	비디오물 → 영상물
72	직무	조문수정	온라인비디오물→영상물
73	구성	현행유지	
74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조문수정	비디오물 → 영상물
75	위원장 등	현행유지	
76	위원의 임기	현행유지	
77	의결정족수	현행유지	
78	회의공개	현행유지	
79	소위원회 등	현행유지	
80	위원의 대우 및 겸직금지	현행유지	
81	위원의 결격사유	현행유지	
82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등	현행유지	
83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관련 업무 등	조문수정	비디오물영업자 삭제
84	사무국	현행유지	
85	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의 제정·개정·폐지	현행유지	
86	국고지원	현행유지	
87	비디오물단체의 설립	조문수정	비디오물 → 영화
88	비디오물 유통질서에 관한 교육	조문수정	비디오물 → 영화
89	모범적인 비디오물영업자에 대한 지원	조문수정	비디오물 → 영화
90	수수료	조문수정	비디오물 삭제 또는 비디오물 → 영화
91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현행유지	
92	권한의 위임 및 위탁	현행유지	
93	벌칙	조문수정	비디오물 삭제
94	벌칙	조문수정	비디오물 삭제
95	벌칙	조문수정	비디오물 삭제 또는 비디오물 → 영화
96	벌칙	현행유지	
96-2	벌칙	현행유지	
97	양벌규정	현행유지	
98	과태료	조문수정	비디오물 삭제 또는 비디오물 → 영화
99	과태료의 부과	현행유지	

제5장

해외법제의
영화 정의 검토

20
23

제5장

해외법제의 영화 정의 검토

I. 프랑스 법제상 영화 정의

1. 프랑스 영화법제와 주무기관

○ 시기별 변천과정

(1) 1958 ~ 2009년: 영화산업법전(Code de l'industrie cinématographique)

- 당시 프랑스 영화산업주무기관은 국립영화센터 CNC(Centre National de la Cinématographe)

(2) 2009년 ~ 현재: 영화동영상법전(Code du cinéma et de l'image animée)

- 2009년 7월 24일에 정부의 위임입법(Ordonnance) No.2009-901에 의해 재정
- 현행 국립영화동영상센터(Centre National du Cinéma et de l'image animée)는 영화를 중심으로 방송, 게임, 뉴미디어 분야를 아우르는 영화영상산업주무기관

(3) 영화동영상법전 구성

- 법령(Partie législative), 행정명령(Partie réglementaire)분야로 구분
- 법령분야는 'L'로 시작하는 법(loi) 조항들로서 각 분야의 큰 틀을 제시
- 행정명령분야는 D(Décret, 시행령), A(Arrêté, 조례), R(Règle, 규칙)로 시작. 한국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해당

2. 영화동영상법전 상 영화 정의

(1) 법적근거: 2014년 7월 9일자 시행령 2014-794

(2) 긴 상영시간 영화 작품(D210-1조)

“긴 상영시간 영화 작품(L'œuvre cinématographique de longue durée)은 영화 상영관에서 영사되는 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는 작품이다.”

“이미지 당 최소 8개의 천공(퍼포레이션: 필름 옆에 뚫린 구멍)이 있는 70mm 규격 필름에 고정된 영화 작품은 상영 시간이 8분을 초과할 때 긴 상영시간 영화 작품과 동일시된다.”

(3) 짧은 상영시간 영화 작품(D210-2조)

“짧은 상영시간 영화 작품(L'œuvre cinématographique de courte durée)은 영화 상영관에서 영사되는 시간이 1시간 이하인 영화이다.”

(4) 과거 장/단편영화 정의(영화산업법전 1964년 5월 28일자 시행령 64-459)

“제 1조

35mm 필름 판형으로 1,600미터 이상인 영화를 장편영화(films de long métrage), 35mm 필름 판형으로 길이가 1,600미터 미만인 영화를 단편영화(films de court métrage)라고 간주한다.”

(5) 해석

- 영화 작품은 장/단편으로 구분하되, 영화 상영관에서 영사되는 시간으로 구분
- ‘영화 작품(œuvre cinématographique)’이라는 표현에서 ‘영화의 형용사형에 해당하는 ‘cinématographique’는 1895년 루미에르형제가 영화를 최초 유료 상영한 촬영/영사기 이름인 ‘시네마토그래프’가 기원
- 상영시간 기준은 2014년 법전 전면 개정 이전 장단편 영화 정의는 필름 길이 기준으로 구분
- 영화를 상영시간 기준으로 장단편을 나누는 기준, 60분은 35밀리 필름 1,600미터에 해당하는 필름 통 단위(정확히는 초당 24프레임 기준, 58분 19초)
- 극장용 영화를 의미하는 ‘영화 상영관 영사’라는 단서가 포함

3. TV 서비스 측면에서 영화 정의

(1) 법적근거

- 1986년 9월 30일자 86-1067법(loi) 적용을 위한 1990년 1월 17일 시행령(décret) 90-66과 텔레비전 편성서비스에 의한 영화/시청각 작품 방영 관련 일반 원칙

(2) TV에서 영화 작품 정의

“제2조

영화작품은 영화/동영상법전 R211-45에서 언급된 영화적 재현(représentations cinématographiques)만을 위한 작품들이나 프랑스에서 최초 TV 방영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다큐멘터리 작품을 제외하고, 프랑스나 원 제작국가에서 영화 상영관의 상업적 상영을 목적으로 하는 작품들로 구성된다.”

“제3조

긴 상영시간 영화 작품은 상영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는 영화 작품이다.”

(3) 영화/동영상법전 R211-45 (요약)

- 문화 주무 장관은 1-3항을 제외하고 영화상영비자를 발급해야 함
- 다음은 영화상영비자(Visa d'exploitation cinématographique) 면제 대상
 1. 공연 실황 및 문화 행사 녹화로 구성된 문서나 작품으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다음 작품들
 2. 영화 한주간(수요일에서 다음주 화요일) 중 2일과 상영횟수 500회를 초과하지 않은 작품이나 문서
 3. 기한 제한 없이 상영횟수 30회를 초과하지 않은 모든 작품과 문서(다큐멘터리의 경우 100회로 상향)

(4) 영화상영비자란?

- 프랑스 극장에서 상영을 위해 요구되는 행정 승인 절차
- 영화 등급분류와 연계해 의무 발급
- 법적근거: 영화/동영상법전 L211-1조
- L211-1조 내용: 영화 소개를 위해서는 문화담당 장관이 발급한 상영비자 를 취득해야 함. 아동 및 청소년 보호, 인간 존엄성 관련 이유로 조건부 발급 또는 거부될 수 있음
- 공연, 운동, 게임 실황 중계 또는 녹화 작품은 극장에서 상영되더라도 영화상영비자 발급(등급분류) 의무가 없고, 영화로 인정받지 않음
- 영화제나 시네마테크의 회고전 등 기간/상영횟수가 한정된 경우 영화상영비자 발급 의무 면제

(5) TV에서 방영되는 긴 상영시간 영화 작품

- 장편영화 기준은 1시간으로 영화/동영상법과 동일
- 해당 정의에서 ‘영화 상영관에서 영사’가 불필요 한 까닭은 제 2조 ‘영화 작품’에서 명시하고 있기 때문

4. 영화 작품과 시청각작품 비교

(1) 법적 근거

- 1986년 9월 30일자 86-1067법(loi) 적용을 위한 1990년 1월 17일 시행령(décret) 90-66과 텔레비전 편성서비스에 의한 영화/시청각 작품 방영 관련 일반 원칙

(2) 시청각작품 정의

“제4조

시청각 작품은 다음 장르 중 어느 하나에 속하지 않는 프로그램(émission)들로 구성 됨: 긴 상영시간 영화 작품, 뉴스 및 정보 프로그램, 버라이어티, 게임, 무대에서 주로 연출된 픽션이 아닌 프로그램들, 운동경기 중계, 광고 메시지, TV흡소핑, 예고편(autopromotion), 텔레텍스트 서비스”

- TV로 서비스 되는 영상물 중 영화와 비교되는 ‘시청각 작품’에 관해 정의함
- 시청각 작품은 영화, 뉴스, 운동 중계 등이 아닌 이른 바 드라마, 미니 시리즈 등을 지칭

(3) 지원기금 자원 기준 시청각 작품

- 법적근거: 시청각 작품 방영의 현대화와 미래 텔레비전에 관한 2007년 3월 5일자 법 2007-309
- 제27조 3항 추가 구문

“시청각 분야에서 이 분담금은 픽션 작품, 애니메이션, 창작 다큐멘터리, 뮤직비디오 작품의 제작과 공연물의 포착(captation)이나 재창작(recreation)에서 주로 마련해야 한다.”

- TV지원금 자원(TST: Taxe sur les Services de Télévision 텔레비전 서비스에 대한 세금)에서 드러난 시청각물 범위: 픽션(TV드라마), (TV)애니메이션, (TV)다큐멘터리, 뮤직비디오, 녹화 및 재편집 공연물

5. 저작권 측면에서 영화(저작자) 정의

(1) 저작권이 존재하는 작품들(oeuvres de l'esprit)

- 법적근거: 지적재산권 법전 L112-2 제6항

“영화 작품들, 유무성 이미지의 움직이는 연속들로 구성된 기타 작품 등 시청각 작품으로 명명되는 모든 작품들”

- 동일한 기준으로 영화와 시청각 작품의 인격권 인정

(2) 시청각 작품의 공동 저작자

- 법적 근거: 지적재산권 법전 L113-7

- 시청각 작품의 저작자는 자연인 또는 이 작품의 지적 창작을 수행하는 사람. 별도의 입증이 없는 한 다음 5인을 시청각 작품의 공동 저작자로 인정

- 시나리오 작가, 각색가, 대사 작가, 음악 작곡가, 감독

- 원작이 존재하는 시청각 작품의 경우, 원작 작가도 공동 저작자로 인정

- L112-2 6항에서 인정되는 저작권이 대상 작품들을 고려할 때, 영화와 시청각 작품의 공동 저작자 인정도 동일하다고 사료됨

II. 영국과 호주 영화법제상 영화 정의

1. 영국 영화법제상 영화 정의

(1) 영국의 최초 영화법(The Cinematograph Act)

- 영국에서 영화법이 제정된 건 1909년
- ‘cinematograph’라는 이름은 프랑스 루미에르 형제의 촬영/영사기명에서 유래
- 프랑스만이 아닌 전 세계에서 ‘영화’ 또는 ‘극장용 영화’를 통칭하는 일반 명사로 사용(미국 예외)
- 해당 법은 영화관 전시(exhibition on screen 또는 cinematographic exhibition) 관련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9 Edw.7 c.30 “영화(cinematograph)와 여타 전시(exhibition)에 대한 더 나은 규정을 만들기 위한 법률”
- 영화법명은 1909년 Cinematograph Act에서 1985년 Cinemas Act로 변경
- 이때 ‘영화 전시’ 용어도 cinematograph exhibitions에서 film exhibitions로 변경

(2) 영화관 상영으로서 영화

- 영국에서는 ‘영화’에 관한 단독 정의가 없는 대신, 전시(exhibition), 즉 상영과 연계한 다양한 규제가 존재
- 1909 영화법에서는 영화 전시(cinematograph exhibition)를 “인화성 필름을 사용해 시네마토그래프나 다른 광학 효과를 활용한 사진들(pictures)의 전시”로 정의
- 1952년 영화법(9 Interpretation)에서 영화 전시는 “제작된 활동사진(moving pictures)을 빛의 투사를 포함한 방법들로 스크린 위에 전시(상영)하는 것”으로 수정

(3) TV 방송과 연계한 영화상영 의미

- 법적근거: 1985년 영화법 및 1990년 방송법(Broadcasting Act 1990)
- 1985년 영화법 21 Interpretation에서 ‘영화 전시(film exhibition)’ 정의
“영화전시라 함은 방송편성 서비스(programmes service)에 포함된 프로그램들의 동시 수신 및 상영 이외의 방식으로 제작된 활동사진(moving pictures)의 전시(상영)를 의미한다.”
- 여기에서 사용된 프로그램과 편성 서비스 정의는 1990년 방송법에 의거
- 편성 서비스에서 정의하는 ‘프로그램’은 광고를 제외한 편성 서비스에 포함된 모든 아이템을 의미
- 즉 TV로 방영되는 방식이 아닌 모든 동영상 상영은 ‘영화전시(상영)’에 해당

(4) 영국 저작권(copyright) 관련 영화 정의

- 법적근거: 1988년 저작권, 디자인 및 특허법(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 15B Films (1)항

“본 장(part)에서 ‘영화(film)’란 어떠한 수단으로 제작된 동영상(moving image)이 어떤 매체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

- 영국 저작권 측면에서 영화란 모든 매체에 기록되어 있는 동영상이라는 폭넓은 개념
- 사운드 트랙은 영화의 일부로 취급되지만, 별도의 저작권 인정

2. 호주 영화법제상 영화 정의

(1) 영화의 정의

- 청소년 보호를 위한 등급 분류에서 영화 개념 정의
- 법적근거: 1995년 호주연방(출판, 영화 및 컴퓨터게임) 등급분류법[The Commonwealth Classification (Publications, Films and Computer Games) Act 1995] SECT 5 definitions

“영화(film)”는 영화 필름, 슬라이드, 비디오 테이프, 비디오 디스크와 컴퓨터로 만들어낸 이미지를 포함한 모든 (사운드 트랙과 함께) 시각 이미지 기록의 형태를 포함한다. 단 (a) 컴퓨터 게임이나 (b) 출판, 영화, 컴퓨터 게임용 광고(advertisement for a publication)는 제외한다.”

(2) 영화 전시(상영)에 관한 규정

- 동법 서문(Preliminary) 5조 ‘영화의 전시(Exhibition of film)’

“본 법에서, 영화를 공공장소에서 ‘전시’하려는 사람은 (a) 공공장소에서 영화 상영을 구성 또는 실행하거나 (b) 영화가 상영되는 공공장소의 감독이나 관리를 해야 한다. 상영되는 영화는 등급이 반드시 분류되어 있어야 하며 (...)”

- 영국과 동일한 ‘전시’ 개념을 사용
- 전시 또는 상영은 영화관이라는 물리적 공간을 전제로 하고 있음
- 호주의 공공장소에서 상영되는 영화는 반드시 등급분류를 받아야 함
- 등급 분류 대상이 되는 영화는 게임이나 광고를 제외한 모든 매체에 기록된 모든 영상물

Ⅲ. 캐나다와 독일 영화법제상 영화 정의

1. 캐나다 영화법제상 영화 정의

(1) 캐나다 연방 영화법상(National Film Act) 영화 정의

- 법적근거: 1985년 연방 영화법 c. N-8 2조 해석, 정의(Interpretation, Definitions)

“본 법에서(In this Act), 영화(film)는 활동사진(motion pictures), 스틸 사진, 사진 디스플레이, 필름 스트립 및 주로 사진이나 사진 재현(reproductions)으로 구성된 기타 시각적 재현(visual presentation) 형식을 의미한다.”

- 영화는 정지된 사진, 연속된 필름 자체를 포함한 동영상 전체의 시각적 재현 모두를 포함
- 캐나다 연방 영화법은 불어로도 제공. 불어판에서 ‘활동사진(motion pictures)’은 ‘films cinématographique’로 번역. 이는 단순히 움직이는 사진(또는 그림)이 아니라, 극장 상영 중심의 영화적 전통을 가진 영화를 의미.

“영화 활동(film activity)은 영화의 제작, 배급, 영사(projection) 또는 전시(exhibition)와 관련된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2) 캐나다 퀘벡주 영화법(Cinema Act) 영화 정의 관련 언급

- 법적 근거: 1991년 퀘벡주 영화법 제1장 범위 C.21, S.1.(Scope 1991, c.21, S.1.)

“1. 본 법은 영화(films)의 제작, 배급, 전시 및 비디오물(video material)의 판매와 관련된 영화 활동(film activity)의 모든 분야에 적용된다.”

2. 본 법에서 적용되는 영화(film)란 기술적 수단을 사용해 만들어져 영화제작(cinematographic production)이 되는 저작물(work)이다.

기록된 매체에 관계없이 어떠한 영화의 복제(reproduction)도 영화의 사본(print)이다.

비디오 카세트, 비디오 디스크 또는 기타 유사 매체에 기록된 영화의 모든 사본은 비디오물을 구성한다.”

- 캐나다 연방법상 영화 활동에 더해, 물리적 비디오를 영화 활동의 일부로 간주
- 동 법 불어판에서 영화의 정의에 해당하는 2조 첫 문장 해석은 다음과 같음 “본 법에서 적용되는 영화란 기술적 수단을 사용해 제작되어 영화 효과(effet cinématographique)를 발생시키는 저작물이다.”
- 영어에서 ‘영화 제작’은 불어에서 ‘영화 효과’에 해당
- 매체의 성격과 상관없이 영화를 복제하는 모든 것을 영화(사본)으로 규정

(3) OTT 관련 법안 캐나다 최근 변화

- 캐나다 라디오 텔레비전 통신 위원회(CRTC, Canadian Radio-television and Telecommunications Commission)

“위원회는 (예를 들어, 케이블이나 위성을 통해) 전송 전용시설이나 네트워크와 독립적인 프로그래밍에 대한 인터넷 액세스가 ‘Over-the top’ 서비스라고 불리는 것 특징을 정의한다고 간주한다.”

- 2011년 10월, OTT 프로그래밍 서비스 실태조사 결과
- 2022년 2월 2일 캐나다 정부가 방송법을 개정한 온라인 스트리밍법(Online Streaming Act)안 C-11을 하원에 발의

(4) 2022년 11월 2일 발의한 C-10 법안 개정안 주요 내용

- 방송규제 기관은 CRTC의 권한을 확대해 온라인 스트리밍 플랫폼(OTT)를 포함한 온라인 방송사(online broadcaster)를 전통적인 방송사와 동일한 규제로 접근
- 소셜 미디어 서비스는 온라인 방송에 불포함
- 기존 방송사의 방송 허가는 비적용
- CRTC에게 캐나다 창작자들을 위한 온라인 방송사 및 OTT 플랫폼의 재정적 기부 요구 권한 부여(부과금, Canada Media Fund에 포함)

2. 독일 영화법제상 영화 정의

(1) 2022년 독일 영화진흥법(Filmförderungsgesetz)

- 독일영화 진흥을 위한 지원기관(Filmförderungsanstalt), 지원기금, 지원제도 관련 규정이 핵심

(2) 영화의 종류에 따른 정의

- 법적 근거: 영화진흥법 제40조 개념 정의(§40 Begriffsbestimmungen)

“(1) 영화(Film)는 상영시간이 적어도 79분 이상을 말하며, 아동영화의 경우는 최소 59분 이상을 말한다.”

“(2) 어린이영화(Kinderfilm)는 영화의 연기나 디자인이 아동에게 적합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청소년보호법 제14조 제2항 제1호(연령제한 없이 허용) 또는 제2호(6세 이상 허용)에 따른 등급을 부여받은 영화를 말한다.”

“(3) 첫 영화(Erstlingsfilm)는 영화감독이 대학 또는 영화 학교에서 제작되지 않은 장편영화를 처음으로 전적으로 연출을 책임진 영화를 말한다.”

“(4) 단편영화(Kurzfilm)는 최대 상영시간이 30분인 영화를 말한다. 상영시간은 시작과 종결 자막을 포함한다. 광고, 이미지 필름, 뮤직비디오는 본 법의 의미 내에서 단편영화가 아니다.”

“(9)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Videoabrufdienst)는 이용자가 검색해 요청한 개별 영화를 선택한 시간에 수신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이용자가 전자정보 또는 통신서비스다. 개별 영화의 사용에 대한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지 또는 전체 서비스의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지 여부는 무관하다.”

- 요약: 상영 길이와 연계한 (장편)영화(Film, 79분 이상, 어린이영화인 경우 최소 59분), 청소년 보호법 및 등급과 연계한 어린이영화(Kinderfilmen), 지원제도와 연결된 첫 영화(Erstlingsfilm), 단편영화(Kurzfilm, 30분 미만), 주문형 비디오서비스 등 규정

(3) 영화관 영화(Kinofilm) 정의

- 법적근거: 영화진흥법 제 150조 영화관 영화의 정의(Begriffsbestimmung Kinofilm)

“제152조에서 156a까지 의미 내에서 영화 필름은 영화관에서 유료로 독일 또는 제작 국가에서 상영된 영화이다.”

- 일반적인 ‘영화’와 별개로 영화관 유료 상영을 목적으로 ‘영화관 영화’ 개념 정의
- 영화지원기금 마련을 위한 영화부과금(filmabgabe) 규정을 위함
- 해당 조항별 주요 내용: 제 152조(비디오 프로그램 제공업체 영화부과금), 제 153조(주문형 비디오 서비스 제공업체의 영화부과금), 제 154조(공영TV방송 영화부과금), 제155조(무료TV방송 영화부과금), 제156조(유료 TV방송 영화부과금), 제156a(마케팅 프로그램 영화부과금)

(4) 영화관 영화에 대한 또 다른 정의

- 법적근거: 1992년 10월 2일자 영화 국제공동제작에 관한 유럽 협약(Gesetz zu dem Europäischen Übereinkommen vom 2. Oktober 1992 über die Gemeinschaftsproduktion von Kinofilmen) 서문 제 3조 정의 a)항(Präambel Artikel 3 a)) 일부

“‘영화관 영화(Kinofilm)’는 장편 영화,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를 포함하여 길이와 매체에 상관없이 모든 관련 계약 당사자의 영화산업 및 영화관 상영에 해당하는 규정을 준수하는 영화를 의미한다.”

- 극장용 영화에 해당하는 개념은 별도로 정의

IV. 싱가포르와 베트남 영화법제상 영화 정의

1. 싱가포르 영화법제상 영화 정의

(1) 싱가포르 영화법(Film Act 1981)

- 1979년까지 싱가포르의 영화 관련 법령명은 ‘영화관 영화법(Cinematograph Films Act)’이었음. 1924년 ‘영화관 영화 법령(Cinematograph Films Ordinance)’로 시작된 해당 법은 1981년 이후 ‘영화 법(Films Act)’로 개정

(2) 영화(film) 정의

- 법적 근거: 싱가포르 영화법 해석 2 (1)의 용어 정의

“‘영화’란 (a) 영화관 영화(cinematograph film) 또는 비디오 녹화물(video recording); (b) 비디오 게임; 또는 (c) 컴퓨터 생성 이미지를 포함한 (제(5)항에 달리 제공된 경우 제외) 시각 동영상(moving visual image)을 (사운드트랙과 함께) 생성하고 시청할 수 있는 다른 모든 형태의 녹화물(recording)”

- 영화의 정의에는 영화관 대중 유료 상영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일반 영상물(비디오물 포함)과 게임도 영화에 포함

(3) 영화관 영화(cinematograph film) 정의

“‘영화관 영화’는 슬라이드, 디스크, 테이프 또는 시각적 이미지가 구현되고 동영상을 보여주거나 제작할 수 있는 기타 물품(article) 또는 사물(thing)을 의미하며, 영화관 영화의 일부를 형성하는 시각적 이미지와 관련된 (있는 경우) 사운드트랙에 구현된 사운드의 종합을 포함한다.”

- 영화관 영화의 정의에도 영화관 대중 유료 상영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영화관 영화는 비디오 게임이나 비디오 녹화물이 제외된 동영상물에 해당

(4) 영화의 ‘전시(exhibit)’ 정의

“(a) 비디오 게임인 영화의 경우 - 비디오 게임을 시연하거나 진열(display)하는 것. 단, 1958년 공공 오락법(Public Entertainments Act 1958)의 의미 내에서 공공 오락은 포함하지 않음

(b) 비디오 게임이 아닌 영화의 경우 -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영화의 수신 방식에 관계없이) 영화에 포함된 콘텐츠를 진열(display), 상영(screen) 또는 영사(project)하는 것”

- 비디오 게임이 아닌 영화의 전시 조건에는 진열, 상영, 영사가 포함됨

(5) 영화 정의 시 언급된 제 (5)항 내용

“(1)의 “전시(exhibit)” 정의에 영향을 주지 않고 전체 또는 일부 동영상을 포함하는 콘텐츠(라이브 콘텐츠는 아님)가 (a) 방송 서비스, 통신 또는 기타 전자 전송(예: 실시간 전송)에 의해 제공되는 경우 그리고 (b) 해당 콘텐츠를 수신하기에 적합한 컴퓨터 모니터, 텔레비전 화면, 모바일 장치 또는 유사한 매체 장비에서 수신되는 경우, 수취인(recipient)이 콘텐츠를 한 명 이상의 개인에게 보여주는 것은 영화의 전시(exhibition)로 간주되며 이러한 상황에서 수신된 전체 또는 일부 동영상을 포함하는 콘텐츠는 영화로 간주된다.”

- 동영상의 전체 또는 일부분을 방송, 통신 등으로 전송하거나 컴퓨터/TV/모바일 디바이스로 수신된 경우더라도, 해당 콘텐츠를 1인 이상에게 보여주는 것은 ‘영화의 전시’로 간주
- 단, 개인이 영화를 감상하는 행위는 전시에 해당하지 않음

2. 베트남 영화법제상 영화 정의

(1) 2023년 1월 1일 발효된 새로운 영화법(Cinema Law, 131/2022/ND-CP)

- 2009년, 2018년, 2020년에 개정된 2006년 법(2006년 법)을 전면 개정
- 영화 배포와 온라인 플랫폼 관련한 주체 자격과 관련 의무 신설
- 폭넓은 영화 인정과 자체 등급 분류 기준 제시

(2) 영화관련 정의

- 법적근거: 베트남 영화법 제3조 개념 해석 중

“제 1항

“영화예술(Cinematography)”은 영화(films)를 제작하기 위해 시청각(audio-visual)기술과 창작 기법을 적용하는 종합 예술 산업이다.

제 2항

“영화(film)”라 함은 기술·공학 장치에 의해 생성된 연속적인 동영상(consecutive moving images)이나 영상으로 표현된 내용과 영화 언어 원칙에 따라 오디오 유(무) 및 기타 효과를 가지는 영화 저작물(cinematographic work)을 말한다. 영화는 장편 영화(feature films), 다큐멘터리, 만화(catoons) 및 복합 장르의 영화를 포함해, 영화산업에서 사용되는 물질(material)이나 디지털 방식 또는 기타 디지털 장치를 통해 기록되고 관람객(viewer)에게 전달된다.

영화는 라디오 텔레비전 및 인터넷 뉴스, 예술 쇼(art shows), 비디오 게임, 한 명 이상 사람들의 행동을 보여주거나 사건과 상황을 묘사하는 녹화물, 또는 리얼리티 쇼를 포함하지 않는다.

제 3항

“영화 활동(Cinematographic activities)”이란 영화 제작, 배급, 영화 개발 촉진, 법정 기탁 및 보관을 위한 영화 제출, 영화 인력 훈련 활동 등을 의미한다.”

- 베트남에서 영화는 장편영화, 다큐멘터리, 만화 등이 물질이나 장치에 기록되어 관객에게 전달되는 영상 저작물을 가리키는 폭넓은 의미
- 단 뉴스, 비디오 게임, 리얼리티 쇼 등은 영화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배제 조항 존재

(3) 인터넷 상 영화 배포와 관련한 규제

- 법적근거: 제21조 인터넷상에서 영화 배포(dissemination) 1, 2항

“제 1항

인터넷에서 영화를 배포할 수 있는 주체는 본 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영화 배포에 종사하는 기업, 공공 서비스 제공자 및 조직이다.

제 2항

b) 인터넷에 영화를 배포하기 전에 베트남 정부 규정에 따라 영화 등급 분류(film rating) 시행 조건을 확인하고 영화 등급의 내용과 결과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진다. 영화 등급 분류 시행 능력이 없는 경우,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가 권한을 부여한 기관에 본 법 제27조 3항 및 4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영화 등급 허가(Film Rating Licenses) 또는 방송 결정(Broadcast Decisions) 없이 영화에 대한 등급 분류를 실시하도록 요청한다;

c) 해당 영화들의 인터넷 배포 이전, 배포할 영화 목록과 영화 등급 분류 결과를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에 통보해야 한다.”

- 영화관, TV, 비디오 등 전통적인 영화 배포 통로에 OTT를 포함한 인터넷 활용한 매체들에 관한 법적 기준과 의무를 규정
- 인터넷 영화 배포에 관한 사적 주체는 ‘영화 배포에 종사하는 기업’에 한정
- OTT를 포함한 인터넷 상 영화 배포시 등급 분류 의무
- 영화 등급 허가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공포한 요건에 따라 지역 인민 위원회(People’s Committees of provinces)에서 발급
- 지역 인민위원회 발급 영화 등급 허가는 베트남 전역에서 유효

V. 해외법제 영화 정의 검토 시사점

1. 영화 용어 일반에 관한 영화사적 의의

(1) 시네마토그래프(cinématographe)

- 그리스어로 움직임과 기록의 조합어인 시네마토그래프는 영사를 목적으로 하는 영화관용 영화 또는 (로베르 브레송에 따르면) 예술영화 의미로 주로 사용
- 줄임말인 ‘시네마’는 영화관 또는 영화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의미
- 프랑스로부터 영화 시작을 인정하는 또는 프랑스 영향을 받은 국가들(프랑스, 퀘벡, 베트남, 20세기 초 영국)은 관련법명에 ‘시네마’라는 용어 활용
- ‘필름’은 이미지 기록 매체에서 유래
- ‘필름’은 개별 영화 한편을 의미
- 독일, 영어권 캐나다, 싱가포르, 1952년 이후 영국 등은 영화 법명에 ‘필름’을 사용
- 시네마토그래프의 형용사형은 전 세계에서 영화활동 전반 또는 극장 상영과 연계한 개념으로 활용

(2) 무빙 픽처스(moving pictures)

- 미국에서는 활동사진에 해당하는 ‘무빙 픽처스’, ‘모션 픽쳐’, ‘무비스’ 등을 주로 활용
- 영국에서는 1950년대 이전에는 시네마토그래프, 이후는 무빙 픽처스를 주로 사용
- 1909년 당시 영국의 영화 상영은 프랑스의 ‘시네마토그래프’ 영향 하에 있는 것으로 해석 가능, 제 2차세계 대전 이후 영국 역시 미국 영화산업의 영향을 받아 ‘시네마토그래프’라는 단어는 삭제
- 영국의 영화법명은 1909년 Cinematograph Act에서 1985년 Cinemas Act로 변경(이때 ‘영화 전시’ 용어도 cinematograph exhibitions에서 film exhibitions로 변경)
- 미국에서는 영화의 기원을 프랑스가 아닌 자국의 에디슨(키네토스코프/키네토그래프)에게서 왔다고 여기기 때문에 시네마토그래프 또는 시네마 용어 사용 지양

(3) 동영상(moving image, image animée)

- 2009년 프랑스의 영화법전명 및 주무기관명에 ‘동영상(image animée)’ 포함
- 활동사진과 유사한 의미나 ‘사진’ 또는 ‘그림’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 픽쳐 대신 유무형/심리적 영상을 가리키는 용어인 ‘이미지’를 사용

- 영화관과 연계된 '시네마'나 저장장치명에서 나온 '필름'의 연계를 넘어선 범용 비디오물을 가리키는 용어로 활용

2. 과거와 현재 프랑스 영화 법적 정의 변화 해석

(1) 영화 용어 변화

- 2009년 영화산업법전은 영화동영상 법전으로 전면 개정
- 2014년 7월 9일자 시행령 2014-794에 의해 과거 '장/단편영화'가 '긴/짧은 상영시간 영화 작품'으로 변경
- 장/단편영화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 *métrage*(메트라주)는 미터 측량을 의미하는 말로서 필름의 물리적인 길이를 의미
- 메트라주 대신 상영 시간(*la durée*)을 기준으로 구분
- 장/단편영화에서 '영화(film)'는 아날로그 시절 영상과 소리를 저장하는 물리적 저장 매체인 '필름'에서 기원

(2) 영화 정의 변화의 의미

- 디지털 시대에서 효용가치를 상실한 '필름' 대신 가치중립적인 '영화 작품(*œuvre cinématographique*)' 이라는 개념으로 대체
- '영화상영관(*salles de spectacles cinématographiques*)'과 '영사(*projection*)'라는 조건이 추가
- CNC가 영화만이 아닌 다양한(동)영상 매체를 함께 관할하게 되면서, 극장 상영을 기준으로 해 영화의 특성을 다른 영상저작물과 구분하고 있음.
- 적용: 2017년부터 칸 영화제에서 넷플릭스 영화들을 경쟁부문에 초청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영화관 상영'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해 '영화'로서 법적 지위를 취득하지 못하기 때문임
- 시사점: 영화산업법전(당시 국립영화센터)에서 영화동영상법전(국립영화동영상센터로 변경)으로 이름을 바꾸며, 프랑스는 장/단편 영화의 정의에 관해 기술의 발전과 함께 변화한 부분에 수정을 가하고, '영화관 상영'이라는 지속 가치에 대한 영화 성격을 명시함

(3) 프랑스식 영화 정의 이유

- 프랑스에서 영화의 정의를 상영시간과 영화관 상영으로 구분한 이유
 1. 제작승인(*agrément de production*)을 받으면 영화로 인정

2. 극장 상영을 위해 상영비자(Visa d'exploitation)를 발급 시 영화로 인정
3. TV용 영화더라도, 상영비자를 발급 받는다면 영화로 인정 가능

- 작품 특성과 성격, 관람대상, 매체 구분 없어도 영화 정의 가능
- 영화관 입장권 수입의 일부(10.72%)는 지원기금 재원으로 각출
- 자동지원금 적립 및 활용으로 영화산업 질서 형성

3. 해외 영화법제상 정의에 관한 해석

(1) WTO의 영화예술법(Law on Cinematography) 제 1조

“이 법의 목적상 영화예술(cinematography)에는 영화(film) 제작, 배급, 복제, 사용을 위한 임대 및 공개 발표 활동이 포함된다.”

- 매체, 길이, 소비 방식을 넘어서 제작에서 시작하는 영화의 전 과정이 영화예술의 범주에 포함

(2) 유네스코 영화예술법(Law on Cinematography) 제 1조

“이 법에 규정 바와 같이 영화예술(cinematography)은 영화의 제작, 배급, 복제, 대여 및 공개 상영으로 구성된다. 이 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영화(film)는 시청각 재생(reproduction)이 가능한 모든 매체에 등록될 수 있다.”

- 영화는 영화관에 한정되지 않고 어떠한 시청각 매체로도 규정 가능함

(3) 영국, 호주 영화법

- 영국 영화법은 20세기 초 영화상영(전시)에 초점을 둔 규정 마련이 시작점
- 이후 방송법과 연계해 방송 송출을 목적으로 한 편성프로그램을 제외한 모든 동영상(moving pictures)을 영화상영으로 정의
- 영국 저작권법에서는 모든 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동영상을 영화로 정의
- 호주의 영화상영 및 정의는 영국과 유사

(4) 캐나다 영화법

- 캐나다의 영화 관련 규정은 WTO, 유네스코 영화예술법과 유사

- 캐나다 법상, 영화는 정지된 사진, 연속된 필름 자체를 포함한 동영상 전체의 시각적 재현 모두를 포함
- 캐나다 연방 영화법은 불어로도 제공. 불어판에서 ‘활동사진(motion pictures)’은 ‘영화관 영화(films cinématographique)’로 번역. 이는 단순히 움직이는 사진(또는 그림)이 아니라, 극장 상영 중심의 영화적 전통을 가진 영화를 의미
- 캐나다 연방법상 영화 활동에서는 물리적 비디오를 영화 활동의 일부로 간주
- 동 법 불어판에서 영화의 정의에 해당하는 2조 첫 문장 해석은 다음과 같음 “본 법에서 적용되는 영화란 기술적 수단을 사용해 제작되어 영화 효과(effet cinématographique)를 발생시키는 저작물이다.”
- 영어에서 ‘영화 제작’은 불어에서 ‘영화 효과’에 해당
- 매체의 성격과 상관없이 영화를 복제하는 모든 것을 영화(사본)로 규정
- 비디오물도 영화로 규정된다고 해석할 수 있음

(5) 독일 영화법

- 영화지원제도와 연결한 영화 특성별 규정이 존재
- 일반적인 ‘영화’ 정의는 장편영화에 해당(79분, 어린이영화 경우 59분 이상)
- 영화관 유료 상영을 목적으로 하는 ‘영화관 영화(kinofilm)’ 개념 별도 정의
- ‘영화관 영화’는 매체별 영화 부과금 징수와 연계한 형태

(6) 싱가포르, 베트남 영화법

- 영화의 정의에는 영화관 대중 유료 상영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일반 영상물(비디오물 포함)과 게임도 영화에 포함
- 영화관 영화의 정의에도 영화관 대중 유료 상영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영화관 영화는 비디오 게임이나 비디오 녹화물이 제외된 동영상물에 해당함.
- 가장 최근(2022년)에 개정된 베트남 영화법
- OTT를 포함한 인터넷/통신상 배포되는 영화 개념까지 포함
- 베트남에서 영화 역시 장편영화, 다큐멘터리, 만화 등이 물질이나 장치에 기록되어 관객에게 전달되는 영상 저작물을 가리키는 폭넓은 의미

4. 해외 영화 영상 법제 성격 비교

(1) 콘텐츠 (형식) 중심 법제

○ 프랑스 등의 국가는 콘텐츠 단위로서 영화 등 영상물을 정의하고, 해당 영상물의 매체별 전달 방식에 대한 규제를 부여하는 법제를 적용하고 있음

○ 예를 들어, 프랑스는 SVOD 서비스에서의 영화 공개와 관련된 '홀드백' 규제를 기반으로 글로벌 OTT 사업자의 영화 제작 투자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2022년 1월, SVOD에서의 영화 공개 홀드백 기간 단축 관련 규칙 설정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프랑스와 유럽 영화 제작에 연간 순이익의 최소 4%를 투자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를 조건으로 극장 개봉 후 15개월 후 넷플릭스 독점 스트리밍 기회 확보하게 되었음(기존 36개월)

○ 콘텐츠 형식 중심의 규제 체계를 바탕으로 방송과 스트리밍 서비스 등의 사업자에게 제작 투자 의무와 방영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2020년 공표된 AVMSD 적용 법률에 따르면 프랑스는 EU의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지침을 준수하는 한편, 프랑스적 표현의 작품에 방영에 대한 의무(방영쿼터) 외에도 제작비 지원 의무(제작쿼터)를 두고 있고 텔레비전 방송사에게 매출액의 3%를, 영화전문 PP에 대해서는 전년도 매출의 17~22%를 유럽영화의 판권 구입에, 12~17%는 프랑스적 표현의 작품 제작에 투자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이러한 콘텐츠 중심의 법제는 콘텐츠 진흥의 관점에서 미디어 서비스에 대한 역할과 의무를 구조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2) 서비스 (방식) 중심 법제

○ 미국 등의 국가는 콘텐츠 자체에 대한 규율보다는 서비스의 방식에 따라 지상파 방송과 다채널 방송, 가상다채널방송(vMVPD) 등의 위계를 나누고, 이에 대한 규제를 차등하여 부과하는 법제를 적용하고 있음

○ 유럽의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La directive Services de medias audiovisuels) 역시 서비스 방식에 따른 규제 수준의 부과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

○ 영국 정부(DCMS)는 'TV와 유사한(TV-like)' 경험을 제공하는 VoD 서비스에 대해 TV와 유사한 시청자 보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관련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한 바 있는데(2021.8.31.~2021.10.26.), 이는 오프콤의 Broadcasting Code에 기초한 VOD 콘텐츠 규제란 점에서 미디어 서비스들을 방송의 계보에서 접근하는 규율 방식의 사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서비스 방식에 따른 규제 적용은 콘텐츠 진흥의 관점 보다는 미디어 서비스의 영역별 시장 획정과 규율 체계의 정비 측면에서의 강점이 있음

(3) 내용 (유형) 중심 법제

- 영상 관련 규율 증 보도 기능(여론 형성)에 대한 규제 중심의 체계 역시 존재하며, 이는 '영향력'의 관점에 두는 규제 체계라 할 수 있음
- 인도에서 발표한 정보통신 기술 관련 지침(중개인 지침 및 디지털 미디어 윤리강령)(2021.2.25.)에 따르면, 규율 대상을 '디지털 미디어'의 (1) 중개자 / (2-1) 뉴스 및 시사 콘텐츠 퍼블리셔, (2-2) 온라인 큐레이션 콘텐츠 퍼블리셔 (OTT 플랫폼)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는 '뉴스'와 같은 내용 측면의 형식을 중요한 규율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음

(4) 한국의 영상 법제의 특징

- 한국은 콘텐츠와 서비스, 내용 중심의 접근이 모두 법제화 되어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하고 있음: 콘텐츠 중심의 정의 규정인 영비법과, 서비스 중심의 규율인 방송법, 내용 중심의 규율인 신문법 체계가 존재하고 있음
- 영화: 콘텐츠 중심 법제 (cf. FTA 관련 : 상영-쿼터제)
 문체부 통합 거버넌스
 (영화 콘텐츠 진흥 -상영관 규제 - 문체부, 영진위)
- 방송: 서비스 중심 법제 (cf. FTA 관련 방송사 소유점영 규제+편성규제)
 분리 거버넌스
 (방송 플랫폼 규제-방통위, 방송 콘텐츠 진흥 - 문체부)
- 신문: 내용 중심 법제 (cf. FTA 관련: 소유 점영 규제)
 문체부 통합 거버넌스
 (신문 사업자 진흥 및 규제 - 문체부)
- 영화, 방송, 그리고 신문과 같은 기존 미디어 단위의 법제도가 서로 다른 관점에서 공존하고 있으며 이들이 실질적으로 각각의 영역을 분리된 생태계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은 융합적으로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지속적인 법제도 적용의 한계와 갈등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으로서, 보다 유기적인 관점에서 영화-온라인-방송 산업의 연계를 고려할 수 있는 콘텐츠 중심의 접근을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음

(5) FTA 측면에서 본 영상 법제 개편의 유의점

- 한국의 경우 한-미 FTA에 따른 방송시장 개방이 이루어진 바 있으며, 협정 당시의 의무 규범 위반의 예외로 인정받는 국내 법령의 수준 보다 규제를 강화할 수는 없는 상황을 고려해야 함

- 현재 국내에서 이용 중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들은 해외 사업자가 제공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들과 관련된 규제의 제정 및 정비 시에 통상규범과 양허 범위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 예를 들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는 어떻게 분류되고 있는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와 대체가능한 유사한 서비스가 있는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시장의 개방 또는 제한의 근거가 있는지?, GATS의 일반적인 예외 또는 다른 합리적 이유를 근거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정당화 될 수 있는가? 등에 대한 검토 필요
- 한미 FTA에는 협정 체결 당시 방송법에 포함된 방송서비스 및 IPTV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형태의 디지털 오디오 및 비디오 서비스에 대한 미래유보가 있으며, 이 유보항목을 근거로 한다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는 방송 서비스와 구분되는 별개의 시청각 서비스 분야로 분류될 수 있음(주성희, 2019, 20쪽¹⁾)
- 이를 고려할 때, 법제도 개편에 있어서 기존 FTA 등 협정의 적용을 우회할 수 있는 기반 마련과 FTA 위반 등의 위험을 방어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방송이 아닌 영화 생태계와 연계된 서비스로 규정하는 전략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음

5. 해외 법제 영화 정의 비교 시사점

- 소결론 1: 해외 주요 각국 법적 정의를 바탕으로 볼 때, 전송, 배포 및 저장 매체의 한계를 넘어서 폭넓은 영상물 통합 개념으로서 '영화' 정의 근거는 충분하다고 사료됨
- 소결론 2: 영화는 대중에게 이야기가 있는 동영상을 선보인 최초 장르로서 필름, 시네마토그래프, 시네마, 무빙픽처스, 모션픽처, 무빙 이미지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음
- 소결론 3: 프랑스, 호주, 베트남 등에서 영화 정의 및 범주를 등급분류와 연결시킨 사례 발견
- 소결론 4: 지원과 규제가 긴밀히 연결된 프랑스 영화법상 영화 정의의 변화 및 글로벌 OTT 대응 등 사례를 참고할 때, 디지털 영화 환경 변화에 따른 영화 재정의의 필요성 대두
- 소결론 5: 콘텐츠 중심의 영화-영상물 통합 진흥 법제를 통해 영상 매체 융합 환경 대응 및 산업 활성화 방향성 수립 필요성
- 소결론 6: FTA 유보사항인 영화 중심으로 통합 정의 시 규제자율권 확보에 유리할 것으로 사료됨(cf. 방송의 경우 FTA에 포함되어 규제자율권 행사 난망)

1) 주성희(2019). 국제통상협정과 시청각 서비스 개방,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제6장

등급분류 체계의
개정방안

20
23

제6장 등급분류 체계의 개정방안

- **현행 영비법상 등급분류 조항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됨**
 - 영화 등급분류 조항(제29조, 제31조 등)
 - 비디오물 등급분류 조항(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제56조, 제65조 등)
 - 온라인비디오물 자체등급분류 조항(제50조의2, 제50조의3, 제50조의4, 제50조의5, 제50조의6, 제50조의7, 제50조의8 등)
- **본 보고서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제1안인 영화(비디오물 + 온라인비디오물 포함) 일원론과 제2안인 영화 + 영상물(비디오물 + 온라인비디오물 포함) 이원구조를 전제로 한 등급분류 조항 통합방안은 다음과 같음**

1. 등급분류

(1) 개정안의 내용

현행법	개정안 제1안(영화 일원론)	개정안 제2안(영화 + 영상물 이원구조)
<p>제29조(상영등급분류) ① 영화업자는 제작 또는 수입한 영화(예고편 및 광고영화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상영 전까지 제 71조의 규정에 의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상물등급위원회"라 한다)로부터 상영등급을 분류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화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정한 장소에서 청소년이 포함되지 아니한 특정인에 한하여 상영하는 소형영화·단편영화 2. 영화진흥위원회가 추천하는 영화제에서 상영하는 영화 3. 국제적 문화교류의 목적으로 상영하는 영화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영화 <p>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영화의 상영등급은 영화의 내용 및 영상 등의 표현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다만, 영화 상영 전후에 상영하는 광고영화는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영등급을 분류받을 수 있고, 예고편</p>	<p>제00조(등급분류) ① 영화(영화상영관 등에서 영화 상영 전후에 상영하는 예고편 및 광고영화를 포함한다)를 제작 또는 배급(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는 상영 또는 공급하기 전에 그 내용에 관하여 제00조에 의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상물등급위원회"라 한다)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화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정한 장소에서 청소년이 포함되지 아니한 특정인에 한하여 상영하거나 시청에 제공하는 소형영화·단편영화 2. 영화진흥위원회가 추천하는 영화제에서 상영하는 영화 3. 국제적 문화교류의 목적으로 상영하는 영화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영화 4.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영화. 다만,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자가 제작·유통하거나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음악영상파일은 제외한다. 5.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영상물 대회, 전시회 등에서 시청에 제공하는 영화 6. 그 밖에 제작 주체, 유통 형태 등에 비추어 보아 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한 영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p>② 제1항 본문에 의한 영화의 등급은 그 내용, 영상 및 대사 등의 표현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다만, 영화 상영 전후에 상영하는 광고영화는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등급을</p>	<p>제00조(등급분류) ① 영화(영화상영관 등에서 영화 상영 전후에 상영하는 예고편 및 광고영화를 포함한다) 및 영상물을 제작 또는 배급(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는 상영 또는 공급하기 전에 그 내용에 관하여 제00조에 의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상물등급위원회"라 한다)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화 또는 영상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정한 장소에서 청소년이 포함되지 아니한 특정인에 한하여 상영하거나 시청에 제공하는 소형영화·단편영화 또는 영상물 2. 영화진흥위원회가 추천하는 영화제에서 상영하는 영화 3. 국제적 문화교류의 목적으로 상영하는 영화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영화 4.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영상물. 다만,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자가 제작·유통하거나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음악영상파일은 제외한다. 5.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영상물 대회, 전시회 등에서 시청에 제공하는 영상물 6. 등급분류를 받은 영화(제한관람가 영화를 제외한다)를 동일한 내용으로 제작하는 영상물. 이 경우 당해 영화의 등급을 영상물의 등급으로 본다. 7. 그 밖에 제작 주체, 유통 형태 등에 비추어 보아 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한 영화 또는 영상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p>② 제1항 본문에 의한 영화 또는 영상물의 등급은 그 내용, 영상 및 대사 등의 표현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다만, 영화 상영 전후에 상영하는 광고영화 또는 영상물 시청제공 전후에 시청제공하는 광고영상물</p>

현행법	개정안 제1안(영화 일원론)	개정안 제2안(영화 + 영상물 이원구조)
<p>영화는 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상영등급을 분류하고 청소년 관람불가 예고편 영화는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의 상영 전후에만 상영할 수 있다.</p> <p>1. 전체관람가 : 모든 연령에 해당하는 자가 관람할 수 있는 영화</p> <p>2. 12세 이상 관람가 : 12세 이상의 자가 관람할 수 있는 영화</p> <p>3. 15세 이상 관람가 : 15세 이상의 자가 관람할 수 있는 영화</p> <p>4. 청소년 관람불가 : 청소년은 관람할 수 없는 영화</p> <p>5. 제한상영가 : 선정성·폭력성·사회적 행위 등의 표현이 과도하여 인간의 보편적 존엄, 사회적 가치,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 정서를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어 상영·시청제공, 유통, 광고·선전 등에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p> <p>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상영등급을 분류 받지 아니한 영화를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④ 누구든지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상영등급에 해당하는 영화의 경우에는 해당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를 입장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여 관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⑤ 누구든지 제2항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상영등급에 해당하는 영화의 경우에는 청소년을 입장시키거나 청소년을 입장시키거나 청소년이 시청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⑥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류 받은 상영등급을 변조하거나 상영등급을 분류 받은 영화의 내용을 변경하여</p>	<p>또는 제4호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고 청소년 관람불가 예고편영화(술·담배에 관한 광고영화를 포함한다.)는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의 상영 전후에만 상영할 수 있다.</p> <p>1. 전체관람가 : 모든 연령에 해당하는 자가 관람 및 시청할 수 있는 영화</p> <p>2. 12세 이상 관람가 : 12세 이상의 자가 관람 및 시청할 수 있는 영화</p> <p>3. 15세 이상 관람가 : 15세 이상의 자가 관람 및 시청할 수 있는 영화</p> <p>4. 청소년 관람불가 : 청소년은 관람 및 시청할 수 없는 영화</p> <p>5. 제한관람가 : 선정성·폭력성·사회적 행위 등의 표현이 과도하여 인간의 보편적 존엄, 사회적 가치,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 정서를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어 상영, 시청제공, 유통, 광고·선전 등에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p> <p>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등급을 분류 받지 아니한 영화를 상영하거나 시청제공·유통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④ 누구든지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등급에 해당하는 영화의 경우에는 해당 영화를 관람 또는 시청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를 관람 또는 시청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모 등 법정대리인을 동반하여 관람하거나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시청에 관한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⑤ 누구든지 제2항 제4호 또는 제5호의 등급에 해당하는 영화의 경우에는 청소년을 입장시키거나 청소년이 시청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⑥ 누구든지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분류 받은 등급을 변조하거나 등급분류를 받은 영화의 내용을 변경하여 영화를 상영</p>	<p>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등급을 분류 받을 수 있고, 예고편영화 또는 예고편영상물은 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고 청소년 관람불가 예고편영화 또는 예고편 영상물(술·담배에 관한 광고영화 또는 광고영상물을 포함한다.)는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 또는 영상물의 상영 전후 또는 시청제공에만 상영할 수 있다.</p> <p>1. 전체관람가 : 모든 연령에 해당하는 자가 관람 및 시청할 수 있는 영화 또는 영상물</p> <p>2. 12세 이상 관람가 : 12세 이상의 자가 관람 및 시청할 수 있는 영화 또는 영상물</p> <p>3. 15세 이상 관람가 : 15세 이상의 자가 관람 및 시청할 수 있는 영화 또는 영상물</p> <p>4. 청소년 관람불가 : 청소년은 관람 및 시청할 수 없는 영화 또는 영상물</p> <p>5. 제한관람가 : 선정성·폭력성·사회적 행위 등의 표현이 과도하여 인간의 보편적 존엄, 사회적 가치,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 정서를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어 상영, 시청제공, 유통, 광고·선전 등에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 또는 영상물</p> <p>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등급을 분류 받지 아니한 영화 또는 영상물을 상영하거나 시청제공·유통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④ 누구든지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등급에 해당하는 영화 또는 영상물의 경우에는 해당 영화 또는 영상물을 관람 또는 시청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를 관람 또는 시청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모 등 법정대리인을 동반하여 관람하거나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시청에 관한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⑤ 누구든지 제2항 제4호 또는 제5호의 등급에 해당하는 영화 또는 영상물의 경우에는 청소년을 입장시키거나 청소년이 시청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⑥ 누구든지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분류 받은 등급을 변조하거나 등급을 분류 받은 영화 또는 영상물의 내용을 변경하여</p>

현행법	개정안 제1안(영화 일원론)	개정안 제2안(영화 + 영상물 이원구조)
<p>영화를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⑦ 제2항 각 호의 상영등급에 대한 구체적인 분류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한민국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와 인권존중에 관한 사항 2.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동 및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 3. 사회윤리의 존중에 관한 사항 4. 국가정체성 및 외교관계의 유지에 관한 사항 5. 주제 및 내용의 폭력성·선정성·반사회적 행위 등에 관한 사항 6. 인간의 보편적 존엄과 사회적 가치, 선량한 풍속 및 국민정서에 관한 사항 <p>⑧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상영등급을 분류하는 경우에는 내용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p> <p>⑨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화의 상영등급을 분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화의 상영등급과 내용정보를 기재한 등급분류증명서 2. 등급분류에 따른 의무사항을 기재한 서류 <p>⑩ 제1항·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상영등급분류 절차·방법, 내용정보 제공의 절차·방법 및 등급분류증명서의 교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p> <p>제50조(등급분류) ① 비디오물을 제작 또는 배급(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는 해당 비디오물을 공급하기 전에 해당 비디오물의 내용에 관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디오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정한 장소에서 청소년이 포함되지 아니한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여 시청에 제공하는 비디오물 2.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온라인비디오물. 다만, 「음약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영업 	<p>하거나 시청제공·유통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⑦ 제2항 각 호의 등급에 대한 구체적인 분류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한민국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와 인권존중에 관한 사항 2.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동 및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 3. 사회윤리의 존중에 관한 사항 4. 국가정체성 및 외교관계의 유지에 관한 사항 5. 주제 및 내용의 폭력성·선정성·반사회적 행위 등에 관한 사항 6. 인간의 보편적 존엄과 사회적 가치, 선량한 풍속 및 국민정서에 관한 사항 <p>⑧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등급을 분류하는 경우에는 내용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p> <p>⑨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화의 등급을 분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신청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화의 등급과 내용정보를 기재한 등급분류필증 2. 등급분류에 따른 의무사항을 기재한 서류 <p>⑩ 제1항·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등급분류 절차·방법, 내용정보 제공의 절차·방법 및 등급분류증명서의 제공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p>	<p>상영하거나 시청제공·유통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⑦ 제2항 각 호의 등급에 대한 구체적인 분류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한민국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와 인권존중에 관한 사항 2.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동 및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 3. 사회윤리의 존중에 관한 사항 4. 국가정체성 및 외교관계의 유지에 관한 사항 5. 주제 및 내용의 폭력성·선정성·반사회적 행위 등에 관한 사항 6. 인간의 보편적 존엄과 사회적 가치, 선량한 풍속 및 국민정서에 관한 사항 <p>⑧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등급을 분류하는 경우에는 내용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p> <p>⑨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화 또는 영상물의 등급을 분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신청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화 또는 영상물의 등급과 내용정보를 기재한 등급분류필증을 기재한 등급분류증명서 2. 등급분류에 따른 의무사항을 기재한 서류 <p>⑩ 제1항·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등급분류 절차·방법, 내용정보 제공의 절차·방법 및 등급분류증명서의 제공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p>

현행법	개정안 제1안(영화 일원론)	개정안 제2안(영화 + 영상물 이원구조)
<p>을 하는 자가 제작·유통하거나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음악영상파일은 제외한다.</p> <p>3.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영상물 대회, 전시회 등에서 시청에 제공하는 비디오물</p> <p>4. 등급분류를 받은 영화(제한상영가 영화를 제외한다)를 동일한 내용으로 제작하는 비디오물. 이 경우 해당 영화의 상영등급을 비디오물의 등급으로 본다.</p> <p>5. 그 밖에 비디오물의 제작 주체, 유통 형태 등에 비추어 보아 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한 비디오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p> <p>②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비디오물의 등급분류를 신청하는 자가 그 비디오물의 제작 또는 배급에 관한 정당한 권리를 갖추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시청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수입된 비디오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의 등급은 비디오물의 내용, 영상 및 대사 등의 표현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p> <p>1. 전체관람가 : 모든 연령의 자가 시청할 수 있는 비디오물</p> <p>2. 12세 이상 관람가 : 12세 이상의 자가 시청할 수 있는 비디오물</p> <p>3. 15세 이상 관람가 : 15세 이상의 자가 시청할 수 있는 비디오물</p> <p>4. 청소년관람불가 : 청소년은 시청할 수 없는 비디오물</p> <p>5. 제한관람가 : 선정성·폭력성·사회적 행위 등의 표현이 과도하여 인간의 보편적 존엄, 사회적 가치,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 정서를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어 시청제공·유통 등에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비디오물</p> <p>④ 삭제 <2009. 5. 8.></p> <p>⑤ 제3항 각 호의 등급에 대한 구체적인 분류 기준은 제29조제7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⑥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 결정</p>		

현행법	개정안 제1안(영화 일원론)	개정안 제2안(영화 + 영상물 이원구조)
<p>을 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비디오물의 등급과 내용정보를 기재한 등급분류증명서 등급분류에 따른 의무사항을 기재한 서류 <p>⑦ 제1항·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등급분류 절차·방법, 등급분류증명서의 교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 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p>		

(2) 개정의 취지

- 영화에 대한 상영등급분류조항인 제29조와 비디오물의 상영등급분류조항인 제50조의 통합에 따른 개정

(3) 조문의 해설

- 비디오물의 개념을 폐지하는 것이므로, 비디오물 등급분류 관련 조항들과의 통합이 필요함. 또한 중복되는 내용도 많음
- 개정안 제1안의 경우에는 기존의 영화, 비디오물, 온라인비디오물 개념들을 영화 개념으로 일원화하는 것임. 개정안 제2안의 경우에는 영화 + 영상물로 이원화하는 것이므로 등급분류의 대상인 영화와 영상물을 함께 나열함
- 영화에 대한 상영등급분류조항인 제29조와 비디오물의 상영등급분류조항인 제50조의 통합하는 것이므로, 제50조에만 규정되어 있던 문구들을 추가로 삽입함
- 제1항 본문의 경우, 비디오물의 등급분류에 관한 조항인 제50조에 따라 상영등급분류의무의 주체에 '배급'이라는 용어를 포함시킴. 현행법은 영화업자가 제작 또는 수입한 영화에 대해서만 상영등급분류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참고로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은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 등급분류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리고 '공급'이라는 용어와 '그 내용에 관하여'라는 문구 포함시킴
- 제1항 단서 제1호의 경우, 제50조 제1항 단서 제1호를 고려하여 문구수정
- 제1항 단서 제4호의 경우, 제50조 제1항 단서 제2호를 고려하여 문구수정
- 제1항 단서 제5호의 경우, 제50조 제1항 단서 제3호를 고려하여 문구수정
- 개정안 제2안 제1항 단서 제6호의 경우, 제50조 제1항 단서 제4호를 고려하여 문구수정하되, '제한상영가'를 '제한관람가'로 용어를 수정함

- 개정안 제1안 제1항 단서 제6호 및 개정안 제2안 제1항 단서 제7호의 경우, 제50조 제1항 단서 제5호를 고려하여 문구수정
- 제2항 본문의 경우, 제50조 제3항에 따라 본문에 '대사'도 포함시킴
- 제2항 단서의 경우, 제29조 제2항 단서를 고려하되 문구수정. 술·담배에 관한 광고영화 또는 광고영상물을 청소년 관람불가 예고편영화 또는 예고편영상물에 포함시킴
- 제2항 각호의 경우, 제50조 제3항에 따라 각 호에 '시청'도 포함시킴
- 제2항 제5호의 경우, '제한관람가'로 용어를 수정하고 제50조 제3항 제5호상의 문구인 '시청제공·유통 등'은 포함시킴
- 제3항의 경우, 문구수정
- 제4항의 경우, 문구수정. 과거의 비디오물의 형태로 유통되거나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영화의 경우에는 부모의 동반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부모의 동의'를 삽입하였음. 그리고 '부모 등 보호자'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으로 수정함
- 제5항의 경우, 문구수정
- 제6항의 경우, 문구수정
- 제7항의 경우, 문구수정
- 제8항의 경우, 문구수정
- 제9항의 경우, 문구수정
- 제10항의 경우, 문구수정. '등급분류증명서의 교부절차'라는 문구를 '등급분류증명서의 제공방법'이라는 용어로 변경. 교부는 직접 건네주는 것으로 한정될 우려가 있어 제공으로 그 의미를 확대함

2.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

(1) 개정안의 내용

현행법	개정안 제1안(영화 일원론)	개정안 제2안(영화 + 영상물 이원구조)
<p>제50조의2(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 ① 제5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0조제3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이하 “자체등급분류사업자”라 한다)는 이용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온라인비디오물의 내용에 관하여 그 온라인비디오물의 제공 전에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50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온라인비디오물은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p> <p>②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등급분류하여 제공하는 온라인비디오물을 공급하는 자가 그 비디오물의 제작 또는 배급에 관한 정당한 권리를 갖추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정당한 권리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자체등급분류 결정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등급분류를 요청하여 그 결과로 자체등급분류 결정을 대체할 수 있다.</p>	<p>제00조(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 ① 제0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00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이하 “자체등급분류사업자”라 한다)는 이용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시청에 제공하는 영화의 내용에 관하여 그 영화의 제공 전에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00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영화는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p> <p>②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등급분류하여 제공하는 영화를 공급하는 자가 그 영화의 제작 또는 배급에 관한 정당한 권리를 갖추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정당한 권리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자체등급분류 결정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등급분류를 요청하여 그 결과로 자체등급분류 결정을 대체할 수 있다.</p>	<p>제00조(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 ① 제0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00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이하 “자체등급분류사업자”라 한다)는 이용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시청에 제공하는 영상물의 내용에 관하여 그 영상물의 제공 전에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00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영상물은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p> <p>②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등급분류하여 제공하는 영상물을 공급하는 자가 그 영상물의 제작 또는 배급에 관한 정당한 권리를 갖추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정당한 권리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자체등급분류 결정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등급분류를 요청하여 그 결과로 자체등급분류 결정을 대체할 수 있다.</p>

(2) 개정의 취지

- 제1안인 영화(비디오물 + 온라인비디오물 포함) 일원론과 제2안인 영화 + 영상물(비디오물 + 온라인비디오물 포함) 이원구조를 전제로 한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에 관한 조항인 제50조의2의 개정

(3) 조문의 해설

- 제1항의 경우, 제50조의2 제1항을 고려하여 문구수정. 자체등급분류는 정보통신망(온라인)을 통하여 시청 제공되는 영화(제1안) 또는 영상물(제2안)에만 적용되는 것임
- 권원 확인제도를 규정한 제2항의 경우, 향후 삭제에 대한 검토 필요

3.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1) 개정안의 내용

현행법	개정안 제1안(영화 일원론)	개정안 제2안(영화 + 영상물 이원구조)
<p>제50조의3(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업자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p> <p>1. 자체등급분류 업무운영 계획의 적정성 2. 청소년 및 이용자 보호 계획의 적정성</p> <p>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 것</p> <p>가. 온라인비디오물을 시청에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의 신고를 한 법인</p> <p>나.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p> <p>2. 최근 5년간 제50조의6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가 확정된 사실이 없을 것</p> <p>③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지정기간의 만료 후 계속하여 자체등급분류 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p> <p>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3항에 따른 재지정을 할 수 있다.</p> <p>1. 제1항 각 호의 계획에 대한 이행 여부 및 향후 계획의 적정성 2. 최근 5년간 제50조의6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가 확정된 사실이 없을 것 3. 제50조의8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 및 개선조치의 이행 여부</p> <p>⑤ 제1항에 따른 지정 및 제4항에 따른 재지정에 필요한 세부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00조(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업자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p> <p>1. 자체등급분류 업무운영 계획의 적정성 2. 청소년 및 이용자 보호 계획의 적정성</p> <p>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 것</p> <p>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영화를 시청에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의 신고를 한 법인</p> <p>나.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p> <p>2. 최근 5년간 제00조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가 확정된 사실이 없을 것</p> <p>③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지정기간의 만료 후 계속하여 자체등급분류 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p> <p>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3항에 따른 재지정을 할 수 있다.</p> <p>1. 제1항 각 호의 계획에 대한 이행 여부 및 향후 계획의 적정성 2. 최근 5년간 제00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가 확정된 사실이 없을 것 3. 제00조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 및 개선조치의 이행 여부</p> <p>⑤ 제1항에 따른 지정 및 제4항에 따른 재지정에 필요한 세부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00조(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업자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p> <p>1. 자체등급분류 업무운영 계획의 적정성 2. 청소년 및 이용자 보호 계획의 적정성</p> <p>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 것</p> <p>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영상물을 시청에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의 신고를 한 법인</p> <p>나.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p> <p>2. 최근 5년간 제00조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가 확정된 사실이 없을 것</p> <p>③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지정기간의 만료 후 계속하여 자체등급분류 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p> <p>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3항에 따른 재지정을 할 수 있다.</p> <p>1. 제1항 각 호의 계획에 대한 이행 여부 및 향후 계획의 적정성 2. 최근 5년간 제00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가 확정된 사실이 없을 것 3. 제00조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 및 개선조치의 이행 여부</p> <p>⑤ 제1항에 따른 지정 및 제4항에 따른 재지정에 필요한 세부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2) 개정의 취지

- 제1안인 영화(비디오물 + 온라인비디오물 포함) 일원론과 제2안인 영화 + 영상물(비디오물 + 온라인 비디오물 포함) 이원구조를 전제로 한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에 관한 조항인 제50조의3의 개정

(3) 조문의 해설

- 제2항 제1호 가목의 경우, 제50조의3 제2항 제1호 가목을 고려하여 문구수정. 자체등급분류는 정보통신망(온라인)을 통하여 시청 제공되는 영화(제1안) 또는 영상물(제2안)에만 적용되는 것임

4.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준수사항

(1) 개정안의 내용

현행법	개정안 제1안(영화 일원론)	개정안 제2안(영화 + 영상물 이원구조)
<p>제50조의4(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준수사항)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50조제5항에 따른 비디오물 등급분류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것 2. 제1호에 따라 등급분류한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하여 제65조에 따라 등급과 내용정보 등을 표시하고 이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할 것 3.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급분류책임자를 지정하고 해당 등급분류책임자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실시하는 등급분류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것 4. 자체등급분류 업무와 관련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에 따를 것 5. 그 밖에 자체등급분류 업무의 적정성 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p>제00조(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준수사항)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00조제7항에 따른 <u>영화</u> 등급분류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것 2. 제1호에 따라 등급분류한 <u>영화</u>에 대하여 제00조에 따라 등급과 내용정보 등을 표시하고 이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할 것 3.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급분류책임자를 지정하고 해당 등급분류책임자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실시하는 등급분류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것 4. 자체등급분류 업무와 관련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에 따를 것 5. 그 밖에 자체등급분류 업무의 적정성 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p>제00조(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준수사항)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00조제7항에 따른 <u>영화 또는 영상물</u> 등급분류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것 2. 제1호에 따라 등급분류한 <u>영상물</u>에 대하여 제00조에 따라 등급과 내용정보 등을 표시하고 이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할 것 3.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급분류책임자를 지정하고 해당 등급분류책임자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실시하는 등급분류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것 4. 자체등급분류 업무와 관련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에 따를 것 5. 그 밖에 자체등급분류 업무의 적정성 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2) 개정의 취지

- 제1안인 영화(비디오물 + 온라인비디오물 포함) 일원론과 제2안인 영화 + 영상물(비디오물 + 온라인비디오물 포함) 이원구조를 전제로 한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조항인 제50조의4의 개정

(3) 조문의 해설

- 제1호의 경우, 제50조의4 제1호를 고려하여 문구수정

5. 자체등급분류의 효력

(1) 개정안의 내용

현행법	개정안 제1안(영화 일원론)	개정안 제2안(영화 + 영상물 이원구조)
<p>제50조의5(자체등급분류의 효력) ①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온라인비디오물은 그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공급 및 제공하는 범위에서 제50조제1항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것으로 본다.</p> <p>②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다른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한 등급분류 결과를 이용할 수 있다.</p>	<p>제00조(자체등급분류의 효력) ① 제00조제1항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영화는 그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공급 및 제공하는 범위에서 제00조제1항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것으로 본다.</p> <p>②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다른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한 등급분류 결과를 이용할 수 있다.</p>	<p>제00조(자체등급분류의 효력) ① 제00조제1항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영상물은 그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공급 및 제공하는 범위에서 제00조제1항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것으로 본다.</p> <p>②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다른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한 등급분류 결과를 이용할 수 있다.</p>

(2) 개정의 취지

- 제1안인 영화(비디오물 + 온라인비디오물 포함) 일원론과 제2안인 영화 + 영상물(비디오물 + 온라인비디오물 포함) 이원구조를 전제로 한 자체등급분류의 효력에 관한 조항인 제50조의5의 개정

(3) 조문의 해설

- 제1항의 경우, 제50조의5 제1항을 고려하여 문구수정

6.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등

(1) 개정안의 내용

현행법	개정안 제1안(영화 일원론)	개정안 제2안(영화 + 영상물 이원구조)
<p>제50조의6(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5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제50조의4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50조의7제4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계속한 경우 <p>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에 앞서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시정방안을 정하여 10일 이내에 이를 수락할 것을 권고할 수 있으며,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시정방안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지정취소 이전에 한 등급분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같은 항 제1호의 사유로 지정취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⑤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에 필요한 절차와 세부적인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00조(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0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제00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00조제4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계속한 경우 <p>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에 앞서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시정방안을 정하여 10일 이내에 이를 수락할 것을 권고할 수 있으며,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시정방안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지정취소 이전에 한 등급분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같은 항 제1호의 사유로 지정취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⑤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에 필요한 절차와 세부적인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00조(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0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제00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00조제4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계속한 경우 <p>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에 앞서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시정방안을 정하여 10일 이내에 이를 수락할 것을 권고할 수 있으며,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시정방안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지정취소 이전에 한 등급분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같은 항 제1호의 사유로 지정취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⑤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에 필요한 절차와 세부적인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2) 개정의 취지

- 제1안인 영화(비디오물 + 온라인비디오물 포함) 일원론과 제2안인 영화 + 영상물(비디오물 + 온라인비디오물 포함) 이원구조를 전제로 한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등에 관한 조항인 제50조의6의 개정

(3) 조문의 해설

- 제1항의 경우, 제50조의6 제1항을 고려하여 조문번호 변경에 따른 문구수정

7. 직권등급재분류 등

(1) 개정안의 내용

현행법	개정안 제1안(영화 일원론)	개정안 제2안(영화 + 영상물 이원구조)
<p>제50조의7(직권등급재분류 등) ① 영상물 등급위원회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분류한 온라인비디오물이 제50조제3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새로 등급분류 결정을 하거나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p> <p>②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 결과가 등급분류 기준에 현저히 위배되거나 자체등급분류사업자 간의 등급분류 결과가 상이한 경우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등급을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p> <p>③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급분류 결정 또는 취소 결정을 한 경우 이를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p> <p>④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요구 및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제00조(직권등급재분류 등) ①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분류한 <u>영화</u>가 제00조제2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새로 등급분류 결정을 하거나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p> <p>②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 결과가 등급분류 기준에 현저히 위배되거나 자체등급분류사업자 간의 등급분류 결과가 상이한 경우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등급을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p> <p>③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급분류 결정 또는 취소 결정을 한 경우 이를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p> <p>④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요구 및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제00조(직권등급재분류 등) ①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분류한 <u>영상물</u>이 제00조제2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새로 등급분류 결정을 하거나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p> <p>②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 결과가 등급분류 기준에 현저히 위배되거나 자체등급분류사업자 간의 등급분류 결과가 상이한 경우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등급을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p> <p>③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급분류 결정 또는 취소 결정을 한 경우 이를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p> <p>④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요구 및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2) 개정의 취지

- 제1안인 영화(비디오물 + 온라인비디오물 포함) 일원론과 제2안인 영화 + 영상물(비디오물 + 온라인비디오물 포함) 이원구조를 전제로 한 직권등급재분류 등에 관한 조항인 제50조의7의 개정

(3) 조문의 해설

- 제1항의 경우, 제50조의7 제1항을 고려하여 조문번호 변경에 따른 문구수정

8.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지원업무

(1) 개정안의 내용

현행법	개정안 제1안(영화 일원론)	개정안 제2안(영화 + 영상물 이원구조)
<p>제50조의8(영상물등급위원회의 지원업무)</p> <p>①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자체등급분류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온라인비디오물의 등급정보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제공 2. 온라인비디오물의 신속한 등급분류 절차를 위한 정보통신 시스템 구축 및 운영 3. 제50조의4제1호 및 제2호의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온라인 사후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4. 제50조의4제3호에 따른 등급분류책임자에 대한 온라인 교육시스템과 대면 교육체계 구축 및 운영 5.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자체등급분류 사업자에 대한 등급분류 업무 지원 6. 자체등급분류 정보 이용자의 수용능력 향상을 위한 온라인 교육시스템과 대면 교육체계 구축 및 운영 7. 자체등급분류 정보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및 협력체계 구축 <p>②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하여 자체등급분류지원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p> <p>③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50조의4제2호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부터 통보받은 사항을 공중에 공개할 수 있다.</p> <p>④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자체등급분류 업무의 적정성 유지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제50조의4에서 정하는 사항 및 제50조의7제4항의 조치의무에 대한 준수 여부를 평가한 후 평가 결과를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통보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업무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p>	<p>제00조(영상물등급위원회의 지원업무) ①</p> <p>영상물등급위원회는 자체등급분류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화의 등급정보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제공 2. 영화의 신속한 등급분류 절차를 위한 정보통신 시스템 구축 및 운영 3. 제00조제1호 및 제2호의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온라인 사후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4. 제00조제3호에 따른 등급분류책임자에 대한 온라인 교육시스템과 대면 교육체계 구축 및 운영 5.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자체등급분류 사업자에 대한 등급분류 업무 지원 6. 자체등급분류 정보 이용자의 수용능력 향상을 위한 온라인 교육시스템과 대면 교육체계 구축 및 운영 7. 자체등급분류 정보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및 협력체계 구축 <p>②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하여 자체등급분류지원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p> <p>③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00조제2호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부터 통보받은 사항을 공중에 공개할 수 있다.</p> <p>④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자체등급분류 업무의 적정성 유지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제00조에서 정하는 사항 및 제00조제4항의 조치의무에 대한 준수 여부를 평가한 후 평가 결과를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통보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업무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p>	<p>제00조(영상물등급위원회의 지원업무) ①</p> <p>영상물등급위원회는 자체등급분류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상물의 등급정보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제공 2. 영상물의 신속한 등급분류 절차를 위한 정보통신 시스템 구축 및 운영 3. 제00조제1호 및 제2호의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온라인 사후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4. 제00조제3호에 따른 등급분류책임자에 대한 온라인 교육시스템과 대면 교육체계 구축 및 운영 5.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자체등급분류 사업자에 대한 등급분류 업무 지원 6. 자체등급분류 정보 이용자의 수용능력 향상을 위한 온라인 교육시스템과 대면 교육체계 구축 및 운영 7. 자체등급분류 정보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및 협력체계 구축 <p>②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하여 자체등급분류지원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p> <p>③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00조제2호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부터 통보받은 사항을 공중에 공개할 수 있다.</p> <p>④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자체등급분류 업무의 적정성 유지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제00조에서 정하는 사항 및 제00조제4항의 조치의무에 대한 준수 여부를 평가한 후 평가 결과를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통보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업무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p>

(2) 개정의 취지

- 제1안인 영화(비디오물 + 온라인비디오물 포함) 일원론과 제2안인 영화 + 영상물(비디오물 + 온라인비디오물 포함) 이원구조를 전제로 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지원업무에 관한 조항인 제50조의8의 개정

(3) 조문의 해설

- 제1항, 제3항, 제4항의 경우, 제50조의8 제1항, 제3항, 제4항을 고려하여 조문번호 변경에 따른 문구수정

9. 등급의 재분류

(1) 개정안의 내용

현행법	개정안 제1안(영화 일원론)	개정안 제2안(영화 + 영상물 이원구조)
<p>제31조(상영등급의 재분류) ①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류 받은 상영등급에 이의가 있는 영화업자는 상영등급을 분류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여 등급분류를 다시 받을 수 있다.</p> <p>②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신청에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등급분류를 다시 하여 신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유 없음을 통지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분류신청의 절차 및 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p>	<p>제00조(등급의 재분류) ① 제00조에 따라 등급분류 결정을 받은 자가 분류 받은 등급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여 등급분류를 다시 받을 수 있다.</p> <p>②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신청에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서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등급분류를 다시 하여 이를 신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유 없음을 통지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분류신청의 절차·방법 및 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p>	<p>제00조(등급의 재분류) ① 제00조에 따라 등급분류 결정을 받은 자가 분류 받은 등급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여 등급분류를 다시 받을 수 있다.</p> <p>②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신청에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서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등급분류를 다시 하여 이를 신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유 없음을 통지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분류신청의 절차·방법 및 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p>
<p>제54조(등급의 재분류 등) ① 제50조 또는 제5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여 등급분류를 다시 받을 수 있다.</p> <p>②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신청에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등급분류를 다시 하고 이를 신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유 없음을 통지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의 절차·방법 및 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p>		

(2) 개정의 취지

- 영화에 대한 상영등급의 재분류조항인 제31조와 비디오물의 등급의 재분류조항인 제54조의 통합에 따른 개정
- 등급재분류절차의 개시 시점과 관련된 개정

(3) 조문의 해설

- 제1항의 경우, 현행 제31조 제1항에서는 ‘상영등급을 분류 받은 날부터’로 되어 있지만, 비디오물의 등급 재분류에 관한 조항인 제54조 제1항에서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로 되어 있음. 절차법상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로 하는 것이 적절함
-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문구 수정

10. 등급분류 등의 취소

(1) 개정안의 내용

현행법	개정안 제1안(영화 일원론)	개정안 제2안(영화 + 영상물 이원구조)
<p>제52조(등급분류 등의 취소) ① 영상물등급위원회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0조제1항 또는 제5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 또는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거나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가 등급분류 또는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등급분류 또는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p> <p>②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분류 또는 확인을 취소한 때에는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5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증명서 또는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증명서를 각각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반납하여야 한다.</p>	<p>제00조(등급분류 등의 취소) ①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화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00조제1항에 따른 등급분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등급분류를 취소하여야 한다.</p> <p>②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제1항에 의하여 등급분류를 취소한 때에는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00조제9항에 따른 등급분류증명서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반납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p>	<p>제00조(등급분류 등의 취소) ①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화 또는 영상물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00조제1항에 따른 등급분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등급분류를 취소하여야 한다.</p> <p>②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제1항에 의하여 등급분류를 취소한 때에는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00조제9항에 따른 등급분류증명서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반납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p>

(2) 개정의 취지

- 기존 비디오물에만 적용되었던 등급분류 등의 취소절차를 제1안인 영화(비디오물 + 온라인비디오물 포함) 일원론과 제2안인 영화 + 영상물(비디오물 + 온라인비디오물 포함) 이원구조 공통으로 적용하기 위한 개정

(3) 조문의 해설

- 제1항의 경우, 제52조 제1항을 고려하되, 정당한 권원의 확인절차와 관련된 내용은 삭제함
- 제2항의 경우, 등급분류증명서가 전자문서의 경우에는 폐기하여야 하므로 이를 추가함

11. 등급분류 결정 등의 공고

(1) 개정안의 내용

현행법	개정안 제1안(영화 일원론)	개정안 제2안(영화 + 영상물 이원구조)
<p>제55조(등급분류 등의 통지)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비디오물에 대한 지도·단속권한이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정기관의 장과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단체(이하 "비디오물단체"라 한다)에 통지하고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50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에 관한 결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p>제00조(등급분류 결정 등의 공고) 영상물 등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0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급분류에 관한 결정 제00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제00조에 따른 등급분류 취소결정 	<p>제00조(등급분류 결정 등의 공고) 영상물 등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0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급분류에 관한 결정 제00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제00조에 따른 등급분류 취소결정

(2) 개정의 취지

- 등급분류 결정 등의 통지절차를 제1안인 영화(비디오물 + 온라인비디오물 포함) 일원론과 제2안인 영화 + 영상물(비디오물 + 온라인비디오물 포함) 이원구조 공통으로 적용하되, 공고절차로 변경하기 위한 개정

(3) 조문의 해설

- 현실적으로 지도·단속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의 장과 영화단체에 대한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고, 필요성도 없다면, 홈페이지를 통한 공고절차로 변경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음. 대신 관람자 또는 이용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함. 대상에 등급분류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이외에 등급분류 취소결정도 추가함

12. 표시의무

(1) 개정안의 내용

현행법	개정안 제1안(영화 일원론)	개정안 제2안(영화 + 영상물 이원구조)
<p>제65조(표시의무) ① 영리의 목적으로 비디오물을 제작 또는 수입하거나 이를 복제하는 자는 해당 비디오물마다 제작·수입 또는 복제한 자의 상호(도서에 부수되는 비디오물의 경우에는 출판사의 상호를 말한다), 제50조제1항 또는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분류된 등급, 내용정보,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 및 내용정보의 표시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00조(표시의무) ① 영리의 목적으로 영화를 제작 또는 수입하거나 이를 복제하는 자는 해당 영화마다 제작·수입 또는 복제한 자의 상호(도서에 부수되는 영화의 경우에는 출판사의 상호를 말한다), 제00조제1항 또는 제00조제1항에 따라 분류된 등급, 내용정보,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 및 내용정보의 표시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00조(표시의무) ① 영리의 목적으로 영화 또는 영상물을 제작 또는 수입하거나 이를 복제하는 자는 해당 영화 또는 영상물마다 제작·수입 또는 복제한 자의 상호(도서에 부수되는 영화 또는 영상물의 경우에는 출판사의 상호를 말한다), 제00조제1항 또는 제00조제1항에 따라 분류된 등급, 내용정보,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 및 내용정보의 표시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2) 개정의 취지

- 표시의무를 제1안인 영화(비디오물 + 온라인비디오물 포함) 일원론과 제2안인 영화 + 영상물(비디오물 + 온라인비디오물 포함) 이원구조 공통으로 적용하기 위한 개정

(3) 조문의 해설

- 제1항의 경우, 제65조 제1항을 고려한 문구수정 및 조문번호 수정

제7장

영상산업 진흥체계
재편 방안

20
23

제7장

영상산업 진흥체계 재편 방안

I. 영화산업 진흥 및 소비자 보호 체계 방안

1. 사업자 정의의 개편

- 본 보고서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제1안인 영화(비디오물 + 온라인비디오물 포함) 일원론과 제2안인 영화 + 영상물(=온라인비디오물) 이원구조를 전제로 한 사업자 정의의 개편 방향은 다음과 같음
 - 제1안인 영화 일원론으로 접근하면 영화업자 + 비디오물영업자를 영화사업자로 통합하여 규정할 수 있음
 - 현행법에 따르면 영화업자는 수입업자가 별도로 있으나 비디오물영업자의 경우 수입은 배급업에 포함되어 있는데 통합 영화 정의에 따른 사업자 규정에서는 이를 일원적으로 규정하여 영화수입업자는 폐지하고 수입은 영화배급업에 통합하여 규정함
 - 통합 영화업자의 범위에 있어서도 영화시청제공업자는 그 성격이 상이하므로 영화시청제공업자를 영화업자에 포함시키지 않음

현행 법률	개정안 제1안(영화 일원론)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9. “영화업자”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p> <p>가. 영화제작업자 : 영화제작을 업으로 하는 자</p> <p>나. 영화수입업자 : 영화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p> <p>다. 영화배급업자 : 영화배급을 업으로 하는 자</p> <p>라. 영화상영업자 : 영화상영을 업으로 하는 자</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9. “영화업자”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p> <p>가. 영화제작업자 : 영화제작·복제를 업으로 하는 자</p> <p>나. <삭제></p> <p>다. 영화배급업자 : 영화를 수입하거나 배급·공급을 업으로 하는 자</p> <p>라. 영화상영업자 : 영화상영을 업으로 하는 자</p>

현행 법률	개정안 제1안(영화 일원론)
<p>14. “비디오물제작업”이라 함은 비디오물을 제작하거나 복제하는 영업을 말한다.</p> <p>15. “비디오물배급업”이라 함은 비디오물을 수입(원판수입을 포함한다)하거나 그 저작권을 소유·관리하여 비디오물을 판매하거나 대여하는 업을 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영업을 말한다.</p> <p>16.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p> <p>가. 비디오물감상실업 : 다수의 구획된 시청실과 비디오물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비디오물을 공중의 시청에 제공(이용자가 직접 시청시설을 작동하여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영업</p> <p>나. 비디오물소극장업 : 영사막 및 다수의 객석과 비디오물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비디오물만을 전용으로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영업</p> <p>다.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업 : 영사막 및 다수의 객석과 비디오물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제한관람가 등급의 비디오물만을 전용으로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영업</p> <p>라. 복합영상물제공업 : 비디오물감상실업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노래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공중에 제공하는 영업</p> <p>마. 그 밖의 비디오물시청제공업 : 공중이 숙박·휴게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서 비디오물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비디오물을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영업</p> <p>17. “비디오물영업자”라 함은 제14호 내지 제16호의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p>	<p>14. <삭제></p> <p>15. <삭제></p> <p>16. “영화시청제공업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p> <p>가. 영화감상실업 : 다수의 구획된 시청실과 영화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영화를 공중의 시청에 제공(관객이 직접 시청시설을 작동하여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영업</p> <p>나. 영화소극장업 : 영사막 및 다수의 객석과 영화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영화만을 전용으로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영업</p> <p>다. 제한관람가영화소극장업 : 영사막 및 다수의 객석과 비디오물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제한관람가 등급의 영화를 전용으로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영업</p> <p>라. 복합영상물제공업 : 영화감상실업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노래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공중에 제공하는 영업</p> <p>마. 그 밖의 영화시청제공업 : 공중이 숙박·휴게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서 영화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영화를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영업</p> <p>17. <삭제></p>

- 제2안인 영화 + 영상물 이원구조으로 접근하면 영화업자 + 영상물업자로 규정할 수 있음.

현행 법률	개정안 제2안(영화 + 영상물 이원구조)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9. “영화업자”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p> <p>가. 영화제작업자 : 영화제작을 업으로 하는 자</p> <p>나. 영화수입업자 : 영화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p> <p>다. 영화배급업자 : 영화배급을 업으로 하는 자</p> <p>라. 영화상영업자 : 영화상영을 업으로 하는 자</p> <p>14. “비디오물제작업”이라 함은 비디오물을 제작하거나 복제하는 영업을 말한다.</p> <p>15. “비디오물배급업”이라 함은 비디오물을 수입(원판수입을 포함한다)하거나 그 저작권을 소유·관리하여 비디오물을 판매하거나 대여하는 업을 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영업을 말한다.</p> <p>16.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p> <p>가. 비디오물감상실업 : 다수의 구획된 시청실과 비디오물</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9. “영화업자”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p> <p>가. 영화제작업자 : 영화제작·복제를 업으로 하는 자</p> <p>나. <삭제></p> <p>다. 영화배급업자 : 영화를 수입하거나 배급·공급을 업으로 하는 자</p> <p>라. 영화상영업자 : 영화상영을 업으로 하는 자</p> <p>14. “영상물제작업자”라 함은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복제하는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p> <p>15. “영상물배급업자”라 함은 영상물을 수입(원판수입을 포함한다)하거나 그 저작권을 소유·관리하여 영상물을 판매하거나 대여하는 업을 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p> <p>16. “영화시청제공업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p> <p>가. 영화감상실업 : 다수의 구획된 시청실과 영화 시청기자</p>

현행 법률	개정안 제2안(영화 + 영상물 이원구조)
<p>시청기자재를 갖추고 비디오품을 공중의 시청에 제공(이용자가 직접 시청시설을 작동하여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영업</p> <p>나. 비디오품소극장업: 영사막 및 다수의 객석과 비디오품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비디오품만을 전용으로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영업</p> <p>다. 제한관람가비디오품소극장업: 영사막 및 다수의 객석과 비디오품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제한관람가 등급의 비디오품만을 전용으로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영업</p> <p>라. 복합영상물제공업: 비디오품감상실업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노래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공중에 제공하는 영업</p> <p>마. 그 밖의 비디오품시청제공업: 공중이 숙박·휴게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서 비디오품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비디오품을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영업</p> <p>17. “비디오품영업자”라 함은 제14호 내지 제16호의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p>	<p>재를 갖추고 영화를 공중의 시청에 제공(관객이 직접 시청시설을 작동하여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영업</p> <p>나. 영화소극장업: 영사막 및 다수의 객석과 영화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영화만을 전용으로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영업</p> <p>다. 제한관람가영화소극장업: 영사막 및 다수의 객석과 비디오품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제한관람가 등급의 영화만을 전용으로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영업</p> <p>라. 복합영상물제공업: 영화감상실업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노래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공중에 제공하는 영업</p> <p>마. 그 밖의 영화시청제공업: 공중이 숙박·휴게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서 영화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영화를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영업</p> <p>17. “영상물영업자”라 함은 제14호 및 제15호의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p>

○ 사업자 규율체계는 제1안과 제2안 동일하게 영화업자-신고제, 영화시청제공업-등록제로 하고 제2안의 영상물제작업-배급업은 신고제로 규정.

- 제1안에 따른 영화업자 신고제 + 영화시청제공업-등록제로 규정하는 방안은 다음과 같음

현행 법률	개정안 제1안(영화 일원론)
<p>제26조(영화업자의 신고 등) ① 영화업자가 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p> <p>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변경신고의 절차, 신고증의 교부 및 재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p>	<p>제26조(영화업자의 신고 등) ① 영화업자가 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작하는 경우 2.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교육기관 또는 연수기관이 자체교육 또는 연수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3.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자가 방송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그 사업의 홍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5. 관훈상제 또는 종교의식 등의 행사를 기념으로 남기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하는 경우. 다만, 공중에게 유통시키거나 시청에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6. 제50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영화를 제작하는 경우 <p>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변경신고의 절차, 신고증의 교부 및 재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p>

현행 법률	개정안 제1안(영화 일원론)
<p>제57조(비디오물제작업 등의 신고) ①비디오물제작업 또는 비디오물배급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작하는 경우 2.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교육기관 또는 연수기관이 자체교육 또는 연수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3.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자가 방송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그 사업의 홍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5. 관혼상제 또는 종교의식 등의 행사를 기념으로 남기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하는 경우. 다만, 공중에게 유통시키거나 시청에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6. 정보통신망만을 이용하여 시청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배급하는 경우 7.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유통하거나 시청에 제공할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제작하는 경우 8. 제50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비디오물을 제작하는 경우 <p>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p> <p>제58조(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등록) ①비디오물시청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하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에 해당하는 경우 2. 정보통신망만을 이용하여 비디오물을 시청에 제공하는 경우 <p>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또는 시설을 지정·고시할 수 있다.</p>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p>	<p>제57조(비디오물제작업 등의 신고) <삭제></p> <p>제58조(영화시청제공업자의 등록) ① 영화시청제공업자가 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하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에 해당하는 경우 2. 정보통신망만을 이용하여 영화를 시청에 제공하는 경우, <u>단, 제1항 본문에 따른 시설 및 영화시청기자재를 갖춘 경우는 제외한다.</u>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관람가영화소극장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또는 시설을 지정·고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제2안에 따른 영화업자 신고제 + 영화시청제공업-등록제 + 영상물제작업/배급업 신고제로 규정하는 방안은 다음과 같음

현행 법률	개정안 제2안(영화 + 영상물 이원구조)
<p>제26조(영화업자의 신고 등) ① 영화업자가 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p> <p>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변경신고의 절차, 신고증의 교부 및 재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p>	<p>제26조(영화업자의 신고 등) ① 영화업자가 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5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p> <p>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변경신고의 절차, 신고증의 교부 및 재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p>
<p>제57조(비디오물제작업 등의 신고) ① 비디오물제작업 또는 비디오물배급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작하는 경우 2.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교육기관 또는 연수기관이 자체교육 또는 연수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3.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자가 방송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그 사업의 홍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5. 관혼상제 또는 종교의식 등의 행사를 기념으로 남기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하는 경우. 다만, 공중에게 유통시키거나 시청에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6.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시청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배급하는 경우 7.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유통하거나 시청에 제공할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제작하는 경우 8. 제50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비디오물을 제작하는 경우 <p>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p>	<p>제57조(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 ① 영상물제작업자 또는 영상물배급업자가 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작하는 경우 2.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교육기관 또는 연수기관이 자체교육 또는 연수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3.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자가 방송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그 사업의 홍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5. 관혼상제 또는 종교의식 등의 행사를 기념으로 남기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하는 경우. 다만, 공중에게 유통시키거나 시청에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6. 제50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영상물을 제작하는 경우 7. <삭제> 8. <삭제> <p>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p>
<p>제58조(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등록) ①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하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에 해당하는 경우 	<p>제58조(영화시청제공업자의 등록) ① 영화시청제공업자가 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하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에 해당하는 경우

현행 법률	개정안 제2안(영화 + 영상물 이원구조)
<p>2. 정보통신망만을 이용하여 비디오물을 시청에 제공하는 경우</p> <p>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또는 시설을 지정·고시할 수 있다.</p>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p>	<p>2. 정보통신망만을 이용하여 영화를 시청에 제공하는 경우. 다만, 제1항 본문에 따른 시설 및 영화시청기자재를 갖춘 경우는 제외한다.</p> <p>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관람가영화소극장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또는 시설을 지정·고시할 수 있다.</p>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p>

- 사업자 규제체계의 변경에 따라 기존의 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가 필요한데 1안 및 2안의 경우 기존의 영화수입업자와 비디오물영업자의 지위에 대한 각기 다른 경과조치 규정을 부칙에 규정할 필요 있음

개정안 제1안(영화 일원론)	개정안 제2안(영화 + 영상물 이원구조)
<p>부칙 제2조(경과조치) ① 이 법의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영화수입업자는 이 법에 따른 영화배급업자로 본다.</p> <p>② 이 법의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비디오물제작업자 및 비디오물배급업자는 이 법에 따른 영화제작업자 및 영화배급업자로 본다.</p> <p>③ 이 법의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다른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는 영화시청제공업자로, 비디오물감상실업은 영화감상실업으로, 비디오물소극장은 영화소극장으로,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은 제한관람가영화소극장으로, 그 밖의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은 그 밖의 시청제공업으로 본다.</p>	<p>부칙 제2조(경과조치) ① 이 법의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영화수입업자는 이 법에 따른 영화배급업자로 본다.</p> <p>② 이 법의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비디오물제작업자는 이 법에 따른 영화제작업자 및 영상물제작업자로, 비디오물배급업자는 이 법에 따른 영화배급업자 및 영상물배급업자로 본다.</p> <p>③ 이 법의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다른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는 영화시청제공업자로, 비디오물감상실업은 영화감상실업으로, 비디오물소극장은 영화소극장으로,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은 제한관람가영화소극장으로, 그 밖의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은 그 밖의 시청제공업으로 본다.</p>

2. 영화산업 진흥 방안

- 본 보고서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제1안인 영화(비디오물 + 온라인비디오물 포함) 일원론과 제2안인 영화 + 영상물(=온라인비디오물) 이원구조를 전제로 한 영화산업 진흥을 위한 규정 신설 방안은 다음과 같음

(1) 영화업자 또는 영상물업자의 기획·제작 지원

개정안 제1안(영화 일원론)	개정안 제2안(영화 + 영상물 이원구조)
<p>제00조(영화업자의 기획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영화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용자·투자 및 그 밖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1. 우수 영화의 기획·개발 2. 첨단기술에 기반한 영화의 기획·개발</p>	<p>제00조(영화업자 및 영상물업자의 기획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영화업자 및 영상물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용자·투자 및 그 밖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1. 우수 영화 및 영상물의 기획·개발 2. 첨단기술에 기반한 영화 및 영상물의 기획·개발</p>

개정안 제1안(영화 일원론)	개정안 제2안(영화 + 영상물 이원구조)
3. 영화산업 종사인력의 전문역량 강화 4. 영화의 기획·개발을 위한 기자재 대여 및 시설 임대 5. 영화의 저작권 보호 제00조(영화업자의 제작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영화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융자·투자 및 그 밖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다양성·공공성·예술성이 있는 영화의 제작 2. 취약계층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영화의 제작 3. 영화의 국내 및 국외 공동 제작 4. 첨단기술을 활용한 영화의 제작 5. 그 밖에 영화 제작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영화산업 및 영상물산업 종사인력의 전문역량 강화 4. 영화 및 영상물의 기획·개발을 위한 기자재 대여 및 시설 임대 5. 영화 및 영상물의 저작권 보호 제00조(영화업자 및 영상물업자의 제작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영화업자 및 영상물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융자·투자 및 그 밖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다양성·공공성·예술성이 있는 영화 및 영상물의 제작 2. 취약계층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영화 및 영상물의 제작 3. 영화 및 영상물의 국내 및 국외 공동 제작 4. 첨단기술을 활용한 영화 및 영상물의 제작 5. 그 밖에 영화 및 영상물 제작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창의적이고 품질 높은 영화 또는 영상물의 기획·개발, 제작 지원, 투자·융자 등 정책금융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

(2) 영화 또는 영화·영상물 관련 파생영상물의 기획 및 제작 지원

개정안 제1안(영화 일원론)	개정안 제2안(영화 + 영상물 이원구조)
제00조(파생영상물의 기획 및 제작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송영상물·영화·공연영상물·애니메이션·게임영상물·디지털만화 등으로부터 파생되거나 이를 재가공한 영상물(이하 “파생영상물”라 한다)을 영화업자가 원활하게 기획·제작·유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조(파생영상물의 기획 및 제작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송영상물·영화·영상물·공연영상물·애니메이션·게임영상물·디지털만화 등으로부터 파생되거나 이를 재가공한 영상물(이하 “파생영상물”라 한다)을 영화업자 및 영상물업자가 원활하게 기획·제작·유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영상물·게임영상물·웹툰 등으로부터 파생되거나 이를 재가공한 파생콘텐츠의 활성화를 위한 파생콘텐츠의 기획·제작·유통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

(3) 영화 또는 영화·영상물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재교육

개정안 제1안(영화 일원론)	개정안 제2안(영화 + 영상물 이원구조)
제00조(영화 전문인력 양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화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재교육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화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재교육에 관한 산학협력을 장려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화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재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제00조(영화 및 영상물 전문인력 양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화 및 영상물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재교육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화 및 영상물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재교육에 관한 산학협력을 장려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화 및 영상물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재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 영화 또는 영화·영상물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재교육 지원 근거 마련

(4) 영화 또는 영화·영상물 관련 지식재산권 및 창작활동의 보호

개정안 제1안(영화 일원론)	개정안 제2안(영화 + 영상물 이원구조)
<p>제00조(지식재산권 및 창작활동의 보호)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적 변화에 따른 영화 이용방법의 다양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여 영화의 지식재산권 보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p> <p>② 국가는 영화업자가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영화에 대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p>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화의 기획 및 제작에 있어서 창작활동을 보호하고,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재창작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데 필요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p> <p>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화의 지식재산권 및 창작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운영합리화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p>	<p>제00조(지식재산권 및 창작활동의 보호)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적 변화에 따른 영화 및 영상물 이용방법의 다양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여 영화 및 영상물의 지식재산권 보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p> <p>② 국가는 영화업자 및 영상물업자가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영화 및 영상물에 대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p>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화 및 영상물의 기획 및 제작에 있어서 창작활동을 보호하고,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재창작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데 필요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p> <p>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화 및 영상물의 지식재산권 및 창작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운영합리화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p>

○ 영화 또는 영화·영상물 관련 지식재산권 및 창작활동의 보호를 위한 근거 마련

(5) 영화 또는 영화·영상물 관련 연구개발 지원

개정안 제1안(영화 일원론)	개정안 제2안(영화 + 영상물 이원구조)
<p>제00조(영화의 연구개발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화산업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소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화에 관한 기획·제작·연구를 위하여 인력·시설·기자재·자금 및 정보 등의 공동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p>	<p>제00조(영화 및 영상물의 연구개발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화산업 및 영상물산업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소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화 및 영상물에 관한 기획·제작·연구를 위하여 인력·시설·기자재·자금 및 정보 등의 공동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p>

○ 영화 또는 영화·영상물 관련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

(6) 영화 또는 영화·영상물 관련 투자·금융기반 구축

개정안 제1안(영화 일원론)	개정안 제2안(영화 + 영상물 이원구조)
<p>제00조(투자·금융기반 구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화산업의 투자 및 금융기반 구축을 위하여 가치평가, 문화산업완성보증, 사업단위 자금조달 등의 영화의 고유성에 기반한 투자·금융방식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p>제00조(투자·금융기반 구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화산업 및 영상물산업의 투자 및 금융기반 구축을 위하여 가치평가, 문화산업완성보증, 사업단위 자금조달 등의 영화 및 영상물의 고유성에 기반한 투자·금융방식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 영화 또는 영화·영상물 관련 투자·금융기반 구축을 위한 근거 마련

(7) 영화 또는 영화·영상물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개정안 제1안(영화 일원론)	개정안 제2안(영화 + 영상물 이원구조)
<p>제00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화 산업의 국제협력 및 영화업자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화의 해외 마케팅 및 홍보활동 지원 2. 외국인의 투자 유치 활성화 3. 국제 시상식·견본시장·전시회·시연회 등 참여 및 국내 유치 4. 영화 수출 관련 협력체계의 구축 5. 영화의 해외 현지화 지원 6. 영화의 해외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체계 구축 7. 국내외 기술협력 및 인적 교류 8. 그 밖에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p>제00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화 산업 및 영상물산업의 국제협력 및 영화업자 및 영상물업자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화 및 영상물의 해외 마케팅 및 홍보활동 지원 2. 외국인의 투자 유치 활성화 3. 국제 시상식·견본시장·전시회·시연회 등 참여 및 국내 유치 4. 영화 및 영상물 수출 관련 협력체계의 구축 5. 영화 및 영상물의 해외 현지화 지원 6. 영화 및 영상물의 해외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체계 구축 7. 국내외 기술협력 및 인적 교류 8. 그 밖에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영화 또는 영화·영상물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

(8) 영화 또는 영화·영상물의 다중언어 재제작 지원·해외 공동제작 활성화

개정안 제1안(영화 일원론)	개정안 제2안(영화 + 영상물 이원구조)
<p>제00조(다중언어 재제작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외 영화 이용자의 언어장벽 해소를 위한 다중언어 제작 기술개발·사업화 등을 지원할 수 있다.</p> <p>제00조(해외 공동제작 활성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화의 해외 공동제작 활성화 및 공동제작 결과물의 국내외 유통 촉진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제00조(다중언어 재제작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외 영화 및 영상물 이용자의 언어장벽 해소를 위한 다중언어 제작 기술 개발·사업화 등을 지원할 수 있다.</p> <p>제00조(해외 공동제작 활성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화 및 영상물의 해외 공동제작 활성화 및 공동제작 결과물의 국내외 유통 촉진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 영화 또는 영화·영상물 해외진출시 언어장벽 완화를 위한 다중언어 재제작 지원 및 해외 공동제작 활성화를 위한 근거 마련

(9) 영화 또는 영화·영상물의 남북교류 및 ODA

개정안 제1안(영화 일원론)	개정안 제2안(영화 + 영상물 이원구조)
<p>제00조(남북 간 영화 교류·협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남북 간 영화의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남북 간 영화의 상호 교류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북한의 영화 관련 정책·제도 및 현황에 관하여 조사·연구하여야 한다.</p> <p>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북 간 상호 교류 및 협력 사업과 조사·연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p>	<p>제00조(남북 간 영화 및 영상물 교류·협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남북 간 영화 및 영상물의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남북 간 영화 및 영상물의 상호 교류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북한의 영화 및 영상물 관련 정책·제도 및 현황에 관하여 조사·연구하여야 한다.</p> <p>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북 간 상호 교류 및 협력 사업과 조사·연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p>

개정안 제1안(영화 일원론)	개정안 제2안(영화 + 영상물 이원구조)
<p>광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④ 그 밖에 남북 간 영화의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00조(공적개발원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영화 부문의 공적개발원조 및 기술 전수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p>② 그 밖에 영화 부문의 공적개발원조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광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④ 그 밖에 남북 간 영화 및 영상물의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00조(공적개발원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영화 및 영상물 부문의 공적개발원조 및 기술 전수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p>② 그 밖에 영화 및 영상물 부문의 공적개발원조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영화 또는 영화·영상물의 남북교류 증진을 위한 조사·연구, 개발도상국에 대한 ODA(공적개발원조) 및 기술전수 활성화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

(10) 영화 또는 영화·영상물의 인프라 구축

개정안 제1안(영화 일원론)	개정안 제2안(영화 + 영상물 이원구조)
<p>제00조(영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영화산업진흥시설을 지정할 수 있고, 그 시설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영화산업진흥시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p> <p>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영화산업진흥시설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같은 법 같은 조에 따른 지정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p> <p>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영화산업진흥시설이 지정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p> <p>⑤ 영화산업진흥시설의 집적화 등, 국유·공유재산의 대부·사용 등,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에 관하여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3조·제29조·제30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문화산업”을 “영화산업”으로, “문화산업진흥시설”을 “영화산업진흥시설”로 본다.</p> <p>⑥ 영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 요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00조(영화산업진흥시설·영상물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화산업 및 영상물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영화·영상물산업진흥시설을 지정할 수 있고, 그 시설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영화·영상물산업진흥시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p> <p>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영화·영상물산업진흥시설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같은 법 같은 조에 따른 지정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p> <p>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영화·영상물산업진흥시설이 지정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p> <p>⑤ 영화·영상물산업진흥시설의 집적화 등, 국유·공유재산의 대부·사용 등,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에 관하여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3조·제29조·제30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문화산업”을 “영화·영상물산업”으로, “문화산업진흥시설”을 “영화·영상물산업진흥시설”로 본다.</p> <p>⑥ 영화·영상물산업진흥시설의 지정 요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개정안 제1안(영화 일원론)	개정안 제2안(영화 + 영상물 이원구조)
<p>제00조(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화산업과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영화 관련 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영화산업과 관련된 정보의 범위·내용 등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00조(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화산업 및 영상물산업과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영화 및 영상물 관련 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영화산업 및 영상물산업과 관련된 정보의 범위·내용 등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영화 또는 영화·영상물의 인프라 구축(영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한 근거 마련

3. 소비자 보호체계 방안

(1) 영화소비자 관련 용어정의 규정 도입

- 영화 또는 영상물 콘텐츠의 최종소비자에 대한 용어로는 영화상영관과 관련해서는 “관객”, 비디오물에 관련해서는 “시청자”, 정보통신망을 통한 접근에 대해서는 “이용자”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제1안의 통합영화 정의 도입방안과 제2안인 영화 + 영상물 이원구조에 공통적으로 “관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방안을 제안
 - 현행 영비법에는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규정에서 관람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영화관객, 청소년 관객 등의 관객이라는 용어도 사용하고 있는데 별도의 용어 정의가 있지 아니하고 있지 아니함. 전면개정안에는 “관객”에 별도의 용어 정의를 하고 영화상영관 관람, 영화 및 영상물 시청, 영화 판매·대여에 공통적으로 관객을 사용하도록 함.
 - 관객은 문화산업법제에 특유한 용어이므로 다른 법제와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영화 개념이 확대하는 것과 같이 관객 개념을 시청 등에 확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개정안 제1안(영화 일원론)	개정안 제2안(영화 + 영상물 이원구조)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24. “관객”이란 영화를 관람·시청하거나 구매·대여한 자를 말한다.</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24. “관객”이란 영화 및 영상물을 관람·시청하거나 구매·대여한 자를 말한다.</p>

(2) 영화 또는 영화·영상물의 관객 보호시책 등

개정안 제1안(영화 일원론)	개정안 제2안(영화 + 영상물 이원구조)
<p>제00조(관객 보호시책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화의 유통 및 거래에 관한 관객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p> <p>1. 영화 관련 정보 제공 및 관객 교육</p>	<p>제00조(관객 보호시책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화 및 영상물의 유통 및 거래에 관한 관객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p> <p>1. 영화 및 영상물 관련 정보 제공 및 관객 교육</p>

개정안 제1안(영화 일원론)	개정안 제2안(영화 + 영상물 이원구조)
2. 영화업자 대상의 관객 보호 교육 3. 관객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4. 관객의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조치의 마련 및 시행 5. 그 밖에 관객의 권의 보호에 필요한 시책의 수립·시행	2. 영화업자 및 영상물업자 대상의 관객 보호 교육 3. 관객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4. 관객의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조치의 마련 및 시행 5. 그 밖에 관객의 권의 보호에 필요한 시책의 수립·시행

○ 영화 또는 영화·영상물의 관객 보호시책 등의 추진 근거 마련

(3)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영화 또는 영상물의 관객보호지침

개정안 제1안(영화 일원론)	개정안 제2안(영화 + 영상물 이원구조)
제00조(온라인관객보호지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영화의 건전한 거래 및 유통질서 확립과 온라인관객의 보호를 위하여 온라인영화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온라인관객보호지침의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제00조(영상물관객보호지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상물의 건전한 거래 및 유통질서 확립과 영상물관객 보호를 위하여 영상물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영상물관객보호지침의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영화 또는 영상물의 관객보호지침에 관한 근거 마련

(4) 영화 또는 영화·영상물 관련 분쟁의 조정

개정안 제1안(영화 일원론)	개정안 제2안(영화 + 영상물 이원구조)
제00조(분쟁의 조정) 영화업자와 관객 사이, 관객과 관객 사이의 영화 관람·시청 또는 구매·대여에 관하여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제00조(분쟁의 조정) 영화업자 및 영상물업자와 관객 사이, 관객과 관객 사이의 영화·영상물 관람·시청 또는 구매·대여에 관하여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 영화 또는 영화·영상물 관련 분쟁의 조정을 위한 근거 마련

(5) 영화 또는 영화·영상물에 대한 취약계층의 접근권 강화

개정안 제1안(영화 일원론)	개정안 제2안(영화 + 영상물 이원구조)
제00조(영화 이용의 격차 해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영화에 접근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이용 격차의 해소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00조(영화 및 영상물 이용의 격차 해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영화 및 영상물에 접근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이용 격차의 해소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00조(영화 접근권 강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사회적·신체적 제약 등으로 영화를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취약계층이 영화에 접근할 권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의 영화 접근권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00조(영화 및 영상물 접근권 강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사회적·신체적 제약 등으로 영화 및 영상물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취약계층이 영화 및 영상물에 접근할 권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의 영화 및 영상물 접근권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안 제1안(영화 일원론)	개정안 제2안(영화 + 영상물 이원구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육 및 홍보 2. 조사 및 연구 3. 행정적·재정적 지원 4. 영화 접근·이용에 필요한 기술 및 도구의 개발·보급 5. 그 밖에 취약계층의 영화 접근권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육 및 홍보 2. 조사 및 연구 3. 행정적·재정적 지원 4. 영화 및 영상물 접근·이용에 필요한 기술 및 도구의 개발·보급 5. 그 밖에 취약계층의 영화 및 영상물 접근권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영화 또는 영화·영상물에 대한 취약계층(경제적·사회적·신체적 제약 등)의 접근권 강화를 위한 근거 마련

(6) 영화 또는 영화·영상물의 수용능력 증진

개정안 제1안(영화 일원론)	개정안 제2안(영화 + 영상물 이원구조)
<p>제00조(영화 수용능력 증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영화 수용능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화 수용능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육 및 홍보 2. 전문인력의 양성 3. 조사 및 연구 4. 전문기관 또는 단체 지원 5. 영화 수용능력 증진 관련 국제협력 6. 그 밖에 영화 수용능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p>제00조(영화 및 영상물 수용능력 증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영화 및 영상물 수용능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화 및 영상물 수용능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육 및 홍보 2. 전문인력의 양성 3. 조사 및 연구 4. 전문기관 또는 단체 지원 5. 영화 및 영상물 수용능력 증진 관련 국제협력 6. 그 밖에 영화 및 영상물 수용능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영화 또는 영화·영상물의 수용능력 증진을 위한 근거 마련

II. 산업진흥 거버넌스 및 재원 구성 방안

- 본 보고서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제1안인 영화(비디오물 + 온라인비디오물 포함) 일원론과 제2안인 영화 + 영상물(비디오물 + 온라인비디오물 포함) 이원구조를 전제로 한 영화진흥위원회 거버넌스 개편 방안 및 산업진흥 재원 체계 개편 방안은 다음과 같음

1. 영화진흥위원회 거버넌스 개편방안

- 제1안인 영화(비디오물 + 온라인비디오물 포함) 일원론과 제2안인 영화 + 영상물(비디오물 + 온라인비디오물 포함) 이원구조에 따른 주요 개념들의 통합 및 개편, OTT 서비스가 영비법 규율체계에서의 편입 등으로 인하여, 그에 따른 영화진흥위원회의 거버넌스 개편 필요성이 발생하였음
- 영화진흥위원회 거버넌스 개편과 관련한 기본적인 방향성은 위와 같은 법개정 수요 및 법제도 개편 등에 조응하기 위한 것이어야 함. 이와 관련한 개편 방안은 다음과 같음

(1) 영화진흥위원회의 설치 근거

현행법	제1안(영화 일원론)	제2안(영화 + 영상물 이원구조)
제4조(설치) 영화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한국영화 및 영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영화진흥위원회를 둔다.	현행 유지	제4조(설치) 영화 및 영상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한국영화·한국영상물 및 영화산업·영상물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영화진흥위원회를 둔다.

- 영화진흥위원회의 설치 근거 조항인 제4조의 문구수정

(2) 영화진흥위원회의 구성

현행법	제1안(영화 일원론)	제2안(영화 + 영상물 이원구조)
제8조(영화진흥위원회의 구성) ① 영화진흥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은 영화예술 및 영화산업 등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임명하되, 성(性)과 연령, 전문성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 중 영화업자가 3인 이상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8조(영화진흥위원회의 구성) ① 영화진흥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은 영화예술 및 영화산업 등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임명하되, 성(性)과 연령, 전문성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 중 영화업자가 5인 이상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8조(영화진흥위원회의 구성) ① 영화진흥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은 영화예술 및 영화산업·영상물산업 등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임명하되, 성(性)과 연령, 전문성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 중 <u>영화업자·영상물사업자가 5인 이상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u>

현행법	제1안(영화 일원론)	제2안(영화 + 영상물 이원구조)
③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 선임기준 등 그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 선임기준 등 그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 선임기준 등 그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영화진흥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제8조의 개정
- 제8조 제1항의 경우, 제1안인 영화(비디오물 + 온라인비디오물 포함) 일원론과 제2안인 영화 + 영상물(비디오물 + 온라인비디오물 포함) 이원구조에 따른 주요 개념들의 통합 및 개편, OTT 서비스가 영비법 규율체계로의 편입 등에 조응하기 위하여, 영화진흥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조항인 제8조에서 위원을 9명에서 15명 이내로 늘리는 것임
- 제8조 제2항의 경우, 영화진흥위원회 위원 중 영화업자가 3인 이상 포함되어서는 아니 되게 함으로써 영화업자가 1/3 이상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취지를 살려, 영화업자 또는 영화업자·영상물사업자가 5인 이상 포함되지 않도록 함

(3)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현행법	제1안(영화 일원론)	제2안(영화 + 영상물 이원구조)
제12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공무원(「교육공무원법」에 의한 교육공무원 및 법관을 제외한다) 2. 「정당법」에 의한 당원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삭제 5. 제57조제1항 또는 제58조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한 비디오물영업자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12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삭제 2. 「정당법」에 의한 당원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삭제 5. 삭제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12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삭제 2. 「정당법」에 의한 당원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삭제 5. 삭제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조항인 제12조의 개정
-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 구성에서 가능한 진입장벽이나 허들을 없애거나 낮출 필요가 있으므로, 제12조 중에서 제1호(공무원)와 제5호(비디오물영업자)의 삭제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하지만 영비법에서는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제12조),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제81조)을 두고 있음

(4) 영화진흥위원회의 기능

현행법	제1안(영화 일원론)	제2안(영화 + 영상물 이원구조)
<p>제14조(영화진흥위원회의 기능) ① 영화진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화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변경에 관한 의결제시 2. 영화진흥위원회 운영계획의 수립·시행 3. 영화진흥위원회 정관 및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 4. 영상제작 관련 시설의 관리·운영 5.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영화발전기금의 관리·운용 6. 한국영화 진흥 및 영화산업 육성 등을 위한 조사·연구·교육·연수 7. 영화의 유통배급 지원 7의2. 디지털시네마와 관련된 영상기술의 개발과 표준 제정·보급, 품질인증 및 영화상영관 등의 시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 8. 한국영화의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9. 예술영화, 독립영화, 애니메이션영화, 소형영화 및 단편영화의 진흥 10. 영화관객의 불만 및 진정사항의 관리 11. 영화산업에서 인권존중 의식 및 양성평등 문화의 확산 12.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 13.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영화상영관 입장권 통합전산망의 운영 14.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영화의 무상영제도의 운영 및 개선 14의2. 지역 영상문화 진흥 15. 비디오산업 진흥시책의 추진 16. 표준계약서 확산 및 영화산업 내 근로환경 개선 17. 그 밖에 영화진흥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② 영화진흥위원회가 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영화발전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영화진흥위원회를 「국가재정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로 본다.</p>	<p>제14조(영화진흥위원회의 기능) ① 영화진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화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변경에 관한 의결제시 2. 영화진흥위원회 운영계획의 수립·시행 3. 영화진흥위원회 정관 및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 4. 영상제작 관련 시설의 관리·운영 5.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영화발전기금의 관리·운용 6. 한국영화 진흥 및 영화산업 육성 등을 위한 조사·연구·교육·연수 7. 영화의 유통배급 지원 7의2. 디지털시네마와 관련된 영상기술의 개발과 표준 제정·보급, 품질인증 및 영화상영관 등의 시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 8. 한국영화의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9. 예술영화, 독립영화, 애니메이션영화, 소형영화 및 단편영화의 진흥 10. 영화관객의 불만 및 진정사항의 관리 11. 영화산업에서 인권존중 의식 및 양성평등 문화의 확산 12.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 13.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영화상영관 입장권 통합전산망의 운영 14.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영화의 무상영제도의 운영 및 개선 14의2. 지역 영상문화 진흥 15. 삭제 16. 표준계약서 확산 및 영화산업 내 근로환경 개선 17. 그 밖에 영화진흥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② 영화진흥위원회가 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영화발전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영화진흥위원회를 「국가재정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로 본다.</p>	<p>제14조(영화진흥위원회의 기능) ① 영화진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화·영상물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변경에 관한 의결제시 2. 영화진흥위원회 운영계획의 수립·시행 3. 영화진흥위원회 정관 및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 4. 영상제작 관련 시설의 관리·운영 5.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영화발전기금의 관리·운용 6. 한국영화·한국영상물 진흥 및 영화산업·영상물산업 육성 등을 위한 조사·연구·교육·연수 7. 영화·영상물의 유통배급 지원 7의2. 디지털시네마와 관련된 영상기술의 개발과 표준 제정·보급, 품질인증 및 영화상영관 등의 시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 8. 한국영화·한국영상물의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9. 예술영화, 독립영화, 애니메이션영화, 소형영화 및 단편영화의 진흥 10. 영화 및 영상물 관객의 불만 및 진정사항의 관리 11. 영화산업·영상물산업에서 인권존중 의식 및 양성평등 문화의 확산 12.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 13.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영화상영관 입장권 통합전산망의 운영 14.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영화의 무상영제도의 운영 및 개선 14의2. 지역 영상문화 진흥 15. 삭제 16. 표준계약서 확산 및 영화산업·영상물산업 내 근로환경 개선 17. 그 밖에 영화진흥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② 영화진흥위원회가 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영화발전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영화진흥위원회를 「국가재정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로 본다.</p>

- 비디오물 개념이 폐지되므로, 영화진흥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조항인 제14조 제1항(영화진흥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서 제15호의 삭제 및 문구수정

2. 산업진흥 자원 체계 개편방안

- 산업진흥 자원 체계 개편 방안과 관련하여서는, 영화발전기금 이외에도 별도의 국고(일반예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의 신설이 필요함
 - 산업진흥에 관한 사업 조항이 국고사용 근거로 사용되는 만큼 국고 사용을 위한 기반마련을 위한 사업조항을 신설 제안할 수 있음. 산업진흥 조항을 위의 관련 항목 참조

제8장 결론

I. 통합 영화 정의의 제안 <1안>

- 비디오물을 영화산업의 가치사슬의 하나라는 관점에서 볼 때 영화에 대한 포괄적 정의로 비디오물을 흡수시켜야 하는데, 유통방식을 제외하면 영화와 비디오물을 나누는 객관적 표지가 없다고 볼 수 있어 영화 중심으로 두 정의를 기계적으로 통합하는 접근을 할 수 있음

개념요소	영화정의	비디오물 정의	통합정의 방안
영상	연속적인 영상이	연속적인 영상이	연속적인 영상이
저장매체	필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에 담긴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나 장치에 담긴	필름 또는 디지털매체에 담긴
저작물	저작물로서	저작물로서	저작물로서
유통방식	영화상영관 등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	없음	영화상영관 등에서
재생수단	없음	기계·전기·전자 또는 통신장치에 의하여 재생되어	판매나 대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커뮤니케이션 유형	공중에게 관람하게 할 목적으로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상영하거나 [...] 시청에 제공할 수 있도록
제작	제작한 것	제작된 것	제작된 것
제외사항	없음	게임물 영화가 수록되어 있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한 것	게임물 영화가 수록되어 있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한 것

○ 영화와 비디오물의 통합 정의로서 영화를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음

“영화”란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 또는 디지털매체에 담긴 저작물로서 영화상영관 등에서 상영하거나 판매나 대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시청에 제공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을 말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의한 게임물
- 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한 것(영화가 수록되어 있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통합 영화 정의를 도입하면 현행 영화와 비디오물 정의 조항은 삭제하며 통합 영화정의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시청제공’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온라인비디오물 정의도 삭제할 필요가 있음.
- 현행 디지털시네마 개념은 디지털영사방식으로서의 전환이 완료되었다는 점에서 정의도입의 효용이 다하였고 통합 영화정의와 온라인영상물 등의 정의와 혼선을 빚을 우려가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

○ 통합 영화 정의 도입에 따른 영비법 조문 개편방안

- 통합 영화 정의를 도입하면 법률명에서 비디오물을 삭제해야 하므로 법률 명칭이 ‘영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수정. 이전 법률명에 영화진흥법이 있었으므로 이와 같이 표현하는 것이 적절
- 통합 영화 정의 도입은 비디오물 제도의 폐지를 의미하므로 비디오물에 특유한 규정은 삭제 또는 수정
- 현행 영비법의 규제체계는 콘텐츠에 대해서는 등급분류의무를 부과하고 유통업자인 영화상영관 경영자에 대해서는 상영관입장권부과금 징수의무, 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가입의무, 영화상영 신고의무, 한국영화 상영의무를 부과하고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에게는 준수사항을 부과하므로 통합 영화 정의를 도입한다고 해도 등급분류의 조항의 통합을 제외하고는 규제체계의 변화가 없음.
- 사업자 규정은 비디오물제작업과 비디오물배급업은 영화제작업과 영화배급업에 흡수. 다만 비디오물 시청제공업자는 영화시청제공업자로 명칭 변경.
- 거버넌스 개편은 개정안에 반영하나 산업진흥 및 소비자 보호체계는 개정안 입법의 환경을 고려할 때 이 번 개정안에 반영하지 않음

II. 보완방안으로서 영화+영상물 이원구조 제시 <2안>

○ 통합 정의 방안 또는 영화 일원구조의 한계로 인한 보완 방안 마련의 논의의 필요성도 제기될 수 있음

- 법체계로 볼 때 영비법 전면개정 방안으로 영화와 비디오물의 통합으로 영화라는 하나의 규율체계로 정비하여 영비법의 이원구조를 극복하는 것이 가장 체계정합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으나, 통합 영화 정의가 비록 현행법이 규정한 비디오물 범위까지라 하더라도 영화 개념 확장으로 인한 반발이 있을 수 있고 타 부처 소관의 법률과 주로 온라인영역에서 중복소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통합 영화 정의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한 시청에 제공되는 영화를 별도로 개념으로 정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즉 영화 + 비디오물의 통합으로 인한 비디오물 제도의 폐지는 유지하되 현행법의 온라인비디오물을 영상물로 재규정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음. 이는 영화 + 비디오물 + 온라인비디오물 + 디지털 시네마에서 영화 + 영상물의 이원구조로 변경을 의미. 비디오물 제도의 폐지를 전제로 하므로 영화 정의는 통합 영화 정의를 기반으로 하되, 정보통신망을 통한 시청제공을 제외하고 구성. 가능하면 영화로 인식되고자 하는 영화업자의 니즈를 반영하여 목적 요소를 규정하되, 정보통신망을 통한 시청 제공을 제외하고 구성

“영화”란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 또는 디지털매체에 담긴 저작물로서 영화상영관 등에서 상영하거나 판매나 대여를 통하여 시청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한 것을 말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의한 게임물
 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한 것(영화가 수록되어 있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영상물 정의는 현행 온라인비디오물 정의를 기반으로 재구성. 영화 정의와 중복되지 않게 독립적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으므로 ‘연속적인 영상 디지털매체에 담긴 저작물’은 영화와 동일하게 하되, 유통방식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시청제공을 규정하고 영화 정의와 달리 목적 조항을 규정하지 않고 규정. 명칭은 영화로 구별하기 위해 영상물로 함.

“영상물”이란 연속적인 영상이 디지털매체에 담긴 저작물로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시청에 제공될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을 말한다.

○ 영화 + 영상물 이원구조 도입에 따른 영비법 조문 개편방안

- 영화 + 영상물 이원구조를 도입하면 법률명에서 비디오물을 삭제하고 이를 영상물로 대체하므로 법률 명칭이 ‘영화 및 영상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수정.
- 영화 + 영상물 이원구조 도입은 비디오물 제도의 폐지를 의미하므로 이에 관한 조문의 변경요강은 아래의 표와 같음. 영상물은 비디오물의 대체개념이 아니라 온라인비디오물의 대체개념으로 그

변화의 폭은 크지 않음

- 현행 영비법의 규제체계는 콘텐츠에 대해서는 등급분류의무를 부과하고 유통업자인 영화상영관 경영자에 대해서는 상영관입장권부과금 징수의무, 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 가입의무, 영화상영 신고의무, 한국영화 상영의무를 부과하고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에게는 준수사항을 부과하므로 영화 + 영상물 이원구조를 도입한다고 해도 등급분류의 조항의 통합을 제외하고는 규제체계의 변화가 없음. 다만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는 영화시청제공업자로 명칭 변경.
- 거버넌스 개편은 개정안에 반영하나 산업진흥 및 소비자 보호체계는 개정안 입법의 환경을 고려할 때 이 번 개정안에 반영하지 않음

Ⅲ. 통합 영화 정의(1안) 도입에 따른 영비법 전면개정안 제언

영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영화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영상문화 및 영화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화”라 함은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 또는 디지털매체에 담긴 저작물로서 영화상영관 등에서 상영하거나 판매나 대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시청에 제공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을 말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의한 게임물
 - 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한 것(영화가 수록되어 있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2. “영화산업”이라 함은 영화의 제작·활용·유통·보급·수출·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3. “한국영화”라 함은 국내에 주된 사업소를 둔 자(법인을 포함한다)가 제작한 영화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영화로 인정받은 영화를 말한다.
4. “공동제작영화”라 함은 한국영화제작업자와 외국영화제작업자가 공동으로 제작한 영화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제작비용을 출자하여 제작한 영화를 말한다.
5. “애니메이션(animation) 영화”라 함은 실물의 세계 또는 상상의 세계를 가공하여 현실과 유사한 동적 감각을 느낄 수 있도록 인력 또는 기술력을 이용하여 표현한 영화를 말한다.
6. “소형영화”라 함은 16밀리미터 이하의 필름을 사용하여 제작한 영화 및 디지털 매체를 사용하여 제작한 영화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영화를 말한다.
7. “단편영화”라 함은 상영시간이 40분을 넘지 아니하는 영화를 말한다.
8. “상영”이라 함은 영화를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9. “영화업자”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영화제작업자 : 영화 제작·복제를 업으로 하는 자
 - 나. <삭제>
 - 다. 영화배급업자 : 영화를 수입하거나 배급·공급을 업으로 하는 자
 - 라. 영화상영업자 : 영화상영을 업으로 하는 자
10. “영화상영관”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영화를 상영하는 장소 또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연간 영화상영일수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수의 범위 이내인 장소 또는 시설(이하 “비상설상영장”이라 한다)을 제외한다.
11. “제한상영관”이라 함은 영화상영관 중 제29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제한상영가(制限上映可)

영화를 상영하는 영화상영관을 말한다.

12. <삭제>

12의2. <삭제>

13. <삭제>

14. <삭제>

15. <삭제>

16. “영화시청제공업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영화감상실업 : 다수의 구획된 시청실과 영화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영화를 공중의 시청에 제공(관객이 직접 시청시설을 작동하여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영업
- 나. 영화소극장업 : 영사막 및 다수의 객석과 영화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영화만을 전용으로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영업
- 다. 제한관람가영화소극장업 : 영사막 및 다수의 객석과 영화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제한관람가 등급의 영화만을 전용으로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영업
- 라. 복합영상물제공업: 영화감상실업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노래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공중에 제공하는 영업
- 마. 그 밖의 영화시청제공업 : 공중이 숙박·휴게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서 영화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영화를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영업

17. <삭제>

18. “청소년”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19. <삭제>

20. “내용정보”란 영화의 내용에 대한 주제, 선정성, 폭력성, 대사, 공포, 약물, 모방위험 등의 정도, 그 밖에 이에 관련된 정보를 말한다.

21. “영화근로자”란 영화산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22. “영화업자단체”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영화업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영화업자의 단체를 말한다.

23. “영화근로자조합”이란 영화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을 유지·개선, 그 밖에 영화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

제2장 영화

제1절 영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공정환경 조성

제3조(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상문화의 발달과 영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화진흥위원회”라 한다)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영상자료원(이하 “한국영상자료원”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화진흥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한국영화 진흥의 기본방향
2. 영화제작의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제작기반 확충, 기술개발
3. 영화배급 및 상영의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및 개발
4. 한국영화의 수출과 국제적 진출
5. 영화자료의 수집과 보존
6. 영화인력의 양성 및 영화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
- 6의2. 영화산업에서 인권존중 의식 및 양성평등 문화의 확산
- 6의3. 예술영화·독립영화의 육성 및 지원
7. 영화진흥에 필요한 재정적 기반확충을 위한 재원의 확보 및 효율적인 운용방안
8. 영화의 국제교류 및 협력
9. <삭제>
10. 영상기술 개발·표준, 디지털시네마 품질인증 및 영화상영관 등의 시설기준
11. 영상문화의 다양성·공공성 증진
- 11의2. 지역 영상문화 진흥
12. 영화상영관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위생·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영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시청에 제공되는 영화의 발전을 위하여 제2항제10호와 관련된 기술표준, 품질인증, 시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영화업자 등 관련 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다만, 기술표준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조의2(영화노사정협의회) 영화근로자조합과 영화업자 또는 영화업자단체 및 정부를 대표하는 자는 영화산업의 진흥과 영화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영화노사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3조의3(표준보수에 관한 지침)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조의2에 따른 영화노사정협의회와 협의하여 영화근로자의 표준보수(보수란 영화근로자가 역무를 제공하는 반대급부로 지급받는 모든 대가를 의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지침(이하 “표준보수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이를 보급·권장하여야 한다.

② 영화업자와 영화근로자는 표준보수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화진흥위원회로 하여금 표준보수지침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조의4(근로조건 명시) 영화업자는 영화근로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영화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및 그 밖의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3조의5(표준계약서의 사용 및 확산)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화업자 또는 영화업자단체에 표준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영화진흥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영화업자 또는 영화업자단체에 대하여 제23조에 따른 영화발전기금 지원 등 영화·비디오물산업에 관한 재정지원(「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같은 법상의 지원을 받은 투자조합의 문화산업에 관한 투자를 포함한다)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제3조의6(안전사고로부터의 보호) ① 영화업자는 영화 촬영 중에 발생하는 안전사고로부터 영화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조의7(성폭력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① 영화제작업자는 영화 촬영 전에 촬영에 참여하는 자들이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영화진흥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위하여 성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강사 양성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조치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3조의8(직업훈련의 실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영화근로자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직업훈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직업교육훈련기관 또는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직업훈련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업훈련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을 준용한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직업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영화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의9(임금체불 등에 관한 제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업자가 영화 제작기간 동안 영화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거나 제3조의4를 위반한 경우 또는 제3조의5제1항의 표준 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제23조에 따른 영화발전기금 지원 등 영화·비디오물산업에 관한 재정지원(「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같은 법상의 지원을 받은 투자조합의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를 포함한다)으로 수행되는 사업에서 배제할 수 있다.

제3조의10(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화산업의 진흥 또는 영화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 또는 관련 법인·단체·개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영화진흥위원회

제4조(설치) 영화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한국영화 및 영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영화진흥위원회를 둔다.

제5조(법인격) 영화진흥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제6조(정관) ① 영화진흥위원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임원(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과 감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보수기준에 관한 사항
 6.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② 위원회가 정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등기) ① 영화진흥위원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② 영화진흥위원회의 설립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영화진흥위원회의 구성) ① 영화진흥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은 영화예술 및 영화산업 등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되, 성(性)과 연령, 전문성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 중 영화업자가 5인 이상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 ③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 선임기준 등 그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은 영화진흥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②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보궐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④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기가 만료된 때에 그 후임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행한다.

제11조 삭제

제12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 1. 공무원(「교육공무원법」에 의한 교육공무원 및 법관을 제외한다)
- 2. 「정당법」에 의한 당원
-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4. 삭제
- 5. <삭제>
-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12조의2(관여 금지)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은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의 이해와 관련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제13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은 임기 중 직무상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 ②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 1. 제12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2. 장기간의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14조(영화진흥위원회의 기능) ① 영화진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영화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변경에 관한 의견제시
- 2. 영화진흥위원회 운영계획의 수립·시행
- 3. 영화진흥위원회 정관 및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
- 4. 영상제작 관련 시설의 관리·운영
- 5.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영화발전기금의 관리·운용
- 6. 한국영화 진흥 및 영화산업 육성 등을 위한 조사·연구·교육·연수
- 7. 영화의 유통배급 지원
- 7의2. 영화와 관련된 영상기술의 개발과 표준 제정·보급, 품질인증 및 영화상영관 등의 시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

8. 한국영화의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9. 예술영화, 독립영화, 애니메이션영화, 소형영화 및 단편영화의 진흥
10. 영화관객의 불만 및 진정사항의 관리
11. 영화산업에서 인권존중 의식 및 양성평등 문화의 확산
12.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
13.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의 운영
14.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영화의무상영제도의 운영 및 개선
- 14의2. 지역 영상문화 진흥
15. <삭제>
16. 표준계약서 확산 및 영화산업 내 근로환경 개선
17. 그 밖에 영화진흥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화진흥위원회가 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영화발전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영화진흥위원회를 「국가재정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로 본다.

제15조(의결정족수) 영화진흥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회의공개 등) ① 영화진흥위원회의 회의는 영화진흥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한다. 다만, 영화진흥위원회가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비공개를 의결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진흥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7조(소위원회 등) ① 영화진흥위원회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화진흥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② 영화업자에 해당하는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은 제2조제9호 각 목에 따른 분류 중 스스로가 업으로 하고 있는 분야와 직접 관련되는 소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영화진흥위원회는 제14조제1항제6호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기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으며 그 설립·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화진흥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제18조(예산편성 등) ① 영화진흥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과 그 규모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화진흥위원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영화진흥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감사) ① 영화진흥위원회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기 위하여 영화진흥위원회에 감사 1인을 둔다.

② 감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며 비상임으로 한다.

③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20조(사무국) ① 영화진흥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영화진흥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을 두되,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이 영화진흥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제21조(영화진흥위원회규정의 제정과 개정 등)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진흥위원회규정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20일 이상 인터넷 등에 예고하여야 하며, 동 규정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2조(국고지원) 영화진흥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3절 영화발전기금

제23조(기금의 설치 등) ① 영화예술의 질적 향상과 한국영화 및 영화산업의 진흥·발전을 위하여 영화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영화진흥위원회가 관리·운용하되, 독립된 회계로 따로 처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
3. 제25조의2의 규정에 따른 영화상영관 입장권에 대한 부과금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제2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한국영화의 창작·제작 진흥 관련 지원
2. 영상 전문투자조합 출자
3. 한국영화의 수출 및 국제교류 지원
4. 소형영화·단편영화의 제작 지원
- 4의2. 제38조제1항에 따른 전용상영관의 지원
5. 영화상영관 시설의 보수·유지 및 개선 지원
- 5의2. 영화산업 종사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지원
- 5의3. 영화산업에서 인권존중 의식 및 양성평등 문화의 확산을 위한 사업 지원
6. 영화진흥위원회가 인정하는 영화 관련 단체 및 시민단체의 영화 관련 사업 지원
- 6의2. 영화 관련 교육·연수 등과 관련된 사업 지원
7. 예술영화·독립영화의 발전과 관련한 사업 지원

8. 영상문화의 다양성·공공성 증진과 관련한 사업 지원

8의2. 영상기술의 개발과 관련된 사업 지원

8의3. 지역 영상문화 진흥과 관련된 사업 지원

9. <삭제>

10.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영화향수권 신장을 위한 사업 지원

10의2. 남북 간 영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

11.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12. 그 밖에 영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으로서 영화진흥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한 사업 지원

② 제1항제12호의 사업에 집행될 수 있는 기금의 액수는 연간 기금 집행 액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제25조의2(부과금의 징수) ① 영화진흥위원회는 한국영화의 발전 및 영화·비디오물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영화상영관(비상설상영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입장하는 관람객에 대하여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화상영관에 입장하는 관람객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전 연도에 제3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영화를 연간 상영일수의 100분의 60 이상 상영한 영화상영관
 2. 직전 연도의 입장권 판매액(2개 이상의 영화상영관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각 영화상영관별 입장권 판매액의 합계를 말하며, 직전 연도의 영업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입장권 판매액을 연간 판매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보다 적은 영화상영관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입장권의 월 판매액이 감염병 발생 연도 직전 3개년간(영업기간이 3개년 미만인 경우에는 영업기간 동안) 같은 달의 평균 입장권 판매액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감소한 영화상영관(2개 이상의 영화상영관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각 영화상영관별 입장권 판매액의 합계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감염병 발생 연도 직전 3개년간 같은 달의 영업일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달의 입장권 판매액을 월 판매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같은 달의 영업일이 없는 경우에는 감염병 발생 직전 연도까지 영업기간 동안의 월평균 입장권 판매액을 기준으로 한다.
- ②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관람객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부과금을 수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기한까지 해당 부과금을 영화진흥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수납한 부과금을 납부하는 때에는 부과금수납부 사본 등 부과금 수납과 관련된 자료를 영화진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화진흥위원회가 제39조제1항에 따른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을 통하여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수납하여야 할 부과금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과금 수납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제2항에 따라 관람객으로부터 수납한 부과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 ⑤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제2항의 부과금 및 제4항의 가산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국제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 ⑥ 부과금·가산금의 징수방법, 납부기한 및 부과금 수납 관련 자료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⑦ 영화진흥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2항에 따른 영화상영관 경영자의 부과금 수납에 대한 위탁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제1항에 따른 부과금 징수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 제25조의3(성과의 평가)** 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제2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기금 사용의 성과를 측정·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영화진흥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를 측정·평가하기 위하여 영화진흥위원회와 협의하여 성과목표 및 평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 평가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영화진흥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성과의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절 영화업자의 신고 등

제26조(영화업자의 신고 등) ① 영화업자가 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작하는 경우
 - 2.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교육기관 또는 연수기관이 자체교육 또는 연수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 3.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자가 방송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그 사업의 홍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 5. 관혼상제 또는 종교의식 등의 행사를 기념으로 남기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하는 경우. 다만, 공중에게 유통시키거나 시청에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6. 제29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영화를 제작하는 경우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변경신고의 절차, 신고증의 교부 및 재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 ① 공동제작영화를 제작하는 자는 해당 영화의 제작에 참여하거나 활용하는 인적·물적 요소나 해당 영화의 예술적·기술적 특성이 한국영화의 인정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공동제작영화를 한국영화로 인정받을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영화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영화진흥위원회에 인정을 신청하여야 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절차·방법 및 한국영화 인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영화진흥위원회는 한국영화로 인정한 공동제작영화가 그 제작이 완료된 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영화의 인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한국영화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28조(영화의 공급 및 유통) ① 영화업자가 다른 영화업자에게 영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가격으로 차별 없이 공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화의 유통질서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40조제1항·제45조제1항·제46조 또는 제51조제1항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화업자의 저작재산권 및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영화의 제작·상영 및 유통 과정에서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의2(영화업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① 제26조에 따라 신고한 자가 폐업을 하였을 때에는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문화체육 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 사실을 확인한 후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제28조의3(영상물 촬영을 위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 현지 촬영 장소의 제공 등 영상물 촬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영상물 촬영 지원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영상물 촬영을 위한 협조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8조의4(영상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 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영상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영상제작 및 촬영 유치·지원
2. 영상제작 관련 시설 운영
3. 영상촬영지 및 관련 정보의 제공
4. 지역 영상문화·산업의 진흥
5. 영상 관련 시설 및 촬영지의 관광자원 활용
6. 그 밖에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영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 영상위원회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28조의5(국제영화제) ① 지방자치단체는 영상 문화·산업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국제영화제를 개최하거나 국제영화제를 개최·운영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내외 영화의 국제영화제 초청·상영
 2. 국내외 영화 제작
 3. 국제영화제의 국내외 영화 시상
 4. 지역 영상 관련 시설 및 촬영지의 활용
 5.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영화제의 개최·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 ③ 국제영화제의 개최·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5절 상영등급분류 및 광고·선전제한

제29조(등급분류) ① 영화(영화상영관 등에서 영화 상영 전후에 상영하는 예고편 및 광고영화를 포함한다)를 제작 또는 배급(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는 상영 또는 공급하기 전에 그 내용에 관하여 제 71조의 규정에 의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상물등급위원회”라 한다)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화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정한 장소에서 청소년이 포함되지 아니한 특정인에 한하여 상영하거나 시청에 제공하는 소형영화·단편영화
 2. 영화진흥위원회가 추천하는 영화제에서 상영하는 영화
 3. 국제적 문화교류의 목적으로 상영하는 영화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영화
 4.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영화. 다만,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자가 제작·유통하거나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음악영상 파일은 제외한다.
 5.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영상물 대회, 전시회 등에서 시청에 제공하는 영화
 6. 그 밖에 제작 주체, 유통 형태 등에 비추어 보아 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한 영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② 제1항 본문에 의한 영화의 등급은 그 내용, 영상 및 대사 등의 표현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다만, 영화 상영 전후에 상영하는 광고영화는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등급을 분류받을 수 있고, 예고편영화는 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상영등급을 분류하고 청소년 관람불가 예고편영화(술·담배에 관한 광고영화를 포함한다)는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의 상영 전후에만 상영할 수 있다.

1. 전체관람가 : 모든 연령에 해당하는 자가 관람 및 시청할 수 있는 영화
2. 12세 이상 관람가 : 12세 이상의 자가 관람 및 시청할 수 있는 영화
3. 15세 이상 관람가 : 15세 이상의 자가 관람 및 시청할 수 있는 영화
4. 청소년 관람불가 : 청소년은 관람 및 시청할 수 없는 영화
5. 제한관람가 : 선정성·폭력성·사회적 행위 등의 표현이 과도하여 인간의 보편적 존엄, 사회적 가치,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 정서를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어 상영, 시청제공, 유통, 광고·선전 등에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
-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등급을 분류 받지 아니한 영화를 상영하거나 시청제공·유통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누구든지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등급에 해당하는 영화의 경우에는 해당 영화를 관람 또는 시청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를 관람 또는 시청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여 관람하거나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시청에 과한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누구든지 제2항제4호 또는 제5호의 등급에 해당하는 영화의 경우에는 청소년을 입장시키거나 청소년이 시청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누구든지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분류 받은 등급을 변조하거나 등급분류를 받은 영화의 내용을 변경하여 영화를 상영하거나 시청제공·유통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⑦ 제2항 각 호의 등급에 대한 구체적인 분류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대한민국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와 인권존중에 관한 사항
 2.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동 및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
 3. 사회윤리의 존중에 관한 사항
 4. 국가정체성 및 외교관계의 유지에 관한 사항
 5. 주제 및 내용의 폭력성·선정성·반사회적 행위 등에 관한 사항
 6. 인간의 보편적 존엄과 사회적 가치, 선량한 풍속 및 국민정서에 관한 사항
- ⑧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등급을 분류하는 경우에는 내용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 ⑨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화의 등급을 분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영화의 등급과 내용정보를 기재한 등급분류증명서
 2. 등급분류에 따른 의무사항을 기재한 서류
- ⑩ 제1항·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등급분류의 절차·방법, 내용정보 제공의 절차·방법 및 등급분류 증명서의 교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제30조 삭제

제31조(등급의 재분류) ① 제29조 또는 제50조의2제3항에 의하여 분류 받은 등급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여 등급분류를 다시 받을 수 있다.

- ②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신청에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등급분류를 다시 하여 신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유 없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분류신청의 절차 및 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제32조(광고·선전물의 배포·게시 등의 제한) ① 영화(제29조제2항제1호에서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영화는 제외한다)에 관한 광고(영상물 형태의 광고를 포함한다)나 선전물을 배포·게시하거나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제한관람가 영화에 관한 광고·선전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받은 광고나 선전물은 이를 배포·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광고나 선전물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을 제외한 공중의 시청에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그 광고선전물의 내용이 제29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영화의 내용 또는 등급과 다른 내용이나 등급을 표시한 광고·선전물을 배포·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성 여부를 확인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제33조(제한상영가 영화의 광고·선전 제한) 제한관람가 영화에 관한 광고 또는 선전을 하는 자는 그 광고 또는 선전물을 제한상영관 또는 제한관람가영화소극장 안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게시물이 제한상영관 또는 제한관람가영화소극장 밖에서 보이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절 한국영상자료원 및 영화필름 등의 보존

제34조(한국영상자료원의 설치 등) ① 영화와 그 관계 문헌·음향자료 등 영상자료의 수집·보존·전시와 영화의 예술적·역사적·교육적인 발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한국영상자료원을 둔다.

② 한국영상자료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한국영상자료원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 및 직원을 둔다.

④ 한국영상자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되는 영화필름등의 보존과 보상
2. 국내외 영화와 그 관계 문헌·음향자료 등 영상자료의 수집
3. 수집된 영화와 그 관계 문헌·음향자료 등 영상자료의 보존과 복원
4. 영상문화 발전을 위한 영화와 그 관계 문헌·음향자료 등 영상자료의 활용 및 전시
5. 영상정보화 및 콘텐츠 활용 사업
6. 그 밖에 한국영상자료원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⑤ 한국영상자료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중 영상자료의 수집·보존·활용 및 한국영상자료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5조(영화필름등의 제출) ① 영화제작업자는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라 등급을 분류 받은 때에는 해당 영화의 원판필름·디스크 등 또는 그 복사본과 대본(臺本)(이하 “영화필름등”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영상자료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외국영화 또는 제2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영화를 수입 또는 제작한 자가 해당 영화가 보존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화필름등을 한국영상자료원에 제출할 수 있다.

③ 한국영상자료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화필름등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화필름등에 대한 보상에 필요한 재원은 국고에서 부담한다.

제7절 영화의 상영

제36조(영화상영관의 등록) ① 영화상영관을 설치·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그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상영관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또는 시설을 지정·고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화상영관의 등록, 변경등록의 절차 및 등록증의 교부 그 밖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재해예방조치) ①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화상영관을 설치·경영하고자 등록을 한 자 (이하 “영화상영관 경영자”라 한다)는 화재 그 밖의 재해예방계획과 화재 그 밖의 재해발생시의 해당 영화상영관 종사자의 임무와 배치계획 등이 포함된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이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을 즉시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를 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된 재해대처계획의 내용이 미흡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의 보완을 요구받은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 보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시 신고하여야 한다.

④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제2항 전단 또는 제3항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영화상영관의 재해예방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전용상영관에 대한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청소년 관객의 보호와 영화예술의 확산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화를 연간 상영일수의 100분의 60 이상 상영하는 영화 상영관(이하 “전용상영관”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1. 한국영화
 2. 애니메이션영화·소형영화·단편영화 또는 영화진흥위원회가 인정하는 예술영화·독립영화
 3. 청소년관람가영화(제29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영화를 말한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장애인의 문화향유권 보장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전용상영관 중 한국수어·자막·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영화를 연간 상영일수의 100분의 30 이상 상영하는 전용상영관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전용상영관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의2(지역 영화 향유 환경 개선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지역 영화 향유권 향상을 위하여 지역 영화상영관 지원, 원활한 영화 배급, 공공 상영 및 영상문화교육시설 구축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지역 영상문화 진흥을 위하여 직접 영화를 제작하는 지역 주민이나 지역 영화 관련 단체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38조의3(공공 영화상영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영화 향유권 향상을 위하여 지역 주민을 위한 영화상영관을 설치 또는 운영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영화상영관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영화상영관의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8조의4(장애인의 영화 향유권) 영화업자는 장애인의 영화 향유권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영화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9조(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 ① 영화진흥위원회는 공중이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영화상영관의 관객 수 그 밖의 영화상영관에 관한 사항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영화상영관 입장권 통합전산망을 운영하여야 한다.

- ②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영하는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가입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가입한 자는 해당 영화상영관의 입장객 수, 입장권 판매액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고의적인 누락이나 조작 없이 영화상영관 입장권 통합전산망에 전송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의 운영, 가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한국영화의 상영의무)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연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수 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하여야 한다.

제41조(영화상영의 신고) ① 영화상영관 경영자 및 비상설상영장을 설치·경영하는 자는 영화(제29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영화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상영하고자 하거나 상영중인 영화를 다른 영화로 변경하여 상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영화제목, 상영기간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해당 영화의 상영을 중지 또는 재개하거나 상영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9조에 따라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영하는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가입한 영화상영관 경영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신고를 면제한다. 이 경우 영화진흥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나 통보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영화상영의 제한)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화에 대하여는 그 상영을 금지하거나 상영 중인 영화를 정지시켜야 한다.

1.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급을 분류 받지 아니한 영화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을 분류 받은 영화
3. 분류 받은 상영등급을 변조 또는 위반하여 상영하는 영화
4. 등급을 분류 받은 영화의 내용을 다르게 하여 상영하는 영화
5. 제4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영화

제43조(제한상영가 영화의 상영 및 유통 제한) ① 누구든지 제한상영관이 아닌 장소 또는 시설에서 제한상영가 영화를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한상영가 영화와 동일한 영화를 다른 영상물로 제작하거나 그 제작된 영상물을 상영·판매·전송·대여하거나 시청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한상영관에서는 제29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영화를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4조(영사 자격자)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사(映寫) 관련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로 하여금 그 영화를 상영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소형영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화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조(영화상영관의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영화상영관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제29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제3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 또는 선전물을 게시하거나 제한상영관 밖으로 보이도록 한 때
 4.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미달한 때
 - 4의2. 제37조제4항에 따른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
 5. 한국영화의 상영일수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일수에 미달한 때
 6.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영화상영의 금지 또는 정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7. 1년에 3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때
 8.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때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자 중 제한상영관의 등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같은 장소에서 제한상영관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제46조(영업 등의 승계) ①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에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종전의 영화상영관 경영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 상속일 또는 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영화상영관을 인수한 자가 종전의 영화상영관 경영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인수일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양수인, 상속인,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영화상영관을 인수한 자는 그 양수일, 상속일, 합병일 또는 인수일부터 종전의 영화상영관 경영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되어 영화상영관 경영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영화상영관 경영자에 대하여 제45조제1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제재처분일로부터 1년간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 또는 합병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없다.

제46조의2(영화상영관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① 제36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폐업을 하였을 때에는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 사실을 확인한 후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제47조(시민감시 활동 지원) ①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의 상영 및 전용상영관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관람객의 권익보호를 위한 감시활동을 하는 시민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화진흥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제3장 <삭제>

제1절 <삭제>

제48조 <삭제>

제49조 <삭제>

제49조의2 <삭제>

제2절 <삭제>

제50조(등급분류) ① <삭제>

② 영상물등급위원회는 판매나 대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시청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29조 제1항에 따라 영화의 등급분류를 신청하는 자가 그 영화의 제작 또는 배급에 관한 정당한 권리를 갖추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시청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수입된 영화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⑦ <삭제>

제50조의2(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 ①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0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 받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이하 “자체등급분류사업자”라 한다)는 관객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시청에제공하는 영화의 내용에 관하여 그 영화의 제공 전에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29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영화는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②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등급분류하여 제공하는 영화를 공급하는 자가 그 영화의 제작 또는 배급에 관한 정당한 권리를 갖추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정당한 권리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자체등급분류 결정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등급분류를 요청하여 그 결과로 자체등급분류 결정을 대체할 수 있다.

제50조의3(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업자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자체등급분류 업무운영 계획의 적정성
2. 청소년 및 이용자 보호 계획의 적정성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 것

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영화를 시청에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의 신고를 한 법인

나.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2. 최근 5년간 제50조의6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가 확정된 사실이 없을 것

③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지정기간의 만료 후 계속하여 자체등급분류 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3항에 따른 재지정을 할 수 있다.

1. 제1항 각 호의 계획에 대한 이행 여부 및 향후 계획의 적정성
2. 최근 5년간 제50조의6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가 확정된 사실이 없을 것
3. 제50조의8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 및 개선조치의 이행 여부

⑤ 제1항에 따른 지정 및 제4항에 따른 재지정에 필요한 세부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의4(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준수사항)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29조제7항에 따른 영화 등급분류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것
2. 제1호에 따라 등급분류한 영화에 대하여 제65조에 따라 등급과 내용정보 등을 표시하고 이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할 것
3.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급분류책임자를 지정하고 해당 등급분류책임자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실시하는 등급분류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것
4. 자체등급분류 업무와 관련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에 따를 것
5. 그 밖에 자체등급분류 업무의 적정성 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제50조의5(자체등급분류의 효력) ①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영화는 그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공급 및 제공하는 범위에서 제50조제1항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다른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한 등급분류 결과를 이용할 수 있다.

제50조의6(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5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0조의4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제50조의7제4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4.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계속한 경우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에 앞서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시정방안을 정하여 10일 이내에 이를 수락할 것을 권고할 수 있으며,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시정방안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지정취소 이전에 한 등급분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같은 항 제1호의 사유로 지정취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에 필요한 절차와 세부적인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의7(직권등급재분류 등) ①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분류한 영화가 제50조제3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새로 등급분류 결정을 하거나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 결과가 등급분류 기준에 현저히 위배되거나 자체등급분류사업자 간의 등급분류 결과가 상이한 경우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등급을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급분류 결정 또는 취소 결정을 한 경우 이를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요구 및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0조의8(영상물등급위원회의 지원업무) ①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자체등급분류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1. 영화의 등급정보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제공
2. 영화의 신속한 등급분류 절차를 위한 정보통신 시스템 구축 및 운영
3. 제50조의4제1호 및 제2호의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온라인 사후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4. 제50조의4제3호에 따른 등급분류책임자에 대한 온라인 교육시스템과 대면 교육체계 구축 및 운영
5.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한 등급분류 업무 지원
6. 자체등급분류 정보 이용자의 수용능력 향상을 위한 온라인 교육시스템과 대면 교육체계 구축 및 운영
7. 자체등급분류 정보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및 협력체계 구축
- ②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하여 자체등급분류지원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③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50조의4제2호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부터 통보받은 사항을 공중에 공개할 수 있다.
- ④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자체등급분류 업무의 적정성 유지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제50조의4에서 정하는 사항 및 제50조의7제4항의 조치의무에 대한 준수 여부를 평가한 후 평가 결과를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통보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업무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51조(복제 등의 확인) ① 등급분류를 받은 영화를 동일한 내용의 다른 영화로 복제하거나 이를 배급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제작자등”이라 한다)는 그 복제 또는 배급에 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등급분류를 받은 영화와 동일한 내용인지의 여부를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제작자등이 등급분류를 받은 영화와 동일한 내용의 다른 영화로 복제하거나 배급할 권리가 있음을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신청 시에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확인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당한 권리자이며 동일한 내용인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작자등에게 확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절차, 확인증명서의 발급 및 재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제52조(등급분류 등의 취소) ① 영상물등급위원회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9조제1항 또는 제5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 또는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거나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가 등급분류 또는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등급분류 또는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분류 또는 확인을 취소할 때에는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29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증명서 또는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증명서를 각각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53조(불법비디오물의 판매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화를 제작하거나 공급·판매·대여(이하 “유통”이라 한다) 또는 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29조제1항 또는 제5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영화
2. 제5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복제하거나 배급한 영화
3. 제50조의7제1항 또는 제52조제1항에 따라 등급분류 또는 확인이 취소된 해당 영화
4. 제5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제작하거나 수입 또는 배급한 영화
5.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등급을 변경한 영화

②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영화를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시청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이 시청 지도를 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9조제9항 및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되는 등급분류증명서 및 확인증명서는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매매 또는 증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3조의2(제한관람가 영화의 시청제공 및 유통제한) ① 누구든지 제한관람가영화소극장이 아닌 장소 또는 시설에서 제한관람가 영화를 시청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한관람가 영화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한관람가영화소극장에서는 제2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디오물을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4조 <삭제>

제55조(등급분류 등의 통지)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영화에 대한 지도·단속권한이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정기관의 장과 제87조에 의한 영화단체(이하 "영화단체"라 한다)에 통지하고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에 관한 결정
2. 제31조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제56조(자료제출의 요청)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29조, 제50조의2제3항 및 제31조에 의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급분류 등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등급심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절 영업의 신고·등록·운영

제57조 <삭제>

제58조(영화시청제공업자의 등록) ① 영화시청제공업자가 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하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에 해당하는 경우
2. 정보통신망만을 이용하여 영화를 시청에 제공하는 경우. 다만, 제1항 본문에 따른 시설 및 영화 시청기자재를 갖춘 경우는 제외한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관람가영화소극장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또는 시설을 지정·고시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59조(영업의 제한) 제58조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58조에 의한 등록을 할 수 없다.

- 1. 제6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같은 업종을 다시 영위하고자 하는 때
- 2. 제6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때

제60조(신고증·등록증의 교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6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경우 또는 제58조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61조(등록사항의 변경) ① 제58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삭제>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갱신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변경등록의 절차·방법 및 등록증 갱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62조(영화시청제공업자의 준수사항) 영화시청제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 1. 영업소 안에 화재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것
- 2. 영화소극장업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에 한하여 청소년을 출입시킬 것. 다만,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거나 그의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영화감상실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 가. 주류를 판매·제공하는 행위
 - 나.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알선하는 행위
 - 다. 삭제
- 4. 영화감상실업, 제한관람가영화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의 경우에는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고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시킬 것
- 5.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에 등록증을 게시할 것

제63조(영업의 승계) ① 제26조 또는 제58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영화업자 또는 영화시청제공업자 (이하 “영화업자등”이라 한다)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에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종전의 영화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 상속일 또는 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영화업자등의 영화에 관한 영업시설·기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시설·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를 인수한 자가 종전의 영화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인수일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양수인, 상속인,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비디오물에 관한 영업시설·기구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양수일, 상속일, 합병일 또는 인수일부터 종전의 영화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다.

⑤ 제64조에 따른 폐업신고에 의하여 폐업하거나 등록이 말소된 영화업자등이 1년 이내에 폐업한 장소에서 같은 업종으로 다시 신고 또는 등록을 하는 경우 해당 영화업자등은 폐업신고 전의 영화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64조(영화시청제공업자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① 제58조에 따른 등록을 한 자가 폐업을 하였을 때에는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 사실을 확인한 후 신고사항 또는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제4절 영화의 표시 및 광고

제65조(표시의무) ① 영리의 목적으로 영화를 제작 또는 수입하거나 이를 복제하는 자는 해당 영화마다 제작·수입 또는 복제한 자의 상호(도서에 부수되는 영화의 경우에는 출판사의 상호를 말한다), 제29조제1항 또는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분류된 등급, 내용정보,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 및 내용정보의 표시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 <삭제>

제5절 등록취소 등 행정조치

제67조(행정처분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영화제작업 또는 영화배급업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때
2. 제5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4.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영화시청제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때
2. 제5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때
4.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5.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때
6.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성매매 등의 행위를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한 때

7.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영업을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을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68조(과징금 부과)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영화제작업자 또는 영화배급업자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영화시청제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때
2. 제62조제2호·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건전한 영화의 제작 및 유통
2. 영화의 유해환경 개선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및 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운용계획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행정제재처분의 효과승계) ① 제63조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되어 영화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영화업자등에 대하여 제67조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일부부터 1년간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 또는 합병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없다.

② 제63조제5항에 따라 영화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폐업신고 전에 제67조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일부부터 1년간 영화업자등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영화업자등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제70조(폐쇄 및 수거)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6조 또는 제58조에 따른 신고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자와 제6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영업을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고 계속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영업 또는 영업소의 간판 및 그 밖의 영업표지물의 제거
2. 해당 영업 또는 영업소가 위법한 것임을 알리는 게시물의 부착
3.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② 제1항의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미리 해당 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이를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3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영화를 발견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하여 폐기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해당 영화를 수거한 때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수거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거증의 인수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수거·폐기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영화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시물의 부착·봉인·수거·폐기 등의 처분을 하는 관계 공무원 및 영화단체의 임·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화가 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같은 항 제9호의 게시판을 관리·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게 하는 등의 시정을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⑧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7항 후단에 따른 심의 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하여 같은 법 제21조제4호에 따라 심의 및 시정요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영상물등급위원회

제71조(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와 그 광고·선전물(이하 “영상물등”이라 한다)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를 둔다.

제72조(직무)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영상물등의 등급분류 및 내용정보, 청소년 유해성 확인에 관한 사항
2. 영상물등의 제작·유통 또는 시청제공의 실태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의2. 제50조의4제1호 및 제2호의 준수 여부 확인 등 자체등급분류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 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기피신청에 관한 사항
5. 영상물등의 등급분류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조사, 연구, 국제협력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5의2. 등급분류책임자 및 영화 이용자 교육에 관한 사항
5의3. 영화 이용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업무 또는 권한으로 규정되거나 위탁받은 사항

제73조(구성) ①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예술·영상물등·청소년·법률·교육·언론 분야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에서 종사하고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대한민국예술원법」에 의한 대한민국예술원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③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은 성과 연령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하며 위원의 선임기준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그 밖에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제74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화의 등급분류신청, 제50조의2

제3항에 의한 영화의 등급분류신청 등 이 법에 의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신청(이하 이 조에서 “신청”이라 한다)을 한 사항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자가 신청한 사항
3. 위원과 가족관계에 있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었던 자가 신청한 사항
 - ② 신청을 한 자는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제75조(위원장 등) ①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②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장은 영상물등급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 ③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제76조(위원의 임기) ①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②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③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기가 만료된 때에 그 후임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제77조(의결정족수)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72조제3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8조(회의공개) ① 영상물등급위원회의 회의는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한다. 다만, 영업비밀의 보호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79조(소위원회 등) ①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7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72조제2호 및 제2호의2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후관리위원회를

둔다.

③ 소위원회 및 사후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제80조(위원의 대우 및 겸직금지) ①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 중 상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고 비상임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수행경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상임위원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제81조(위원의 결격사유) 제12조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제82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등) ①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은 임기 중 직무상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거나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1. 제8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장기간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③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이 제2항제1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면직되며 동항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장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촉을 건의할 수 있다.

제83조(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관련 업무 등) ①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상물의 등급분류에 대한 국민여론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등급분류 등의 업무 수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7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영화업자 및 비디오물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관계기관에 건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제84조(사무국) ①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을 두되,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장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③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제85조(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의 제정·개정·폐지) ①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정·개정·폐지안을 20일 이상 관보 등에 예고하여야 하며, 그 규정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한 때에는 이를 관보 등에 게재·공포하여야 한다.

②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5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분류의 기준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소년단체·비영리민간단체·학계 또는 산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86조(국고지원) ①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영상물등급위원회는 국고 예산이 수반되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87조(영화단체의 설립) ① 영화업자는 영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영화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영화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③ 영화단체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영화단체는 비디오품의 제작 및 유통질서가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영화단체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8조(영화 유통질서에 관한 교육) 시장·군수·구청장은 영화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영화시청제공업자에 대하여 연 3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9조(모범적인 영화업자에 대한 지원)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영화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모범적인 영화시청제공업자를 지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90조(수수료) ① 삭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 수수료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면제한다.

1.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화의 등급분류를 신청하는 자

2.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하는 자

3.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화 광고·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성의 확인을 신청하는 자

4. <삭제>

4의2. 제50조의2제3항에 따라 등급분류를 요청하는 자

5.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영화 복제 등의 확인을 신청하는 자 또는 확인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6. <삭제>

7. <삭제>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자
- 1의2. 제26조제1항에 따라 영화업자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자
- 1의3. 제26조제3항에 따라 신고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2. <삭제>

3.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화시청제공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
4.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을 하는 자

④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수수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련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91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1.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과 그 사무국의 직원
2.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과 그 사무국의 직원
3. 영상물등급위원회 소위원회의 위원·사후관리위원회의 위원
4. 제9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

제9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상자료원, 영상물등급위원회 또는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과 관련된 전문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영화진흥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업무의 일부를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장 벌칙

제93조(벌칙) 제70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받고 이를 위반하여 영업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급을 분류받지 아니한 영화를 상영한 자
2. 제29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한관람가 영화를 관람할 수 없는 청소년을 입장시킨 자
3. 제4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한관람가 영화를 제한상영관이 아닌 장소 또는 시설에서 상영한 자
4. 제4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한관람가 영화를 다른 영상물로 제작하거나 그 제작된 영상물을 상영·판매·전송·대여 또는 시청에 제공한 자

5. 제5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제한관람가 영화를 제한관람가관람소극장이 아닌 장소 또는 시설에서 시청에 제공한 자
6. 제5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제한관람가 영화를 유통한 자
7. 제62조제4호를 위반하여 관람감상실, 제한관람가관람소극장 또는 복합영상물제공업소에 청소년 출입을 허용한 자

제9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9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화를 상영한 자
2. 제3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한관람가 영화의 광고 또는 선전물을 게시하거나 제한상영관 밖에서 보이도록 한 자
3. 제43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한상영관에서 제29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영화를 상영한 자
4.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영화에 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자가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를 받거나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제·배급 등의 확인을 받은 자
6. 제5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영화를 제작·유통·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한 자
7. 제53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급분류증명서 또는 확인증명서를 매매 또는 증여한 자
8. 제5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제한관람가영화소극장에서 제50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화를 공중의 시청에 제공한 자
9. 제5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화시청제공업을 영위한 자
10. 제62조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11. 제66조제5항을 위반하여 제한관람가 영화의 광고 또는 선전물을 제한관람가영화소극장 안 이외의 장소에 게시하거나 제한관람가영화소극장 밖에서 보이도록 한 자
12.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

제9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2.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
3.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96조의2(벌칙) 제3조의4를 위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3조부터 제96조까지 및 제96조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9조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조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의 등급에 해당하는 영화를 관람할 수 없는 자를 입장시킨 자
2. 제3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확인받지 아니한 광고나 선전물을 배포·게시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한 자
3. 제3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확인된 광고나 선전물을 배포·게시한 자
- 3의2. 제50조의6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5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화를 시청에 제공한 자
5. <삭제>
6. <삭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삭제
- 1의2. 제2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화제작·수입·배급 또는 상영업을 영위한 자
2. 제3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화필름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3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화상영관을 설치·경영한 자
4. 제37조제1항 전단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재해대책계획을 수립, 신고 또는 보완하지 아니한 자
- 4의2. 제37조제4항을 위반하여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5.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입장객 수, 입장권 판매액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조작하여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전송한 자
6. 제4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7. 제4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사관련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로 하여금 영화를 상영하게 한 자
8. 제6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9. 제6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급 또는 내용정보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표시방법과 다르게 표시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6조제1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36조제1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화상영관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3. 제46조제1항·제2항 또는 제63조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99조(과태료의 부과) 제98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법의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영화수입업자는 이 법에 따른 영화배급업자로 본다.

② 이 법의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비디오물제작업자 및 비디오물배급업자는 이 법에 따른 영화제작업자 및 영화배급업자로 본다.

③ 이 법의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다른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는 영화시청제공업자로, 비디오물감상실업은 영화감상실업으로, 비디오물소극장업은 영화소극장업은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업은 제한관람가영화소극장업으로, 그 밖의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은 그 밖의 영화시청제공업으로 본다.

IV. 영화+영상물 정의(2안) 도입에 따른 영비법 전면개정안 제안

영화 및 영상물 진흥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영화 및 영상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영상문화 및 영화산업 및 영상물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화”라 함은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 또는 디지털매체에 담긴 저작물로서 영화상영관 등에서 상영하거나 판매나 대여를 통하여 시청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한 것을 말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의한 게임물
 - 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한 것(영화가 수록되어 있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2. “영화산업”이라 함은 영화의 제작·활용·유통·보급·수출·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3. “한국영화”라 함은 국내에 주된 사업소를 둔 자(법인을 포함한다)가 제작한 영화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영화로 인정받은 영화를 말한다.
4. “공동제작영화”라 함은 한국영화제작업자와 외국영화제작업자가 공동으로 제작한 영화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제작비용을 출자하여 제작한 영화를 말한다.
5. “애니메이션(animation) 영화”라 함은 실물의 세계 또는 상상의 세계를 가공하여 현실과 유사한 동적 감각을 느낄 수 있도록 인력 또는 기술력을 이용하여 표현한 영화를 말한다.
6. “소형영화”라 함은 16밀리미터 이하의 필름을 사용하여 제작한 영화 및 디지털 매체를 사용하여 제작한 영화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영화를 말한다.
7. “단편영화”라 함은 상영시간이 40분을 넘지 아니하는 영화를 말한다.
8. “상영”이라 함은 영화를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9. “영화업자”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영화제작업자 : 영화 제작·복제를 업으로 하는 자
 - 나. <삭제>
 - 다. 영화배급업자 : 영화를 수입하거나 배급·공급을 업으로 하는 자
 - 라. 영화상영업자 : 영화상영을 업으로 하는 자
10. “영화상영관”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영화를 상영하는 장소 또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연간 영화상영일수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수의 범위 이내인 장소 또는 시설(이하 “비상설상영장”이라 한다)을 제외한다.
11. “제한상영관”이라 함은 영화상영관 중 제29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제한상영가(制限上映可) 영화를 상영하는 영화상영관을 말한다.

12. <삭제>

- 12의2. “영상물”이란 연속적인 영상이 디지털매체에 담긴 저작물로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시청에 제공될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을 말한다.
13. “영상물산업”이라 함은 영상물의 제작·활용·유통·공급·수출·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14. “영상물제작업자”라 함은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복제하는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15. “영상물배급업자”이라 함은 영상물을 수입하거나 그 저작권을 소유·관리하여 영상물을 판매·대여하거나 시청에 제공하는 업을 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16. “영화시청제공업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영화감상실업 : 다수의 구획된 시청실과 영화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영화를 공중의 시청에 제공(관객이 직접 시청시설을 작동하여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영업
 - 나. 영화소극장업 : 영사막 및 다수의 객석과 영화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영화만을 전용으로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영업
 - 다. 제한관람가영화소극장업 : 영사막 및 다수의 객석과 영화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제한관람가 등급의 영화만을 전용으로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영업
 - 라. 복합영상물제공업 : 영화감상실업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노래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공중에 제공하는 영업
 - 마. 그 밖의 영화시청제공업 : 공중이 숙박·휴게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서 영화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영화를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영업
17. “영상물업자”라 함은 제14호 및 제15호의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18. “청소년”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19. <삭제>

20. “내용정보”란 영화 및 영상물의 내용에 대한 주제, 선정성, 폭력성, 대사, 공포, 약물, 모방위험 등의 정도, 그 밖에 이에 관련된 정보를 말한다.
21. “영화근로자”란 영화산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22. “영화업자단체”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영화업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영화업자의 단체를 말한다.
23. “영화근로자조합”이란 영화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을 유지·개선, 그 밖에 영화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

제2장 영화

제1절 영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공정환경 조성

제3조(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상문화의 발달과 영화산업 및 영상물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화진흥위원회”라 한다)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영상자료원(이하 “한국영상자료원”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화진흥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한국영화 및 영상물 진흥의 기본방향
 2. 영화 및 영상물제작의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제작기반 확충, 기술개발
 3. 영화 및 영상물 배급 및 상영의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및 개발
 4. 한국영화 및 영상물의 수출과 국제적 진출
 5. 영화 및 영상물자료의 수집과 보존
 6. 영화 및 영상물인력의 양성 및 영화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
 - 6의2. 영화산업에서 인권존중 의식 및 양성평등 문화의 확산
 - 6의3. 예술영화·독립영화의 육성 및 지원
 7. 영화 및 영상물진흥에 필요한 재정적 기반확충을 위한 재원의 확보 및 효율적인 운용방안
 8. 영화 및 영상물의 국제교류 및 협력
 9. <삭제>
 10. 영상기술 개발·표준, 영상물의 품질인증 및 영화상영관 등의 시설기준
 11. 영상문화의 다양성·공공성 증진
 - 11의2. 지역 영상문화 진흥
 12. 영화상영관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위생·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영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상물의 발전을 위하여 제2항제10호와 관련된 기술표준, 품질인증, 시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영화업자 등 관련 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다만, 기술표준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조의2(영화노사정협의회) 영화근로자조합과 영화업자 또는 영화업자단체 및 정부를 대표하는 자는 영화산업의 진흥과 영화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영화노사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3조의3(표준보수에 관한 지침)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조의2에 따른 영화노사정협의회와 협의하여 영화근로자의 표준보수(보수란 영화근로자가 역무를 제공하는 반대급부로 지급받는 모든 대가를 의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지침(이하 “표준보수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이를 보급·권장하여야 한다.

② 영화업자와 영화근로자는 표준보수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화진흥위원회로 하여금 표준보수지침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조의4(근로조건의 명시) 영화업자는 영화근로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영화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및 그 밖의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3조의5(표준계약서의 사용 및 확산) 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영화업자 또는 영화업자단체에 표준 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영화진흥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영화업자 또는 영화업자단체에 대하여 제23조에 따른 영화발전기금 지원 등 영화·영상물산업에 관한 재정지원(「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같은 법상의 지원을 받은 투자조합의 문화산업에 관한 투자를 포함한다)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제3조의6(안전사고로부터의 보호) ① 영화업자는 영화 촬영 중에 발생하는 안전사고로부터 영화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조의7(성폭력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① 영화제작업자는 영화 촬영 전에 촬영에 참여하는 자들이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영화진흥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위하여 성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강사 양성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조치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3조의8(직업훈련의 실시) 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영화근로자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직업훈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직업교육훈련기관 또는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직업훈련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업훈련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을 준용한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직업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영화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의9(임금체불 등에 관한 제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업자가 영화 제작기간 동안 영화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거나 제3조의4를 위반한 경우 또는 제3조의5제1항의 표준 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제23조에 따른 영화발전기금 지원 등 영화·영상물산업에 관한 재정 지원(「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같은 법상의 지원을 받은 투자조합의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를 포함한다)으로 수행되는 사업에서 배제할 수 있다.

제3조의10(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영화산업의 진흥 또는 영화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 또는 관련 법인·단체·개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영화진흥위원회

제4조(설치) 영화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한국영화·영상물 및 영화산업·영상물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영화진흥위원회를 둔다.

제5조(법인격) 영화진흥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제6조(정관) ① 영화진흥위원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임원(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과 감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보수기준에 관한 사항
 6.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② 위원회가 정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등기) ① 영화진흥위원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② 영화진흥위원회의 설립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영화진흥위원회의 구성) ① 영화진흥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은 영화예술 및 영화산업 등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되, 성(性)과 연령, 전문성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 중 영화업자가 5인 이상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 ③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 선임기준 등 그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은 영화진흥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②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보궐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④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기가 만료된 때에 그 후임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행한다.

제11조 삭제

제12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 1. 공무원(「교육공무원법」에 의한 교육공무원 및 법관을 제외한다)
- 2. 「정당법」에 의한 당원
-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4. 삭제
- 5. <삭제>
-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12조의2(관여 금지)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은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의 이해와 관련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제13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은 임기 중 직무상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 ②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 1. 제12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2. 장기간의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14조(영화진흥위원회의 기능) ① 영화진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영화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변경에 관한 의견제시
- 2. 영화진흥위원회 운영계획의 수립·시행
- 3. 영화진흥위원회 정관 및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
- 4. 영상제작 관련 시설의 관리·운영
- 5.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영화발전기금의 관리·운용
- 6. 한국영화 진흥 및 영화산업 육성 등을 위한 조사·연구·교육·연수
- 7. 영화의 유통배급 지원
- 7의2. 영화 및 영상물과 관련된 영상기술의 개발과 표준 제정·보급, 품질인증 및 영화상영관 등의 시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

8. 한국영화 및 영상물의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9. 예술영화, 독립영화, 애니메이션영화, 소형영화 및 단편영화의 진흥
10. 영화 및 영상물 관객의 불만 및 진정사항의 관리
11. 영화산업·영상물산업에서 인권존중 의식 및 양성평등 문화의 확산
12.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
13.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의 운영
14.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영화의무상영제도의 운영 및 개선
- 14의2. 지역 영상문화 진흥
15. <삭제>
16. 표준계약서 확산 및 영화산업 내 근로환경 개선
17. 그 밖에 영화진흥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화진흥위원회가 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영화발전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영화진흥위원회를 「국가재정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로 본다.

제15조(의결정족수) 영화진흥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회의공개 등) ① 영화진흥위원회의 회의는 영화진흥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한다. 다만, 영화진흥위원회가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비공개를 의결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진흥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7조(소위원회 등) ① 영화진흥위원회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화진흥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② 영화업자에 해당하는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은 제2조제9호 각 목에 따른 분류 중 스스로가 업으로 하고 있는 분야와 직접 관련되는 소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영화진흥위원회는 제14조제1항제6호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기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으며 그 설립·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화진흥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제18조(예산편성 등) ① 영화진흥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과 그 규모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화진흥위원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영화진흥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감사) ① 영화진흥위원회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기 위하여 영화진흥위원회에 감사 1인을 둔다.

② 감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며 비상임으로 한다.

③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20조(사무국) ① 영화진흥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영화진흥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을 두되,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이 영화진흥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제21조(영화진흥위원회규정의 제정과 개정 등)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진흥위원회규정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20일 이상 인터넷 등에 예고하여야 하며, 동 규정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2조(국고지원) 영화진흥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3절 영화발전기금

제23조(기금의 설치 등) ① 영화예술의 질적 향상과 한국영화 및 영화산업의 진흥·발전을 위하여 영화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영화진흥위원회가 관리·운용하되, 독립된 회계로 따로 처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
3. 제25조의2의 규정에 따른 영화상영관 입장권에 대한 부과금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제25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한국영화의 창작·제작 진흥 관련 지원
2. 영상 전문투자조합 출자
3. 한국영화의 수출 및 국제교류 지원
4. 소형영화·단편영화의 제작 지원
- 4의2. 제38조제1항에 따른 전용상영관의 지원
5. 영화상영관 시설의 보수·유지 및 개선 지원
- 5의2. 영화산업 종사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지원
- 5의3. 영화산업에서 인권존중 의식 및 양성평등 문화의 확산을 위한 사업 지원
6. 영화진흥위원회가 인정하는 영화 관련 단체 및 시민단체의 영화 관련 사업 지원
- 6의2. 영화 관련 교육·연수 등과 관련된 사업 지원

7. 예술영화·독립영화의 발전과 관련한 사업 지원
 8. 영상문화의 다양성·공공성 증진과 관련한 사업 지원
 - 8의2. 영상기술의 개발과 관련된 사업 지원
 - 8의3. 지역 영상문화 진흥과 관련된 사업 지원
 9. <삭제>
 10.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영화향수권 신장을 위한 사업 지원
 - 10의2. 남북 간 영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
 11.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12. 그 밖에 영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으로서 영화진흥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한 사업 지원
- ② 제1항제12호의 사업에 집행될 수 있는 기금의 액수는 연간 기금 집행 액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제25조의2(부과금의 징수) ① 영화진흥위원회는 한국영화의 발전 및 영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영화상영관(비상설상영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입장하는 관람객에 대하여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화상영관에 입장하는 관람객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전 연도에 제3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영화를 연간 상영일수의 100분의 60 이상 상영한 영화상영관
 2. 직전 연도의 입장권 판매액(2개 이상의 영화상영관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각 영화상영관별 입장권 판매액의 합계를 말하며, 직전 연도의 영업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입장권 판매액을 연간 판매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보다 적은 영화상영관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입장권의 월 판매액이 감염병 발생 연도 직전 3개년간(영업기간이 3개년 미만인 경우에는 영업기간 동안) 같은 달의 평균 입장권 판매액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감소한 영화상영관(2개 이상의 영화상영관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각 영화상영관별 입장권 판매액의 합계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감염병 발생 연도 직전 3개년간 같은 달의 영업일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달의 입장권 판매액을 월 판매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같은 달의 영업일이 없는 경우에는 감염병 발생 직전 연도까지 영업기간 동안의 월평균 입장권 판매액을 기준으로 한다.
- ②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관람객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부과금을 수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기한까지 해당 부과금을 영화진흥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수납한 부과금을 납부하는 때에는 부과금수납부 사본 등 부과금 수납과 관련된 자료를 영화진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화진흥위원회가 제39조제1항에 따른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을 통하여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수납하여야 할 부과금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과금 수납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제2항에 따라 관람객으로부터 수납한 부과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 ⑤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제2항의 부과금 및 제4항의 가산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 ⑥ 부과금·가산금의 징수방법, 납부기한 및 부과금 수납 관련 자료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⑦ 영화진흥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2항에 따른 영화상영관 경영자의 부과금 수납에 대한 위탁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제1항에 따른 부과금 징수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제25조의3(성과의 평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기금 사용의 성과를 측정·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영화진흥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를 측정·평가하기 위하여 영화진흥위원회와 협의하여 성과목표 및 평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 평가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영화진흥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성과의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절 영화업자의 신고 등

제26조(영화업자의 신고 등) ① 영화업자 또는 영상물제작업자·영상물배급업자가 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작하는 경우
 2.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교육기관 또는 연수기관이 자체교육 또는 연수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3.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자가 방송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그 사업의 홍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5. 관혼상제 또는 종교의식 등의 행사를 기념으로 남기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하는 경우. 다만, 공중에게 유통시키거나 시청에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6. 제29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영화 또는 영상물을 제작하는 경우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변경신고의 절차, 신고증의 교부 및 재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 ① 공동제작영화를 제작하는 자는 해당 영화의 제작에 참여하거나 활용하는 인적·물적 요소나 해당 영화의 예술적·기술적 특성이 한국영화의 인정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공동제작영화를 한국영화로 인정받을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영화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영화진흥위원회에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절차·방법 및 한국영화 인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영화진흥위원회는 한국영화로 인정한 공동제작영화가 그 제작이 완료된 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영화의 인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한국영화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28조(영화의 공급 및 유통) ① 영화업자가 다른 영화업자에게 영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가격으로 차별 없이 공급하여야 한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화의 유통질서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40조 제1항·제45조제1항·제46조 또는 제51조제1항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화업자의 저작재산권 및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영화의 제작·상영 및 유통 과정에서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의2(영화업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① 제26조에 따라 신고한 자가 폐업을 하였을 때에는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 사실을 확인한 후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제28조의3(영상물 촬영을 위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 현지 촬영 장소의 제공 등 영상물 촬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영상물 촬영 지원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영상물 촬영을 위한 협조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8조의4(영상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영상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영상제작 및 촬영 유치·지원
2. 영상제작 관련 시설 운영
3. 영상촬영지 및 관련 정보의 제공

4. 지역 영상문화·산업의 진흥
5. 영상 관련 시설 및 촬영지의 관광자원 활용
6. 그 밖에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 ② 지방자치단체는 영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 ③ 영상위원회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28조의5(국제영화제) ① 지방자치단체는 영상 문화·산업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국제영화제를 개최하거나 국제영화제를 개최·운영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내외 영화의 국제영화제 초청·상영
2. 국내외 영화 제작
3. 국제영화제의 국내외 영화 시상
4. 지역 영상 관련 시설 및 촬영지의 활용
5.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영화제의 개최·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 ③ 국제영화제의 개최·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5절 상영등급분류 및 광고·선전제한

제29조(등급분류) ① 영화(영화상영관 등에서 영화 상영 전후에 상영하는 예고편 및 광고영화를 포함한다) 및 영상물을 제작 또는 배급(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는 상영 또는 공급하기 전에 그 내용에 관하여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상물등급위원회”라 한다)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화 또는 영상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정한 장소에서 청소년이 포함되지 아니한 특정인에 한하여 상영하거나 시청에 제공하는 소형영화·단편영화
2. 영화진흥위원회가 추천하는 영화제에서 상영하는 영화
3. 국제적 문화교류의 목적으로 상영하는 영화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영화
4.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영상물. 다만,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자가 제작·유통하거나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음악 영상파일은 제외한다.
5.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영상물 대회, 전시회 등에서 시청에 제공하는 영화 및 영상물
6. 그 밖에 제작 주체, 유통 형태 등에 비추어 보아 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한 영화 및 영상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② 제1항 본문에 의한 영화 및 영상물의 등급은 그 내용, 영상 및 대사 등의 표현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화와 같이 분류한다. 다만, 영화 상영 전후에 상영하는 광고영화는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등급을 분류받을 수 있고, 예고편영화는 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상영등급을 분류하고 청소년 관람불가 예고편영화(술·담배에 관한 광고영화를 포함한다)는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의 상영 전후에만 상영할 수 있다.

1. 전체관람가 : 모든 연령에 해당하는 자가 관람 및 시청할 수 있는 영화 및 영상물
2. 12세 이상 관람가 : 12세 이상의 자가 관람 및 시청할 수 있는 영화 및 영상물
3. 15세 이상 관람가 : 15세 이상의 자가 관람 및 시청할 수 있는 영화 및 영상물
4. 청소년 관람불가 : 청소년은 관람 및 시청할 수 없는 영화 및 영상물
5. 제한관람가 : 선정성·폭력성·사회적 행위 등의 표현이 과도하여 인간의 보편적 존엄, 사회적 가치,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 정서를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어 상영, 시청제공, 유통, 광고·선전 등에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 및 영상물
-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등급을 분류 받지 아니한 영화 및 영상물을 상영하거나 시청제공·유통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누구든지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등급에 해당하는 영화 및 영상물의 경우에는 해당 영화 및 영상물을 관람 또는 시청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를 관람 또는 시청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여 관람하거나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시청에 관한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누구든지 제2항제4호 또는 제5호의 등급에 해당하는 영화 및 영상물의 경우에는 청소년을 입장시키거나 청소년이 시청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누구든지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분류 받은 등급을 변조하거나 등급분류를 받은 영화 및 영상물의 내용을 변경하여 영화를 상영하거나 시청제공·유통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⑦ 제2항 각 호의 등급에 대한 구체적인 분류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대한민국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와 인권존중에 관한 사항
 2.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동 및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
 3. 사회윤리의 존중에 관한 사항
 4. 국가정체성 및 외교관계의 유지에 관한 사항
 5. 주제 및 내용의 폭력성·선정성·반사회적 행위 등에 관한 사항
 6. 인간의 보편적 존엄과 사회적 가치, 선량한 풍속 및 국민정서에 관한 사항
- ⑧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등급을 분류하는 경우에는 내용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하여야 한다.
- ⑨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화의 등급을 분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영화 및 영상물의 등급과 내용정보를 기재한 등급분류증명서
 2. 등급분류에 따른 의무사항을 기재한 서류
- ⑩ 제1항·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등급분류의 절차·방법, 내용정보 제공의 절차·방법 및 등급분류 증명서의 교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제30조 삭제

제31조(등급의 재분류) ① 제29조 또는 제50조의2제3항에 의하여 분류 받은 등급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여 등급분류를 다시 받을 수 있다.

②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신청에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등급분류를 다시 하여 신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유 없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분류신청의 절차 및 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제32조(광고·선전물의 배포·게시 등의 제한) ① 영화 및 영상물(제29조제2항제1호에서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영화 및 영상물은 제외한다)에 관한 광고(영상물 형태의 광고를 포함한다)나 선전물을 배포·게시하거나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제한관람가 영화에 관한 광고·선전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받은 광고나 선전물은 이를 배포·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광고나 선전물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을 제외한 공중의 시청에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그 광고선전물의 내용이 제29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영화 및 영상물의 내용 또는 등급과 다른 내용이나 등급을 표시한 광고·선전물을 배포·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성 여부의 확인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제33조(제한상영가 영화의 광고·선전 제한) 제한관람가 영화 및 영상물에 관한 광고 또는 선전을 하는 자는 그 광고 또는 선전물을 제한상영관 또는 제한관람가영화소극장 안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게시물이 제한상영관 또는 제한관람가영화소극장 밖에서 보이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절 한국영상자료원 및 영화필름 등의 보존

제34조(한국영상자료원의 설치 등) ① 영화 및 영상물과 그 관계 문헌·음향자료 등 영상자료의 수집·보존·전시와 영화 및 영상물의 예술적·역사적·교육적인 발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한국영상자료원을 둔다.

② 한국영상자료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한국영상자료원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 및 직원을 둔다.

- ④ 한국영상자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 1.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되는 영화필름등의 보존과 보상
 - 2. 국내외 영화 및 영상물과 그 관계 문헌·음향자료 등 영상자료의 수집
 - 3. 수집된 영화 및 영상물과 그 관계 문헌·음향자료 등 영상자료의 보존과 복원
 - 4. 영상문화 발전을 위한 영화 및 영상물과 그 관계 문헌·음향자료 등 영상자료의 활용 및 전시
 - 5. 영상정보화 및 콘텐츠 활용 사업
 - 6. 그 밖에 한국영상자료원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⑤ 한국영상자료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중 영상자료의 수집·보존·활용 및 한국영상자료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5조(영화필름등의 제출) ① 영화제작업자는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라 등급을 분류 받은 때에는 해당 영화의 원판필름·디스크 등 또는 그 복사본과 대본(臺本)(이하 “영화필름등”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영상자료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외국영화 또는 제2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영화를 수입 또는 제작한 자가 해당 영화가 보존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화필름등을 한국영상자료원에 제출할 수 있다.
- ③ 한국영상자료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화필름등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화필름등에 대한 보상에 필요한 재원은 국고에서 부담한다.

제7절 영화의 상영

제36조(영화상영관의 등록) ① 영화상영관을 설치·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그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상영관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또는 시설을 지정·고시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화상영관의 등록, 변경등록의 절차 및 등록증의 교부 그 밖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재해예방조치) ①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화상영관을 설치·경영하고자 등록을 한 자(이하 “영화상영관 경영자”라 한다)는 화재 그 밖의 재해예방계획과 화재 그 밖의 재해발생시의 해당 영화상영관 종사자의 임무와 배치계획 등이 포함된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이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을 즉시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를 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된 재해대처계획의 내용이 미흡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제2항 후단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의 보완을 요구받은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 보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시 신고하여야 한다.
- ④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제2항 전단 또는 제3항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⑤ 그 밖에 영화상영관의 재해예방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전용상영관에 대한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청소년 관객의 보호와 영화예술의 확산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화를 연간 상영일수의 100분의 60 이상 상영하는 영화상영관(이하 “전용상영관”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1. 한국영화
 2. 애니메이션영화·소형영화·단편영화 또는 영화진흥위원회가 인정하는 예술영화·독립영화
 3. 청소년관람가영화(제29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영화를 말한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장애인 문화향유권 보장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전용상영관 중 한국수어·자막·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영화를 연간 상영일수의 100분의 30 이상 상영하는 전용상영관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전용상영관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의2(지역 영화 향유 환경 개선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지역 영화 향유권 향상을 위하여 지역 영화상영관 지원, 원활한 영화 배급, 공공 상영 및 영상문화교육시설 구축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지역 영상문화 진흥을 위하여 직접 영화를 제작하는 지역 주민이나 지역 영화 관련 단체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38조의3(공공 영화상영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영화 향유권 향상을 위하여 지역 주민을 위한 영화상영관을 설치 또는 운영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영화상영관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영화상영관의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8조의4(장애인의 영화 향유권) 영화업자는 장애인의 영화 향유권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영화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9조(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 ① 영화진흥위원회는 공중이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영화상영관의 관객 수 그 밖의 영화상영관에 관한 사항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영화상영관 입장권 통합전산망을 운영하여야 한다.

- ②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영하는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가입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가입한 자는 해당 영화상영관의 입장객 수, 입장권 판매액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고의적인 누락이나 조작 없이 영화상영관 입장권 통합전산망에 전송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의 운영, 가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한국영화의 상영의무)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연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수 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하여야 한다.

제41조(영화상영의 신고) ① 영화상영관 경영자 및 비상설상영장을 설치·경영하는 자는 영화(제29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영화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상영하고자 하거나 상영중인 영화를 다른 영화로 변경하여 상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영화제목, 상영기간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해당 영화의 상영을 중지 또는 재개하거나 상영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9조에 따라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영하는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가입한 영화상영관 경영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신고를 면제한다. 이 경우 영화진흥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나 통보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영화상영의 제한)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화에 대하여는 그 상영을 금지하거나 상영 중인 영화를 정지시켜야 한다.

- 1.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급을 분류 받지 아니한 영화
-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을 분류 받은 영화
- 3. 분류 받은 상영등급을 변조 또는 위반하여 상영하는 영화
- 4. 등급을 분류 받은 영화의 내용을 다르게 하여 상영하는 영화
- 5. 제4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영화

제43조(제한상영가 영화의 상영 및 유통 제한) ① 누구든지 제한상영관이 아닌 장소 또는 시설에서 제한상영가 영화를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한상영가 영화와 동일한 영화를 다른 영상물로 제작하거나 그 제작된 영상물을 상영·판매·전송·대여하거나 시청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한상영관에서는 제29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영화를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4조(영사 자격자)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사(映寫) 관련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로 하여금 그 영화를 상영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소형영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화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조(영화상영관의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영화상영관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제29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제3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 또는 선전물을 게시하거나 제한상영관 밖으로 보이도록 한 때
4.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미달한 때
- 4 의2. 제37조제4항에 따른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
5. 한국영화의 상영일수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일수에 미달한 때
6.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영화상영의 금지 또는 정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7. 1년에 3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때
8.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때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자 중 제한상영관의 등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같은 장소에서 제한상영관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제46조(영업 등의 승계) ①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에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종전의 영화상영관 경영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 상속일 또는 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영화상영관을 인수한 자가 종전의 영화상영관 경영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인수일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양수인, 상속인,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영화상영관을 인수한 자는 그 양수일, 상속일, 합병일 또는 인수일부터 종전의 영화상영관 경영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되어 영화상영관 경영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영화상영관 경영자에 대하여 제45조제1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제재처분

일부 1년간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 또는 합병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없다.

제46조의2(영화상영관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① 제36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폐업을 하였을 때에는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 사실을 확인한 후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제47조(시민감시 활동 지원) ①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의 상영 및 전용상영관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관람객의 권익보호를 위한 감시활동을 하는 시민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화진흥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제3장 <삭제>

제1절 <삭제>

제48조 <삭제>

제49조 <삭제>

제49조의2 <삭제>

제2절 <삭제>

제50조(등급분류) ① <삭제>

② 영상물등급위원회는 판매나 대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시청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29조 제1항에 따라 영화 및 영상물의 등급분류를 신청하는 자가 그 영화 및 영상물의 제작 또는 배급에 관한 정당한 권리를 갖추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시청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수입된 영화 및 영상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⑦ <삭제>

제50조의2(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 ①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0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이하 “자체등급분류사업자”라 한다)는 관객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시청에 제공하는 영상물의 내용에 관하여 그 영상물의 제공 전에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29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영상물은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 ②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등급분류하여 제공하는 영상물을 공급하는 자가 그 영상물의 제작 또는 배급에 관한 정당한 권리를 갖추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정당한 권리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자체등급분류 결정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등급분류를 요청하여 그 결과로 자체등급분류 결정을 대체할 수 있다.

제50조의3(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업자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자체등급분류 업무운영 계획의 적정성
 2. 청소년 및 이용자 보호 계획의 적정성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 것
 - 가. 영상물을 시청에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의 신고를 한 법인
 - 나.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2. 최근 5년간 제50조의6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가 확정된 사실이 없을 것
- ③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지정기간의 만료 후 계속하여 자체등급분류 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3항에 따른 재지정을 할 수 있다.
1. 제1항 각 호의 계획에 대한 이행 여부 및 향후 계획의 적정성
 2. 최근 5년간 제50조의6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가 확정된 사실이 없을 것
 3. 제50조의8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 및 개선조치의 이행 여부
- ⑤ 제1항에 따른 지정 및 제4항에 따른 재지정에 필요한 세부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의4(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준수사항)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29조제7항에 따른 영화 등급분류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것
2. 제1호에 따라 등급분류한 영상물에 대하여 제65조에 따라 등급과 내용정보 등을 표시하고 이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할 것
3.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급분류책임자를 지정하고 해당 등급분류책임자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실시하는 등급분류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것
4. 자체등급분류 업무와 관련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에 따를 것
5. 그 밖에 자체등급분류 업무의 적정성 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제50조의5(자체등급분류의 효력) ①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영상물은 그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공급 및 제공하는 범위에서 제50조제1항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다른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한 등급분류 결과를 이용할 수 있다.

제50조의6(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5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0조의4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제50조의7제4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4.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계속한 경우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에 앞서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시정방안을 정하여 10일 이내에 이를 수락할 것을 권고할 수 있으며,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시정방안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지정취소 이전에 한 등급분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같은 항 제1호의 사유로 지정취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에 필요한 절차와 세부적인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의7(직권등급재분류 등) ①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분류한 영상물이 제50조제3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새로 등급분류 결정을 하거나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 결과가 등급분류 기준에 현저히 위배되거나 자체등급분류사업자 간의 등급분류 결과가 상이한 경우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등급을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급분류 결정 또는 취소 결정을 한 경우 이를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요구 및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0조의8(영상물등급위원회의 지원업무) ①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자체등급분류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1. 영화 및 영상물의 등급정보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제공
2. 영화 및 영상물의 신속한 등급분류 절차를 위한 정보통신 시스템 구축 및 운영
3. 제50조의4제1호 및 제2호의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온라인 사후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4. 제50조의4제3호에 따른 등급분류책임자에 대한 온라인 교육시스템과 대면 교육체계 구축 및 운영
5.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한 등급분류 업무 지원
6. 자체등급분류 정보 이용자의 수용능력 향상을 위한 온라인 교육시스템과 대면 교육체계 구축 및 운영
7. 자체등급분류 정보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및 협력체계 구축
- ②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하여 자체등급분류지원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③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50조의4제2호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부터 통보받은 사항을 공중에 공개할 수 있다.
- ④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자체등급분류 업무의 적정성 유지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제50조의4에서 정하는 사항 및 제50조의7제4항의 조치의무에 대한 준수 여부를 평가한 후 평가 결과를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통보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업무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51조(복제 등의 확인) ① 등급분류를 받은 영화·영상물을 동일한 내용의 다른 영화 또는 영상물로 복제하거나 이를 배급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제작자등”이라 한다)는 그 복제 또는 배급에 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등급분류를 받은 영화 또는 영상물과 동일한 내용인지의 여부를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제작자등이 등급분류를 받은 영화·영상물과 동일한 내용의 다른 영화 또는 영상물로 복제하거나 배급할 권리가 있음을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신청 시에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확인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당한 권리자이며 동일한 내용인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작자등에게 확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절차, 확인증명서의 발급 및 재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제52조(등급분류 등의 취소) ① 영상물등급위원회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9조제1항 또는 제5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 또는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거나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가 등급분류 또는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등급분류 또는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분류 또는 확인을 취소한 때에는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29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증명서 또는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증명서를 각각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53조(불법영화등의 판매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화 및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공급·판매·대여(이하 “유통”이라 한다) 또는 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29조제1항 또는 제5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영화 및 영상물
2. 제5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복제하거나 배급한 영화 및 영상물
3. 제50조의7제1항 또는 제52조제1항에 따라 등급분류 또는 확인이 취소된 해당 영화 및 영상물
4. 제5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제작하거나 수입 또는 배급한 영화 및 영상물
5.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등급을 변경한 영화 및 영상물
 - ②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영화를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시청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이 시청 지도를 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29조제9항 및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되는 등급분류증명서 및 확인증명서는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매매 또는 증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3조의2(제한관람가 영화등의 시청제공 및 유통제한) ① 누구든지 제한관람가영화소극장이 아닌 장소 또는 시설에서 제한관람가 영화를 시청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누구든지 제한관람가 영화 및 영상물을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제한관람가영화소극장에서는 제2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화 및 영상물을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4조 <삭제>

제55조(등급분류 등의 통지)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영화 및 영상물에 대한 지도·단속권한이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정기관의 장과 제87조에 의한 영화단체(이하 “영화단체”라 한다)에 통지하고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에 관한 결정
2. 제31조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제56조(자료제출의 요청)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29조, 제50조의2제3항 및 제31조에 의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급분류 등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등급심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절 영업의 신고·등록·운영

제57조 <삭제>

제58조(영화시청제공업자의 등록) ① 영화시청제공업자가 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하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에 해당하는 경우

2. 정보통신망만을 이용하여 영화를 시청에 제공하는 경우. 다만, 제1항 본문에 따른 시설 및 영화 시청기자재를 갖춘 경우는 제외한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관람가영화소극장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또는 시설을 지정·고시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59조(영업의 제한) 제58조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58조에 의한 등록을 할 수 없다.

1. 제6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같은 업종을 다시 영위하고자 하는 때
2. 제6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때

제60조(신고증·등록증의 교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6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경우 또는 제58조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61조(등록사항의 변경) ① 제58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삭제>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갱신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변경등록의 절차·방법 및 등록증 갱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62조(영화시청제공업자의 준수사항) 영화시청제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영업소 안에 화재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것
2. 영화소극장업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에 한하여 청소년을 출입시킬 것. 다만,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거나 그의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영화감상실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 가. 주류를 판매·제공하는 행위
 - 나.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알선하는 행위
 - 다. 삭제
4. 영화감상실업, 제한관람가영화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의 경우에는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고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시킬 것

5.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에 등록증을 게시할 것

제63조(영업의 승계) ① 제26조 또는 제58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영화업자·영상물제작업자·영상물배급업자 또는 영화시청제공업자(이하 “영화업자등”이라 한다)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에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종전의 영화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 상속일 또는 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영화업자등의 영화에 관한 영업시설·기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시설·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를 인수한 자가 종전의 영화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인수일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양수인, 상속인,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영상물에 관한 영업시설·기구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양수일, 상속일, 합병일 또는 인수일부터 종전의 영화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다.

⑤ 제64조에 따른 폐업신고에 의하여 폐업하거나 등록이 말소된 영화업자등이 1년 이내에 폐업한 장소에서 같은 업종으로 다시 신고 또는 등록을 하는 경우 해당 영화업자등은 폐업신고 전의 영화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64조(영화시청제공업자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① 제58조에 따른 등록을 한 자가 폐업을 하였을 때에는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 사실을 확인한 후 신고사항 또는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제4절 영화의 표시 및 광고

제65조(표시의무) ① 영리의 목적으로 영화 및 영상물을 제작 또는 수입하거나 이를 복제하는 자는 해당 영화 및 영상물마다 제작·수입 또는 복제한 자의 상호(도서에 부수되는 영화의 경우에는 출판사의 상호를 말한다), 제29조제1항 또는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분류된 등급, 내용정보,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 및 내용정보의 표시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 <삭제>

제5절 등록취소 등 행정조치

제67조(행정처분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영화·영상물제작업 또는 영화·영상배급업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때
2. 제5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4.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영화시청제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때
2. 제5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때
4.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5.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때
6.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성매매 등의 행위를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한 때
7.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68조(과징금 부과)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영화제작업자·영상물제작업자 또는 영화배급업자·영상물배급업자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정지처분을 같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영화시청제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정지처분에 같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때
2. 제62조제2호·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건전한 영화 및 영상물의 제작 및 유통
2. 영화 및 영상물의 유해환경 개선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및 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운용계획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행정제재처분의 효과승계) ① 제63조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되어 영화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영화업자등에 대하여 제67조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일부터 1년간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 또는 합병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없다.

② 제63조제5항에 따라 영화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폐업신고 전에 제67조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일부터 1년간 영화업자등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영화업자등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제70조(폐쇄 및 수거)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6조 또는 제58조에 따른 신고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자와 제6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고 계속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영업을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영업 또는 영업소의 간판 및 그 밖의 영업표지물의 제거
2. 해당 영업 또는 영업소가 위법한 것임을 알리는 게시물의 부착
3.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② 제1항의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미리 해당 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이를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3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영화 또는 영상물을 발견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하여 폐기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해당 영화 또는 영상물을 수거한 때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수거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거증의 인수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수거·폐기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영화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시물의 부착·봉인·수거·폐기 등의 처분을 하는 관계 공무원 및

영화단체의 임·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화가 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같은 항 제9호의 게시판을 관리·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게 하는 등의 시정을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⑧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7항 후단에 따른 심의 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하여 같은 법 제21조제4호에 따라 심의 및 시정요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영상물등급위원회

제71조(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 및 영상물과 그 광고·선전물(이하 “영상물등”이라 한다)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를 둔다.

제72조(직무)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영상물등의 등급분류 및 내용정보, 청소년 유해성 확인에 관한 사항
2. 영상물등의 제작·유통 또는 시청제공의 실태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2의2. 제50조의4제1호 및 제2호의 준수 여부 확인 등 자체등급분류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 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기피신청에 관한 사항
5. 영상물등의 등급분류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조사, 연구, 국제협력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 5의2. 등급분류책임자 및 영화·영상물 이용자 교육에 관한 사항
 - 5의3. 영화 이용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업무 또는 권한으로 규정되거나 위탁받은 사항

제73조(구성) ①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예술·영상물등·청소년·법률·교육·언론 분야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에서 종사하고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대한민국예술원법」에 의한 대한민국예술원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③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은 성과 연령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하며 위원의 선임기준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그 밖에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제74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화의 등급분류신청, 제50조의2제3항에 의한 영화의 등급분류신청 등 이 법에 의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신청(이하 이 조에서 “신청”이라 한다)을 한 사항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자가 신청한 사항
3. 위원과 가족관계에 있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었던 자가 신청한 사항
 - ② 신청을 한 자는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75조(위원장 등) ①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②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장은 영상물등급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 ③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제76조(위원의 임기) ①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②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③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기가 만료된 때에 그 후임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제77조(의결정족수)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72조제3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8조(회의공개) ① 영상물등급위원회의 회의는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한다. 다만, 영업비밀의 보호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79조(소위원회 등) ①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7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72조제2호 및 제2호의2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후관리위원회를 둔다.
- ③ 소위원회 및 사후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제80조(위원의 대우 및 겸직금지) ①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 중 상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고 비상임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수행경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상임위원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제81조(위원의 결격사유) 제12조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제82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등) ①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은 임기 중 직무상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거나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1. 제8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장기간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③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이 제2항제1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면직되며 동항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장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촉을 건의할 수 있다.

제83조(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관련 업무 등) ①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상물의 등급분류에 대한 국민여론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등급분류 등의 업무 수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7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영화업자 및 영상물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관계기관에 건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제84조(사무국) ①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을 두되,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장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③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제85조(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의 제정·개정·폐지) ①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정·개정·폐지안을 20일 이상 관보 등에 예고하여야 하며, 그 규정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한 때에는 이를 관보 등에 게재·공포하여야 한다.

②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5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분류의 기준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소년단체·비영리민간단체·학계 또는 산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86조(국고지원) ①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영상물등급위원회는 국고 예산이 수반되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87조(영화단체의 설립) ① 영화업자는 영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영화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영화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③ 영화단체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영화단체는 영화 및 영상물의 제작 및 유통질서가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영화단체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8조(영화 유통질서에 관한 교육) 시장·군수·구청장은 영화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영화시청제공업자에 대하여 연 3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9조(모범적인 영화업자에 대한 지원)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영화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모범적인 영화시청제공업자를 지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90조(수수료) ① 삭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 수수료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면제한다.

1.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화의 등급분류를 신청하는 자

2.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하는 자

3.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화 광고·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성의 확인을 신청하는 자

4. <삭제>

4의2. 제50조의2제3항에 따라 등급분류를 요청하는 자

5.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영화 및 영상물 복제 등의 확인을 신청하는 자 또는 확인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6. <삭제>

7. <삭제>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자

1의2. 제26조제1항에 따라 영화업자·영상물제작업·영상물배급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자

1의3. 제26조제3항에 따라 신고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2. <삭제>

3.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화시청제공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

4.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을 하는 자

④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수수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련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91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1.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과 그 사무국의 직원

2.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과 그 사무국의 직원

3. 영상물등급위원회 소위원회의 위원·사후관리위원회의 위원

4. 제9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

제9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상자료원, 영상물등급위원회 또는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과 관련된 전문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영화진흥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업무의 일부를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장 벌칙

제93조(벌칙) 제70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받고 이를 위반하여 영업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급을 분류받지 아니한 영화를 상영한 자

2. 제29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한관람가 영화를 관람할 수 없는 청소년을 입장시킨 자

3. 제4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한관람가 영화를 제한상영관이 아닌 장소 또는 시설에서 상영한 자
4. 제4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한관람가 영화를 다른 영상물로 제작하거나 그 제작된 영상물을 상영·판매·전송·대여 또는 시청에 제공한 자
5. 제5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제한관람가 영화를 제한관람가관람소극장이 아닌 장소 또는 시설에서 시청에 제공한 자
6. 제5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제한관람가 영화를 유통한 자
7. 제62조제4호를 위반하여 관람감상실, 제한관람가관람소극장 또는 복합영상물제공업소에 청소년 출입을 허용한 자

제9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9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화를 상영한 자
2. 제3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한관람가 영화의 광고 또는 선전물을 게시하거나 제한상영관 밖에서 보이도록 한 자
3. 제43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한상영관에서 제29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영화를 상영한 자
4.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영화에 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자가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를 받거나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제·배급 등의 확인을 받은 자
6. 제5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영화를 제작·유통·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한 자
7. 제53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급분류증명서 또는 확인증명서를 매매 또는 증여한 자
8. 제5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제한관람가영화소극장에서 제50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화를 공중의 시청에 제공한 자
9. 제5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화시청제공업을 영위한 자
10. 제62조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11. 제66조제5항을 위반하여 제한관람가 영화의 광고 또는 선전물을 제한관람가영화소극장 안 이외의 장소에 게시하거나 제한관람가영화소극장 밖에서 보이도록 한 자
12.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

제9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2.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
3.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96조의2(벌칙) 제3조의4를 위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3조부터 제96조까지 및 제96조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9조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조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의 등급에 해당하는 영화를 관람할 수 없는 자를 입장시킨 자
2. 제3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확인받지 아니한 광고나 선전물을 배포·게시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한 자
3. 제3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확인된 광고나 선전물을 배포·게시한 자
- 3의2. 제50조의6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5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화 또는 영상물을 시청에 제공한 자
5. <삭제>
6. <삭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삭제
- 1의2. 제2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화제작·수입·배급 또는 상영업을 영위한 자
2. 제3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화필름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3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화상영관을 설치·경영한 자
4. 제37조제1항 전단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재해대책계획을 수립, 신고 또는 보완하지 아니한 자
- 4의2. 제37조제4항을 위반하여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5.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입장객 수, 입장권 판매액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조작하여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전송한 자
6. 제4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7. 제4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사관련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로 하여금 영화를 상영하게 한 자
8. 제6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9. 제6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급 또는 내용정보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표시방법과 다르게 표시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6조제1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36조제1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화상영관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3. 제46조제1항·제2항 또는 제63조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99조(과태료의 부과) 제98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법의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영화수입업자는 이 법에 따른 영화배급업자로 본다.

② 이 법의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비디오물제작업자는 이 법에 따른 영화제작업자 및 영상물 제작업자로, 비디오물배급업자는 이 법에 따른 영화배급업자 및 영상물배급업자로 본다.

③ 이 법의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다른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는 영화시청제공업자로, 비디오물감상 실업은 영화감상실업으로, 비디오물소극장업은 영화소극장업은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업은 제한관람가영화소극장업으로, 그 밖의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은 그 밖의 영화시청제공업으로 본다.

Biobibliography

참고문헌

- » 이성민(2020.8.) 영상 미디어 콘텐츠 법제 기반 정비를 위한 추진 방향 탐색, KCTI 정책리포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 영상진흥기본법 전부개정 법률안 검토보고서(2020.11), 제382회 국회 제9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 영상물등급위원회(2021). 2021 영상물 등급분류 연감.
- » 주성희(2019). 국제통상협정과 시청각 서비스 개방,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 노철환(2017). 매체융합시대 프랑스의 영화영상지원정책 변화. 프랑스문화예술연구, Vol.60, 123~146.

kofic

kofic
영화진흥위원회
Korean Film Council

비매출/무본

93680



9 788980 212361

ISBN : 978-89-8021-236-1